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2호 2018. 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특집 고조선사 복원을 위한 종족 고고학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연구

박선미 ■ 고조선의 정체성(正體性) 탐색을 위한 초론(初論)
- 중국이라는 타자의 눈에 비친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 7

김정열 ■ 고고문화와 민족
- 중국학계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37

김종일 ■ 유럽 선사 및 고대 시기의 민족과 민족적 경계에 대한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의 검토 85

논문

최진열 ■ 5~6세기 2개의 요동(遼東)
- 북위(北魏)의 천하관(天下觀)과 역사왜곡이 만들어낸 고구려(高句麗)의
요동과 북위의 요동 145

연민수 ■ 왕진이(王辰爾) 일족의 문서행정과 시조전승 201

김영수 ■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237

박병섭 ■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281

서평

박재복 ■ 출토자료를 활용한 중국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 심재훈,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晉)의 봉건에서 문공(文公)의 패업까지』,
일조각, 2018 327

정혜중 ■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와 동아시아사
-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 유용태, 서울대출판부, 2017 345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355

Contents

Special Edition Cross Cultural Study for Reconstruction of Old Choson from the Perspective of Ethnic Archaeology

Park Sunmi ■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Ethnic Identity of Old Choson
in Chinese Historical Records 7

Kim Jungryol ■ The Archaeological Culture and Ethnicity: A Critical Review on
the Perspective of Chinese Scholars 37

Kim Jongil ■ A Critical Review on Archaeologic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the Concept of 'Nation' and 'Its Boundary' in European pre- and Ancient
History 85

Articles

Choi JinYeoul ■ "Two Ryodongs" in 5~6th Century: Koguryo's Ryodong and
Northern Wei's Liaodong fabricated by the World View of Northern Wei
Dynasty and History Distortion 145

Yeon minsoo ■ The Document Administration and Progenitor Transmission of
the Wangjini Clan 201

Kim Youngsoo ■ Incorporation of Japan's Dokdo into Illegal Territory and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40' 237

Park Byoungsup ■ Inspection for the 'Japanese inherent territory theory' to
Dokdo 281

Book Review

Park Jaebok ■ A new perspective of the Chinese ancient history research
using excavated relics 327

Chung Hyejung ■ East Asian History of Connections and Comparisons 345

특집

고조선사 복원을 위한 종족 고고학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조선의 정체성(正體性) 탐색을 위한 초론(初論) -중국이라는 타자의 눈에

비친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

박선미 |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민족·종족의 개념과 정체성
- III. 중국 측 문헌에 기록된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
- IV. 고조선의 정체성 복원 탐색
- V. 맺음말

I. 머리말

고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고조선의 정체성 문제는 고조선이 남긴 문헌과 물질자료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고조선 스스로 남긴 문헌이 현전하지 않고 그 강역도 불분명하여 어디에서 나온 물질자료—고고학 유물과 유적—를 고조선이 남긴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 때문에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적이 어디이고, 고조선의 주민 혹은 지배집단이 만들고 사용했을 유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누구나 수궁할 수 있는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헌에 기록된 고조선이 실체가 없는 유령집단이 아님은 물론이다. 고조선은 중국 측 정사(正史)에 실릴 정도로 동북아시아 고대국가들과 대외관계를 맺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다만 타자에 의한 기록 탓에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영성할 뿐이다.

학계는 얼마 안되는 기록을 토대로 그동안 고조선의 역사를 복원하고 이해하는 연구를 지속해왔다. 문헌사학적인 측면에서 고조선의 중심지, 고조선의 등장과 국가성립시기, 정치, 군사, 관료제도, 강역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단편적인 기록을 토대로 한 접근은 연구자별로 ‘자구(字句)의 다양한 해석’과 이에 따라 복원된 서로 다른 모습의 고조선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뿐이었다. 고조선의 실체를 보여줄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조선사 연구의 대강(大綱)은 근대사학 성립 이래 크게 달라진 것 없이 없었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는 중국학계와의 교류와 발굴조사의 증가 덕분에 전문가가 늘어났고 이전에 비하여 고조선이 남긴 물질문화에 대한 이해가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고고학계 내에서도 고인돌, 석관묘,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다뉴

* 투고: 2018년 8월 13일, 심사 완료: 2018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18년 11월 16일

경, 미송리형토기, 팽이형토기 등을 고조선과 연관시켜 보는 데에 회의적인 분위기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비파형동검이 출토된 기원전 6세기경의 중국 심양 정가와자유적을 고조선의 지배자 무덤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¹를 고고학계는 물론 문헌사학계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서북부와 중국 동북지역에 분포하는 고인돌을 고조선의 물질문화로 보는 견해²도 마찬가지다. 고조선의 강역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출된 추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이와 같이 고조선사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필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고조선의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다소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물음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고조선은 무엇인가? 고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고조선사를 복원할 이론과 틀에 대한 질문 없이 전통시대 선학들이 짜놓은 담론 안에서 근대역사학자들도, 현대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도 고조선을 연구해왔다. 그 결과 고조선사 연구는 결국 전통시대 이래 논쟁거리였던 강역이나 중심지 등 각론으로 수렴되었고, 자구에 대한 다양한 해석 혹은 가능성의 제시라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를 가져왔다.

문헌사학과 고고학은 각자 고유의 연구방법론이 있다. 문헌사학에서는 사료비판과 자구의 검토를 통해 고조선사를 복원하고 이해한다. 고조선의 등장시점을 시사하는 문헌을 검토하고, ‘국가로서의 고조선’을 찾아내기 위해 왕, 관료, 상비군 등과 같은 기록을 주목한다. 사료에 나오는 지명 고증을 통해 고조선의 활동범위를 대략적이거나 그려낸다. 고고학에서는 일정한 지역에서 발굴되고 조사된 유적과 유물 등을 분석하여 물질문화와 이를 남긴 주민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유구의 밀집도와 희소성, 정교함 등 여러 가치를 기준으로 전체 경관(景觀)적인 맥락과 함께 중심지를 추출해 내고 단위지역 간 상호관계를 알아내고자 한다. 만약 문헌에 고고학 자료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을 정치

1 이청규, 2015, 『다뉴경과 고조선』, 단국대학교출판부.

2 하문식, 1999, 『고조선 지역의 고인돌 연구』, 백산자료원.

체가 나오면 고고학 자료와 그 정치체의 상관관계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문헌사학과 고고학 방면의 연구를 통해 복원된 고조선이 서로 다른 모습을 띠게 되는 것도 예견된 바 일지도 모르겠다.³

그렇다면 어떻게 고조선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까? ‘조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관자(管子)』이다. 여기에 나오는 조선 관련 내용이 기원전 7세기경인가 아니면 전국시대의 것인가 그도 아니면 한대 이후인가에 대해서는 이설이 많다. 그러나 그 시기에 못지않게 주목해야 할 것은 『관자』를 지은 저자의 눈에 비친 고조선이다. 고조선의 여러 활동을 전하고 있는 『사기』 조선열전, 『한서』 조선전, 『후한서』동이열전, 『삼국지』동이전 등도 마찬가지다. 타자에 의한 일방적인 기록이고 후대의 인식이 산입되었다는 점에서 고조선의 정체성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서를 지은 저자들이 ‘무엇으로’ ‘어떻게’ 고조선을 주변 정치체들과 구분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고조선의 정체성을 일부나마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고는 중국 측 문헌 내용을 검토하여 타자의 눈에 비친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종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종족을 구분하는 요소 가운데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요소만을 추출하여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한다.

이 작업이 고조선사를 복원하는 이론과 틀, 방법론의 부재라는 과제에 접근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본문에서는 원론적이고 답론적인 의제를 제시하고자 의도했다. 글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착오가 있을 것이다. 질정을 바란다.

3 박선미, 2018, 「고조선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 『고조선사 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II. 민족·종족의 개념과 정체성

민족이란 무엇인가? 민족의 정체성(Identity)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인류학과 1980년대 이후 고고학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 “어느 집단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복잡한데, 전통적인 견해는 같은 지역, 같은 언어, 같은 조상관념과 역사·문화, 연대감 등을 공유하는 일군(一群)의 집단이다.⁴ 여기에는 지역·역사·문화적 공동체로서 강조되기도 하고, 민족국가로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적·정치적 공동체로서 강조되기도 한다. 오늘날 신문이나 소셜 등이 폭넓게 읽힘으로써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익명의 개인 간에, 상상을 기반으로 같은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는 ‘상상의 공동체’로 민족을 정의한 베네딕트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정의는 민족이 갖는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다변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민족은 언제부터 형성되었을까? 이를 달리 질문해보면 한 사회집단을 민족으로 묶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한가? 동일한 언어·문화·역사·조상관념·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공유하는 집단은 언제부터 같은 지역에 모여 살게 되었는가? 혹은 같은 지역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동일한 언어·문화·역사·조상관념·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는가? 민족을 구분짓는 이러한 요소들은 동시에 발생된 것인가? 아니면 각기 다른 시기에 형성되어 고착화되었는가?

같은 질문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이유는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민족의 기원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의미다. 처음에 민족이라는 집단은 근대국민국가 형성 이후의 산물로 인식되었다. 민족, 즉 영어로 네이션(Nation)은 봉건체제에서 자본주의체제로 이행하는 과

4 Colin Renfrew, 1993, *The Roots of Ethnicity, Archaeology, Genetics and the Origins of Europe, Volume 10 of Conference, the University of Virginia*, pp.19~64.

정에서 생겨났다고 보았다. 자본주의라는 공통경제체제로 편입됨에 따라 공통의 생활조건이 형성되고, 여기에 역사적으로 집적되어 온 언어의 공통성, 똑같은 역사과정에 의한 심리적 공통성 등 문화의 공통성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지역 범위에 걸쳐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인간집단을 민족이라 부른다. 개념상 민족은 자본주의체제로 특징되는 근대국민국가와 불가분의 관계다.⁵

그러나 민족의 기원을 전근대사회에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일찍부터 인류학에서 제기된 바 있다. 즉 민족의 역사적 토대로서 문화, 역사, 언어 등 여러 요소를 공유하는 사회집단이 고대사회에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를 근대의 민족과 구분하여 종족, 즉 영어로 에스닉(Ethnic) 혹은 에스니시티(Ethnicity)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⁶ 이로부터 출발하여 프린트 캐피탈리즘(Print Capitalism)과 같은 근대적 산물로 인한 요소와 공통조상과 같은 ‘귀속의식’이나 ‘연대감’ 등의 주관적 기준을 제외하면 민족은 최소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언어·문화·지역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을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민족과 구분하여 종족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고고학과 인류학 연구는 민족이나 종족의 정체성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한 집단은 다른 집단과 관계를 맺으며 ‘타자(Others, 非我)’와 다른 ‘우리(Us, 我)’를 인식하게 된다. 반대로 ‘타자’에 의해 ‘우리’가 어떠하다고 인식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이 서로를 구분하는 독특한 기준들, 즉 자신들만의 가치·행위규범·친족계통·조상혈통·독특한 역사 인식을 소유한다고 본다.⁷ 또한 민족과 종족을 영속

5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소화; 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6 Anthony D. Smith, 1986,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Blackwell Publisher, USA, pp.6~18; Colin Renfrew, 1993.

7 데이빗 코헨, 2018, 「초기 청동기시대 악석문화와 동이」, 『중국 산둥지역의 동이』, 역사공간, 151~185쪽.

적으로 보는 데에도 비판적이다. 사회의 다른 다양한 결속들과 마찬가지로 종족의 정체성도 정치·경제·사회적 힘에 의해 예측되고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고 있다.⁸ 정체성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과 집단적 차원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국사에서는 물론 세계사에서도 수많은 사례들이 이미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콜럼버스의 ‘인디언(Indian)’이다.⁹ 1492년 콜럼버스는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황금을 얻기 위해 인도를 찾아 길을 떠났다. 몇 달 후 한 섬에 닿아 인도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 지역 토착주민들을 인도 사람, 즉 ‘인디언’이라 불렀다. 알다시피 이곳은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한 섬이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인도로 잘못 알고 토착주민들을 인디언이라 부른 것이다. 당시 토착민들은 자신을 인디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도 없었으며 그런 용어도 없었다. 토착주민들은 각 부족들마다 자신들 고유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차츰 유럽인과의 교류와 접촉이 많아지면서 토착집단들은 자신들의 이름 대신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유럽인들과 교류했다. 유럽인에게 인디언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토착집단들을 부르는 범칭(汎稱)이었다. 토착집단도 자신들을 향한 타자의 호칭인 ‘인디언’을 받아들였다. 유럽인과의 교류에서 스스로를 인디언이라 인식하게 되었다. 당연히 오늘날 아시아의 인도 사람을 의미하는 ‘인디언’과 미국 원주민(Native American)을 의미하는 ‘인디언’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다.

정체성을 바꾸는 사례는 한국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8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조된다.

Peter S. Wells, 2001, *Beyond Celts, Germans and Scythians*, Gerald Duckworth & Co. Ltd. London; 시안 존스 지음, 이준정·한건수 옮김, 2008, 『민족주의와 고고학: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만들기』, 사회평론; 김종일, 2004, 「한국 중기무문토기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국사관논총』 104; 2006,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고고학』 5; 2008, 「고고학적 범주화의 철학적 탐구」, 『고고학』 7.

9 Peter S. Wells, 2001, *ibid.*

백제의 목씨(목라근자)는 일본열도에 건너가 일본 아스카시대 유력 호족인 소가씨 가문을 일구었다. 그런데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신라와 왜 사이가 나빠지자 소가씨는 백제의 장군 출신임을 숨기고 원래 왜인이었다고 주장하며 일가를 이룬다. 조선시대에는 단군보다는 기자를 중시여기고 조선의 정체성을 기자와 연결시키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는 조선이 명과의 관계에서 상(商)의 성인으로 알려진 기자에 가탁함으로써 실리를 얻고자 한 것에서 비롯된 ‘정체성의 실리적 활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 동기는 정치·경제·사회·종교·전쟁 등 다양하다.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집단적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은 언제로 소급될 수 있는가? 한국사에서 민족이나 종족에 대응할 만한 용어는 조선시대 실록에 나오는 족류(族類)와 동포(同胞)다.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민족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조선사람을 여진이나 왜 등의 이족(異族)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시대의 족류와 동포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고 대신 서양의 ‘민족(Nation)’ 개념을 수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때 ‘우리민족은 단군과 기자의 자손’이라고 표현하거나 단군만을 강조하여 단군의 후예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때조차도 혈연적으로 모두 연결된다는 의미로서의 ‘우리민족’은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⁰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족이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혈연·역사·언어·종교·풍속·생계를 공유하는 집단이라면 한국사에서 민족의 등장, 즉 민족 정체성이 형성된 것은 언제쯤인가? 자본주의체제는 아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 민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주를 찾는다면 고구려·백제·신라 등을 자신의 연원적 계보로 파악한 고려시대로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민족 구성원이 가졌을 소속감이나 유대감과 같은 주관적 요소에 대한 설명이 따로 필요하다.

10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소화, 50~84쪽.

그러나 앤서니 스미스(Anthony D. Smith)가 말한 ‘민족의 역사적 토대’로서의 종족은 타자의 눈에 비친 고조선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관자』, 『염철론』, 『방언』,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등은 고조선을 비롯하여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등 한국고대국가들과 대외관계를 맺었던 중국 고대국가들이 작성한 사료들이다. 이들의 눈에 비친 한국고대국가들의 모습을 통해 한국민족의 역사적 토대가 된 종족의 범위를 개략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가능하다.

III. 중국 측 문헌에 기록된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

고조선이 타자(주변 정치체)에 의해 처음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관자』 경중감편과 규약편이다.¹¹ 여기에 ‘발조선지문피(發朝鮮之文皮)’와 함께 양자간의 관계를 시사하는 ‘발조선가득이조(發朝鮮可得而朝)’라는 기록이 나온다.¹²

고조선 스스로가 남긴 기록이 없는 현실에서 위의 기록은 가장 이른 시기 고

11 『管子』 23, 揆度, “桓公問管子曰 吾聞海內玉幣有七筴 可得而聞乎. 管子對曰 陰山之璫磬一筴也 燕之紫山白金一筴也 發朝鮮之文皮一筴也 汝漢水之右衢黃金一筴也 江陽之珠一筴也 秦明山之曾青一筴也 禹氏邊山之玉一筴也”

『管子』 24, 輕重甲, “桓公曰 四夷不服 恐其逆政游於天下而傷寡人 寡人之行為此有道乎. 管子對曰 吳越不朝 珠象而以爲幣乎; 發朝鮮不朝 請文皮 服而以爲幣乎; 禹氏不朝 請以白璧爲幣乎; 崑崙之虛不朝 請以璆琳琅玕爲幣乎. 故夫握而不見于手 含而不見于口 而關千金者 珠也 然後八千里之吳 越可得而朝也; 一豹之皮 容金而金也 然後八千里之發·朝鮮可得而朝也; 懷而不見于抱 挾而不見於掖 而關千金也 白璧也 然後八千里之禹氏可得而朝也; 簪珥而關千金者 璆琳琅玕也 然後八千里之崑崙之虛可得而朝也. 故物無主 事無接 遠近無以相因 則四夷不得而朝矣”

12 이 기록을 기원전 7세기대의 사실로 해석하는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박대재(2006, 「고조선과 燕·齊의 상호관계-기원전 4세기말-3세기 초 전쟁기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3)의 경우는 이 기록이 전국시대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다. 비록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타자에 비친 반쪽짜리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조선’이라 불린 집단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같은 사료에 오월·우시·곤륜·연 등의 이름도 나란히 등장하는 것을 보면 고조선과 이들은 분명히 다른 존재로 비추어졌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들의 존재도 고조선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에 유효하다. 무엇이 조선과 이들을 다른 것으로 보이게 하였는가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하튼 제와 교역을 했다는 ‘조선’ 혹은 ‘발조선’은 어느 곳에 있던 집단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들을 통일된 정체성을 가진 하나의 종족집단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여러 종족 집단이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하여 ‘조선’이라는 하나의 정치체 혹은 연맹체를 형성한 것인가?

이보다 후대의 기록은 조선이라는 정치체의 활동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준다. 기원전 1세기 대의 기록인 『염철론(鹽鐵論)』 8 벌공편(伐攻篇)은 “연이 동호를 습격하여 천 리를 물러나게 하고 요동을 지나 조선을 공략했다.”¹³ 고 했다. 『삼국지』 동이전에는 조선이 연과 대등하게 왕호를 자칭했다고 나와 있다.¹⁴ 『사기』 열전에는 조선전이 따로 편목 될 정도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 기록들은 어느 지역의 정치체가 고조선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고조선의 언어나 풍습, 생김새, 옷차림 등에 대해서도 서술해 놓지 않았다. 그러나 서술된 내용 가운데 고조선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 이와 같은 문헌자료가 다수 있으니, 문헌기록에서 고조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추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종족의 구분 기준은 같은 언어, 의복·풍속·법속 등에서 보이는 같은 문화, 같은 지역이다. 사료가 많지는 않지만 서로 상관성을 보여주는 기록들을 쫓아가는 식으로 고조선의 정체

13 『鹽鐵論』 8, 伐攻篇, “燕襲走東胡僻地千里 度遼東而攻朝鮮”

14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30, 韓 인용 『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성을 유추해보자.

먼저 언어다. 전한의 양웅(楊雄)이 저술했다는 『방언(方言)』¹⁵에는 고조선의 언어를 서술한 부분이 있다. 모두 26조(條)에 걸쳐 고조선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별도의 편목이 없는 서술체계여서 어느 언어계통인지 특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고조선어가 ‘연지외비조선열수지간(燕之外鄙朝鮮洌水之間)’, ‘연대조선열수지간(燕代朝鮮洌水之間)’, ‘연지북비조선열수지간(燕之北鄙朝鮮洌水之間)’, ‘연지동북조선열수지간(燕之東北朝鮮洌水之間)’, ‘동북조선열수지간(東北朝鮮洌水之間)’ 등으로 표현된 특정 지역의 언어로 소개되어 있다. 어느 시기의 고조선어가 이 책에 채록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고조선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현된 이 지역은 주진(周秦)이래 같은 언어권이었다.¹⁶ 그리고 『방언』을 참조한 『설문해자(說文解字)』는 이들 지역을 조선으로 표현하고 있다.

학계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연북-조선-열수 지역, 즉 사료에 약간씩 다르게 표현된 ‘연대북비조선열수지간’은 기원전 3세기 이전 고조선의 범위에 해당하며 오늘날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지역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조선계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으로 연·제의 방언과 지역적으로 구분되며, 연의 동북지역과는 동일한 언어구역으로 묶여 있었다고 보고 있다.¹⁷

그런데 흥미롭게도 『후한서』와 『삼국지』 동이열전은 이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체들의 언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① -1 동이들이 서로 전하여 오기를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라 하는데 언어와 법칙이 (부여와) 거의 같다. (『後漢書』 85, 東夷列傳 高句麗, 東夷相傳以爲

15 『방언』의 정식 표제는 『유현사자절대어석별국방언(輜軒使者絕代語釋別國方言)』, 으로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방언 관련 문헌이다. 황제의 사자가 각지를 다니며 수집한 방언을 양웅이 다시 모아 정리하고 조사하여 지은 책이다. 양웅의 『방언』은 산 실되어 남아 있지 않고 후대에 각본(刻本)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16 孔在錫, 1975, 「漢代 方言 중 朝鮮方音에 관하여」, 『東洋學』 5.

17 박대재, 2015, 「고조선의 언어구역과 연의 동북지역」, 『선사와고대』 43.

夫餘別種 故言語法則多同)

-2 동이의 옛 말에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 말이나 풍속 등이 부여와 같은 점이 많으나 그들의 기질이나 의복에는 차이가 있다고 했다.([三國志』30, 烏丸鮮卑東夷列傳 高句麗,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 ② -1 (읍루) 사람의 모습은 부여와 유사하나 언어는 다르다.([後漢書』85, 東夷列傳 挹婁, 人形似夫餘 而言語各異)

-2 읍루 사람들은 생김새는 부여사람과 흡사하나 언어는 부여나 고구려와 같지 않다.([三國志』30, 烏丸鮮卑東夷列傳 挹婁,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

- ③ -1 동옥저 (중략) 언어·음식·거처·의복은 고구려와 비슷하다.([後漢書』85, 東夷列傳 東沃沮, 東沃沮…言語食飲居處衣服有似句麗)

-2 (동옥저의) 말은 구려와 대체로 같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三國志』30, 烏丸鮮卑東夷列傳 東沃沮,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 ④ -1 (예의) 노인들은 자신들이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 말하는데 언어와 법령과 풍속이 대체로 비슷하다.([後漢書』85, 東夷列傳 濊, 耆舊自謂與句麗同種 言語法俗大抵相類)

-2 (예의) 노인들은 예부터 스스로를 일컫기를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라고 했다. (중략) 언어와 예절 풍속은 대체로 고구려와 같지만 의복은 다르다.([三國志』30, 烏丸鮮卑東夷列傳 濊,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 ⑤ -1 진한의 노인들이 스스로 말하되 秦의 망명한 사람들로써 고역을 피하여 韓國에 오자 마한이 그들의 동쪽 지역을 분할하여 주었다고 한다. (중략) 秦의 말과 흡사하기 때문에 혹 秦韓이라고도 부른다.([後漢書』85, 東夷列傳 辰韓, 辰韓耆老自言秦之亡人 避苦役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2 (진한) 그들의 말은 마한과 달라서 國을 邦이라 하고 (중략) 秦 사람들과

흡사하니 단지 燕·齊의 명칭만은 아니었다.『三國志』30, 烏丸鮮卑東夷列傳 辰韓,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3 변진은 진한사람들과 뒤섞여 살며 성곽이 있다. 의복과 주택은 진한과 같다. 언어와 법속이 서로 비슷하지만 귀신에게 제사지내는 방식은 달라서 문의 서쪽에 모두 竈神을 모신다.『三國志』30, 烏丸鮮卑東夷列傳 弁辰,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竈皆在戶西)

- ⑥ 주호가 마한의 서쪽 바다 가운데 큰 섬에 있다. 그 사람들은 키가 작고 말도韓과 같지 않다. 모두 선비와 같은 머리를 하고 있다.『三國志』30, 烏丸鮮卑東夷列傳 馬韓,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위의 사료는 부여, 읍루, 고구려, 동옥저, 예, 한의 언어적 상사성과 상이성에 대하여 서술한 부분이다. 즉 고구려는 부여와 언어가 같고, 읍루는 고구려나 부여의 언어와는 다르다. 동옥저와 예의 언어는 고구려와 비슷하다. 삼한의 경우는 변한과 진한이 같고 마한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다. 마한의 서쪽에 있다는 주호의 언어도 고구려나 삼한의 언어와는 다른 것으로 나온다. 그런데 고구려, 부여 등 북부에 있던 나라들의 언어와 남부에 있던 삼한의 언어를 비교해 놓지는 않았다. 북부와 남부의 언어가 달랐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위의 사료만으로는 추단하기 어렵다. 이것이 언어학에서 말하는 북방계와 남방계의 차이인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언어에서 발견되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부여-고구려-동옥저-예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일언어군으로 묶인다. 다음으로 변한-진한이 같은 언어군으로 묶이고 읍루, 마한, 주호가 각각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고구려와 예는 부여의 별종 혹은 같은 종족이라고까지 표현되어 있다.

다음으로 풍속과 법속 등 문화 관련 부분이다. 앞에 제시한 사료 외에 다음

의 기록이 있다.

- ⑦ -1 동이나 부여는 음식을 먹을 때 거의 모두 조두를 사용하지만 오직 읍루만은 법도가 없으니 (동이 중에서) 가장 기강이 없다. (『後漢書』 85, 東夷列傳 挹婁, 東夷夫餘飲食類皆用俎豆 唯挹婁獨無法俗最無綱紀者也)
- 2 동이들은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 조두를 사용했으나 오직 읍루만은 그렇지 못했으니 그 법도나 풍속이 (동이 가운데에서) 가장 기강이 없었다. (『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挹婁, 東夷飲食類皆用俎豆 唯挹婁不 法俗最無綱紀也)
- ⑧ -1 음식·주거·의복·예절은 (고)구려와 흡사하다. (『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東沃沮, 食飲居處衣服禮節有似句麗)
- 2 또 북옥저가 있으니 치구루라고도 한다. 남옥저와는 8백여 리 떨어져 있다. 그 풍속은 모두 남옥저와 같다. (『後漢書』 85, 東夷列傳 東沃沮, 又有北沃沮 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皆與南同)
- 3 북옥저는 일명 치구루라고도 하는데 남옥저와는 8백여 리 떨어져 있다. 그들의 풍속은 남, 북이 서로 같다. (『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東沃沮, 北沃沮 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

위에 열거한 ①~⑧은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있었던 정치체들 사이에서 보이는 풍속의 같고 다름을 기록한 것이다. 의복이나 제사지내는 모습 등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부여-고구려-동옥저(남옥저-북옥저)-예가 대체로 유사한 풍속과 법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읍루는 부여와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풍속 면에서는 다른 점이 많았던 듯 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도 달랐다. 삼한의 경우는 진한과 변한의 풍속이 비슷하다고만 되어 있고, 마한과는 비교하지 않고 있는데, 언어가 달랐던 것처럼 풍속도 달랐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지역, 즉 공간이다. 고조선의 지리적 범위가 명확히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고조선 이후 일어난 나라들의 지리정보를 통해 고조선과의 공간적 관계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다음은 관련 사료를 모아 정리한 것이다.

- ⑨ -1 (부여) 그 나라의 노인들은 자기네들이 옛날에 (다른 곳에서) 망명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중략) 그 도장에 예왕지인이란 글귀가 있고 나라 가운데에 ‘예성’이란 이름의 옛 성이 있으니 아마도 본래 예맥의 땅이었는데 부여가 그 가운데에서 왕이 되었으므로 자기들 스스로 망명해 온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는 듯하다. (『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夫餘, 國之耆老自說古之亡人…其印文言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之地而夫餘王其中 自謂亡人 抑有似也)
- 2 부여는 본래 현도군에 속했다. (『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夫餘, 夫餘本屬玄菟)
- ⑩ -1 (읍루는) 한대 이래로 부여에 신속되었다. (『後漢書』 85, 東夷列傳 挹婁, 自漢興已後 臣屬夫餘)
- 2 (읍루) 한대 이래로 부여에 신속되었다. (『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挹婁, 自漢已來 臣屬夫餘)
- ⑪ -1 (고구려가) 옥저와 동예를 모두 신속시켰다. (『後漢書』 85, 東夷列傳 高句麗, 沃沮東濊皆屬焉)
- 2 (한)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현토에 속하게 했다. (『後漢書』 85, 東夷列傳 高句麗, 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 3 옥저와 동예가 모두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高句麗, 沃沮東濊皆屬焉)
- ⑫ -1 동옥저는 (중략) 마침내 고구려에 신속케 되었다. (『後漢書』 85, 東夷列傳 東沃沮, 東沃沮…遂臣屬句驪)
- 2 (한) 무제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옥저땅으로 현토군을 삼았다. (『後漢書』 85, 東夷列傳 東沃沮,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菟郡)
- 3 한 초에 연의 망명객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되면서 옥저의 (읍락들은) 모두

(조선에) 복속케 되었다. 한 무제 원봉 2년 조선을 정벌하여 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그 지역을 분할하여 사군을 설치하였는데 옥저성으로 현도군을 삼았다.『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東沃沮,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時沃沮皆屬焉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4 동옥저는 (중략) (고)구려에 신속케 되었다.『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東沃沮, 東沃沮…遂臣屬句麗)

⑬ -1 예·옥저·(고)구려는 본래 모두 조선의 땅이다.『後漢書』 85, 東夷列傳 濊, 濊及沃沮句驪 本皆朝鮮之地也)

-2 예는 남쪽으로 진한과 북쪽으로 고구려 옥저와 접하였고 동쪽으로는 대해에 닿았으니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지역이다.『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濊,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⑭ -1 한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한, 두 번째는 진한, 세 번째는 변진이다. (중략) 여러 나라 왕의 선대는 모두 마한 종족의 사람이다.『後漢書』 85, 東夷列傳 韓,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人焉)

-2 준은 만과 더불어 전쟁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좌우 궁인을 데리고 달아나 바다로 들어가 한지에 거하고 스스로 한왕이라 칭했다.『三國志』 卷30, 東夷傳 韓傳, 準與滿戰 不敵也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3 (변진) 그중에서 12국은 진왕에게 신속되어 있다. 진왕은 항상 마한 사람으로 왕을 삼아 대대로 세습하였으며 진왕이 자립하여 왕이 되지 못했다.『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弁辰,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4 그들은 (外地에서) 옮겨온 사람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한의 제재를 받는 것이다.『三國志』 30, 烏丸鮮卑東夷列傳 弁辰 所引『魏略』,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

위에 제시한 사료는 고조선, 부여, 읍루, 고구려, 옥저, 예, 삼한의 역사지리적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예·옥저·고구려는 본래 고조선 지역에서 일어났고, 부여도 고조선 멸망 후 설치된 현토군에 속했던 지역으로 본래 예맥의 땅에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삼한의 경우 변한과 진한이 모두 마한의 관할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⑭-2는 고조선의 준왕이 도주하여 한지(韓地)로 표현된 곳에 정착, 한왕을 자칭한 것으로 되어있다. 준왕의 남천은 한이라고 하는 토착사회에서 일어난 외래인의 망명과 정착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부여, 읍루, 고구려, 옥저, 예는 고조선과 지역적인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이상으로 고조선과 후발 정치체들의 언어, 문화, 지역적인 관계를 살펴보았다. 『후한서』와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을 토대로 언어, 풍속, 지역을 공통으로 하는 집단을 묶어보면 부여-고구려-옥저-예, 진한-변한, 읍루, 마한, 주호 등 다섯 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를 앞에서 살펴본 『방언』의 기록, 즉 ‘연대북비조선열수지간’의 동일 언어군과 비교하여 이해하면, 연북-조선-열수 지역으로 표현된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이 고조선계 언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 된다. 이 지역은 곧 고조선의 종족적 분포 범위이자 주요 활동무대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이것은 앞에 제시한 ⑬-2 『삼국지』 동이전의 저자 진수가 “오늘날 조선(今朝鮮)”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방증된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만과의 전쟁에 패한 준왕이 무리 천여 명과 함께 한지로 가서 한왕(韓王)이 되었다는 동이전 한조(韓條)의 기록이다.(앞의 사료 ⑭-2)¹⁸ 이 기록은 고조선과 한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준왕의 남천이 한의 종족적 정체성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또는 고조선과는 종족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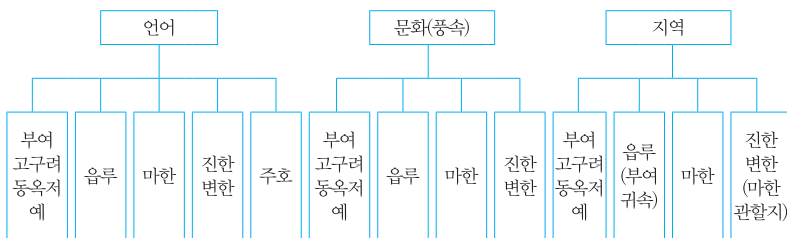
18 『三國志』卷30, 東夷傳 韓傳, “衛誘亡黨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IV. 고조선의 정체성 복원 탐색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 있었던 정치체들은 언어, 문화, 지역 면에서 일정한 관계가 있었다.

언어에서는 부여-고구려-동옥저-예가 하나를 이루고, 진한-변한이 공통이고, 읍루, 마한, 주호가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 풍속 등 문화면에서는 부여-고구려-동옥저-예가 한 그룹으로 묶이고 진한-변한이 다른 하나를 이루며 읍루, 마한이 각각 다른 풍속을 가진 그룹이 된다. 지역 면에서는 부여-고구려-옥저-예가 하나를 이루며, 진한과 변한은 마한과 더불어 같은 관찰권에 있고, 읍루가 부여에 귀속해 있다. 이를 도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언어·문화·지역의 상관관계



위의 표에서와 같이 종족 정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언어, 문화, 지역 면에서 공통인 부여-고구려-옥저-예가 동일한 종족으로 묶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종족은 『후한서』 동이전의 기록 ‘예급옥저구려 본계조선지지야(濊及沃沮句驪 本皆朝鮮之地也)’와 같이 지리적으로 본래 모두 조선의 땅에 있었다. 부여-고구려-옥저-예가 언어와 풍속 면에서 공통적일 수밖에 없고, 『후한서』나 『삼국지』 등의 저자가 고구려와 예를 부여의 별종(別種) 혹은 동종(同種)으로까지 표현한 까닭도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을 이들로부터 찾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

앞 장에서 『방언』의 ‘연대북비조선열수지간(燕代北鄙朝鮮洌水之間)’의 언어 구역이 『설문해자』에서 말하는 ‘조선’을 의미한다는 견해¹⁹를 소개했다. 이 견해는 연의 동북지역이 고조선 언어구역의 외곽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어 부여의 언어도 고조선의 언어로부터 분화·파동된 것으로 이해했다. 즉 『설문해자』가 『방언』의 ‘연의 동북-조선-열수’지역을 ‘조선’이라고 통칭한 사실을 들어 부여-고구려-옥저-예 등 예맥족 언어의 조어(祖語)를 고조선계어로 본 것이다.

이 견해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에서 제시한 사료의 곳곳에서 예·옥저·(고)구려를 조선이나 예맥의 땅과 연관시켜서 서술된 부분이 자주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은 고조선 계통의 언어를 공동으로 구사하며 유사한 풍속을 갖고 있었고 지역적으로 고조선과 같은 곳에서 일어난 부여-고구려-옥저-예에서 찾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실 읍루의 경우도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화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나 언어가 달랐던 것으로 미루어 부여에 신속되었을 뿐 종족적으로는 별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에 제시한 사료에도 비교적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다. 즉 타자의 문헌기록은 읍루와 한(韓)이 언어와 풍속 면에서 고조선과는 달랐던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들 지역은 또 다른 종족적 정체성을 갖은 집단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후한서』와 『삼국지』 동이전으로 묶인 왜에 대한 서술에서 언어에 대한 언급이 없고 풍속과 법속에 대한 언급도 적다는 점이다. 이는 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가능성도 있다. 즉 고대 중국인들에게 왜의 주민들에 비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정치체들이 매우 복잡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보인 원인은 이들이 결국 고조선이라는 하나의 정치체로부터 분기하여 발전한 데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조선으로 유입된 연·제·조의 망명객들

19 박대재, 2015, 앞의 글.

과 위만 집단이다. 『삼국지』 동이전²⁰에는 이들 망명객들이 매우 많았고 이들이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만의 경우 고조선이 연에 게 2천여 리의 강역을 상실하기 전 고조선지역에서 활동했었던 토착민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그 진위를 차치하고라도 고조선 본토 사람들에게는 외부에서 유입된 집단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라는 범위에서 동일한 언어와 풍속을 가진 ‘고조선’이라는 종족적 정체성은 언제부터 형성되었는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이라는 명칭은 『관자』에 ‘발조선’이라는 표현으로 처음 등장한다. 이 기록은 고조선이 춘추시대 제와 대외관계를 맺은 하나의 정치체임을 알려 줄 뿐이다. 아마도 ‘문피’ 등과 같은 물품의 대외 교역을 통해 고조선이 이웃한 정치체에 인지되었고 협상과 경쟁 등이 많아지고 깊어지면서 ‘포괄적인 종족적’ 정체성을 갖는 집단으로서 고조선이 타자에 의해 뚜렷하게 각인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관자』가 전하는 시기의 고조선이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 전체를 아울렀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록만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방언』과 『설문해자』의 기록과 같이 ‘연대북비조선열수지간’을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로 볼 수 있다면, 이 지역에서 발전한 고고학적 문화가 고조선의 개략적인 범위를 나타내 줄 수 있다.

필자는 이것이 “고조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서 발전한 청동기문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위한 기초 프레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고조선을 구성하였을 다양한 주민집단들도 스스로

20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列傳 韓傳 所引「魏略」,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列傳 滅,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 數萬口”
『三國志』卷30, 烏丸鮮卑東夷列傳 韓傳 所引「魏略」, “燕人衛滿亡命 爲胡服東度湞水 詣準降”

를 고조선으로 단일하게 인식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사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범위는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 서북부가 고대 중국인에게는 ‘조선’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비취졌고, 읍루와 한(마한, 변·진한)이 각각 다른 종족 집단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에는 기원전 10세기를 전후하여 비파형동검문화가 공통으로 발전했다. 지역적으로는 다뉴경이나 선형동부가 공통으로 추가되기도 한다. 세형동검문화로의 전이과정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된 비파형동검문화가 고조선의 역사적 토대가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비파형동검문화는 중국 요서-요동-길림장춘-한반도에 걸쳐 광역적 문화권을 보인다. 이 문화는 유물 조합관계와 유구의 속성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기와 지역을 더하면 더 많은 유형의 비파형동검문화가 발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의 고고학 전공자들은 조양 십이대영자문화나 심양 정가와자유형 등을 고조선과 연관시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유형의 비파형동검문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최근 한반도 무문토기문화권의 범위를 중국 동북지역까지 확대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²¹을 주목하고자 한다. 즉,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무문토기들이 중국 동북지역부터 시작되었고, 이것은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한반도에 나타나 발전했다고 보는 주장이다.

이 견해는 고조선의 물질자료를 설명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파형동검문화와 세형동검문화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연속성과 지속성이 토기에서도 나타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실 무문토기는 넓은 의미에서 동검문화를 구성하는 속성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 속성의 유물이 짝하여 출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은 동북지역과 한반도

21 이청규, 2017, 「고고학에서 본 민족·종족의 형성과 고조선」,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한국고고학회, 11~53쪽.

가 공통의 문화권으로 묶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로써, 특정 고고학적 문화의 연속성이 특정 종족의 존속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동검과 무문토기를 공유하는 종족집단이 중국 동부지역과 한반도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언어·문화·지역을 공통으로 하는 하나의 집단이 타자에 의해 고조선으로 비쳐졌다면 이들 지역에서 비파형동검문화와 무문토기문화를 발전시킨 주인공 역시 고조선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단위지역 간 혹은 시기 별로 보이는 고고학적 문화유형은 고조선을 구성하였을 서로 다른 정치집단의 범주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의 〈도표〉에서와 같이 삼한 가운데 마한과 진·변한이 언어, 풍속, 지역 면에서 공통적이지 않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수많은 집단들이 문헌에 기록되지 않고 사라졌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고조선을 하나의 종족집단으로 구분해 낸 다 하더라도 고조선이 가리키는 지역 전체를 하나의 영역국가 혹은 강력한 중심체가 있는 정치체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종족(또는 민족)을 구분짓는 여러 요소 가운데 문헌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언어, 문화, 지역적 요소를 추출하고 후대 정치체들과 고조선의 관계를 통해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을 역추적해 보았다. 문헌에 등장하는 종족 가운데 어느 한 종족을 고조선의 주민으로 특정(特定)해 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조선과 연관되어 언급되는 정치체들에 대한 서술을 통해 그 범위를 개략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략적인 범위는 고조선의 물질문화와 중국 동북~한반도 전역에서 발전한 청동기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기초가 된다.

『후한서』와 『삼국지』 동이전은 부여-고구려-동옥저-예가 같은 언어와 풍

속을 가졌으며 모두 고조선 지역에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방언』과 『설문해자』에 기록된 고조선 언어구역으로서 ‘연의 동북-조선-열수’ 지역과 ‘조선’이라는 표현을 고려하면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은 부여-고구려-동옥저-예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진한-변한이 같은 언어와 풍속을 가졌지만 마한과는 다르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문에 제시한 사료에 ‘삼한에서 왕의 선대는 모두 마한 사람’이라거나 변진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외지에서 옮겨온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족적으로 구분되는 특정한 요소가 있었던 듯하다. 또한 읍루의 경우도 부여에 신속되어 있었다고만 되어 있고 언어와 풍속은 부여와 다르다고 되어 있다. 주호도 다른 언어와 풍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족적인 구분을 짓는다면 1) 고조선-부여-고구려-옥저-예 2) 마한, 3) 진한-변한, 4) 읍루, 5) 주호 등으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위만과 전쟁에 패한 준왕이 무리 천여 명을 데리고 한지(韓地)로 가서 한왕(韓王)이 되었다는 동이전 한조(韓條)의 기록이다. 이것이 한의 종족적 정체성의 변화에 어떻게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의 대략적인 범위를 규정지을 수 있다면 고조선의 지배층과 주민이 남긴 물질문화에 대한 이해도 그 범위 안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부여-고구려-옥저-예 지역에서 발전된 청동기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조선의 고고학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기원 전후 또는 기원후 3세기경의 집단들을 서술해 놓은 사료를 통해서 그보다 수백 년 전 고조선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연역적 추정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인용한 여러 사료가 작성된 당시까지도 저자들은 부여나 고구려 등 후발 정치체들을 고조선과 연결시키거나 비교, 서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오히려 고조선으로부터의 종족적 연속성이 후대의 저자에게 인지되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은 사서의 저술 당시까지도 일반적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자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정치체의 정체성을 살피는 작업은 쉽지 않다. 타

자에 의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타자에게 비쳐진 모습이기 때문에 반쪽짜리 모습일 수밖에 없다. 문헌기록이 아예 없는 경우는 고고학 연구방법론을 통해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도 한계가 있는 바, 어느 유물이 어느 계층의 정체성을 나타내는가라는 문제도 있거니와 고고학 유물과 유적을 통해 한 집단의 정체성을 알아내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에도 답해야 한다. 향후 심화 연구가 더 필요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 孔在錫, 1975, 「漢代 方言 중 朝鮮方音에 관하여」, 『東洋學』 5.
- 김종일, 2004, 「한국 중기 무문토기문화의 사회구조와 상징체계」, 『국사관논총』 104.
- 김종일, 2006, 「공동체 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 『고고학』 5.
- 김종일, 2008, 「고고학적 범주화의 철학적 탐구」, 『고고학』 7.
- 데이빗 코헨, 2018, 「초기청동기시대 약석문화와 동이」, 『중국 산둥지역의 동이』, 역사공간.
- 박대재, 2006, 「고조선과 燕·齊의 상호관계－기원전 4세기말－3세기 초 전쟁기사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3, 한국사학회.
- 박대재, 2015, 「고조선의 언어구역과 연의 동북지역」, 『선사와고대』 43.
- 박선미, 2018, 「고조선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과제」, 『고조선사 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소화.
- 시안 존스 지음, 이준정·한건수 옮김, 2008, 『민족주의와 고고학: 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만들기』, 사회평론.
- 이청규, 2015, 『다뉴경과 고조선』, 단국대학교출판부.
- 이청규, 2017, 「고고학에서 본 민족·종족의 형성과 고조선」, 『고고학으로 본 고조선』 (제41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리지린, 1963, 「예족(濊族)과 맥족(貊族)에 대한 고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 철학사전편찬위원회, 2009, 『철학사전』, 중원문화.
- 하문식, 1999, 『고조선 지역의 고인돌 연구』, 백산자료원.
- Anthony D. Smith, 1986, *The Ethnic Origin of Nations*, Blackwell Publisher, USA.
- Colin Renfrew, 1993, *The Roots of Ethnicity, Archaeology, Genetics and the Origins of Europe*, Volume 10 of Conference, the University of Virginia.
- Eriksen, Thomas Hylland, 1993, *Ethnicity and Nationalism*, London: Pluto

Press.

Fredrik Barth(ed), 1969, *Ethnic Groups and Boundaries*, Boston: Little Brown,

Flannery Kent, 1972, Culture History vs. Culture Process, *Contemporary Archaeology: A guide to Theory and Contributions*, ed. by M. Leone, SIU Press, Carbondale.

Jones Sian,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Constructing Identities in the Past and Present*, London: Routledge.

Peter S. Wells, 2001, *Beyond Celts, Germans and Scythians*, Gerald Duckworth & Co. Ltd, London.

고조선의 정체성(正體性) 탐색을 위한 초론(初論)

—중국이라는 타자의 눈에 비친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

박선미

본고는 고조선사 이해의 기초가 되는 고조선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었다. 고조선 자체의 기록이 없고 남아 있는 기록마저 영성(零星)하다. 이 때문에 문헌에 등장하는 종족 가운데 어느 한 종족을 고조선의 주민으로 특정(特定)해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편적인 기록이라도 상호 비교, 검토해 보면 그 범위를 개략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개략적인 범위는 고조선의 물질문화와 중국 동북~한반도 전역에서 발전한 청동기문화를 이해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본문에서는 종족의 의미를 살펴보고, 종족을 구분하는 요소 가운데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언어, 문화, 지역적 요소를 추출했다.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언어, 문화, 지역적 범위에 대해서는 후대의 기록 가운데 고조선과 연관되어 서술된 부분을 찾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후한서』와 『삼국지』동이전은 부여-고구려-(동)옥저-예가 같은 언어와 풍속을 가졌으며 모두 고조선 지역에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방언』은 연의 동북-조선-열수 지역이 고조선을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설문해자』는 이 지역을 ‘조선’이라고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언어와 풍속 및 지역을 공통으로 하는 부여-고구려-동옥저-에는 고조선의 종족적 정체성을 대략적으로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조선의 지배층과 주민이 남긴 물질문화도 이 범위 안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여-고구려-옥저-에 지역에서 발전된 청동기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조선의 고고학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삼한과 관련해서는 문헌에 고조선이나 부여 및 고구려 등과 동족(同族)이라거나 언어가 같다거나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또한 진한-변한이 같은 언어와 풍속을 가졌지만 마한과는 다르다고 되어 있다. 위만과 전쟁에 패한 준왕이 무리 천 여명을 데리고 한지(韓地)로 가서 한왕(韓王)이 되었다는 동이전 한조(韓條)의 기록이 고조선과 한을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들의 이주가 한의 종족적 정체성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심화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고조선, 정체성, 민족, 종족, 후한서, 삼국지, 방언, 설문해자

ABSTRACT

A Study on the Restoration of the Ethnic Identity of Old Choson in Chinese Historical Records

Park Sunmi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s of Chinese documents and approaches the problem of ethnic identity of Old Chosun in the eyes of other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meaning of the ethnic and ethnicity, and extracted the language, culture, and local elements that can be objectively observed through historical records among the factors that distinguish ethnic groups.

Huhanshu 後漢書 and *Sangouzhi* 三國志 said that Puyeo, Koguryo, Okje and Ye spoke in the same language and they had the same culture in the same region where Old Choson was. Comparing these documents with *Fangyan* 方言 and *Shuowenjiezi* 說文解字, I suggested that these polities could cover the ethnic groups of Old Choson and its boundary.

Keyword: Old Choson, Ethnic identity, *Fangyan* 方言, *Shuowenjiezi* 說文解字

고고문화와 민족

—중국학계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정열 | 송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중국학계의 '고고문화'와 '민족'
- III. 학술적 지향의 배경
- IV. 문제의 소재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중국 고고학은 고대 문헌에 기록된 상고사의 진위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고파(疑古派)의 주장이 거대한 파장을 몰고 온 때에 서구로부터 수용되었다. 따라서 그것은 성립 초기부터 문헌에 기록된 중국 고대사를 평가하고 나아가서는 재건, 복원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중국 고고학계는 지금까지 물질유존을 이용하여 문헌기록에 등장하는 민족, 국가 또는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해명하거나 보완·수정하는 것을 주요한 학술적 목표로 삼고 있다.¹ 서구학계는 일찍부터 이와 같은 중국 고고학의 이데올로기 ‘증사주의적(證史主義的)’인 경향에 대해 그 한계를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²

물질유존에 기반을 두고 설정된 특정 고고문화(archaeological culture)와 문헌기록상의 어떤 민족을 연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를 수반한다.³ 이를테면 특정 민족을 특정 시점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분별할지, 그에 대응하는 고

* 투고: 2018년 8월 13일, 심사 완료: 2018년 11월 9일, 게재 확정: 2018년 11월 16일

- 1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2002, 「考古學與中國歷史的重構－爲紀念北京大學考古專業成立五十周年而作」, 『文物』2002年 第7期; 朱鳳瀚, 2003, 「論中國考古學與歷史學的關係」, 『歷史研究』2003年 第1期; 陳淳, 2006, 「疑古, 考古與古史重建」, 『文史哲』2006年 第6期.
- 2 洛沙·馮·福爾肯霍森(Lothar Von Falkenhausen), 陳淳 譯, 1995, 「論中國考古學的編史傾向」, 『文物季刊』1995年 第2期. 이밖에 張海, 2011, 「中國考古學的歷史主義特徵與傳統」, 『華夏考古』2011年 第4期; 박성우, 2013,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고고학－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사림』제44호 참조.
- 3 시안 존스, 이준정·한진수 譯, 2008, 『민족주의와 고고학－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만들기』, 사회평론;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제52집; 이성주, 2015, 「물질문화, 집단의 영역 그리고 종족 정체성」, 『역사 여명기의 종족 정체성과 문헌 및 고고학 자료』, 제42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 요지; 김종일, 2017,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제96호.

고문화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양자의 일치성은 어떻게 입증될지 등의 문제는, 거기에 내포된 고유한 방법론적 한계⁴를 제외하고라도, 물질문화와 문헌자료와의 정합적 관계를 요구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커다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발굴된 물질문화는 단편적이고 문헌기록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부족하거나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정도는 현재와의 시간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욱 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고고문화와 그에 대응하는 민족 탐구는 중국 고고학계에서 가장 주요한 학술적 목표 가운데 하나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것은 중국 고고학의 뿌리 깊은 전통이며 거기에 나름의 성과가 전무하다고 혹평할 이유는 없다. 우리에게만은 다만 중국 고고학계에서 고고문화와 민족을 연계하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이 왜 이런 작업에 매몰되어 있으며, 또 그것에 내포된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조망하여,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연구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런 목적에서 준비된 것이다. 이론적 모색보다 구체적인 물질유존 연구에 초점을 두는 중국 고고학계의 연구풍토 속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사례는 많지 않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논고는 그 필자들이 차지하는

- 4 주 3)에 인용한 논고 외에 王明珂, 2006, 『華夏邊緣－歷史記憶與族群認同』,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馬賽, 2008, 「考古學文化與族群關係的思考－“先周文化”研究反思」, 『文博』2008年 第5期 참조.
- 5 蘇秉琦, 1983, 「燕山南北地區考古－在遼寧朝陽召開燕山南北, 長城地帶考古座談會上的講話－」, 『文物』1983年 12期; 劉觀民, 1990, 「考古學文化與族稱研究的問題」, 『昭烏達蒙族師專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1990年 第3期; 趙輝, 1993, 「關於考古學文化和對考古學文化的研究」, 『考古』1993年 第7期; 林滢, 1999, 「考古學文化研究的回顧與展望」, 『林滢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張忠培, 2004, 「民族學與考古學的關係」, 『中國考古學, 走進歷史真實之道』, 科學出版社; 郭妍利, 2004, 「考古學文化與考古學的族文化」, 『東南文化』2004年 第1期; 李伯謙, 2008, 「考古學文化的族屬問題」, 『考古學研究』第7輯. 이밖에 이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 사례 연구로 鄭君雷, 2007, 「文化人類學的族群認同與考古學文化的族屬研究－漢末魏晉河套陰山地方北方民族遺存族屬研究的個案思考」, 『思想戰線』2007年 第4期, 馬賽, 2008, 앞의 논문 등 참조.

학술적 위치를 감안할 때 중국학계의 논의를 대표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그 영향력 역시 작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이들 논고를 중심으로 지금 중국학계에서 논의되는 고고문화와 민족, 특히 그 양자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를 정리하고, 이어 그와 같은 논리를 형성한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이론과 실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II. 중국학계의 ‘고고문화’와 ‘민족’

1. 고고문화 개념의 수용과 전개

고고학에서 사용되는 ‘문화’라는 단어에는 유적, 유물 등의 물질유존에서 표현되는, 역사 속 인류가 창조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의 총화라는 의미가 있다. 물론 이들 물질자료에 근거하여 각 시대와 각 지역의 인류가 창조하고 영위한 문화상을 복원하는 것이 고고학 연구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여기에 ‘양소(仰韶)’문화 또는 ‘채도(彩陶)’문화와 같이 특정한 지명이나 유물명이 부가되면,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회가 남겨놓은 일군의 물질유존을 가리키는 총칭이 된다. 그렇지만 물화(物化)된 문화는 완전한 형태로 지금에 전해지지 않으며,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지 그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일정하게 분류된 물질유존의 집합적 명칭에 불과하다. 아래에서 사용되는 ‘고고문화’라는 단어는 그것을 가리킨다.

1920년대 차일드가 정의한 고고문화 개념이 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된 이래,⁶ 고고문화는 구체적인 맥락하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그 표현 방식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일치하는 점이 있

6 김종일, 2017, 앞의 논문, 260~261쪽.

는데, 그것은 고고문화는 특정한 물질유존에 대한 조건적 구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은 특정한 시·공간 내에서 확인되는 공동의 특징을 가지는 유존에 대한 총칭이다. 중국학계에서 사용되는 고고문화의 정의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출판된 『중국고고학대사전』은 ‘고고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린다.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 특징적인 실물 유존으로서, 물질유존 가운데 동일한 시기에 속하고 (공동의) 지역적 특징을 갖춘 문화공동체를 표시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실물유존’은 일반적으로 고유한 특징을 선명하게 가진 토기군(土器群)을 가리키며, 여기에 특징적인 석기(石器) 등의 생산도구, 각종 재질의 장식품, 건축양식, 묘장(墓葬) 구조와 매장습속 등이 포함된다.”⁷⁾ 이처럼 ‘일정한 시·공간’과 ‘특징적이며 고유한 유존’이 포함된 정의는 중국에서도 여전히 수용되고 있다.⁸⁾

고고문화 연구는 영미(英美)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 고고학에서도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 유럽 고고학의 주요한 연구 목적은 문화의 분류, 문화의 기원, 문화와 문화 간의 관계, 문화와 문화 간의 교류와 영향, 문화와 문화 간의 연대관계 등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거기에서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즉 선행하는 문화에서 직접 발전한 것인가 아니면 문화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것인가 등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연구는 주로 물질자료의 파악과 분석, 유물에 바탕을 둔 문화의 분류, 그리고 절대연대와 상대연대 체계의 수립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⁹⁾ 문화사고고학이라 불리는 이와 같은 연구 경향과 방법은 일정한 시기 동안 미국 고고학에서도 맹위를 떨쳤다. 이른바 ‘분

7 王巍 總主編, 2014, 『中國考古學大辭典』, 上海辭書出版社, 7쪽.

8 이를테면 張忠培는 “일정한 지역에 분포하고 일정한 시간에 존재하며 공동의 특징을 가진 인류 활동의 유존”이라 정의하였으며, 林滄은 “고고학 유존 중에서 관찰할 수 있는 동일한 문화적 특징을 갖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張忠培, 1994, 「研究考古學文化需要探索的幾個問題」, 『中國考古學: 實踐·理論·方法』, 中州古籍出版社, 97쪽; 林滄, 1998, 앞의 논문, 224쪽.

9 張光直, 1985, 「當前美國和英國考古概況」, 『考古與文物』1985年 第3期.

류-역사복원시기'에는 유물에 대한 유형학적 분석을 통해 편년을 정치화(精緻化)하고 이를 통하여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편년을 시도하는 한편 특정한 유존의 공간적 분포를 확정하여 고고문화를 설정함으로써 문화의 시간적 서열과 그 지역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목표로 설정되었다.¹⁰

고고문화 개념은 현대 고고학의 전래와 동시에 중국에 소개되었으나 1950년대 이전까지는 발굴조사의 성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연구가 실제 진행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발굴조사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그에 관한 연구도 발전해갔다. 그리하여 1950~1960년대에 들면 층위학과 유형학을 방법론적 기반으로 한 고고문화 연구가 중국 고고학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고고문화 연구는 불충분한 자료가 점차 축적되어 가는 과정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획득한 새로운 자료를 종합하고 정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작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다양한 고고문화의 문화적 특징, 연대와 시기구분, 분포 공간과 분구(分區), 사회 발전 단계와 그 성격, 고고문화 간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연구는 충분한 성과를 거둔만한 준비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¹¹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중점을 기초적인 작업, 즉 개별 고고문화의 구체화에 두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해갔다.¹²

중국학계에 서구의 고고문화 개념이 구체적인 형태로 소개된 때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 비교적 이른 시점이지만,¹³ 그것에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

10 林滢, 1998, 앞의 논문, 225쪽.

11 다만 이 시기에는 蘇秉琦, 1965, 「關於仰韶文化的若干問題」, 『考古學報』 1965年 第1期와 같은 고고문화를 주제로 한 본격적인 연구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蘇秉琦는 이 글에서 仰韶文化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의 특징과 유형, 연대분기, 문화의 分布와 分區, 사회발전과 그 성격, 기타 원시문화와의 관계 등”(51쪽)이 주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와 같은 내용이 그 후 고고문화 연구의 전형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

12 林滢, 1998, 앞의 논문, 226쪽.

13 이를테면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고학 분야 학술잡지인 『考古』의 전신인 『考

작한 것은 대개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¹⁴ 고고문화의 개념이 정비되면서 고고학적 제 문제에 대한 탐색과 이해도 촉진되었으며, 일부 지역의 문화계보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의 문화발전상은 고고문화의 틀을 기반으로 하여 이해되었다.¹⁵ 그렇지만 고고문화의 개념이 중국 고고학계에 수용되고 정착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였고, 그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와 발전을 겪었으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강조점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최초의 단계에는 고고문화의 설정에 특정한 유물이 이용되었다. 이를테면 세석기(細石器)를 주요 도구로 사용한 유존을 세석기문화(細石器文化)라 하거나, 기하형인문(幾何形印紋)이 장식된 토기를 다량으로 사용한 유존을 기하형인문도문화(幾何形印紋陶文化)로 구분한 것이 그것에 해당한다.¹⁶ 이처럼 특정 유물에 바탕을 둔 고고문화 설정은 수월성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설정된 고고문화의 시간 폭이 지나치게 길고 분포범위도 너무 넓게 되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이에 대해 엄문명(嚴文明)은 “문화 내부의 연계관계가 느슨하거나 혹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지리적 환경이 유사하고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하여 실물 유존에 약간의 공통적 특징이 보이는 것에 불과할 뿐”

古通訊』에는 蘇聯大百科全書 제2판에 실린 ‘고고문화’ 항목이 1956년에 번역, 소개되었다. 華平 역, 1956, 『考古學文化－蘇聯大百科全書選譯』, 『考古通訊』 1956年 第3期, 89~90쪽.

- 14 尹達, 1963, 「新石器時代考古工作的回顧與展望」, 『考古』 1963年 第11期. 이 논문에서 尹達은 중국의 고고학계가 고도의 이론적 성격을 가진 종합적 학술사업에 종사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였다. 그가 말하는 종합적 학술사업은 바로 고고문화 연구이다. 그는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장시간에 걸쳐 각종 문화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과학적 연구의 주요한 한 단계로서 우리나라(중국)의 씨족사회가 그 역사의 진실한 면모를 과학적으로 복원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장차 (고고문화) 연구의 과학적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라고 고고문화의 의의를 설명하였다.(583~584쪽)

- 15 郭妍利, 2004, 앞의 논문, 11쪽.

- 16 林滢, 1998, 앞의 논문, 227쪽; 郭妍利, 2004, 위의 논문, 12쪽.

이라고 그 무가치함을 비판하였다.¹⁷

다음으로 출현한 것은 복수의 유존군이 전체적으로 보아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를 보고 그에 따라 동일한 고고문화에 귀속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었다. 양소문화(仰韶文化)¹⁸나 용산문화(龍山文化)¹⁹ 또는 청련강문화(靑蓮崗文化)²⁰의 설정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유사성’이란 모든 문화적 요인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개별 연구자의 시각에서 유사성이 상이점보다 더 많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에는 주관적 관점이 과도하게 작용될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고고문화의 내용이 점점 더 복잡해져서 결국에는 그 규정이 모호하게 될 우려가 있다.²¹ 그러므로 이런 방법은 지금도 여전히 일부 연구자에 의해 수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²²

현재 가장 널리 채용되는 방법은 하내(夏鼐)의 견해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먼저 “하나의 문화는 반드시 명확한 특성을 가진 일군의 유형품을 갖추어야 하며, 이 유형품들은 정상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출토되어야 한다.”는 차일드의 정의를 빌려, 고고문화를 획정할 때 반드시 ‘일군의’ 그리고 ‘구체적’인 문화적 특

17 嚴文明, 1985, 「新石器時代考古研究的兩個問題」, 『文物』1985年 第8期, 10~11쪽.

18 蘇秉琦, 1965, 앞의 논문, 51~82쪽.

19 嚴文明, 1981, 「龍山文化和龍山時代」, 『文物』1981年 第6期.

20 馬洪路, 1984, 「試論靑蓮崗文化」, 『考古學集刊』第4集.

21 안텔손이 仰韶文化를 최초로 명명할 때는 黃河 유역의 彩陶文化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었으나, 1950년 이래 발굴 자료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들은 이것을 다양한 지역적 유형으로 구분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양소문화의 지역 유형으로 주장되는 것은 약 30종에 달하여, 이들 번잡한 분류와 명칭이 ‘大仰韶體系’를 구축한다.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대양소체계 하의 양소문화에는 서로 다른 기원과 특징을 가지고 분포 범위도 서로 다른 유존이 잡다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대양소체계를 해체하여 그것을 半坡文化, 廟底溝文化, 西王村文化, 大河村文化 등 복수의 독립적 문화로 분해하는 데 동의한다. 王仁湘, 1999, 「考古學文化的命名原則與程序問題」, 『文物季刊』1999年 第3期, 20~21쪽.

22 林滢, 1998, 앞의 논문, 227~228쪽.

징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특정한 유형의 토기와 석부(石斧), 석도(石刀) 그리고 골기와 장식품이 어떤 특정한 유형의 무덤(또는 특정한 유형의 주거지)에서 정상적으로 ‘함께’ 출토”된다면 “이와 같은 일군의 유존을 총칭하여 ‘문화’라고 부른다.”고 하고, 이어 “왜냐하면 이 일군의 물건이 동일한 문화층이나 무덤에 공존하는 것은 그들이 동일한 시대에 남겨진 것을 표시하고, 그들이 정상적으로 공반 출토된다면 그것은 개별적, 고립적 사실이 아니라 이들이 동일한 사회의 생산품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²³

일군의 특정한 유존이 정상적으로 공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고고문화를 설정한다는 원칙은 하나의 논고가 발표된 1959년 이래 지금까지 중국 고고학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위에 소개한 『중국고고학대사전』의 정의도 결국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중국학계에서는 대다수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고문화를 설정할 때는 왕왕 엇갈린 의견이 제기된다. 그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미 발견된 유존들 속에서 그 구체적 특징을 개괄해낼 수 있다고 해도, 각각의 유존 또는 그 유존의 특정 요소가 해당 고고문화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의미와 비중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물질유존 (또는 그 특징)이 해당 고고문화에서 근본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차적인 것인지, 또는 어떤 특징이 다른 어떤 특징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여기에 연구자 개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²⁴

따라서 이처럼 특정 문화 요소보다는 그것의 맥락에 중점을 준 고고문화 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뒤이어 제기되었다. 이 견해는 고고문화 분류의 원래 목적은 이들 유존을 남겨놓은 인간공동체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며, 이 인간공동체 형성에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문화전통은 모두 역사성을 가지는 것으

23 夏鼐, 1959, 「關於考古學上文化的定名問題」, 『考古』1959年 第4期, 169쪽.

24 林滢, 1998, 앞의 논문, 228~229쪽.

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르면, 고고문화의 설정은 독자적 문화전통을 갖춘 ‘통시적 문화공동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소병기(蘇秉琦)가 고고문화의 설정은 고정불변의 문화적 특징에 의거해서 는 안 되며 발전 ‘서열’을 갖춘 ‘일련의’ 문화적 특징을 근거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²⁵ 왜냐하면 이래야만 문화전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에 근거하여 통시적 문화공동체를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이렇게 설정된 고고문화는 주변과의 상호 비교를 통해 그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의 주장은 고정된 문화적 특징에 의거하여 고고문화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서로 평행하는 점변(漸變)현상을 보이는, 즉 평행한 발전서열을 보이는 일군의 유존을 근거로 하여 고고문화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최종의 목표는 “각 고고문화의 기원과 발전, 주변 고고문화와의 관계, 그리고 각 고고문화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의 분해(分解)와 전변(轉變)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달성되는 것이다.

소병기의 주장에 찬동하는 임운(林滙)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존을 세밀한 시간 폭으로 구분하여 그 문화적 특징의 미묘한 변화에 대해 정밀한 분석을 가함으로써 그 발전서열을 더욱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당한 범위에서 장시간에 걸쳐 존재한 유존군을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하되, 복수의 고고문화를 종과 횡으로 반복 비교함으로써 특정한 고고문화의 지역·시간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등 두 가지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고고문화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겠지만, 그 과학성은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²⁶

중국에 근대고고학이 도입된 지 이제 약 100년이 되었지만, 중국은 그 공간이 넓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초기문명 발상지이면서도 단절 없는 번영을 누렸

25 蘇秉琦, 1983, 「燕山南北地區考古－在遼寧朝陽召開燕山南北, 長城地帶考古座談會上的講話－」, 『文物』1983年 12期, 51~52쪽.

26 林滙, 1998, 앞의 논문, 230쪽.

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고고문화는 무수히 많고, 그 성격이나 발전의 맥락이 복잡하고 다양할 것임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고고학적 조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적지 않은 공백지역과 공백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고고문화의 확인과 그 시공간적 계열의 구축은 고고문화 연구가 심화되고 정밀화되어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²⁷ 나아가 중국 고고학계는, 물질유존 자체는 결국 인류가 남겨놓은 문화유산의 형성하고 편면적인 파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을 일정한 고고문화에 귀속시키고, 다시 그들을 일정한 시공간적 틀에 귀속시켜야만 비로소 중국의 역사 연구에 기여하는 고고학의 학문적 목적에 더욱 충실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²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고고문화의 개념과 그것의 구체적 실천에 관련된 중국학계의 논의는 대개 다음과 같은 인식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고문화는 결국 일종의 물질유존 분류이며, 그것은 대개 네 가지 정도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단편적인 유물에 대한 분류가 아니라 유존‘군(群)’에 대한 분류이다. 둘째, 이 분류에는 동일한 시간 좌표에 위치하는 유존군에 대한 평면적 분류뿐만 아니라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하는 통시적인 분류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공반되는 유존군의 특징은 복수의 유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넷째, 그것은 단순한 논리상의 분류가 아니라 고고문화에 관련된 인간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²⁹

27 王巍 등, 2009, 『中國考古研究60年 1949~2009』, 國家文物局 주편, 『中國考古60年 1949~2009』, 文物出版社.

28 이것은 결국 중국 고고학이 서구에서 20세기 전반에 유행한 문화사고고학의 연구 패러다임에서 아직까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고고학계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종일, 2008, 앞의 논문, 96~105쪽 참조.

29 張忠培, 1994, 『研究考古學文化需要探索的幾個問題』, 『中國考古學: 實踐·理論·方法』,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97~110쪽; 林滢, 1998, 앞의 논문, 230쪽; 安志敏, 『關於考古學文化及其命名問題』, 『考古』1999年 第1期, 81~89쪽.

2. 고고문화와 민족공동체

위의 네 번째 조건은 고고문화를 인간공동체의 산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된다.³⁰ 이것은 물론 중국학계 고유의 생각은 아니다. 일찍이 차일드는 일정한 단위의 물질문화, 즉 고고문화는 특정한 민족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한 바 있고,³¹ 1950년대 중반에 중국에 소개된 소련의 ‘고고문화’ 정의에서도 고고문화는 물질유존에서 관찰되는 공동체로 간주되었다.³² 이처럼 중국에서 고고문화가 ‘민족’과 등치된 것은 서구 고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고고문화와 민족의 관계에 대한 중국학계의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중국에서 널리 통용되는 ‘민족’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중국에서 통용되는 ‘민족’ 개념은 스탈린이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에서 정의한 것이다. 스탈린에 의하면 민족은 인류가 역사적으로 형성한 공통의 언어, 공통의 지역, 공통의 경제생활 및 공통의 문화에서 표현되는 공통의 심리적 소양을 갖춘 안정적인 공동체이다. 이와 같은 스탈린의 정의는 물론 자본주의사회가 탄생한 이후의 민족, 즉 이른바 ‘현대민족’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학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민족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할 수 없으므로 자본주의사회 이전부터 점진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민족’에 ‘모든 선사·역사시기의 인간공동체’라는 폭넓은 정의를 부여하였다. 이때의 민족은 영어의 people(peoples), 독일어의 volk(völker), 프랑스어의 peuple(peuples)에 해당한다. 다만 서로 다른 사회 발전 단계의 민족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시사회의 민족을 ‘원시민족’, 노예제와 봉건제사회의 민족을 ‘고대민족’,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사회의 민족을 ‘현대민족’이라 구분하기도 한다.³³

30 夏鼐, 1959, 앞의 논문, 169쪽.

31 김중일, 2017, 앞의 논문, 261쪽.

32 華平 역, 1956, 앞의 논문, 89~90쪽.

33 林耀華 主編, 2003, 『民族學通論』, 中央民族學院出版社, 98~107쪽.

중국 고고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민족 개념을 수용하여 모든 선사·역사시기의 민족을 ‘민족’이라 통칭한다. 또는 동이족(東夷族)이나 만주족(滿州族)처럼 고유명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것을 간략히 ‘족(族)’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중국학계의 민족 개념은 위의 정의를 따르는 것이다.

다시 위의 논의로 돌아가면,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바로 이렇게 정의된 ‘민족’이 고고문화의 주체로 상정된다. 민족이란 어휘는 1899년 양계초(梁啓超)가 처음 사용하기 이전 중국 문헌기록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진시기(先秦時期)의 것을 포함하여, 사마천(司馬遷)이 저술한 『사기(史記)』 이래의 문헌기록에도 기본적으로 언어, 생활방식, 의례, 풍속 내지 경제유형 등에 의해 체현되는 문화의 차이 등으로 구별되는 인간공동체의 존재가 곳곳에서 확인된다.³⁴ 이처럼 문헌기록에 포함된 내용들은 위에 말한 민족 정의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결국 문헌기록의 인간공동체가 곧 민족이며, 이 민족이 고고문화의 주체로 상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고문화와 민족을 연계하는 것은 사실상 고고문화를 문헌기록에 남겨진 인간공동체와 연계하는 것이다. 중국은 늦어도 기원전 14세기경부터 문자 기록을 남겨놓았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까지 전해진다. 『시경(詩經)』과 『상서(尚書)』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성격의 선진시기 전래문헌은 물론, 『사기』와 『한서(漢書)』 등의 역사서, 그리고 『수경주(水經注)』를 비롯한 각종의 지리지와 잡사(雜史), 지방지류의 전적, 심지어는 갑골문(甲骨文), 금문(金文), 간독(簡牘) 등 근래에 출토된 각종 문자기록도 풍부하다.³⁵ 이런 배경에서 고고문화와 민족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중국 고고학 특유의 역사학적 지향과 함께 지금도 실행 가능하며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³⁶

34 張忠培, 2004, 앞의 논문, 136쪽.

35 朱鳳瀚, 2003, 「論中國考古學與歷史學的關係」, 『歷史研究』 2003年 第1期, 15~20쪽.

36 鄒衡의 다음과 같은 발언은 중국 고고학계에 널리 퍼진 인식을 대변한다. “고고문화는 우리들이 야외작업에서 사용하는 술어이다. 그것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는 명

말하자면, 문헌기록의 민족과 그에 대응하는 것으로 상정된 고고문화의 자료를 결합하여 진행된 연구는 문헌기록의 오류를 정정하는 한편 고고학 유존의 성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되고, 그것은 해당 민족의 역사를 좀 더 완정하게 복원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간주된다. 거기에서 만약 특정한 민족에 대응시킬 수 있는 고고문화를 기준으로 하여 그에 관련된 물질유존을 추적함으로써 해당 고고문화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여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문헌기록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연구대상이 되는 민족의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배양되었다.³⁷

그러므로 중국학계의 고고문화 연구는 시작과 동시에 민족사 연구와 연계되었다. 위취현(衛聚賢)은 일찍이 1936년에 물질유존과 민족을 연계하여 오월문화(吳越文化)의 개념을, 뒤이어 1942년에는 파촉문화(巴蜀文化)의 개념을 제기하였다.³⁸ 고고학상으로 양소문화와 용산문화가 설정되자 즉시 양소문화를 하(夏)의 문화, 용산문화를 이(夷)의 문화로 보는 가설이 제기되었으며,³⁹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는 양자강 중류에서 굴가령문화(屈家嶺文化)가 확인되자 이것을 즉각 중국 상고사의 동(東), 서(西), 남(南) 삼대 민족 집단과 연계하는 주장도 출현했다.⁴⁰ 특히 역사시대의 경우에는 고고문화를 문헌기록에

칭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고대의 族稱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鄒衡, 1980, 「關於探索夏文化的方法問題—答方西生同志的質疑」, 『河南文博通訊』 1980年 第2期, 10쪽.

37 張忠培, 2004, 앞의 논문, 127쪽.

38 衛聚賢, 1936, 「古蕩出土之新石器與吳越文化」, 『浙江古蕩新石器時代遺址之試探報告』, 16~18쪽; 同 1942, 「巴蜀文化」, 『說文月刊』 第3卷 第7期, 37~50쪽; 安志敏, 1999, 앞의 논문, 87쪽에서 재인용.

39 傅斯年, 1933, 「夷夏東西說」, 『慶祝蔡元培先生六十五歲論文集』, 國立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外編第一種.

40 徐旭生, 1985,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文物出版社, 新一版; 韓建業, 1996, 「中國上古時期三大集團交互關係探討—兼論中國文明的形成」,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6年 第1期, 78~82쪽.

등장하는 특정 민족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방법이 널리 애용된다.⁴¹ 지금도 어떤 고고문화가 어느 민족의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중국 고고학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고고학에서 말하는 고고문화는 물질유존을 바탕으로 두고 진행된 인위적 분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족학적 정의에서의 민족과 직접 대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⁴²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고학계에는 이처럼 양자를 서로 연계하려는 지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고고문화와 민족의 직접적인 대응관계를 인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북경고궁박물관(北京故宮博物院)의 원장을 지냈으며 길림대학(吉林大學)의 고고학과를 창건한 장충배(張忠培)는 이렇게 주장한다. 즉 고고문화로 분류되는 유존의 현상은 인간공동체에 존재하는 공통의 심리적 요소를 반영한다. 고고문화는 특정한 유존을 매개로 진행되는 분류인데, 이 특정한 유존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일정한 사회관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고, 따라서 만약 고고문화의 분류에 잘못이 없다면 이 인간공동체는 의심할 나위 없이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다. 그는 나아가 특정 고고문화를 구성하는 유존(군)은 특정한 시·공간의 범위 내에서 상호 연계를 맺는 인간공동체가 생산활동과 일상생활 가운데서 남겨놓은 것이다. 이처럼 공동의 생산·생활방식, 공동의 언어를 갖추고 일정한 교류 관계 속에서 연결되는 인간공동체가 바로 고고문화의 주체라면, 그것은 곧 지금 민족으로 정의되는 그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단언한다.⁴³

이렇게 고고문화와 민족 사이에 일정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개의 연구자가 동의하고 있으므로, 다음으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은 그렇다면 그 양자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이다.⁴⁴ 이때 고고문화와 민족

41 郭妍利, 2004, 앞의 논문, 13쪽.

42 시안 존스, 이준정·한건수 역, 2008, 앞의 책, 157~163쪽; 김종일, 2017, 앞의 논문, 259~267쪽.

43 張忠培, 2004, 위의 논문, 136~137쪽.

44 그러나 兩者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蘇秉琦

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즉 특정 고고문화를 특정 민족과 연결할 때에는 반드시 고고문화의 연대, 분포 범위와 문화적 특징을 분명하게 한 다음 비정하고자 하는 문헌기록상 민족의 활동시간, 지역과 문화특징을 분명히 대비하여야 한다.⁴⁵ 그것은 적어도 연대, 지역, 사회 발전 단계, 문화 특징과 문화의 상호관계 등에서의 정합성을 필요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고문화가 존재한 연대와 문헌에 기록된 특정 민족의 활동시기가 일치하고, 이 고고문화가 분포된 지역이 문헌에 기록된 특정 민족의 활동지역과 일치하며, 고고문화의 발전 단계와 문헌에 기록된 특정 민족의 발전 정도가 동일한 수준에 위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고문화에서 관찰되는 문화적 특징과 문헌에 기록된 생산·생활방식, 관습, 종교, 관념 등이 서로 부합되어야 하며, 고고문화와 주변 고고문화의 상호 관계가 특정 민족과 그 주변 민족의 관계에 대한 문헌기록의 내용과 합치되어야 한다.⁴⁶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이들 여러 측면에 걸친 정합성이 고고문화와 민족을 연계하는 기본적 전제가 된다.⁴⁷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상적 형태의 동정이 가능할 만큼의 자료

는 “비록 고고문화와 族의 공동체가 같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양자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나의 族 공동체의 지역과 하나의 고고문화 분포지역에는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俞偉超는 “하나의 고고문화가 포함하는 지역은 왕왕 하나만이 아니다. 그리고 왕왕 하나의 족속이 하나 이상의 문화(적어도 유형)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蘇秉琦, 1982, 「地層學與器物形態學」, 『文物』1982年 第4期; 俞偉超, 1982, 「關於當前楚文化的考古學研究問題」, 『嶺南考古輯刊』第1集 참조.

45 張忠培, 2004, 앞의 논문, 143쪽.

46 李伯謙, 2008, 「考古學文化的族屬問題」, 『考古學研究』第7輯, 455쪽.

47 특히 安志敏은 고고문화와 민족을 연계하는 것은 晩期の 유존에, 그것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여 더욱 보수적인 입장을 제시하였다. 安志敏, 1999, 앞의 논문, 87쪽.

를 갖추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중국학계에서는 실제로는 이와는 다른 과정으로 고고문화와 민족을 동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것은 먼저 연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 민족의 핵심적 활동 범위를 문헌기록을 통해 파악하고 동시대에 속하는 해당 지역의 물질유존을 종합, 분석한다. 뒤이어 후자의 과정을 통해 설정된 고고문화의 지리적 분포와 그 기원 및 발전 맥락을 탐색하며, 마지막으로 그것을 문헌기록과 대조함으로써 상호모순이 보이지 않는 경우 해당 고고문화와 민족을 연계하는 것이다.⁴⁸ 즉 문헌기록과 고고문화 양쪽 측면에서 착오가 없다고 생각되는 좌표점을 우선 설정하고 양자의 시공관계를 서로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고고문화와 민족의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다.

III. 학술적 지향의 배경

고고문화와 문헌기록상의 인간공동체, 즉 민족을 직접 연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 복원에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이 고고학 본연의 사명이라는 사고방식이 형성되어 지금까지 지속되는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 장에서는 근대 고고학의 도입과 발전 과정에서 겪은 중국의 독특한 경험이 그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고고학 도입의 환경과 증사주의적 경향

대다수의 중국 고고학자는 고고학을 역사학의 한 분과학문으로 간주한다. 심지어는 고고학 그 자체가 역사학이라 생각한다.⁴⁹ 이런 사고가 정착되게 된 데에

48 王明珂, 2006, 『華夏邊緣－歷史記憶與族群認同』, 社會科學文獻出版社, 40쪽.

49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2002, 「考古學與中國歷史的重構－爲紀念北京大學考古專業成立五十周年而作」, 『文物』2002年 第7期, 75쪽; 朱鳳瀚, 2003, 앞

는 근대 고고학이 중국에 수용된 시기의 독특한 사회적 배경이 크게 작용하였다.

근대 고고학은 신문화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1920년대에 중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대개 1914년 북양정부(北洋政府)의 광정고문(鑛政顧問)으로 초빙된 스웨덴의 지질학자 안텔손(Johan G. Andersson, 1874~1960)이 전개한 일련의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이 중국 고고학의 서막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후 중국 고고학의 발전에서 보다 실질적이며 심원한 영향을 미친 것은 1928년에 시작된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 역사언어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의 하남(河南) 안양(安陽) 은허(殷墟) 발굴이었다.⁵⁰ 이 발굴 사업이 중국 고고학의 발전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파악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근대 고고학이 중국에 처음 소개될 무렵 중국은 전통적인 역사인식을 새롭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다. 고힐강(顧頡剛)을 필두로 한 이른바 의고학파(疑古學派)는 중국인의 전통적인 사유 속에 존재하는 상고사상을 거침없이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에 의해 주도된 고사변(古史辨) 운동은 근대 역사학의 과학적 사유와 방법을 운용하여 그때까지 전승되어 온 중국 상고사에 대한 가차 없는 비판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전통적 역사 연구가 의거해 온 문헌자료의 신뢰성을 허물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전통적 역사인식체계 또한 붕괴에 직면해 있었다.⁵¹ 중국의 역사학계는 그들의 상고사를 어떻게 다시 구축할 것인지 골몰해야 했다.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유(王國維)는 이때 “지하의 실물을 취하여 지상의 유문(遺文)을 해석하고 입증하는” 이른바 이중증거법을 제창하여⁵² 출토 유물이 역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의 논문, 13~15쪽.

50 張海, 2005, 「中國考古學의 殷墟傳統—早年安陽殷墟의 發掘與研究」, 『古代文明』第4卷, 文物出版社.

51 陳淳, 2006, 「疑古, 考古與古史重建」, 『文史哲』2006年 第6期.

52 王國維, 1959, 「殷墟卜辭所見先公先王考」, 『觀堂集林』第2冊, 中華書局.

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안텔손 역시 앙소문화를 발견하고 중국의 상고문화(上古文化)를 그때까지와는 전혀 다른 물질유존의 각도에서 연구함으로써 고고학을 통해 중국의 선사시대 ‘역사’를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런 배경에서 부사년(傅斯年)을 위시한 일군의 역사학자는 ‘역사학은 곧 사료학’이라는 모토하에, 새로운 사료 확보를 고대사 복원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료의 확보란 곧 발굴을 통한 물질자료 획득을 의미하였다.⁵³ 이들은 중앙연구원 역사어언연구소를 건설하여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발굴이 하현(夏縣) 서음촌(西陰村)에서 진행된 것은 이곳이 순(舜)의 도읍인 포판(蒲坂)일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었으며⁵⁴, 역사어언연구소가 은허 발굴에 착수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역시 이곳에서 출토된 갑골문을 통해 상 왕조의 역사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⁵⁵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이 폭발하기 이전까지 15차례에 걸쳐 진행된 은허 발굴은 미증유의 성공을 거두었다. 이곳에서는 갑골과 청동예기를 포함한 각종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으며 궁전과 왕릉 등의 대형 유구까지 확인되었다. 은허 발굴의 결과는 이처럼 예기한대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어 들였지만, 이로 말미암아 중국 고고학이 매우 독특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결정적 계기 또한 초래하게 되었다. 은허의 발굴 결과는 갑골문 연구와 함께 문헌기록의 신뢰성을, 적어도 부분적으로 회복하는데 기여했으며, 이것은 중국의 전통적 역사인식체계를 변호함과 동시에 의고학과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무기를 공급하였다. 고고학이 사료학으로서 중국 학술계에서 확실한 위상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⁵⁶

53 傅斯年, 2004, 『史學方法導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6~17쪽.

54 李濟, 1983, 「山西南部汾河流域考古調查」, 『考古』1983年 第8期, 759~766쪽.

55 張海, 2011, 「中國考古學的歷史主義特徵與傳統」, 『華夏考古』2011年 第4期, 138~139쪽.

56 洛沙·馮·福爾肯霍森, 陳淳 역, 1995, 「論中國考古學的編史傾向」, 『文物季刊』1995年 第2期, 85쪽.

은허 발굴은 중국 고고학의 발전 방향에 독특한 색채를 부여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문헌기록을 통해 연구 목표와 대상을 설정하고 발굴조사를 통해 이를 입증해가는 방법론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학적 담론의 틀 안에서 고고학 연구의 목표를 설정하는 지향으로 귀결되었다.⁵⁷ 일찍이 한대(漢代)부터 발달한 경·사학(經·史學)의 전통 아래에서, 고고학은 역사 고증을 목표로 두게 되었으며, 이것은 지금도 중국 고고학의 주요한 특징으로 간주되고 있다.⁵⁸ 중국에서 고고학은 지금도 고대 유존을 대상으로 하여 인류 고대의 사회,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⁵⁹ 또는 “고대 인류가 각종 활동을 통해 남겨놓은 실물로 고대 인류의 사회와 역사를 연구하는 과학의 한 종류”로서 “역사과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간주된다.⁶⁰

2. 문화사고고학 체계의 구축과 그 의미

중화인민공화국 건국(1949) 이후 정치적 환경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유적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중국문화의 발전 맥락도 점차 그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중국문명이 황하 중·하류 일원의 이른바 중원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발전의 길을 걸었다는 신화는 붕괴되었다. 연구자들은 중원은 물론 그밖의 지역에서도 증가일로를 걷는 물질유존 자료를 분류하여 고고문화를 설정하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성격과 연대를 판단하며, 거기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그에 따라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문화사고고학 연구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

57 張海, 2011, 앞의 논문, 138~139쪽.

58 洛沙·馮·福爾肯霍森(Lothar Von Falkenhausen), 陳淳 역, 1995, 앞의 논문; 唐際根, 2002, 「考古學, 證史傾向, 民族主義」, 『讀書』 2002年 第1期.

59 林滢, 1999, 앞의 논문, 224쪽.

60 編輯委員會, 1986, 『中國大百科全書 考古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 1~2쪽.

였다. 그 최종적인 목표는 중국 전역에서 출토된 방대한 양의 자료에 기본적인 시·공간적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 있었다.⁶¹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 문화대혁명 명이 종결되고 개방, 개혁 노선이 제창되어 전국적인 건설 붐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출토자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료의 지역적 편중성도 점차 해소되었다. 지역별 출토자료를 기초로 고고문화의 시·공간적 틀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문화구계유형론(文化區系類型論)⁶²이 제기된 것은 이 같은 학문적 요청과 사회 환경의 변화에 힘입은 바 크다.

문화구계유형론의 주창자인 소병기는 이렇게 언명하였다. “나는 문화대혁명 기간에 고고문화의 획분(劃分)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그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여 실천 가운데서 그것을 총결하고 (일정한 수준까지) 제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보물을 발굴하였다거나 학과의 목표를 (어느 정도) 실현하였다는 것은 모두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의 발언은 결국 고고문화 연구가 중국 고고학이 시급한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제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의 문화구계유형론은 특히 중국 각지의 신석기문화 양상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몇 개의 지역문화로 구분한 다음, 그것을 다시 약간의 계통으로 정리하는 일종의 문화사고고학의 인식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⁶³ 이때 그가 말하는 문화 ‘구(區)’는 지역문화가 분포하는 일정한 공간을, ‘계(系)’는 그 공간 내에서의 발전 맥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소병기의 문화구계유형론은 점차 체계를 잡아가던 중국 고고학에 뚜렷한 학문적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문화구계유형론의 각도에서 출발한 중국 내 고고문화에 대한 인식 지향은 많은 고고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 이래로 하나 혹은 복수의 고고

61 蘇秉琦·殷璋璋,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考古』1981年 第5期.

62 문화구계유형론에 대해서는 강인욱, 「區系類型論과 중국동북지방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제56권 참조.

63 蘇秉琦·殷璋璋, 1981, 앞의 논문; 蘇秉琦, 2009, 『中國文明起源新探』, 遼寧人民出版社.

문화 설정과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출토자료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소집되고, 관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한 여러 성(省)의 협력 발굴도 왕성히 시행되어 고고문화 연구가 절정에 달하였다.⁶⁴ 문화구계유형론이 제시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전국에 걸쳐 고고문화의 시·공간적 틀이 신속하게 구축되어 갔다.⁶⁵

그런데 이 문화구계유형론은 단순히 중국 고고학의 과제가 문화사고고학 체계 구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제창된 것만은 아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사의 발전 맥락을 더욱 거대한 시각에서 포착하고자 하는 소병기의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다. 그에 의하면, 문화구계유형론은 “중국 역사의 특징에 입각하여 중국 고고학을 개척하는 학술적 관점”으로서, “그것의 전제는 중국문화를 하나의 완전한 유기적 체계”로 간주하기 위한 구상이다. 그는 이 이론이 상당한 정도로 전국(戰國)·진한(秦漢)시대에 (중국) 통일다민족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⁶⁶ 바꾸어 말하면, 그의 문화구계유형론은 본디 현재의 중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거기에 편입되거나 관련을 맺게 된 여러 인간공동체, 즉 각각의 고고문화들이 관계하고 결합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틀로 제안된 것이다.⁶⁷

그러므로 소병기가 추구한 고고문화 설정과 체계적 배열은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통일다민족국가 중국으로 융합된 다수의 민족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수의 민족이라면 거기에는 한족(漢族)은 물론이려니와 역사 속에서 명멸하여 간 수많은 비한족(非漢族)도 포함될 것이다. 게다가 통일다민족국가 중국이 그

64 林滄, 1999, 앞의 논문, 227쪽.

65 文物編輯委員會 編, 1990, 『文物考古工作十年 1979~1989』, 文物出版社.

66 蘇秉琦, 1981, 「建國以來中國考古學的發展」, 『史學史研究』 1981年 第4期, 9~14쪽; 蘇秉琦, 1991, 「關於重建中國史前史的思考」, 『考古』 1991年 第12期, 1109~1117쪽; 蘇秉琦, 1993, 「迎接中國考古學的新世紀」, 『東南文化』 1993年 第1期, 1~17쪽.

67 이성주, 2011, 「巨視的 觀點에서 본 東北亞 社會文化體系의 變動」, 『동북아역사논총』 33호, 320~321쪽.

의 주장처럼 민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결과라면 거기에는 한족과 비한족 사이의 문화교류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된다.

요컨대 문화구계유형론으로 대표되는 고고문화 설정과 시·공간적 계열화는 최종적으로는 중화민족으로 수렴되는 복수의 민족문화와 그들의 융합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고자 하는 원대한, 그리고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담은 것이다. 고고문화에 대한 중국 고고학계의 관심은 그 발전 과정에서 소병기의 세례를 받아 이윽고 지역적 문화전통과 그 발전 맥락, 그리고 그 주체가 되는 민족, 그리고 그들 사이의 융합을 거쳐 탄생한 중화민족 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그 핵심적 과제로 설정하기에 이르렀다.⁶⁸

3. 다민족국가의 사회 환경

소병기류의 고고학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족에 대한 중국 고고학계의 꾸준한 관심은 학문내적인 차원으로만 해명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국체(國體)로서 통일다민족국가를 표방하는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정부의 정책적 지향과도 많은 적든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 중국은 다양한 민족의 혼합체이다. 중국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족이 긴 시간을 거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임은 말할 것도 없고, 북방민족이 대거 남하하여 중국을 지배한 시기도 결코 짧지 않다. 때문에 민족문제는 고대 이래 중국의 역대 왕조(王朝)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68 蘇秉琦의 발상은 일찍이 張光直에 의해서 제안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 신석기문화는 복수의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하다가 기원전 4000년경을 전후한 때부터 연쇄적인 문화교류를 시작하여 ‘하나’의 지역공동전통을 형성했다. 이때 공동의 ‘하나’에 포괄되는 공간의 범위는 북으로는 遼河 유역부터 남으로는 臺灣과 珠江삼각주, 동으로는 黃海 해안에서 서로는 甘肅, 青海, 四川까지 도달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의 중국 내지에 상당한다. 때문에 장광직은 이를 ‘중국상호작용권’이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張光直, 1999, 「中國相互作用圈與文明的形成」, 『中國考古學論集』, 三聯書店 참조.

민족문제는 특히 청(淸) 제국 말 입헌파와 혁명파 사이에서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혁명파는 명(明) 제국이 몽골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제국을 건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만주족을 몰아내고 중화(中華)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만주족의 청 황실을 옹호한 입헌파는 원래부터 만주족과 한족의 대립을 부정했다.⁶⁹

혁명파와 입헌파가 대립하던 시기의 중국은 기나긴 전근대 왕조체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체제혁명을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의 침략에서 중국의 주권을 지켜내야 하는 반제국주의의 긴요한 과제도 안고 있었다. 제국주의의 영토 분할 정책에 맞서기 위해 중국은 민족 간의 대립보다는 결속이 필요했다. 손문(孫文)의 오족공화론(五族共和論)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출현했다.⁷⁰ 그리고 이 오족공화론에 내포된 이념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다시 계승되었다. 인구는 적지만 중국 영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다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비한족 거주구역이 중국에서 분리, 독립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가 작용한 것이다.⁷¹

중국공산당은 국내외의 민족 압박에 반대하고 민족 간의 평등을 이루겠다는 슬로건 하에 이른바 ‘민족식별’ 사업을 시작했다. 민족식별은 1953년부터 1983년에 걸쳐 진행된 후 일단락되었으나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는 이 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자진 신고된 400개의 민족 가운데 한족을 포함한 56개가 민족으로 정식 인정되고 있다.⁷² 그런데 민족은 오랜 시간

69 요로야마 히로야키, 이용빈 옮김, 2009, 『중화민족의 탄생』, 한울아카데미, 47~101쪽.

70 吳啓訥, 2012, 「人群分類與國族整合－中共民族識別政策的歷史線索和政治面向」, 余敏玲 主編, 『兩岸分治－學術建制, 圖像宣傳與族群政治(1945 - 2000)』,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326~335쪽.

71 金衡鍾, 2001, 「清末 革命派의 排滿論과 五族共和論」, 『中國近現代史研究』 12, 15쪽.

72 노영돈·최영춘, 2014, 「중국의 민족식별사업에 관한 고찰」, 『재외한인연구』 32호, 29~70쪽.

을 거쳐 형성, 발전된 것이므로 그것을 식별할 때 현상(現狀)에 초점을 맞춘 사회학적 조사만으로는 만족할만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민족식별의 후속 작업으로 ‘중국소수민족사회역사조사’에 착수했다.⁷³

1956년부터 1964년까지 진행된 이 조사는 각 민족의 역사를 동태적으로 이해하여, 그것이 왜 현재와 같은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지, 어떤 민족을 과연 민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사는 결국 민족사(民族史) 연구에 다름 아니었다. 이 조사의 리더그룹 [영도소조(領導小組)]에 참여한 비효통(費孝通)은 “민족 역사 연구는 일정한 구역 내의 인간공동체가 발전·변화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야 하며,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 결과, 또는 제기되는 문제는 역사과학의 모든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도움이 된다. 심지어 어느 정도는 (그들의 연구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고고학도 예외는 아니다.”⁷⁴고 하면서 민족 문제 연구에 고고학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민족국가이면서 민족문제가 상존하는 중국에서 인문학 연구자는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문제 연구는 역사학은 물론 고고학에서도 모두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론은 이른바 ‘중화민족다원일체론’이다. 이것은 비효통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다원’은 지역 문화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성과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며, ‘일체’는 중국문명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관류하는 상호 교류와 그로 말미암는 결합을 의미한다. ‘다원’과 ‘일체’로 구성된 이 민족이론의 배경에는 소병기가 주창한 문화구계유형론의 이론적 틀 아래 지금까지 정리되어 온 지역 고고문화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그들 사이의 횡적인 교류, 통

73 林耀華 主編, 2003, 위의 책, 499쪽.

74 費孝通, 1956, 『開展少數民族地區和與少數民族歷史有關的地區的考古工作—在考古工作會議上的發言』, 『考古通訊』1956年 第3期.

합에 관련된 연구가 자리하고 있다.⁷⁵ 고고학 연구가 민족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에는 이처럼 다민족국가이면서도 그 일체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중국의 현실적, 사회적 요청이 있다.

IV. 문제의 소재

중국의 고고학계에는 고고문화와 민족을 결부하고, 그것을 문헌자료에 나타나 는 특정한 대상과 연계하려는 지향이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⁷⁶ 고고문화의 형성, 발전, 소멸 등에 대한 탐색을 통해 특정 민족의 역사까지 복원할 수 있다는 관념도 별다른 저항감 없이 수용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런 사고는 문화사고고학의 이론적 전제이며, 지금 서구 고고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주도적인 것으로 보인다.⁷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고학계에서는, 고 고문화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과 민족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아가서는 고고문화는 민족과 치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인가 등과 같은 이론적 문제는 아직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민족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복합적 현상과 고고문화가 가지는 가설적 성격은 민족과 고고문화를 간단하게 연결하려는 입장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1. 민족 규정과 고고문화 분류의 불확정성

고고학에서 민족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대상이 되는 민족의 범위를 물질유

75 費孝通 主編, 199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大學出版社.

76 嚴文明, 1985, 앞의 논문, 11쪽; 張忠培, 2004, 앞의 논문, 136~137쪽; 李伯謙, 2008, 앞의 논문, 452쪽.

77 김종일, 2008, 앞의 논문, 100~105쪽; 同 2017, 앞의 논문, 262~264쪽.

존의 차원에서 분명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물질유존으로 민족을 식별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과 기준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질문은 사실 어떻게 민족을 어떻게 정의하고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인류학계의 논의와도 관련되어 있다.

인류학에서 민족을 정의하는 데는 대개 두 가지의 방향의 사고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객관론과 주관론으로 창해진다. 먼저 객관론에서는 공통의 언어, 지역, 경제생활, 심리적 요소 등을 강조한다. 이들 요소를 공유하는 인간공동체를 민족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례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요소를 통해 민족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나의 인간공동체가 다른 그것과 구별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즉 민족 정체성의 주관적이고 귀속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민족을 일종의 자기정체의체제로 보는 입장이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⁷⁸ 그러나 중국학계에서는 아직까지 객관론의 입장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주관론적 입장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객관론에 대한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⁹

객관론의 입장에 선다면 하나의 민족이 자신의 관념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복원하고 그에 대응하는 고고문화를 찾아야 한다. 물론 그것은 명확한 물질유존을 바탕으로 하여 시·공간적 차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선 방법론적 정당성을 차치하고라도 작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문헌기록을 통해 민족의 자기규정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겨진 단편적인 기록들 속에서 현재의 우리가 그것을 탐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풍부한 문헌자료가 있고 거기에 보존된 민족 칭호도 매우 많다. 그러나 한족이나 그 밖의 약간을 제외하면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고

78 王明珂, 2006, 앞의 책, 9~20쪽; 김종일, 2017, 앞의 논문, 263쪽.

79 鄭君雷, 2007, 「文化人類學的族群認同與考古學文化的族屬研究—漢末魏晉河套陰山地方北方民族遺存族屬研究的個案思考」, 『思想戰線』 2007年 第4期, 23~24쪽.

유한 문자를 가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문헌자료는 대개의 경우 한족의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며, 그 내용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을 반영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문헌은 중원 왕조와의 관계가 밀접한 민족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기록을 남긴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략한 기록만을 전한다.⁸⁰ 때문에 이 기록들을 통해 특정 민족의 공동체 인식이 포함하는 내용, 나아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는 민족의 자기규정과 그 범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⁸¹

오히려 문헌자료 자체에는 당시의 정치적 이념으로 말미암은 일종의 편향성조차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⁸² 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기정의 범위는 다른 민족과의 접촉을 통해 차차 변화를 겪게 된다. 흔히 말하는 민족의 융합 또는 분열이 발생하는 것이다.⁸³ 이것은 특정한 민족을 객관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에 더욱 커다란 어려움을 준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다루는 개개의 민족은 사실상 상당 부분 연구자 개인에 의해 규정되는 민족이며, 문헌기록에 대한 연구자 개인의 해독에 불과하다. 결국 특정 민족에 대한 규정이 다르게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고고문화를 대응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고고문화를 중심에 놓고 보면 문제를 다소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다. 지층학과 유형학, 그리고 물질문화 요소 분석을 통해 물질유존을 분석하고 연대를 추정하는 일에서 통일된 견해를 획득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그 어려움이 덜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특정 물질문화 요소로 민족을 식별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이것이 객관론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또 다른 난관이다.

한동안 중국에서 활발하게 논쟁이 진행되었던 이른바 선주문화(先周文化)를 사례를 들어보자. 선주문화는 주족(周族)이 상 왕조를 전복하여 중원의 지배

80 한반도 역시 이와 같은 사례에 속한다. 李盛周, 2015, 앞의 논문, 167~168쪽.

81 高柄翊, 1963, 「中國正史의 外國列傳-朝鮮傳을 중심으로-」, 『東亞交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5~20쪽.

82 劉觀民, 1990, 앞의 논문, 4~6쪽.

83 鄭君雷, 2007, 앞의 논문, 24쪽.

권을 장악하기 이전 주족에 의해 영위된 고고문화이다. 이 고고문화를 정의할 때 일군의 연구자는 토기(土器), 그 가운데서도 특히 토력(土鬲)의 형태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이 견해는 지금도 비교적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⁸⁴ 그러나 민족지 자료는 동일한 토기를 사용하는 자들이 서로 다른 민족에 속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⁸⁵ 게다가 지금 우리는 이들이 어떤 특징적 물질문화로 자신을 표현하거나 인지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토력을 기준으로 선주문화를 식별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도 상당수에 달한다. 그 가운데 이봉(李峰)과 같은 연구자는 그보다는 상장습속을 더욱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⁸⁶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 토기의 형태와 상장습속의 내용이 시·공간적 차원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편을 더욱 중시해야 하는가이다. 즉 물질문화의 양상이 보여주는 복합성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동일한 자료라 해도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토기와 상장습속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민족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선택적으로 고려하여 고고문화를 설정한다면 설사 동일 민족의 유존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민족의 것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복합적인 문화 요소를 가진 유존을 어떻게 분류하고 규정할 것에 대해 현재 중국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해당 유존의 문화적 특징을 규정하는 요소를 추출하고, 그 각각의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량화한 다음, 이 유존

84 尹盛平, 1998, 「關於先周文化的幾個問題」, 『周秦文化研究』, 陝西人民出版社, 257~267쪽; 劉軍社, 2003, 『先周文化研究』, 三秦出版社; 張天恩, 2004, 『關中商代文化研究』, 文物出版社.

85 王明珂, 2006, 앞의 책, 37~38쪽.

86 李峰, 1991, 「先周文化的內涵及其淵源探討」, 『考古學報』 1991年 第3期, 265~284쪽.

이 어느 고고문화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문화인소분석법(文化因素分析法)’이라 통칭되는 이 방법을 통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지만,⁸⁷ 이것 역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테면 서로 다른 고고문화에 속하는 물질문화의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서로 엇비슷하거나 크게 구별되지 않을 때에는 즉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 요소의 백분비 차이에 근거하여 얻은 결론이 그 민족의 규정과 대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2. 고고문화와 민족의 대응, 범주의 혼란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특정 고고문화와 특정 민족의 대응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고고문화와 민족을 연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역시 문헌기록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다. 문헌기록에는 다양한 성격의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의 상략(詳略)에도 차이가 있다. 문헌기록은 대개의 경우 동시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록이 작성된 시점에도 차이도 있다. 거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자의 주관이나 지식의 한계 등에 의한 변형이 있을 수도 있다. 이상의 사항 모두는 문헌기록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문헌기록이 명료하지 않거나 서로 모순될 때에는, 어떤 내용을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이 제시된 바는 없다.

예컨대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하남(河南), 하북(河北), 산둥(山東), 산서(山西), 섬서(陝西)와 요령(遼寧) 등지에서 하(夏) 왕조의 연대범위에 속하는 유존을

87 種建榮, 2008, 「關於考古學“文化因素分析方法”的幾點思考」, 『唐都學刊』 2008年 第5期, 86~89쪽; 索德浩, 2014, 「文化因素分析方法與歷史時期考古學」, 『華夏考古』 2014年 第1期, 134~141쪽.

발견하고, 이들을 이리두문화(二里頭文化), 하칠원문화(下七垣文化), 악석문화(嶽石文化), 동하풍문화(東下馮文化), 하가점하층문화(夏家店下層文化) 등으로 구별하였다. 연구자들은 이들 고고문화의 양상, 특징 그리고 분포구역 등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리두문화가 하족(夏族)의 문화인지 아니면 동하풍문화가 하족의 문화인지, 아니면 양자가 모두 하족의 문화에 속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⁸⁸ 의견의 일치를 보기 어려운 난점은 고고학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헌기록의 한계, 그에 따른 고증과 인식의 불일치에 있다.⁸⁹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고고문화’와 문헌기록상의 ‘민족’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칭위(稱謂)라는 점에 있다. 고고문화가 독자적인 특징을 가진 유존군을 가리키는 칭호이면서 그것에 입각하여 특정한 문화를 공유한 인간공동체를 인식해내는 수단이라면, 민족은 특정한 인간공동체가 구축한 정치적 실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고고문화와 민족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해도 그 양자가 동일한 층위의 개념은 아니다.⁹⁰ 이를테면 중국학계에서는 상(商) 또는 주(周)라는 고대국가에 속한 인간공동체의 물질문화에 상문화(商文化) 또는 주문화(周文化)라는 통일적 명칭을 부여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인간공동체와 그들이 영위한 물질문화는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그 변이를 몇몇 특정한 물질유존의 복합체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⁹¹

중국학계에서 사용하는 민족의 명칭과 정의는, 특히 역사시대의 경우, 대체로 그 이면에 그에 대응하는 정치적 실체를 상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적 실체

8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03, 『中國考古學 夏商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3~29쪽.

89 孫華, 1980, 「關於二里頭文化」, 『考古』1986年 第6期.

90 劉觀民, 1990, 앞의 논문, 1~2쪽; 李伯謙, 2008, 앞의 논문, 454쪽.

91 武漢大學의 張昌平은 최근 西周的 제후인 曾侯 유존 연구에서 그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張昌平, 2017, 「從五十年到五年—曾國考古探討」, 『江漢文物』2017年 第1期, 60~61쪽 참조.

로서의 민족은 그것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이나 그에 속한 다양한 인간공동체가 영위한 물질문화의 내용에서 매우 복잡하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각각의 민족은 때때로 단일한 민족공동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의 다민족공동체일 수도 있으며 또 때로는 한 민족공동체의 일부일 수도 있다. 혹은 그것은 하나의 민족공동체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비록 공동의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를 하나의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컨대 흉노(匈奴)라던지 선비(鮮卑) 등처럼 연합을 통해 거대화된 역사상의 정치적 실체에는 복수의 인간공동체, 또는 민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 각각이 가진 고유한 물질문화 전통은 정치적인 통합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았다.⁹² 오히려 그 가운데 일부는 자신의 물질문화를 이 연합체가 해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동일한 민족 칭호 내에도 복수의 고고문화나 복수의 민족 칭호가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다.⁹³

이것은 논리적으로는 비교적 분명하게 인지되지만 현실 속에서는 왕왕 합의하기 어려운 논쟁을 야기한다. 이리두문화가 최초로 명명되었을 때 이 고고문화의 설정에 커다란 쟁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모두 이리두문화가 선명한 일련의 특징을 가진 고고문화라고 생각했다. 심복관(深腹罐), 원복관(圓腹罐), 삼족반(三足盤), 관형정(罐形鼎), 분형정(盆形鼎), 평저반(平底盤) 등의 토기는 특징적이며 그 발전 서열 역시 분명했다. 그러나 그것이 민족과 연결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리두문화는 시·공간의 양 측면과 발달한 청동기문화라는 점에서 하족의 문화라 추정하는 견해가 우세했지만,⁹⁴ 이리두문화의 연대범위가 추정되는 하 왕조의 연대범위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⁹⁵ 그리하여 연구자 가운데 일부는 이리두문화의 1~4기 가운데 후반의 일부를 잘

92 許永杰, 1993, 「鮮卑遺存的考古學考察」, 『北方文物』1993年 第4期; 孫進己·孫海, 2003, 「鮮卑考古學文化」, 『內蒙古文物考古』2003年 第2期, 59~70쪽.

93 劉觀民, 1990, 앞의 논문, 2~3쪽.

94 鄒衡, 1980, 「試論夏文化」,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95 李伯謙, 1986, 「二里頭類型的文化性質與族屬問題」, 『文物』1986年 第6期.

라내어 상족(商族)의 문화에 예속시켰으며,⁹⁶ 또 다른 일부 연구자는 이리두문화에 선행하는 고고문화 예컨대 왕만삼기문화(王灣三期文化) 혹은 신채문화(新砦文化) 등을 하문화(夏文化)의 전기 유존에 편입시켰다.⁹⁷

문제는 이리두문화 1기부터 4기 사이에 커다란 질적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절취하여 각각 다른 민족의 문화에 각각 편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는 이리두문화 이외의 왕만삼기문화나 신채문화 등도 하족의 문화라면 두 개 이상의 고고문화가 한 민족의 것으로 편입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등 자못 혼란스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는 점이다. 국가와 민족을 대응관계를 인정하는 중국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잠시 놓아두더라도, 이처럼 민족과 고고문화의 등가성을 인정했을 때도 왕왕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고고문화는 그 문화적 양상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여기에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동일한 고고문화로 분류되지 못한다. 그렇지만 민족의 문화는 부단히 발전하고 변화하며 주변의 그것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일종의 개방적인 성격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고문화와 특정 민족을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그다지 객관적이라고도 또 타당하다고도 생각되지 않는다. 물론 중국 고고학계에서도 이런 문제는 비교적 분명하게 인지되고 있다. 예컨대 이백겸(李伯謙)은 “고고문화와 족 공동체는 연결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이다. 하나의 고고문화는 하나의 부족이 창조하고 사용한 문화이지만 동시에 둘 혹은 그 이상의 부족이 창조하고 사용한 문화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 일정한 조건에서 하나의 부족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고고문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⁹⁸고 언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문화와 민족의 간편한 대응은 중국의 고고학계에서 지금도 널리 관찰되는 일종의 ‘관례’이다.

96 趙芝荃, 1996, 「論夏文化起, 止年代的問題」, 『夏文化研究論集』中華書局.

97 吳汝祚, 1978, 「關於夏文化及其來源初步探索」, 『文物』1978年 第9期.

98 李伯謙, 2008, 앞의 논문, 454쪽.

3. 고고문화 설정의 잠정적 성격

물질문화에 의거하여 획정된 고고문화는 본디부터 자료의 단편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오차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고고문화의 설정은 잠정적인 작업가설에 가깝다. 이와 같은 사실 또한 고고문화와 민족의 정합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고문화의 설정은 자료의 축적과 함께 더욱 상세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용산문화는 처음에는 하나의 고고문화로 설정되었고, 다만 그 지역적 변이에 의거하여 산동연해구(山東沿海區), 예북구(豫北區), 항주만구(杭州灣區) 등으로 구별될 뿐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것이 다시 묘저구이기문화(廟底溝二期文化), 후강이기문화[後岡二期文化(河南龍山文化)], 객성장이기문화[客省莊二期文化(陝西龍山文化)], 전형용산문화[典型龍山文化(山東龍山文化)] 등 4개의 고고문화로 구분되었으며, 원래 항주만구로 구별되었던 것은 양저문화(良渚文化)로 독립 처리되었다. 이후에는 이 중 하남용산문화가 다시 왕만삼기(王灣三期), 후강이기(後岡二期), 조율대[造律臺(王油坊)], 하왕강(下王崗), 삼리교(三里橋) 등의 제 유형으로 세분되기에 이르렀다.⁹⁹

이처럼 고고문화가 점차 세분되는 것은 출토자료가 점점 풍부해지고 이에 따라 관련 연구도 점차 심화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중국에서는 상당수의 고고문화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다시 약간의 유형으로 세분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성격의 것을 ‘문화(文化)’라 부를 지, 아니면 ‘유형(類型)’으로 부를 것인지에 대한 쟁론이 있고, 어떤 연구자도 어느 경우에 독립된 고고문화를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답한 적은 없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어떤 문화가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때, 거기에는 이미 하나의 고고문화가 다

99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0, 『中國考古學 新石器時代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508~530, 589~592쪽.

시 복수의 고고문화로 세분될 가능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¹⁰⁰ 그런데 문화로 분류하건 아니면 유형으로 분류하건 그것들은 모두 일정한 물질유존의 특징을 공유하는 인간공동체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고고문화가 점차 세분화되어 가는 과정은 그 인간공동체의 획분 역시 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엄문명(嚴文明)은 현재 ‘유형’이라고 칭하는 것도 다시 소구(小區)로 재분(再分)될 수 있고, 소구의 아래에 다시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던) 네 번째의 단계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만약 이렇게 다층적으로 구분해 나간다면 “고고학 유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인간공동체를 부락 혹은 부락연맹에 대응하는 규모까지 축소해갈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만약 이와 같은 다층적 획분 방법이 개별 유적에서 반영되는 씨족이나 부락조직 구조에 대한 연구와 결합된다면 장차 원고시대의 사회, 역사의 면모를 복원하고 씨족-부락 및 그 활동과 발전을 탐색하는 것도 가능해 질 수 있다.”¹⁰¹ 고도 했다. 임운(林濤) 역시 “고고문화가 세분되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고고문화로 구분되기에 이른, (그런 의미에서 보다 상위에 위치한) 원래의 한 문화는 고고문화보다 더 큰 차원의 역사문화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고고학 유존 중에서 분석되는 문화공동체의 다층차성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장했다.¹⁰²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결과에 대한 강조일 뿐이다. 그 이면에는 고고문화의 분류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며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은폐되어 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설정하는 고고문화가 잠정적이며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또는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100 林濤, 1999, 앞의 논문, 233쪽. 그러나 安志敏은 ‘類型’은 동일한 문화의 서로 다른 群體를 가리키는 술어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중국학계에 ‘유형’ 용어에 대한 또 다른 관념이 상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安志敏, 1999, 앞의 논문, 85쪽.

101 嚴文明, 1985, 앞의 논문, 11~12쪽.

102 林濤, 1998, 앞의 논문, 233~235쪽.

민족과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어떤 특정한 고고문화를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하나의 화석화된 민족과 결합할 경우에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다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1940년대에 빈전경작(濱田耕作) 등은 적봉(赤峰) 홍산후(紅山後) 유적에서 발견된 석관묘(石棺墓)가 한(漢) 이전 동호(東胡)의 유존이라 생각했다. 유구와 부장품 등 물질유존의 형태나 특징이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진한의 것과는 달랐고, 출토 지점 역시 ‘호(胡)’의 동부에 위치하여 ‘동호(東胡)’라고 보아야 마땅했기 때문이다.¹⁰³ 이것은 그 당시에는 유존 성격의 비교, 연대와 지리적 위치 등에 의거하여 가장 적합한 역사상의 민족 명칭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이일우(李逸友)는 1958년 녕성(寧城) 남산근(南山根)의 석관묘에서 출토된 청동단검 등의 유물을 문헌기록에서 아직 동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춘추시대의 것으로 판단하여 석관묘 유존의 연대를 춘추시대까지 끌어올렸다.¹⁰⁴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문화가 가진 시·공간상의 위치가 보다 분명해지면서 지뢰(遲雷)와 주영강(朱永剛)은 원래 동호의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산용(山戎)에 귀속시키기에 이르렀다.¹⁰⁵ 『춘추(春秋)』와 『좌전(左傳)』 등의 문헌기록에 입각하면, 이들을 동호보다는 산용에 대응시키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연구자들이 어떤 특정한 물질문화의 연대, 분포지역에 대한 이해를 점차 구체화하고, 그에 따라 문헌기록과의 비교와 선택에서 부단히 합리적인 선택을 진행하여 가는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준다.¹⁰⁶ 어떤 고고문화에 속하는 물질유존에서 문헌기록에 남겨진 어떤 민족을 명시하는 문자기록이 발

103 濱田耕作·水野清一, 1938, 『赤峰紅山後』, 劉觀民, 1990, 「考古學文化與族稱研究的問題」,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 1990年 3期, 1쪽에서 재인용.

104 李逸友, 1959, 「內蒙昭烏達盟寧城縣發現的青銅器」, 『考古』, 1959年 第6期.

105 遲雷, 1982, 「關於曲刃青銅短劍的若干問題」, 『考古』, 1982年 第1期; 朱永剛, 1987, 「夏家店上層文化的初步研究」, 『考古學文化論集(一)』, 文物出版社.

106 劉觀民, 1990, 앞의 논문, 1쪽.

견됨으로써 특정한 물질유존 나아가 특정한 고고문화가 어떤 민족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 역시 고고학 연구의 발전과정에서 획득한 전 반적 인식과 모순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연구자들의 지지를 얻게 된다.¹⁰⁷ 이처럼 고고문화의 설정은 잠정적인 작업가설의 성격이 강하므로 특정한 고고문화와 특정한 민족의 결합관계는 항상 불안정한 관계에 위치하게 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V. 맺음말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 고고학에 증사주의적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서구 고고학계의 비판적 논평이 심심치 않게 목도된다. 그 말은 중국 고고학이 물질유존을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사서(史書)에 기록된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실을 입증하거나 보완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의미라 생각된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고고문화와 민족을 연계하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그런 사례의 하나로 지목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고고문화의 설정 자체가 그 시작 단계부터 이미 문헌기록의 어떤 민족을 염두에 두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한 사례도 있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민족 개념은 공통의 언어와 지역, 그리고 경제생활과 문화를 영위하는 안정적인 인간공동체이다. 여기에는 동일한 시기와 공간범위 내에서 공통의 특징을 갖춘 일군의 물질유존을 가리키는 고고문화 개념과 분명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특정 고고문화를 영위하는 인간공동체가 상정될 경우에는, 이 인간공동체와 고고문화 사이에서 등가관계를 구하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게다가 중국은 매우 일찍부터 풍부한 문헌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고문화의 인간공동체를 문헌기록상의 어떤 특정

107 林滢, 1998, 앞의 논문, 236~237쪽.

한 민족과 연계시켜 보려는 생각 역시 여기에 뒤따르게 된다.

중국 고고학의 증사주의적 경향과 역사상의 민족(현재의 그것을 포함하여)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특수한 학문내·외적 환경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근대 고고학이 중국에 도입되었을 때 그것은 중국의 전통적 역사체계를 옹호하고 나아가서는 복원할 수 있는 신사료(新史料)의 제공원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런 관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점차 축적되어 간 방대한 양의 출토자료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자신에게 일정한 시·공간적 질서체계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요구는 통일다민족국가로서 중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와 결합되었다. 때문에 고고문화를 통해 민족을 확인하고, 고고문화 간의 상호관계를 추적하여, 그것을 중화민족으로 융합되어가는 민족 간의 관계로 해석하고자 하는 현실적 동기가 부여되었다.

물론 중국 고고학계에는 고고문화와 민족을 간단하게 연결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자도 폭넓게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것을 엄정한 학술적 자세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본디부터 그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엄정성만으로 문헌기록 속의 민족을 고고문화가 보여주는 물질유존의 시·공간 차원으로 재현할 수 있을까? 연구자의 특정한 시각 하에 잠정적으로 분류된 물질유존의 집합적 명칭인 고고문화와 정치적 실체를 가리키는 민족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개념이며, 따라서 양자를 치환할 수 없다는 것은, 위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한 것처럼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은 역사상 존재하여 왔으며 그들이 상대적으로 일정한 문화 내용을 공유하였을 기회가 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이 상정할 수 있다면, 고고문화와 민족의 경계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해도, 고고문화에서 민족을 읽어 내려는 시도가 전혀 무의미하다고 폄하하는 것이 능사일까? 일찍부터 남겨진 방대한 양의 문헌기록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 해도, 그에 대한 정밀하고 비판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더 사실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고고문화와 민족의 상관

관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은 이제부터 경험적, 이론적으로 더욱 폭넓은 기반을 마련해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국학계에서 암묵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고고문화와 민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시각과 연구경향에 대한 가치판단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 고고학계에서도 고고문화와 민족의 관계를 간단하고 안일하게 처리하려는 자세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하는 연구자들이 있다는 점만은 확인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고고학계의 원로학자 임운(林滙)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고고문화 족속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두 가지 경향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고고문화 그 자체에 대한 연구에는 노력하지 않고 문헌에 보이는 어떤 민족과 (고고문화를) 연계하기에 급급하며, 다시 이 선입견을 가지고 해당 고고문화의 획분(劃分) 연구를 좌우함으로써 고고자료가 반영하는 실제적인 상황과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둘째, 문헌기록의 성립연대와 신뢰성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시대가 분명하지 않고 지역도 분명하지 않은 민족, 심지어는 역사상 실재 존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민족을 이미 알려진 고고문화로 제멋대로 포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¹⁰⁸⁾

108 林滙, 1999, 앞의 논문, 237쪽.

참고문헌

단행본

- 高柄翊 1963,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劉軍社 2003, 『先周文化研究』, 三秦出版社.
文物編輯委員會 編, 1990, 『文物考古工作十年 1979~1989』, 文物出版社.
傅斯年, 2004, 『史學方法導論』, 中國人民大學出版社.
費孝通 주편, 1999, 『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中央民族大學出版社.
徐旭生, 1985, 『中國古史的傳說時代』, 文物出版社, 新一版.
蘇秉琦, 2009, 『中國文明起源新探』, 遼寧人民出版社.
시안 존스, 이준정 · 한진수 역, 2008, 『민족주의와 고고학-과거와 현재의 정체성 만들기』, 사회평론.
吳明春, 1999, 『中國東南土著民族歷史與文化的考古學觀察』, 廈門大學出版社.
王明珂, 2006, 『華夏邊緣-歷史記憶與族群認同』,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요로야마 히로야키, 이용빈 옮김, 2009, 『중화민족의 탄생』, 한울아카데미.
李學勤 · 郭志坤, 2002, 『中國古史尋證』, 上海科技教育出版社.
張天恩, 2004, 『關中商代文化研究』, 文物出版社.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4, 『新中國的考古發現與研究』, 文物出版社.
_____, 2003, 『中國考古學 夏商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_____, 2010, 『中國考古學 新石器時代卷』, 中國社會科學出版社.
編輯委員會, 1986, 『中國大百科全書 考古學』,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6.

논문

- 강인욱, 「區系類型論과 중국동북지방의 고고학」, 『한국고고학보』 제56권.
郭妍利, 2004, 「考古學文化與考古學的族文化」, 『東南文化』 2004年 第1期.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학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제52집.

- _____, 2017,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제96호.
- 金衡鍾, 2001, 「清末 革命派의 排滿論과 五族共和論」, 『中國近現代史研究』 12.
- 노영돈·최영춘, 2014, 「중국의 민족식별사업에 관한 고찰」, 『재외한인연구』 32호.
- 唐際根, 2002, 「考古學, 證史傾向, 民族主義」, 『讀書』 2002年 第1期.
- 洛沙·馮·福爾肯霍森, 陳淳 譯, 1995, 「論中國考古學的編史傾向」, 『文物季刊』 1995年 第2期.
- 李峰, 1991, 「先周文化的內涵及其淵源探討」, 『考古學報』 1991年 第3期.
- 李濟, 1983, 「山西南部汾河流域考古調查」, 『考古』 1983年 第8期.
- 林滢, 1998, 「考古學文化研究的回顧與展望」, 『林滢學術文集』,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 馬賽, 2008, 「考古學文化與族群關係的思考—“先周文化”研究反思」, 『文博』 2008年 第5期.
- 馬洪路, 1984, 「試論青蓮崗文化」, 『考古學集刊』 第4集.
- 박성우, 2013, 「서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고고학—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사림』 제44호.
- 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 2002, 「考古學與中國歷史的重構—爲紀念北京大學考古專業成立五十周年而作」, 『文物』 2002年 第7期.
- 費孝通, 1956, 「開展少數民族地區和與少數民族歷史有關的地區的考古工作—在考古工作會議上的發言」, 『考古通訊』 1956年 第3期.
- 蘇秉琦, 1965, 「關於仰韶文化的若干問題」, 『考古學報』 1965年 第1期.
- _____, 1981, 「建國以來中國考古學的發展」, 『史學史研究』 1981年 第4期.
- _____, 1991, 「關於重建中國史前史的思考」, 『考古』 1991年 第12期.
- _____, 1993, 「迎接中國考古學的新世紀」, 『東南文化』 1993年 第1期.
- 蘇秉琦·殷璋璋, 1981, 「關於考古學文化的區系類型問題」, 『考古』 1981年 第5期.
- 孫進己·孫海, 2003, 「鮮卑考古學文化」, 『內蒙古文物考古』 2003年 第2期.
- 孫華, 1980, 「關於二里頭文化」, 『考古』 1986年 第6期.
- 安志敏, 1999, 「關於考古學文化及命名問題」, 『考古』 1999年 第1期.
- 梁劍韜, 1959, 「我國東南沿海新石器時代的分期和年代探討」, 『考古』 1959年 第9期.

- 嚴文明, 1981, 「龍山文化和龍山時代」, 『文物』1981年 第6期。
- _____, 1985, 「新石器時代考古研究的兩個問題」, 『文物』1985年 第8期。
- 吳汝祚, 1978, 「關於夏文化及其來源初步探索」, 『文物』1978年 第9期。
- 王國維, 1959, 「殷墟卜辭所見先公先王考」, 『觀堂集林』第2冊, 中華書局。
- 王寧生, 2007, 「三談民族考古學」, 『考古』2007年 第4期。
- 王巍 등, 2009, 「中國考古研究60年 1949~2009」, 國家文物局 주편, 『中國考古60年 1949~2009』, 文物出版社。
- 王仁湘, 1999, 「考古學文化的命名原則及程序問題」, 『文物季刊』1999年 第3期。
- 劉觀民, 1990, 「考古學文化與族稱研究的問題」, 『赤峰學院學報(漢文哲學社會科學版)』1990年 第3期。
- 尹盛平, 1998, 「關於先周文化的幾個問題」, 『周秦文化研究』, 陝西人民出版社。
- 李伯謙, 1986, 「二里頭類型的文化性質與族屬問題」, 『文物』1986年 第6期。
- _____, 2008, 「考古學文化的族屬問題」, 『考古學研究』第7輯。
- 이성주, 2011, 「巨視의 觀點에서 본 東北亞 社會文化體系의 變動」, 『동북아역사논총』 33호。
- 이성주, 2015, 「물질문화, 집단의 영역 그리고 종족 정체성」, 『역사 여명기의 종족 정체성과 문헌 및 고고학 자료』, 제42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 요지。
- 張光直, 1999, 「中國相互作用圈與文明的形成」, 『中國考古學論集』, 北京: 三聯書店。
- 張昌平, 2017, 「從五十年到五年—曾國考古探討」, 『江漢文物』2017年 第1期。
- 張忠培, 1994, 「研究考古學文化需要探索的幾個問題」, 『中國考古學: 實踐·理論·方法』,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 _____, 2004, 「民族學與考古學的關係」, 『中國考古學, 走進歷史真實之道』, 科學出版社。
- 張海, 2011, 「中國考古學的歷史主義特徵與傳統」, 『華夏考古』2011年 第4期。
- _____, 「中國考古學的殷墟傳統—早年安陽殷墟的發掘與研究」, 『古代文明』第4卷, 文物出版社, 2005。
- 鄭君雷, 2007, 「文化人類學的族群認同與考古學文化的族屬研究—漢末魏晉河套陰山地方北方民族遺存族屬研究的個案思考」, 『思想戰線』2007年 第4期。
- 趙芝荃, 1996, 「論夏文化起, 止年代的問題」, 『夏文化研究論集』中華書局。

- 趙輝, 1993, 「關於考古學文化和對考古學文化的研究」, 『考古』1993年 第7期.
- 周大鳴, 2001, 「中國民族考古學的形成與考古學的本土化」, 『東南文化』2001年 第3期.
- 朱鳳瀚, 2003, 「論中國考古學與歷史學的關係」, 『歷史研究』2003年 第1期.
- 陳淳, 2006, 「疑古, 考古與古史重建」, 『文史哲』2006年 第6期.
- 鄒衡, 1980, 「關於探索夏文化的方法問題—答方西生同志的質疑」, 『河南文博通訊』1980年 第2期.
- _____, 1980, 「試論夏文化」, 『夏商周考古學論文集』, 文物出版社.
- 馮漢驥, 1961, 「雲南晉寧石寨山出土文物的族屬問題試探」, 『考古』1961年 第9期.
- 夏鼐, 1959, 「關於考古學上文化的定名問題」, 『考古』1959年 第4期.
- 韓建業, 1993, 「什麼是“民族考古學”」, 『東南文化』1993年 第3期.
- _____, 1996, 「中國上古時期三大集團交互關係探討—兼論中國文明的形成」, 『北京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6年 第1期.
- 許永杰, 1993, 「鮮卑遺存的考古學考察」, 『北方文物』1993年 第4期.

고고문화와 민족

—중국학계의 시각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정열

중국 고고학은, 1920년대 서구의 근대 고고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될 때부터, 문헌에 기록된 중국 고대사를 복원하거나 입증하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고고문화와 민족을 연계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그런 사례의 하나로 지목될 수 있다.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민족 개념은 공통의 언어와 지역, 그리고 경제생활과 문화를 영위하는 안정적인 인간공동체이다. 여기에는 일정한 시기와 공간 범위 내에서 공통의 특징을 갖춘 일군의 물질유존을 가리키는 고고문화 개념과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특정 고고문화를 영위하는 인간공동체가 상정될 경우, 이 인간공동체와 고고문화 사이에서 등가관계를 구하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중국은 매우 일찍부터 풍부한 문헌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고문화의 인간공동체를 문헌기록 상의 어떤 특정한 민족과 연계시켜 보려는 생각 역시 이에 뒤따르게 되었다.

중국 고고학의 민족에 대한 관심은 중국의 특수한 학문내·외적 환경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무엇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축적된 방대한 양의 출

토자료는 거기에 일정한 시·공간적 질서를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것은 통일다민족국가로서 중국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와 결합되었다. 거기에서 고고문화를 통해 민족을 확인하고, 고고문화 간의 상호관계를 추적하여, 그것을 ‘중화민족’으로 수렴된 다양한 민족 간의 상호관계로 해석하고자 하는 현실적 동기가 마련되었다.

서구학계는 이와 같은 중국 고고학의 학문적 지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문헌기록 속의 민족을 고고문화가 보여주는 물질유존의 시·공간적 차원으로 재현할 수 없으며, 연구자의 특정한 시각 하에 잠정적으로 분류된 물질유존의 집합적 명칭인 고고문화와 특정한 개념으로 정의되는 민족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양자는 서로 치환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역사상 실재한 인간공동체로 식별할 수 있다면, 고고문화와 민족의 경계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해도, 고고문화에서 민족을 읽어 내려는 시도가 전혀 무의미하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고고문화와 민족의 상관관계에 대한 진지한 모색은 이제부터 경험적, 논리적으로 더욱 폭넓은 논의의 기반을 마련해가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주제어: 중국 고고학, 고고문화, 중화민족, 민족주의, 문헌사학, 증사주의

ABSTRACT

The Archaeological Culture and Ethnicity: A Critical Review on the Perspective of Chinese Scholars

Kim Jungryol

Since the western modern archaeology was earnestly acknowledged in the 1920s, Chinese archaeology has been regarded to have an intention to restore and confirm the Chinese ancient history in literature. It is also an excellent example that chinese archaeologists take an active attitude toward connecting archaeological cultures and ethnic groups.

China's general understanding of a ethnic group is a stable community with common language, geographical location, economic life and culture. This idea of ethnic group overlaps with the concept of archaeological culture, meaning a group of relict materials which have common features in the periodical time and region. Therefore, when the human community owned particular archaeological culture, attempts were made to establish a relation between this human

community and the archaeological culture. Since China had rich literatures from early times, the idea to match the human community of archaeological culture to a particular ethnic group in literature has been maintained.

Chinese archaeology's interest in ethnicity results from specific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 of Chinese intellectuals. First of all, the sheer volume of excavated materials, which have been accumulated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akes it necessary to define certain time and regional order. Further, this situation was combined with the political intention to reestablish the Chinese identity as an unified multination state. By doing so, Chinese archaeology verified the ethnic group through archaeological culture, and traced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archaeological cultures. A practical motive was created to interpret mutual relations among various nations that came together as the Chinese Nation.

The western intellectuals consistently criticized this direction of Chinese archaeological study. The major criticism was that the ethnic group in literature could not reproduce the time and region of relict materials. The ethnic group defined by the particular idea could not fall under the same category with archaeological culture, which is a collective title provisionally categorized with a specific perspective of research, thus the two ideas could not be transposed each other.

Nevertheless, if the ethnic group could be identified in the human community that existed in history, the attempt to discover the ethnic group in the archaeological culture is not a constructive approach, even though the archaeological culture could not be identified within the ethnic group's boundaries. In this view, in-depth research on the

mutual relations between archaeological culture and ethnic group should lay the ground for logical and empirical discussion.

Keyword: Chinese Archaeology, Archaeological Culture, The Chinese Nation, Nationalism, Historiography, Historicism

유럽 선사 및 고대 시기의 민족 과 민족적 경계에 대한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의 검토

김종일 |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물질문화의 경계와 민족 (종족) 그리고 민족적 (종족적) 정체성
- III. 유럽 선사 및 역사고고학의 발달과 민족 (종족) 연구
- IV. 유럽 선사 및 역사 시대 물질문화의 변동과 민족 (종족)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과정고고학과 후기과정고고학의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서구 고고학사에서 1980년대와 1990년대는 치열한 이론적 논쟁의 시기였다. 이 논쟁의 주요 주제는 고고학 연구의 방법과 절차, 물질 자료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시각(권력과 계층화, 젠더 문제를 포함한 정체성 등), 그리고 고고학과 고고학자들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 등을 포함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 199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물질문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과학철학에서 제시된 ANT(Actor Network Theory)에 기반하여 물질 자체를 문화변동과정에서 인간 혹은 개인 수행자(human agency 혹은 individual agent)와 동등한 위치와 역할을 수행하는 또 다른 주체로 파악하려고 시도하는 일종의 신물질문화론(New Materialism)이 널리 논의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지질 고고학, 동물 및 식물 고고학, 원격 및 물리 탐사, 고고유전학 및 생물정보학 등을 포함하는 자연 과학적 방법의 활발한 적용과 더불어 자연과학 및 사회 과학 등과의 학제 간 연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더하여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근대 고고학의 등장과 함께 오랜 연구의 주제였으나 1960년대 이래 그리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민족(nation) 혹은 종족(ethnic group)과 민족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 혹은 종족적 정체성(ethnicity 또는 ethnic identity)의 주제가 1990년대 이후 다시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초반 구스타프 코시나(Gustaf Kossinna)와 고든 차일드(Gordon Childe)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 고고학의 성립 이래 고고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사였던 민족(혹은 종족)의 형성, 이주와 전파, 그리고 지역 고고학의 관점에서 세계 각지의 지역별 물질문화

* 투고: 2018년 8월 13일, 심사 완료: 2018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18년 11월 16일

의 변동에 대한 연구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고환경의 복원과 그러한 환경에 적응 과정 혹은 적응 체계에 관심을 가졌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문화 및 사회 변동과정에서 물질문화와 개인 주체와의 관계와 역할에 대해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경향에 더하여 소위 세계 고고학(world archaeology)에 대한 새로운 강조와 제3세계 고고학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기존의 영미 고고학 위주의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종래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물질문화와 민족 혹은 종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앞선 시기의 연구 성과가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는 점 외에 고고학 자체의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고유전학의 발달에 따라 유전체 분석을 통한 인류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확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연구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유럽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민족적 혹은 종교적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이에 따른 디아스포라 문제와 과거에 대한 역사적 해석의 문제 등이 첨예한 이슈로 등장하는 현실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역사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북 통일과 탈북 및 외국 이주민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한국에서 이러한 민족(혹은 종족)의 정체성 문제 그리고 이주와 전파의 문제 등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의 문제와 사회적 고민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고고학 역시 이러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물질문화의 분석을 통해 오랜 동안 이러한 문제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고고학 분야의 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은 물질문화 연구라는 학문 내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의 과제와 사회적 고민을 해결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서구 고고학계 내에서의 민족(혹은 종족)

의 형성과 정체성, 민족(혹은 종족)의 경계, 이주와 전파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온 물질문화(material culture)와 정체성(identity), 에이전시(agency), 스타일(style), 이주(migration)와 전파(diffusion), 경계(boundary), 변경(border), 개척지(frontier)와 영역(territory) 등의 여러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이러한 개념들에 기반하여 연구가 진행된 여러 사례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인 고대 그리스의 식민지화와 이주, 고대 로마의 변경과 켈트, 그리고 앵글로 색슨과 대이주 등을 중심으로 실제 자료를 검토하고 이러한 검토 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 선사 및 고대사 연구에서 민족과 민족적 경계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물질문화의 경계와 민족(종족)¹ 그리고 민족적(종족적) 정체성

고고학에서 민족(종족)과 민족(종족)적 경계에 대한 관심은 이미 근대 고고학의 성립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혹은 종족 그리고 민족과 종족의 공간적 경계의 개념과 정의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1 일반적으로 민족은 nation의 번역어로 그리고 종족은 ethnic group의 번역어로 사용된다. 양자 모두 혈연에 기반을 둔 주민 집단을 일컫는 용어이지만 대체로 민족이 근대국가 성립 이후의 국가 혹은 이에 버금가는 규모가 큰 공동체의 주민 집단을, 그리고 후자는 이보다는 국가 성립 이전의 훨씬 규모가 작거나 혹은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 내에서 소수의 주민 집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러한 양자의 구분도 엄격한 기준이나 정의에 따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사 및 고대 사회에서 존재해 온 여러 인간 집단에 대해 민족이나 종족 가운데 어느 하나의 용어를 취사선택하여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념상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종과 같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 양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염두에 두고 이 두 용어를 병기하고자 한다. 이는 근대 민족국가 성립 이후 민족주의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근대적 민족 개념이 과거의 종족과 민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민 집단에 투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고고학 연구(특히 한국의 고고학 연구)에서 적용되어 온 민족이나 종족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근대 이후에 형성되어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온 의미와 정의가 비판적 검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러한 개념들과 물질문화의 공간적 관계 즉, 민족과 종족을 대표한다고 여겨져 온 물질문화의 공간적 분포와 경계, 특히 경계 자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고민과 연구 역시 경계가 갖는 한 측면, 즉 차이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민족 및 종족의 의미와 정의, 그리고 경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진행된 민족(종족) 그리고 그 경계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민족의 개념과 정의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와 개념 가운데 하나인 ‘민족’은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시기에 따른 의미의 차이가 민족이라는 용어를 이해할 때 혼선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최근의 연구²에 따르면, 원래 민족은 서양의 ‘nation’ 또는 ‘Volk’를 번역한 용어인데 nation은 프랑스어로 민족, 국가, 국민을 의미하여 혈연을 가리키는 라틴어 ‘natio’에서 기원하였고 따라서 원래 혈연관계에 기초를 둔 하나의 혈연집단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후 중세시기에 특정 촌락에 거주하는 동일 씨족혈연집단을 의미하기도 하였으며 근세 초기에는 귀족과 젠트리 혹은 부농을 포함하는 특권계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프랑스 혁명기 이후에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정치적 이념을 공유한 사람들에 의한 계약 혹은 합의 공동체의 성격을 갖게 되며,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들에 의해 공유되는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형성되며 따라서 하나의 이념 공동체로서 민

2 박찬승, 2010, 『민족·민족주의』, 천화, 27~41쪽.

족은 국가와 동일시되는데 여기에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성하는 위대한 인물들과 영광스러운 과거들이 하나의 자산으로 그리고 정신적인 원리로 작동한다고 한다. 이에 반해 volk는 일반 민중을 가리키는 독일어였는데 19세기에 들어와 공통의 언어를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일종의 문화 공동체를 의미하였다고 한다. 즉 nation이 일종의 정치 공동체를 의미한다면, volk는 문화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한다. 민족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언어나 관습 등 객관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입장과 주관적 의식을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서구에서 민족의 형성 시기를 두고 근대 시기 민족주의의 발달과 함께 등장하였다는 입장과 근대 이전에 소위 ethnic group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의 토대를 이루는 일종의 원형이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뉘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선사시대 연구를 포함하는 고고학 연구에서 후술할 구스타프 코시나의 경우와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민족을 언급할 때 volk의 개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고고학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18세기 혹은 19세기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nation의 개념에 기반을 둔 소위 민족주의의 등장과 함께 영광스러운 과거가 강조되고 이에 따른 고고학 연구가 강조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에서조차 혈연공동체, 즉 nation으로서의 민족이 아니라 일종의 지역공동체 혹은 문화공동체로서의 volk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적어도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을 거치는 동안 강한 혈연적 유대와 함께 불교나 유교와 같은 동일한 이념의 공유, 그에 따른 정치적 이념이나 언어와 관습 등 많은 문화 요소의 공유, 그리고 공통된 역사적 경험 등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nation과 volk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의 사례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 주목된다. 물론 민족의 형성 시기를 중세 혹은 근대 시기로 볼 경우, 민족이 아닌 준민족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민족 개념을 삼국시대 이전 시기, 즉 선사시대로 소급 적용하면서, 공히 민족으로 번역될 수 있는 nation과 volk 가운데, 특히 nation과 관련이 있는 민족 개념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

시기의 연구에서 nation에 기반한 민족 외에 volk의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다.

2. 고고학에서의 경계의 의미와 중요성

고고학 연구에서 특정한 물질 자료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고 이러한 공간적 분포에서 고든 차일드가 말하는 형식 화석(type)의 존재 유무, 혹은 유물 복합체(assemblage) 및 문화(culture)에서 대체로 특정한 형식들 혹은 그 형식의 물질적 표현인 특정 형식의 유물들의 조합상의 차이를 근거로 선으로 표현되는 일종의 경계를 짓게 된다. 이러한 경계는 경우에 따라 단순히 유물 혹은 유물복합체 또는 문화권과 같은 문화의 등질적 분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대 로마나 중국에서처럼 정치체의 공간적 경계 혹은 근대 민족 국가의 예에서처럼 국경선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후자의 인식은 역으로 선사시대의 경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쳐 마치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경계 혹은 국경이 선사 및 고대 시기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계에 대한 인식은 개념과 정의의 측면뿐만 아니라 경계의 실제 사례에서 그리고 그러한 개념과 정의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개념 및 정의의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의 연구³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경계라고 통칭하는 의미의 범주에는 선으로 표현되며 뚜렷이 구분되는 동시에 내부 및 중심 지향적인 경계(boundary)(그림 1 참조), 중심 지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일정한 지역 혹은 구역(zone)인 동시에 중심지와 이 지역 및 구역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즉 내부를 강조하는 접경 지역(border), 일정한 지역이나 구역이면서 원심력과 외부로의 지향을 강조하는 변

3 B. Feuer, 2016, Boundaries, Borders and Frontiers in Archaeology—A Study of Spatial Relationships—, Jefferson, North Carolina: Ma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경(Frontier), 그리고 경계의 범주에 일정한 지역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를 강조하는 영역(territory) 등을 포함한다고 한다(그림 2 참조). 따라서 경계는 상대적으로 (단위들 간의) 분리를 그리고 변경은 (단위들 사이의) 통합을 강조하게 된다. 즉 경계는 어느 하나를 다른 하나로부터 분리하는 동시에 우리를 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러한 경계는 자연 경계와 같은 물리적 경계에서부터 상징적 경계나 관념적 경계와 같은 사회적 경계 등 다양한 층위에서 설정될 수 있으며 민족(혹은 종족)적 경계는 사회적 경계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내부적 통합 및 통제의 정도, 그리고 경계가 갖는 구분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선사시대의 부족 혹은 종족의 경계는 통합의 정도와 구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국가 단계에 들어서면 그 정도와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고 한다. 접경지역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중심지의 경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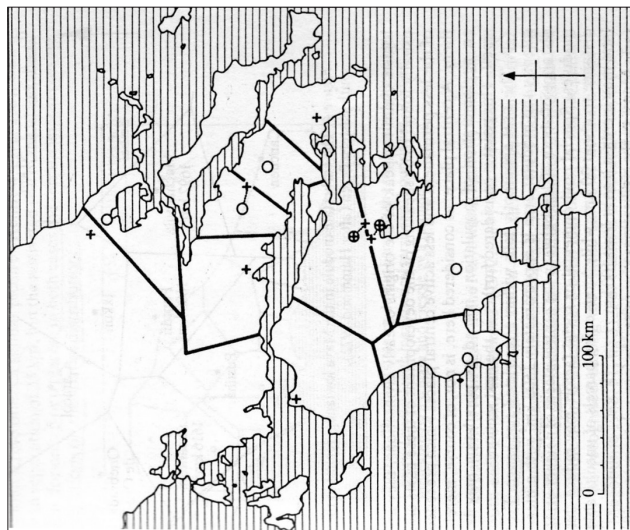


그림 1 고고학 연구에서 티센 폴리곤을 통한 경계 설정의 일 사례
(Rentrew 1084: 96)

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통제가 가능한 지역적 범위에까지 위치한 정주집단들의 구역을 의미하기도 반면에 변경(혹은 프론티어)는 둘레의 접경 지역 너머의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변경 혹은 프론티어의 사용 예를 보면 새로운 영역으로의 주거지의 확산이 일어나는 구역을 가리키거나 두 개의 사회 사이에 상호 접촉을 하는 구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계라고 불리는 대상에는 적어도 선으로 표현되는 경계와 둘레 구역 그리고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고학 연구에서 선으로 표현되는 경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개념의 측면에서 고고학 연구에서 경계를 설정하거나 경계에 대해

논할 때 경계의 범주에 속한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으로 표현되는 좁은 의미의 경계만을 고려하는 경우, 보다 넓은 의미의 경계 혹은 그러한 경계의 설정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좁은 의미의 경계의 경우, 대체로 중심지가 강조가 되고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특히 선으로 표현되는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은 단순히 주변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 미케네 문화 지역에서 원 기호로 표현되는 궁전지와 십자가 기호로 표시되는 요새, 그리고 이러한 궁전지와 요새들 사이에 티센 폴리곤을 설정하여 경계와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이 경우, 중심지로 인식되는 궁전지와 요새가 중요시되는 것에 반해 중심지역에서 떨어진 지역일수록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주변지역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실제로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접촉, 물자의 교환과 교역이 이러한 경계 지역에서 행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중심지에서만 실제적인 문화 변동이 일어나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계지역에서도 문화의 교류나 접촉 그리고 물자의 교역과 교환 다양한 과정을 거쳐 문화 변동이 일어나고 이러한 문화 변동 과정이 중심지에 파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외에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록 중심지와 주변지역으로 구분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은 중심지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동일한 문화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특정한 경계 안의 지역과 경계 밖의 지역은 매우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통제권에 속하며 문화적 전통을 달리 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영토 혹은 영역에 대한 강조가 특히 두드러졌던 고대의 제국이나 영토와 인구에 대한 법적 통제가 확실히 가능하게 되는 근대 국가의 성립 이후에 보다 확실하게 확인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선사시대 사회의 경우, 양자의 차이가 뚜렷이 구분되는 경계의 설정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사회가 동질적인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3. 경계와 문화 변동

만약 중요한 문화 변동이 중심지뿐만 아니라 경계 혹은 경계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문화변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연구가 바로 유럽 신석기 시대 초기 농경의 확산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유럽 내 농경의 확산과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카발리-스포자 등이 제시한 ‘파동형 확산 모델(wave of advance)’, 크룩(Kruk)이 제시한 후알렉산더와 덴빌이 수정 보완한 ‘변경 개척지 모델(Frontier model)’, 그리고 이를 더욱 발전시킨 즈베레빌(M. Zvelevil)과 롤리-콘위(P. Rowley-Conwy)가 제시한 ‘이용가능성 모델(The availability model)’ 등이 있다.⁴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파동형 확산 모델에서는 농경이 중심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간다는 주장이며 변경 개척지 모델에서는 농경의 확산이 농경에 적합한 지역을 찾아 확장과 중지를 반복하는 ‘stop-and-start process’에 의한 매우 역동적이면서 동시에 복잡한 과정이며, 특히 농경 이주민과 수렵채집 사회와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농경화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즈베레빌과 롤리-콘위의 이용가능성 모델에서는 삶의 한 방식으로서 농경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농경에 의한 수렵채집 경제가 장기간에 걸쳐 완성된 변화라는 전제 아래 변경, 즉 프론티어(the frontier)를 단순히 채집-농경 사회 간의 접촉을 표현하는 하나의 선(the line)으로 보는 대신 일종의 전체 지역(the entire zone)으로 보며, 이러한 지역(또는 전환의 단계)은 그 지역 내에서 농경과 비농경 요소의 관계와 농경의 집약화 정도에 따라 다시 채집인들이 농경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 농경을 채용하지는 않는 이용가능성 단계

4 김종일, 2004, 「유럽의 농업 기원과 농업 공동체의 확산」, 『한국신석기학보』 7 참조.

(the availability phase)와 몇몇 농경의 요소가 수렵채집인들에게 채용되거나 농경민들이 수렵채집인들 사이로 진출하는 대체 단계(the substitution phase), 그리고 농경으로의 전환이 마무리되는 공고화 단계(the consolidation phase)로 구분된다고 한다.

이러한 유럽 내 농경의 확산 과정에 대한 연구는 경계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문화교류 및 접촉과 물자의 교환과 교역,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방식마저도 변화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이 대체적인 농경의 확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농경민과 수렵채집민 사이의 다양한 관계와 이에 따른 물질문화의 변동 과정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앞서 언급한 프론티어 모델에서 농경민과 수렵채집민이 접촉하여 몇 세대 안에 수렵채집민이 농경민화하는 경우나 이미 어느 정도 농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수렵채집민이 농경을 받아들이는 경우, 그리고 수렵채집민과 관련 없이 농경민의 이주에 의해 농경이 시작되는 경우 등의 사례가 제시된 바 있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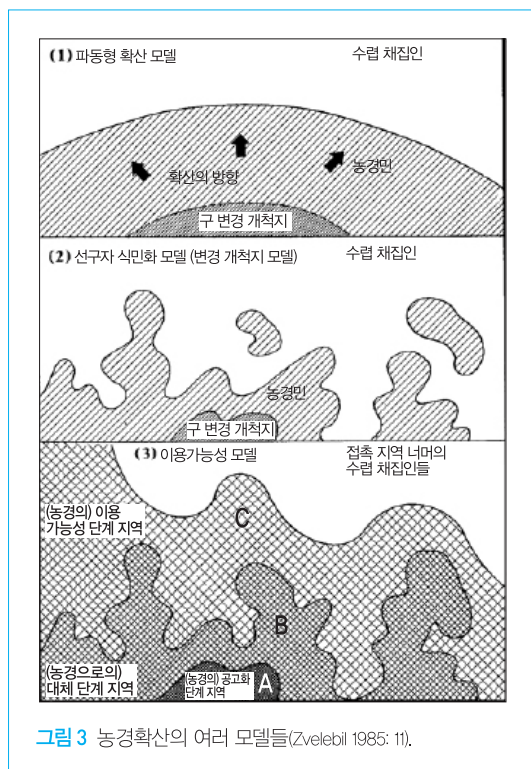
물질문화의 수용과 확산이 일어나는 대신 그 반대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즉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양 집단이 물질문화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경계를 보다 선명히 드러내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 혹은 경계라고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물질문화의 수용과 확산이라는 과정의 틀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⁶

한편 물질문화의 수용과 확산은 크게 문화변용과 문화동화, 그리고 문화접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⁷ 즉 문화변용은 어느 한 집단이 이주 집단을 포함하는 다른 집단의 물질문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물질문화를 포기하는 경우

5 김종일, 2004, 위의 글 참조.

6 김종일, 2010, 「고고학에서 이주의 개념과 물질문화의 변이-개념 및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13~14쪽.

7 김종일, 2017,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6 참조.



에 해당하고 문화동화는 이주 집단을 포함하는 어느 한 집단의 물질문화가 다른 집단의 그것에 흡수되는 경우이며 문화접변은 양 집단 간의 문화가 융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물질문화를 만들어 내는 경우에 해당한다.⁸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물질문화의 유지와 변동 과정은 단순히 힘의 크기 차이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물질) 문화변동은 양 집단의 역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이 다차원적으로 개입된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힘의 측면에서 압도하는 경우, 압도당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물질문화를 차용해 갔을

8 I. Rouse, 1986, *Migrations in Prehistory: Inferring Population Movement from Cultural Remains*,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pp.3~13.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힘이 큰 집단이 반대로 힘이 약한 집단의 물질문화를 의도적 목적, 또는 비의도적 행위의 결과로, 그리고 특정한 목적이 암묵적으로 전제된 상징적 차원에서 행위를 통해 차용할 수도 있다. 이렇듯 경계 지역에서 나타나는 문화변동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며 따라서 양자의 차이만을 강조하는 선으로 표현되는 경계 외에 지역이나 구역으로 표현되는 접경이나 변경,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변동의 양상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Ⅲ. 유럽 선사 및 역사고고학의 발달과 민족(종족) 연구⁹⁾

유럽에서 근대 민족주의 혹은 민족국가의 성립과 함께 그들의 조상들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 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즉 선사 및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여러 ‘민족’의 기원과 그들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관심이 근대 고고학이 시작될 수 있었던 하나의 동인이면서 동시에 근대 고고학의 주요 방법론이 마련되는 주요 토대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근대 고고학의 시작과 함께 주요 방법론으로 등장한 문화사 고고학이 바로 이러한 민족과 민족적 경계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근대 고고학의 시작은 삼시기법에 의한 시기 구분과 이에 따른 유물의 분류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물질의 재료에 따른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고대시기부터 인지되고 있었다.

9 이 장의 주요 내용은 필자가 이미 발표했던 기존의 논문과 발표문들 가운데 이 논문의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발췌 요약하는 동시에 대폭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보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필자의 논문과 발표문을 참조하길 바란다. 김종일,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 김종일, 2014, 「유럽 내 철기시대의 개념과 시기 구분」, 『중부고고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발표요지』, 중부고고학회; 김종일, 2017,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6.

10 김종일, 2008, 위의 글 및 2017, 위의 글 참조.

이러한 재질에 따른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인식은 이후 삼시기 구분법(Three Age system)에 따른 분류 방식의 토대가 된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재질(석기, 청동기, 철기)에 따라 특정 유물들을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유물들과 같이 공반된 유물들의 시간적 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왜냐하면 특정한 유물이 단독으로 출토되는 경우 외에 각각 다양한 형식을 갖거나 다른 재질의 유물들(예를 들면 청동기와 석기가 같은 무덤에서 출토되거나 철기가 청동기와 같이 출토되는 경우)이 같이 출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재질의 유물 즉 같은 석재 유물이라 하더라도 석기시대의 석기인지 청동기 시대의 석기인지 그리고 청동기의 경우, 청동기시대 청동기인지 아니면 철기시대 청동기인지 유물 자체로만 판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었다. 사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물들이 함께 공반되는 유적의 양이 충분하여 그 조합 관계의 변화의 패턴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같은 재질의 유물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유물들의 형태상 특징과 그러한 특징들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어야 했다.

1. 근대 고고학의 등장과 민족(종족) 그리고 경계

이러한 전제 조건 혹은 작업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덴마크의 톰센(C. J. Thomsen, 1788~1865)이었다. 나폴레옹의 등장 이후 나폴레옹과 프랑스 군대에 의해 패퇴를 거듭하고 있던 여러 중소 국가들은 프랑스부터 계몽주의와 함께 민족주의의 영향을 받아 자민족과 자기 영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된다. 즉 자기 영토 안에 자신들의 조상이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었고 따라서 먼 과거의 조상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선사 및 고대 시기의 고고학 유물들이 박물관 등지에 수집되고 있었다. 한편 상인 계층 출신으로 당시 유행하였던 옛 동전 수집이 취미였던 톰센은 유물에 대해 객관적 태도와 세밀한 관찰을 통해 이러한 동전의 형태가 시간에 따라 변해 간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따

라서 톰센이 박물관 측의 부탁으로 비록 무보수이기는 했지만 당시의 민족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덴마크 각지에서 수집되어 박물관 등에 보관중인 많은 유물들의 분류와 전시를 담당했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톰센은 한 유적에서 함께 출토된 공반유물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유물의 재질에 따라 석기와 청동기, 그리고 철기로 구분하는 것 외에 유물의 종류, 즉 예를 들어 칼, 도끼, 핀, 브로치 등의 범주를 구분하고 다시 이러한 범주 안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과 양식으로 볼릴 수 있는 보다 세밀한 형태의 구분을 시도하였다.¹¹ 이러한 톰센의 시기에 따른 유물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박물관에서 유물들을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실제적인 필요에서 고안된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방법론적으로는 일종의 순서배열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물들의 공반 관계와 유물복합체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이러한 유물복합체의 순서 배열을 통해 지역 간 교차 편년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지역적 차이와 시간적 차이를 규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톰센의 조수로서 이러한 분류체계를 배웠으며 후일 최초로 코펜하겐대학교 고학 교수로 임명되는 보르소(Worsaae, 1821~1885), 역시 비록 형식이나 형식 분류의 개념을 구체화하거나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유물들의 공반 관계, 즉 유물복합체를 중시하는 동시에 석기시대 안에 다시 세분된 시기 구분을 시도하는 등 삼시기 구분법을 보강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톰센과 본인이 발전시킨 삼시기 구분법에 의한 편년 체계를 덴마크를 포함한 북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확대하고자 시도하였다.¹² 다만 영국에는 이러한 삼시

11 김종일, 2017, 앞의 글 참조; B. Gräslund, 1987, *The Birth of Prehistoric Chr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7~29; B. Trigger, 1989, *The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3~80.

12 B. Gräslund, 1987, 앞의 글, pp.34~38; B. Trigger, 1989, 앞의 글, pp.80~86.

기 구분법이 적극적으로 소개되어 적용되지 않은 점이 주목된다. 예를 들어 영국의 연구자들은 토기 형태를 기준으로 피터버러 문화(신석기 전기-중기), 윈드밀 힐 문화(신석기 중기) 등 독자적인 편년 체계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오스카 몬텔리우스(Osca Montelius, 1843~1921)는 토클센이나 보르소와 마찬가지로 유물의 공반 관계를 중시하면서 유럽의 각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다시 각각의 개별 종류로 분류된 유물들의 형태적 특징을 다시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배열하되, 유물의 형태의 변이가 진화의 과정, 특히 자연선택의 과정일 수 있음을 암묵적으로 전제하였다. 이렇듯 유물 형식의 시간적 변이에 따른 차이를 중시하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특정한 종류와 형태의 유물들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즉 유물의 공간적 분포에 따른 차이에도 관심을 두었다.¹³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파론에 입각하여 특정 형식의 유물들(특히 금속기)이 중근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특정한 유물복합체를 역사 사료에 등장하는 특정한 집단과 관련짓고자 했는데 이는 특정한 유물복합체를 특정 민족 집단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문화사 고고학의 방법론적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⁴ 이러한 몬텔리우스의 시각은 토기에 대한 형식 분류를 최초로 시도한 영국의 아버크롬비(J. Abercromby, 1841~1924)가 벨 비커 문화와 벨 비커인(Beaker Folk)을 관련 지어 설명하고자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¹⁵ 뒤에서 다시 언

13 O. Montelius, 1885(Gräslund Trans, 1986), *Dating in the Bronze Age with special reference to Scandinavia*, With an introduction by Bo Gräslund, Stockholm, pp.66~67; O. Montelius, 1903, *Die ältere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Stockholm: K. L Beckmans Buchdruckerei, pp.17~21.

14 G. Daniel, 1977, *150 years of Archaeology* (2nd ed.), London: Duckworkth, pp.42~43와 pp.241~251 참조.

15 J. Abercromby, 1904, A proposed chronological arrangement of the drinking cup or Beaker class of fictilia in Britain,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Antiquaries of Scotland* 45; J. Abercromby, 1912, *A study of the Bronze Age Potter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its associated Grave*

급하겠지만 신석기 말기의 벨 비커가 스페인을 포함한 이베리아 반도 및 대서양 연안에서 기원하였으며 이후 이 지역으로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확산은 벨 비커인들의 이동에 의해 가능하였다고 하는 가설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이러한 가설은 1970년대 이후 과정고고학의 등장과 함께 벨 비커 문화의 확산은 인간의 이주와 확산이 아닌 위세품(Prestige goods)과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의 확산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가설이 데이비드 클라크와 스티븐 쉐넌 등에 의해 제시되기 전까지 가장 유력한 가설로 받아들여져 왔다.¹⁶

몬텔리우스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한스 힐데브란트(H. Hildebrand, 1842~1913)는 1870년대 유럽고고학에서 형식(type)과 형식학(typology)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인물로 특히 할슈타트와 라 텐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각각 중부 및 북부 유럽 자체의 청동기 시대 말기와 철기시대 초기의 유적으로 비정하였다. 또한 특정한 유적의 이름을 따서 그 유물로 대표되는 특정 시기 그리고 특정 지역의 문화의 이름을 명명하는 전통, 즉 할슈타트나 라 텐이라는 유적 명을 편년과 문화 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¹⁷ 이를 통해 유럽 내 선로마시기의 철기 문화에 대한 보다 확실하고 체계화된 증거와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삼시기 구분법과 형식 설정 및 형식 분류가 단순히 편년 설정을 위한 기준이 아닌 그 자체가 시공간적으로 의미를 갖는 하나의 문화적 실체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또한 특정한 유적이 이와 유사한 유물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유적을 개념의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대표할 수 있

goods, Vol.1, Oxford: The Clarendon Press 참조.

- 16 최근에는 고고유전학의 성과에 힘입어 영국의 벨 비커인들이 유럽 대륙 지역에서 이주해 왔음을 주장하는 가설이 제시되고 있으며 쿠르간 가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이전 시기의 승문토기 문화(Corded Ware Culture)인 역시 멀리 흑해 연안의 Yamnaya 문화인들의 이동에 의해 성립했다는 기존의 가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e.g. S. Shennan, 2018, *First farmers i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참조).
- 17 J. Collis, 1984, *The European Iron Age*, Batsford: B. T. Batsford LTD.; B. Gräslund, 1987, 앞의 글. 참조.

다는 인식, 즉 시공간적 경계를 갖는 실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록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연 선택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적 시각에 영향을 받은 삼시기법과 형식학적 연구 외에 일종의 사회 진화론과 인류학 혹은 민족지 연구의 영향을 받은 경향의 연구가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던 삼시기 구분법이 영국에서는 그다지 환영 받지 못한 대신 당시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인류학 및 민족지 연구 성과 그리고 이를 ‘세계의 공장’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세계사에서 가장 앞선 선진국이자 근대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자부심을 토대로 자신들의 사회를 기준으로 다른 여타 사회의 진화 및 발전 단계를 순서 지우려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흔히 서구 근대 고고학을 논할 때 고고학 연구 성과의 첫 번째 종합(first synthesis)이라고 평가되는 존 러복(J. Lubbock, 1834~1913)의 『고대의 유적과 현대 야만인들의 관습과 양식들로 보는 선사시대』(Pre-historic times, as Illustrated by Ancient Remains, and the Manners and Customs of Modern Savages)¹⁸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구석기-신석기-청동기-철기 시대의 시대 구분 틀 아래 각각의 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을 소개하는 동시에 현재의 원시사회가 선사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는 전제와 함께 먼 과거에 존재했을 ‘원시사회’를 현재의 민족지 사례와 비교하여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견해의 이면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적 진보가 사회의 변화를 대변한다는 (사회)진화론적 사고와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가 가장 선진적인 사회라는 자부심, 그리고 지질학자인 라이엘(C. Lyell, 1797~1875)이 체계적으로 제시한 바 있는 소위 동일과정 반복의 법칙(Uniformitarianism)에 근거하여 ‘원시 사회’와 그들의 먼 과거 속의 사

18 J. Lubbock, 1865, *Pre - Historic Times, As Illustrated by Ancient Remains and the Manners and Customs of Modern Savages*, London: Williams & Northgate.

회를 등치시키려는 일종의 제국주의적인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사회 혹은 문화) 진화론적 접근은 19세기 말에 들어오면서 지지않는 해라고 불리던 대영제국이 더 이상 제국으로서 그 위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과 더불어 기술적 진보에 대한 회의(예를 들어 산업혁명의 여파로 나타나는 사회적 빈부격차의 증대와 도시의 슬럼화, 그리고 전통적 경관의 파괴 등)로 인해 점차 지지를 상실하면서 세계사의 중심에 유럽이 존재한다는 유럽 중심주의적 사고에 전환이 일어난다. 비록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나폴레옹 3세의 로마에 대항하는 켈트, 즉 골족(Gaul)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조와 비브라кте(Bibracte)로 대표되는 켈트 유적의 발굴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추구되고 있던 민족주의적 분위기의 강화와 함께 일종의 전파론적 시각에서 유럽 문명의 기원(농업의 기원, 금속기의 사용 등)을 유럽 외의 지역, 특히 중근동 지역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다시 한 번 이루어진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사고의 이면에는 오래된 성경적 세계관, 즉 에덴 동산과 노아의 방주로 대표되는 인류의 기원과 문명의 시작이 중근동 지역에서 시작된다는 시각과 함께 자신들의 중근동 지역으로의 제국주의적 진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편 19세기 중부유럽에서 계속적인 건설작업을 통해 수집된 엄청난 양의 고고학적 유적 유물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민족(종족) 집단이 이 유물들을 사용했을 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금 존재하고 있는 민족국가의 기원(또는 그들의 조상)을 이 물질 기록을 통해 찾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물질문화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기술적 진보가 아닌 특정한 민족(종족) 집단의 독특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민족사적 관심에서 유물, 유적의 지역적 분포를 역사적 실체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¹⁹ 이를 통해 문화사 고고학의 주요 방법론인 형식 분류와 함께 유물(혹은 유물 복합체)과 특정한 민족(종족) 집단을 연결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러한 민족주의적 분위기 안에서 등장했음을 짐

19 S. Jone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London: Routledge, pp.15~39; B. Trigger, 1989, 앞의 글, pp.162~163.

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물 유적의 지역적 분포를 고고학적 문화로 명명하는 동시에 이를 특정한 민족 혹은 민족적 경계와 관련 지어 설명하려는 노력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원래 ‘문화(culture)’의 개념은 농업의 자취를 의미하는 프랑스어에서 시작하여 개개 사회의 농민들의 변화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의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는 ‘문화권’의 개념은 인류학이나 지리학 등의 인접학문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폭넓게 논의된 바 있다.²⁰ 예를 들어,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F. Ratzel, 1844~1901)은 하나의 기술적 발명은 다원적 기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한 지역에서 등장하여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문화권을 형성하였고 따라서 그 확산과정과 문화권을 추적하면 발명의 기원지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²¹ 독일 출신의 미국 인류학자인 보아스(F. Boas, 1858~1942)는 각 문화는 그 자체 고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문화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적 입장에서 각각의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척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각의 문화는 각자 발전의 길이 있으며 그러한 문화의 전파와 확산 과정이 중요하다는 역사적 개체주의(historical particularism)를 주장한 바 있다.²² 이러한 견해와 더불어 고고학의 문화 개념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견해는 비엔나 학파의 견해이다. 그레브너(F. Graebner, 1877~1934)와 슈미트(W. Schmidt, 1868~1954)로 대표되는 비엔나 학파에서는 라첼의 견해에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동질적이고 통합적인 문화복합체를 문화권(Kulturkreis)으로 정의하고 일련의 문화는 단일한 기원

20 G. Daniel, 1975, 앞의 글, pp.241~251; C. F. Meinander, 1981, The concept of culture in European archaeological literature, In G. Daniel, 1981, *Towards a History of Archaeology*, London: Thames and Hudson, pp.100~111.

21 F. Ratzel, (A. J. Butler, trans.) 1896, *The History of Mankind*, London: Macmillan, pp.ix ~x.

22 F. Boas, 1920, The Methods of Ethn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22, pp.312~314.

지로부터 확산한 것으로 파악하며 이는 인간의 이주와 확산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농경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하여 전 지역으로 확산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²³ 이러한 주장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고학 내에서 유물 형태의 변이에 대한 진화론적 시각과 더불어 특정 유적의 이름을 그 유적과 공통된 특징을 공유한 전체 유적을 대표하는 시대(편년) 혹은 문화의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몬텔리우스나 힐데브란트의 입장,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등장하는 구스타프 코시나와 고든 차일드가 제시한(고고학적) 문화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독일의 코시나(Gustaf Kossinna, 1858~1931)는 베를린대학 고고학 교수로서 인도 유럽어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고고학을 애국적 학문으로 보았고 고대 게르만(그리고 아리안족)의 기원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였다. 코시나는 금발과 푸른 눈을 가진 아리안 족이 거석 문화와 함께 북유럽에서 기원하여 남쪽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점차 원래의 모습을 잃어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차일드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지는데, 코시나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게 된 배경으로 그가 원래 언어의 기원과 계보를 추적하는 작업을 매우 중시했던 언어학(혹은 문헌학) 전공자였다는 점과 당시 고전 고고학이나 중근동 고고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있던 선사 고고학 담당 교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가 비록 베를린대학 교수였지만 실제로는 정식으로 급료를 받지 못하는 무급 교수였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준다. 한편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그의 연구가 나치즘의 인종차별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가 당시로서는 매우 독창적이면서 혁신적이었던 점만은 사실이다. 그에 따르면 물질문화에서 유사성 내지 상사성이 민족성(종족성)을 반영하며 이러한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그대로 보여주는 주거지 유적이라고 한다. 또한 그는 유럽에서 다양한 선사시대 유물의 조합의 차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화 집단의 대

23 F. Graebner, 1911, *Die Methode der Ethnologie*, Heidelberg, pp.125~150.

체와 그리고 그것에 근거한 문화의 모자이크로 파악되며 결국 문화권은 민족(혹은 종족)의 영역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²⁴

주지하다시피 근대 고고학의 방법론을 정립한 차일드(V. Gordon Childe, 1892~1957)는 (고고학적) 문화 개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분석의 최소단위인 속성(attribute)과 그 속성들의 관념적인 결합체인 형식(type), 그리고 특정한 형식을 가진 유물들이 반복적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유물복합체(assemblage), 그리고 유물복합체가 공간에서 일정한 범위를 가질 때

- 24 D. Anthony, 1995, Nazi and eco-feminist prehistories: ideology and empiricism in Indo-European archaeology, In P. Kohl, and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91; B. Arnold, 1990, "The Past as Propaganda: Totalitarian Archaeology in Nazi Germany," *Antiquity* 64, Vol. 244, pp.464~466; B. Arnold and H. Hassmann, 1995, Archaeology in Nazi Germany: the legacy of the Faustian bargain, In P. Kohl, and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1~72; S. Jones, 1997, 앞의 글, p.16; G. Kossack, 1999, *Prähistorische Archäologie in Deutschland im Wandel der geistigen und politischen Situation*, München: Verlag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p.41~42; G. Kossinna, 1920, *Die Herkunft der Germanen - Zur Methode der Siedlungsarchäologie*, Leipzig: Verlag von Curt Koblitzsch, pp.1~4; G. Kossinna, 1941, *Die Deutsche Vorgeschichte - eine hervorragend nationale Wissenschaft*, Verlag Leipzig, pp.1~5; S. Lucy, 2005, Ethnic and cultural identities, In Diaz-Andreu M. ed., *The Archaeology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pp.87~89; U. Veit, 1994, Ethnic concepts in German prehistory: a cas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archaeological objectivity, In S. Shennan, 1994,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Identity*, London: Routledge, pp.35~42; U. Veit, 2000, Gustaf Kossinna and his concept of a national archaeology, In H. Härke, 2000,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 - 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pp.40~53; I. Wiwjorra, 1996, German archae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nationalism and racism, In M. Diaz-Andreu, and T. Champion, 1996,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London: UCL Press, pp.173~177.

소위 문화(culture)를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문화가 민족(혹은 종족)집단과 연결이 될 때 문화복합체(Cultural Complex)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문화의 특징적인 지표로 ‘형식화석’(type fossils)을 들고 있다. 예를 들어 암모나이트를 통해 그 층위의 시기를 판별할 수 있듯이 하나의 지질학적 층위의 연대를 그 층위에서 나온 특정한 종의 생물 화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고고학적 문화 역시 그 문화를 대표하는 ‘형식화석’에 의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화의 변화는 그 사회 자체에서 진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주와 전파에 의해 가능한 것이라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일드의 논의는 코시나의 견해와 더불어 고고학 자료를 통한 민족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강역의 연구에 기본적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단위의 물질문화(즉 문화)는 특정한 민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민족의 자취는 특정한 형식의 ‘생활유적’ 또는 ‘형식화석’을 통해 추적이 가능하며 그러한 민족의 형성은 또한 이주와 전파의 모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⁵

틈센 이후 중시되었던 유물의 형식과 공반 관계가 문화 혹은 문화권의 개념과 결합하여 현재 고고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고학적 문화의 개념으로 정착되었음을 이러한 코시나와 차일드의 견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사 고고학의 문화 개념은 유물의 형식학적 특징과 공반 관계, 일정한 정도의 시간폭, 유사한 기술적 단계, 그리고 뚜렷한 경계를 갖는 특정한 공간적 분포가 있음을 전제한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특정한 종족 혹은 민족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문화사 고고학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유형 혹은 문화의

25 V. G. Childe, 1925, *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V. G. Childe, 1926,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Bailey Bros. & Swinfen; V. G. Childe, 1929,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Clarendon; V. G. Childe, 1954, *What Happened in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V. G. Childe, 1956, *Piecing Together the Past*, London: Routledge; V. G. Childe, 1957, *The Dawn of European Civilisation* (6th ed), London: Routledge; D. L. Clarke, 1978, *Analytical Archaeology* (2nd ed.), London: Methuen and C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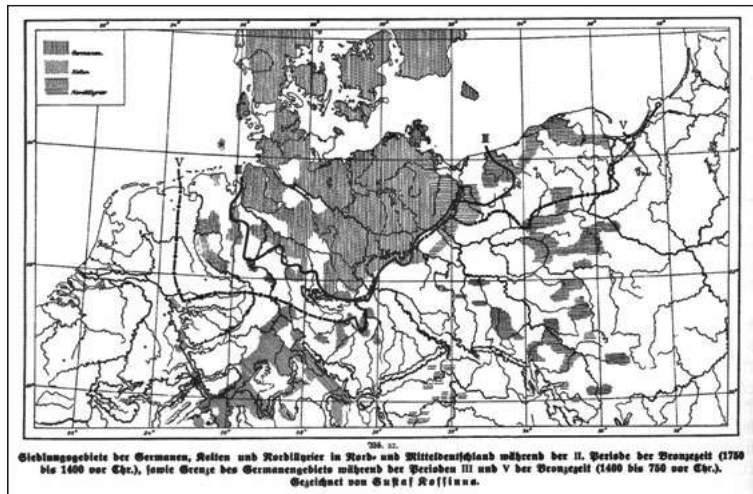


그림 4 청동기 시대 북부 및 중부 독일 지역 게르만 켈트 북 일리아족 주거지의 분포
(Kossinna 1920: Tafel V)

개념은 이후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데, 특히 후기과정고고학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유형 혹은 문화를 공간적으로 단절적이며,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고, 수동적이며 평면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진 반면, 유형이나 문화의 개념 자체에 대한 포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문화사 고고학의 입장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특정한 유형이나 문화 혹은 문화권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시공간 상에서 특정 유물복합체의 반복적 등장과 사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특정한 표지 유물 혹은 특정한 형태를 가진 유적의 존재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⁶ 그러나 이러한 표지 유물 혹은 특정 형태의 유적은 단순히 문화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들이나 공동체들의 사

26 S. Jones, 앞의 글, pp.36~37.

회적 행위와 전략에 따라 채용될 수도 있고 포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물과 유적의 분포는 문화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들과 공동체들 사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 즉 교류나 교환, (정체성 등과 관련한) 상징적 표현, 혹은 문화 접변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생각의 이면에는 문화가 그 자체로 역동적이고 능동적이므로 개인 에이전트들의 사회적 행위를 조건 짓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에이전트들의 전략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므로 그 공간적 경계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 및 이해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전제되어 있다. 실제로 많은 민족지 사례들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이주와 식민지를 비롯한 현대 사회의 사례에서 드러나는 여러 현상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²⁸

한편 고고학 연구에서 유형 혹은 문화의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물질)문화의 상사성 혹은 상이성 가운데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어느 정도로 유사해야 동일한 유형이나 문화로 파악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사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갖는 경우는 어떻게 이해할 지와 같이 상사성과 상이성의 단위 및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물질문화를 통해 파악되는 유형이나 문화, 그리고 그 공간적 경계는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자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완결적인 것이 아니며, 매우 임의적인 동시에 유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경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만약 경계가 있다면 그 경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하게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7 I. Hodder, 1982, *Symbols in Action: Ethnoarchaeological studies of material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8 김종일, 2010, 「고고학에서 이주의 개념과 물질문화의 변이-개념 및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E. C. Casella, and C. Fowler eds., 2004, *The Archaeology of Plural and Changing Identities*, New York: Springer; T. Insoll, 2007, *The Archaeology of Identities*, London: Routledge; S. Shennan, 1994,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Identity*, London: Routledge.

2. 양식(style)에 대한 연구와 민족(성) 혹은 종족(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무비판적으로 유형, 혹은 문화의 경계를 종족 혹은 민족 집단의 경계와 동일시하려는 것은 문화사 고고학의 주된 이론적 전제였다. 고고학에서는 과연 특정한 단위의 고고학 자료와 그 경계가 특정한 인간 집단의 경계, 즉 정체성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다양한 민족지 조사와 함께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1950년대에 스폴딩(A. Spaulding, 1914~1990)과 포드(J. Ford, 1911~1968)의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형식(Type)의 의미에 대한 논쟁, 즉 형식이 유물군에서 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연구자에 의해 고안되어 유물 혹은 유물군에 적용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어 차일드에 의해 고고학 연구의 주요 방법론으로 제시된 형식에 대해 보다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²⁹

또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에 아프리카 등지에서 민족지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형식 대신 양식(style)과 민족적(혹은 종족적) 정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사켓³⁰은 양식을 1.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도상학적(iconological) 변이와 2. 어떠한 사물을 만들기 위한 목적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만 집단이나 종족에 따라 그 사물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방식이 다른 동시에 그러한 차이가 각각의 종족 집단(ethnic group)에서 전승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29 이와 유사한 논의가 1970년대에 제기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다시 주목을 받게 된 다윈진화고고학에서 형식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본질론(유형론)과 유물론(개체군론)이 있음을 주장하고 특히 후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본질로서 사물에 내재(실재)하는 ‘형식’ 혹은 ‘유형’ 대신 그러한 형식이나 유형은 분석을 위해 고안된 것일 뿐 오로지 실재하는 것은 변이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e.g., 성춘택, 2017, 「고고학과 물질문화의 기원과 계통: 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02).

30 J. R. Sackett, 1982, Approaches to style in lithic archaeology,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 pp.59~112.

이소크레스틱(isochrestic) 변이로 나누었다. 한편 웹스트³¹는 양식을 정보교환을 위한 도구로 보는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양식적 정보의 사용 방식은 외부인에 대한 집단의 경계와 정체성의 상징적 소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비스너³²는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특징적으로 구분되는 집단들에게 사회적 세계의 구분에 대한 인식 가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표상적 양식(emblemic style)과 이와는 달리 개인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자기) 단언적 양식(assertive style)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진행된 이러한 양식과 종족 집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유물의 형태적 특징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형식 대신 문양이나 도안, 그리고 기술적 특징 등 보다 광범한 내용을 포괄하는 양식을 연구 대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유물의 변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고고학적 인식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나름의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현재 고고학계에서 대체로 합의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³³ 실제 물질문화론을 통해 종족 집단 내지 종족적 정체성(ethnic group 또는 ethnic group identity)을 표현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대부분의 경우, (물질문화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집단 내지 종족적 정체성의 경계가 애매모호하거나 경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그러한 집단적(또는 개인적) 경계의 표시는 맥락에 따라 행위 주체에 의해 의도적으로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암묵적 혹은 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심지어 (행위주체가) 의도적

31 H. M. Wobst, 1977, Stylistic behaviour and information exchange, in C. E. Cleland ed., *For the Director: Research Essays in Honor of James B. Griffin*,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nthropology, Anthropological paper 61, pp.317~342.

32 P. Wiessner, 1983, Style and social information in Kalahari San projectile points, *American Antiquity* 49, pp.253~276.

33 S. Shennen, 1994, 앞의 글. 참조.

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 역시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민족지 연구 사례가 말해주듯이 (물질문화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상상성(또는 상이성)과 종족 혹은 민족 집단 사이에는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e.g. Hodder 1982). 즉, 물질문화의 변이와 종족적 혹은 민족적 차이의 표현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적이며 유동적인 동시에 일종의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물질 자료의 존재 여부 혹은 그러한 유물의 형태적 특징 가운데 일부 측면만을 부각시켜 그것을 근거로 특정한 종족 집단의 (정체성의) 경계를 추론하고 이를 바로 그 집단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은 실제 자료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이론적인 근거 역시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론은 비록 물질문화의 분포와 이와 관련한 민족(혹은 종족) 집단의 공간적 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어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일종의 가설일 뿐, 그 자체로 자명하거나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3. 후기과정고고학의 민족(종족)적 정체성 연구

1980년대 초반에 등장하여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서구 고고학의 주요 방법론으로 자리 잡은 후기과정고고학에서는 이러한 민족(혹은 종족) 그리고 민족성(혹은 종족성)과 관련하여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이 문제를 젠더나 연령 등과 같은 정체성이라는 범주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시도한다. 예를 들어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 시기에 출간된 대표적인 연구들³⁴에서는 일차적으로 정체성의 관점에서 종족성 혹은 민족성의 정의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민족(종족)에 대한 정의를 주관론적 정의(종족 혹은 민족을 문화적으로 구성된 범주로 파악하고 이로부터 사회적 상호작용과 행동의 특징이 결정

34 S. Jones, 1997, 앞의 글. 참조; S. Shennan, 1994, 앞의 글. 참조.

된다고 보는 견해)와 객관론적 정의(종족 혹은 민족 집단을 비교적 고립되고 경계가 명확한 상호작용이 결여된 사회문화집단으로 보는 견해)의 둘로 나누어 살펴보면 양자가 대립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적어도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이후에는 종족 혹은 민족 정체성의 주관적이고 귀속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종족 혹은 민족 집단을 일종의 자기 정의 체계로 보는 일종의 주관론적 입장이 우세해졌다고 한다.³⁵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목적에 따라 상징적 경계를 뚜렷이 나타낼 필요가 있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물질 자료가 곧바로 종족적(민족적) 정체성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일차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나 실제 사례,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 틀은 아직 없거나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혹은 공동체는 물질문화를 통한 자기의 정체성 표현을 맥락과 상황에 따라 매우 능동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였을 것이다. 물질문화 또한 그러한 정체성의 표현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게 하거나 매개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이 둘을 직접적으로 연관 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그 이론적 근거가 박약한, 매우 작위적인 작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³⁶

더욱이 충분한 민족지적 현지조사가 가능하지 않은 선사시대의 특정한 유물·유적의 분포를 실제로 그 유물·유적을 사용했을 사람들의 능동적인 행위와 이들이 속했을 다양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민족 또는 민족의 직접적인 경계의 표시로 파악하는 것은 적어도 방법론상으로는 매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현재까지 출토된 고고학 자료를 통해 사료에 등장하는 종족적·민족적 실체와 그들의 공간적 분포 및 활동범위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고고학 연구에 활발히 도입되고

35 S. Jones, 1997, 앞의 글, pp.65~99; S. Shennen, 1994, 앞의 글, pp.14~17.

36 S. Lucy, 2005, 앞의 글, pp.91~101.

있는 고유전체 분석은 종족적(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친연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집단적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을 살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물학적 친연성은 민족 혹은 종족적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한 하나의 근거일 뿐 그 자체가 바로 민족이나 종족 집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유전체 분석의 결과 역시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물질 자료의 공간적 분포와 경계를 민족 혹은 종족 집단의 경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논리 체계와 근거가 발견되지 않은 한, 그리고 그 근거가 특정한 맥락 안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러한 종족적·민족적 실체와 그 실체의 공간적 분포 및 활동범위에 관한 추론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가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단위의 고고학 문화들의 상호관계나 경계가 민족의 기원이나 형성, 그리고 그 영역의 직접적 표현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의 기울이는 동시에 어느 정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V. 유럽 선사 및 역사 시대 물질문화의 변동과 민족(종족)

지금까지 근대 고고학의 성립 이후 유럽고고학에서 진행되어 온 물질문화의 공간적 분포와 경계와 민족(종족)적 경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민족’ ‘경계’, 그리고 ‘문화변동’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근대 고고학의 등장 이후 민족국가 및 민족주의의 등장과 함께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변용, 문화동화, 그리고 문화접변의 실제 사례를 유럽 선사시대의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경계’에서 실제로 어떠한 문화변동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신석기 시대 농경의 등장 및 쿠르간 가설과 선인도 유럽 어족의 확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사 고고학의 주요 이론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특정한 물질문화의 분화와 확산 과정을 종족 집단이나 민족 집단의 영역이나 혹은 이주와 관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몬텔리우스와 코시나가 제안하고 고든 차일드가 완성한 유럽 내 선사문화의 분포와 영역, 그리고 코시나가 주장한 바와 같은 거석문화와 아리아인의 북유럽 기원설, 고든 차일드의 아나톨리아와 농경 기원설, 그리고 전투용 도끼와 아리안인의 러시아 스텝 기원설, 아버크롬비나 상마이스터(E. Sangmeister, 1916~2016)³⁷가 주장한 비이커인들의 이주와 확산에 의한 벨비커 문화의 확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비록 후대에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고학 연구에서는 고든 차일드 이래 채택되어 온 고고학 문화의 분포와 경계에 대한 이해의 틀이 비록 많은 수정을 거쳤지만 지금까지도 유럽 선사 문화의 기본적인 이해의 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간의 이주와 확산 그리고 이에 의한 문화의 전파와 관련하여, 초기 농경에 관한 고든 차일드의 견해의 경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를 바탕으로 신석기 농경이 중근동 지역에서 시작하여 전체 유럽으로 확산되어 가는 현상을 밝히고 이후 이러한 농경의 확산이 인구 이동 또는 확산에 의해 가능했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 클라크(J. G. D. Clark, 1907~1995)의 연구³⁸에 의해, 신석기 후기 시대 쿠르간 문화의 전파 및 서진과 함께 선인도유럽어족이 흑해 연안과 러시아 초원지대에서 유럽으로 확산되어 갔다고 파악하는 쿠르간 가설³⁹에 의해, 그리고 차일드가 그의 저서 아

37 E. Sangmeister, 1964, Die Glockenbecher im Oberrheintal, *Jahrbuch des Römisch - Germanischen Zentralmuseums* 11, pp.81~114.

38 J. G. D. Clark, 1965, Radiocarbon Dating and the expansion of farming culture from the Near East over Europe,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31, pp.58~73.

39 M. Gimbutas, 1970, Proto - Indo - European Culture: The Kurgan Culture

리아안들(앞 뒤 큰 꺾쇠) *The Aryans* (1926)에서 시도했던 언어학적 연구방법론을 계승하는 한편, 선인도유럽어족의 기원을 코시나가 주장했듯이 북유럽 노르딕 문화나 김부타스(M. Gimbutas, 1921~1994)의 쿠르간 가설이 아닌 아나톨리아 지역의 초기 신석기 농경문화로 파악했던 렌프류의 연구⁴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고유전체 분석 결과는 고든 차일드의 이러한 가설들을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벨 비이커의 확산이 비이커인의 이주와 확산에 의한 것이라는 오래된 가설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⁴¹ 특히 최근에 발표된 남동부 유럽과 인근 지역 225개체 분의 인골에 대한 고유전체 분석에 대한 종합적 연구는 농경이 아나톨리아 지역으로부터 남동부 유럽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주민들이 기존의 수렵채집민들과 섞이게 되고 이들이 다시 중부 유럽 등지로 확산되어 가며 다시 신석기 후기 시대에 흑해 연안의 러시아 스텝 지역의 얄나 문화(Yamnaya culture)에서 유럽으로의 인구 이동이 발생하여 승문토기문화(the Corded Ware Culture)를 형성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북유럽의 인구를 대체해 간다는 것이다.⁴² 이러한 연구는 고든 차일드 이래 고고학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논의들, 예를 들어 선사시

during the Fifth, Fourth, and Third Millennia B.C., In G. Cardona et. al, eds., 1970, *Indo-European and Indo-Europeans: Papers Presented at the Third Indo-European Conferenc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155~197; M. Gimbutas, 1982, "Old Europe in the Fifth Millenium B.C.: The European Situation on the Arrival of Indo-Europeans," In E. C. Polomé ed., *The Indo-Europeans in the Fourth and Third Millennia*, Ann Arbor: Karoma Publishers.

40 C. Renfrew, 1987, *Archaeology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1 S. Shennan, 2018, 앞의 글.

42 I. Methieson, et.al., 2018, The genomic history of southeastern Europe, *Nature* 25778.

대 흑해 및 중앙유라시아 지역과 유럽 간의 문화교류를 새롭게 조망한 연구⁴³ 등을 뒷받침해주는 유력한 과학적 증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논의가 가질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 있는 ‘wave of advance’ 모델과 같이 문화 변동의 과정을 단순한 이주와 확산과정으로, 그리고 시기에 따른 확산 모델로 환원시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문화변동에는 문화 변용, 문화 동화, 그리고 문화 접변과 같은 과정뿐만 아니라 인간 혹은 개인 행위 주체자들의 다양한 사회적 혹은 상징적 행위들이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비록 최근의 연구가 매우 장기간에 걸친 그리고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간 혹은 개인 행위 주체자들의 이러한 행위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초기 문화사 고고학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다시 노정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고 유전체 분석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본의 확률적 대표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소 수천 년의 기간 동안 유럽을 비롯하여 아나톨리아와 러시아 스텝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서 출토된 200여 개체 분의 인골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결과는 그 결과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방식과 규모의 선사시대 인구 이동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이동이 과연 직접적인 문화변동을 야기할 정도의 방식과 규모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그리스 식민 도시의 확산과 민족(적) 혹은 종족(적) 정체성

전통적으로 대략 기원전 12세기경 미케네 문명이 쇠퇴하고 고대 올림피아 제전이 주기적으로 열리게 되는 기원전8세기까지를 그리스 암흑시대(Dark Age in

43 D. Anthony, 2007, 앞의 글.

Greece)라고 명명해왔다.⁴⁴ 특히 이 시기는 북쪽에서 철기 문명과 함께 도리아인이 이주하여 그리스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과 동시에 주민교체가 일어난 시기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통설에 대해 물질문화의 변화와 주민교체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면서,⁴⁵ 적어도 고고학계 내에서 이 시기에 주민교체가 있었다는 가설을 구체적으로 전제하거나 언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시기를 암흑 시기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록 문자 자료나 문헌 사료를 바탕으로 이 시기에 있었을 구체적인 사회변동과정을 추정하지 못할 뿐 발굴 등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고고학 자료에 의지하여 당시 사회의 역동적인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조사를 통해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이 식민도시들을 건설해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를 더 이상 암흑시기로 부르는 것은 적어도 고고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식민지 건설은 기원전 9세기 이후 기원전 7세기에 더욱 활발해진다.⁴⁶ 실제로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반도는 물론이고 마르세이유로 대표되는 동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 식민도시들이 건설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식민도시의 건설과 이주의 원인으로는 인구증가와 토지부족, 교역 기지 구축, 전쟁, 새로운 기회의 모색 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건설된 식민도시들마다 각각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⁴⁸ 이 가

44 J. Whitley, 2001, *The Archaeology of ancient Gree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78~80.

45 J. Whitley, 2001, 앞의 글, p.80.

46 B. Cunliffe, B., 1988, *Greeks, Romans & Barbarians*, London: Batsford,.

47 B. Cunliffe, 1988, 앞의 글.; A. T. Hodge, 1998, *Ancient Greek France*, London: Gerald Duckworth.

48 B. Cunliffe, 1997, *The Ancient Celts*, London: Penguin; A. T. Hodge, 1998, 앞의 글.; J. Whitley, 2001, 앞의 글.

운데 마르세이유의 경우,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금속 및 기타 원자재 등을 중부 유럽 및 서 유럽의 각지로부터 수입하기 위한 일종의 전진기지이자 당시 그리스와 유럽 각지의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는 켈트족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⁴⁹ 실제로 왕자의 무덤(princely grave)으로 알려진 남부독일의 호흐도르프(Hochdorf)나 프랑스의 빅스(Vix) 유적에서 출토된 거대한 그리스계(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에트루리아의 그리스계 장인들) 크레이터(Krater, 청동제 저장용기) 등도 원래는 당시의 교역로를 장악하고 있던 켈트계 수장들이 주문제작을 하여 부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리스 혹은 에트루리아에서 교역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장들에게 선물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⁵⁰

이러한 그리스의 식민지 건설에 대해서는 주로 그리스에 의한 식민화(colonisation)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이 고전고고학계의 일반적 시각이었다. 즉 그리스의 물질문화와 건축, 문자, 그리고 경제방식 등이 어떻게 현지에 이식되었는지, 그리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그리스화(Hellenisation)되었는지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⁵¹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비판의 요지는 첫째, 물질문화의 변용과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점, 즉 물질문화의 변용은 어느 한쪽에 의한 일방적인 문화변용에 의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과 둘째, 기존의 연구가 물질자료에 우선하여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여 기술하는 동시에 그리스의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된 문헌자료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셋째, 이러한 식민화의 과정은 16세기 이후 근대까지 진행되었던 대영제국의 식민지 건

49 B. Cunliffe, 1997, *The Ancient Celts*, London: Penguin; A. T. Hodge, 1998, 앞의 글.

50 스테판 비어마이어 씨의 개인교시에 따른다.

51 H. Hurst, and S. Owen eds., 2005, *Ancient Colonizations: Analogy, Similarity and Difference*, London: Gerald Duckworth.

설과 운영의 경험을 유추한 것이라는 점 등을 포함한다.⁵²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시실리의 그리스 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일련의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피츠존(M. Fitzjohn)은 평등성(equality)에 근거하여 기원전 8세기에서 6세기에 등장하는 시실리의 그리스계 주거지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⁵³ 그에 따르면 이 지역에 건설된 도시에 그리스인에 의해 새롭게 등장하는 토지 분할 시스템은 비슷한 규모로 구획된 토지를 분배 혹은 매매하는 것으로 형식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는 평등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장과의 거리 등의 요인으로 인해 가격상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또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구획되는 토지들 역시 기존의 토지 너머에 구획됨으로써 실제 가격상 많은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기본적으로 관철되고 있던 평등성이 실제로는 그 안에 일종의 불평등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식민도시 주변에 위치한 소규모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주거지에서는 토기를 비롯한 그리스 계통의 생활용품과 더불어 공간구조에서는 기존의 철기 시대 주거지형식을 따르는 주거지들과 함께 기존의 전통적 요소와 경험을 차용한 새로운 주거지들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계 주민들이 기존 집단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동시에 이를 주거지라는 물질문화의 형태로 표현해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이러한 주거지를 축조했던 집단이 그리스계 이주민이 아닌

52 S. Owen, 2005, Analogy, Archaeology and Archaic Greek Colonization, In H. Hurst and S. Owen eds., *Ancient Colonizations: Analogy, Similarity and Difference*, London: Gerald Duckworth, pp.5~22; G. Shepherd, 2005, The Advance of the Greek: Greece, Great Britain and Archaeological Empires, In H. Hurst and S. Owen eds., 2005, *Ancient Colonizations: Analogy, Similarity and Difference*, London: Gerald Duckworth, pp.23~44.

53 M. Fitzjohn, 2007, Equality in the colonies: concepts of equality in Sicily during the eighth to six centuries BC, *World Archaeology* Vol. 39(2), pp.215~228.

기존집단으로 볼 경우, 또 다른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계 이주민과 기존 집단의 이분법적 구분을 전제하고 이주민에 의한 일방적인 문화 변용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이주민과 기존 집단 사이에서 문화 접변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러한 문화 접변의 가능성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실제 고고학 자료에서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로마 제국의 등장과 켈트 사회

주지하다시피 기원전 900년경, 중부 이탈리아 지역에 위치한 티베르강 유역에 조그마한 주거 집단에 지나지 않았던 로마는 기원전 3세기 말에 들어가면 이탈리아반도의 대부분 지역을 로마의 영역 안으로 흡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문화 변용 혹은 문화 접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제국의 중심 혹은 핵심 지역이 로마 및 인근지역으로 확대되면서 기존의 토착 문화 대신 로마의 문화가 이식되는 강력한 문화 변용이 일어나게 된다.⁵⁴ 한편 카이사르의 갈리아 지역 정복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마가 갈리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이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 원재료와 인력의 끊임없는 투입이 필요한 사회 정치적 그리고 사회 경제 시스템을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요구와 함께 로마가 갖고 있던 군사적 분위기는 주변지역의 정복과 경제적 수탈로 이끌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군사들과 상인들은 켈트 부족들을 로마의 체계 안으로 흡수 통합하면서 유럽 지역을 거점 별로 정복해갔다.

갈리아 전기에서 카이사르가 기술하고 있는 갈리아 지역의 종족들은 헬베티와 벨가이 등을 포함하여 수십 개의 부족을 포함하는데 문헌 사료와 고고학 증거들을 바탕으로 대강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부족들은 크게 로마가

54 B. Cunliffe, 1988, 앞의 글.; H. Schutz, 1985, *The Romans in Central Europe*,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사하는 부족에서 알 수 있듯이 일종의 종교 혼합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⁵⁶

이러한 갈리아 지역의 부족들은 로마와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정치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수천 수만 명으로 구성된 각각의 부족 집단이 전쟁을 피하거나 때로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그리고 로마 세력을 피하거나 혹은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 빈번하게 이동한다. 물론 비브락테와 같은 오피둠(oppidum)처럼 갈리아의 여러 부족 가운데 가장 커다란 세력 가운데 하나인 아이두이 부족의 중심지이자 카이사르가 겨울 숙영지로 선택하기도 할 끊임없는 정도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유적도 있지만 적어도 사료에 기술된 상당히 많은 수의 부족들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갈리아의 여러 부족이 농경에 기반한 정주 생활을 운위한 세력이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수확을 포기하고 이동을 결정하기도 했으며 따라서 갈리아 전기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이들 부족의 분포는 배타적인 영토의 개념이 아닌 일종의 잠재적인 활동 영역 혹은 이동의 가능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 앵글로 색슨의 확산과 주민교체

로마군이 영국 및 기타 유럽지역으로부터 퇴각한 이후인 기원 후 5세기에 기원 후 6세기에 이르는 기간을 일반적으로 대 이주시기(The Migration period)라고 부르며 문헌사료가 많이 남아 있지 않은 탓에 주로 고고학적 증거를 통해 이 시기의 문화변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덤이나 주거지에 더하여 무덤에서 출토되는 브로치를 비롯한 기타 장신구를 통해 피장자의 종족적 정체성을 추정하고 이를 북유럽 및 중부유럽으로부터의 이주를 증명해주는 강력한

56 J. Webster, 1997, "Necessary of comparisons: a post - colonial approach to religious syncretism in the Roman provinces," *World Archaeology* 28 (3), pp.324~338.

증거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⁵⁷ 이러한 이주의 고고학적 추론은 8세기에 영국의 수도사였던 베데(Bede)의 책 *Ecclesiastical History* Book 1에 “Advenerunt autem de tribus Germaniae poplis fortioribus, id est Saxonibus, Anglilis, Iutis”(They came from the strongest Peoples of Germania, that is from the Saxons, the Angles and the Jutes)과 같은 문헌기록을 통해 강력히 뒷받침되고 있다.⁵⁸ 비록 1970년대 이주가 아닌 아이디어와 상징체계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고고학적 증거를 해석해보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⁵⁹ 현재는 대체로 유럽대륙으로부터의 이주가 있었다는 점에

-
- 57 C. Hills, 1998, Did the People of Spong Hill come from Schleswig - Holstein?, In H -J. Hassler ed., *Studien zur Sachsenforschung* 11, Hildesheim: Lax, pp.145~154; C. Hills, K. Penn and R. Rickett, 1984, *The Anglo - Saxon Cemetery at Spong Hill, North Elmham Part III: Catalogue of Inhumations*, Norfolk: Norfolk Archaeological Unit; J. Hines, 1998, The Anglian Migration in British Historical Research, In H -J. Hassler ed., *Studien zur Sachsenforschung* 11, Hildesheim: Lax, pp.155~165; S. Hirst, and D.Clark, 2009, *Excavations at Mucking: Volume 3, The Anglo - Saxon cemeteries*, London: Museum of London Archaeology; S. Lucy, 2000, *The Anglo - Saxon Way of Death: Burial Rites in Early England*,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D. Powlesland, 1997, Early Anglo - Saxon Settlements, Structures, Form and Layout, In J. Hines ed., *The Anglo - Saxons from the Migration Period to the Eighth Century: An Ethnographic Perspective*,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pp.101~117; C. Scull, 1998, Migration Theory and Early England: some contexts and dynamics of cultural change, In H -J. Hassler ed., *Studien zur Sachsenforschung* 11, Hildesheim: Lax, pp.167~185; I. Wood, 1997, Before and After the Migration to Britain, In J. Hines ed., *The Anglo - Saxons from the Migration Period to the Eighth Century: An Ethnographic Perspective*,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pp.41~54.
- 58 E. T. Leeds, 1949, *A Corpus of Early Anglo - Saxon Great Square - Headed Brooches*, Oxford: Clarendon Press.
- 59 H. Hamelow, 1997, Migration theory and the Anglo - Saxon “identity crisis”, In J. Chapman and H. Hamerow eds., *Migrations and invasions in archaeological explanation*,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664, Oxford: Archaeopress, p.35.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⁶⁰

실제로 기원 후 5세기 이후 영국의 East Anglia 지역과 Kent 지역을 중심으로 발견되는 대규모 무덤과 주거지 등에서 스칸디나비아와 북부 독일,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지역들에서 발견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유구 및 브로치(특히, 십자가형 브로치와 사각형 모양의 머리를 가진 브로치 등)나 양동이(Bucket) 장식 등이 발견되고 있다.⁶¹ 다시 말해서 기원 5세기에 베데의 기록에 등장하는 앵글(Angle)족, 색슨(Saxon)족, 쥬트(Jute)족은 각각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북부 독일 지역으로부터 영국의 동부 해안지역에 정착한 이후 영국 남부[웨섹스(Wessex), 서섹스(Sussex), 에섹스(Essex)], 동부[앵글리아(Anglia)], 그리고 중북부 지역[노섬브리아(Northumbria)] 등으로 확산하여 대략 8세기에 이르면 각각의 지역에서 왕국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서튼 후(Sutton Hoo) 유적은 이러한 변화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이주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체적인 해석에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베데의 기술이 토대로 삼고 있는 길다(Gildas)의 기록(De excidio Britanniae et conquest)은 대략 기원 후 6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짐작되며 4세기 이후 6세기까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한 떼의 젊은이들(용병들로 추정)이 세 척의 배로 암사자(유럽 대륙으로 추정)의 소굴로부터 쏟아져 나와 처음에는 우리나라(앵글로색슨 이전의 영국으로 추정)를 위해 싸웠으나 나중에는 반역을 하였다(중략) 이후 어미사자는 이차로 더 큰 무리들을 보냈다”라고 한다.⁶² 즉 앵글족 등이 영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지금의 영국 북부나 스코틀랜드 지역에 거주했던 픽트(Pict)족이나 스코트

60 H. Hamerow, 1997, 앞의 글.; J. Hines, 1998, 앞의 글.; S. Lucy, 2000, 앞의 글.

61 C. Hills, K. Penn and R. Rickett, 1984, 앞의 글.; S. Hirst and D. Clark, 2009, 앞의 글.

62 S. Lucy, 2000, 앞의 글. p.156에서 재인용.

(Scot)족 등의 약탈에 대항하기 위해 일종의 용병으로 고용했기 때문이며 용병으로 초청된 이들의 태도가 급변하여 수도원 등을 약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 이주민들은 남성이 위주가 된 용병 집단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이 시기의 여성 무덤 등에서 발견되는 게르만적 전통의 장식품의 주인공들은 이들이 현지에서 결혼한 현지 여성일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가설이 제기된 바도 있다.⁶³ 이 가설은 이후의 연구에서 초기의 이주가 남성 용병 혹은 엘리트 전사 집단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집단적인 이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등이 논의되면서 자연스럽게 비판되었다.⁶⁴ 하지만 이 사례는 적어도 문헌 자료와 고고학자료를 단순하게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둘째, 영국 동부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브로치 등이 쥬트족이나 앵글족, 또는 색슨족이 거주했던 원 지역의 그것들과 형태상 거의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⁶⁵ 이 지역의 브로치 가운데에는 쥬트족이나 앵글족, 또는 색슨족의 원 거주지 외에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형태의 브로치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⁶⁶ 이러한 점은 앞에서 언급한 세 종족 외에 다른 종족의 이주가 활발하게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주 후 유럽 대륙의 원 지역과 함께 다른 지역의 게르만족들과 결혼 등을 통한 활발한 교류를 했다는 증거로도 해석될 수 있다.⁶⁷ 현재로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런데 전자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베데의 기사를 기사 그대로 인정하여 이주의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베데의 기사가 8세기 대에 영국의 남동부

63 C. J. Arnold, 1984, *From Roman Britain to Saxon England*, London: Croom Helm.

64 H. Hamelow, 1997, 앞의 글.

65 E. T. Leeds, 1949, 앞의 글.

66 S. Lucy, 2000, 앞의 글, p.33.

67 I. Wood, 1997, 앞의 글, pp.48~49.

및 중부 지역에 세워진 여러 왕국의 계보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⁶⁸ 이 기사는 후대의 상황과 기준에 따라 이전 시기 이주가 있었던 상황을 간략히 기술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례는 이주와 관련하여 문헌 사료를 이용할 경우, 문자 그대로, 즉 축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텍스트 분석’을 거쳐야 함을 보여준다. 후자의 경우, 즉 이주 후에도 이주 집단이 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집단과도 자체적으로 활발하게 교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주 후에 일어나는 물질문화의 변동은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연속적 과정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셋째, 주거지나 무덤, 그리고 장신구 등에서 이주민들이 게르만의 전통적인 양식을 유지함과 동시에 기존의 로만-브리튼(Romano-Britain) 양식의 모티브를 채용하여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내는 경우도 발견된다.⁶⁹ 이 경우, 이주민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힘의 크기의 차이나 이에 따른 문화 동화 및 변용의 틀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이주 집단이 이러한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냈다면 원 거주지의 집단에 대해 전통적인 양식에 기존의 요소를 결합함으로써 기존 집단과 관련하여 나름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이를 표현하였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기존 집단이 게르만적 전통을 따르되 자신들의 로만-브리튼적 모티브를 이용하여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 냈다면 이주민들에 의해 기존 집단이 자신의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 나가는 행위와 이에 수반된 상징적 가치와 정체성의 형성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이주와 이에 따르는 형식과 양식, 그리고 범주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과정이었으며 따라서 이주 후 일어나는 물질문화의 변동은 여러 층위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과정임을 말해준다.

68 I. Wood, 1997, 앞의 글, pp.50~51.

69 R. G. Collingwood and I. Richmond, 1969, *The Archaeology of Roman Britain*, London: Methuen, pp.286~300; S. Lucy, 2000, 앞의 글, pp.31~32; C. Scull, 1998, 앞의 글, p.182.

넷째, 5세기 말 6세기 이후 이주 집단 내 계급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며 6세기 이후 앵글로 색슨계 물질문화가 급격히 확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⁷⁰ 이러한 현상은 유럽대륙의 전체적인 정치적, 사회적 변화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양 지역집단 간의 교류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앵글로 색슨계 유적과 유물의 급격한 확산이다. 이러한 급격한 확산은 앵글로 색슨계 이주민의 후손들의 수가 갑작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반대로 계층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앵글로 색슨계 후손에 더하여 기존의 토착집단 가운데 상위 계층을 중심으로 앵글로 색슨계 물질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을 차별화하는 등 앵글로 색슨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⁷¹

이러한 사실은 물질문화의 변동이 단순히 이분법적 구분에 따른 이주집단과 기존집단 간의 문화변용이나 문화 동화, 그리고 접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 사회의 계층화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속도와 정도의 측면에서 각기 상이하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민족과 민족적 경계에 대한 고고학의 이론적 전제들과 방법론,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전제와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형식 분류와 시공간상에서 유형 및 문화의 설정, 그리고 이를 종족 집단 혹은 민족 집단과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문화사 고고학의 시도는 엄밀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또한 매우 임의적이며 주관적일 수 있고 따라서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이러한 시도의

70 C. Scull, 1998, 앞의 글, pp.180~183.

71 C. Scull, 1998, 앞의 글, p.182.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최종적인 것이 아닌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에는 갈리아 지역의 여러 부족들과 게르만족에 속하는 다수의 부족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갈리아 전기에 묘사된 지형 및 이동 거리 및 범위에 관한 내용 등을 통해서 그리고 현재 남아 있는 고고학 자료 등을 통해 그러한 부족들의 위치와 공간적 범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추정에 그칠 뿐 그 범위를 배타적인 영토나 경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기록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단편적이거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며 고고학 자료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종족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닐 뿐 더러 그것의 공간적 범위 역시 곧바로 근대적 의미의 국경과 같은 경계나 영토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시의 부족들이 자주 이동을 했음을 감안하면 카이사르의 입장에서 기술한 여러 부족의 공간적 위치와 범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계는 일종의 가능한 활동 영역이나 이동 범위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문화사 고고학의 연구 성과가 적어도 근대 고고학의 시작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실제로 나름의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이론적 전제와 방법론,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필요절차이자 단계일 뿐 그 자체가 자기 완결적이며 따라서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유일무이한 방법론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종일, 2004, 「유럽의 농업 기원과 농업 공동체의 확산」, 『한국신석기학보』 7.
- _____, 2008, 「고고학 자료의 역사적 해석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 52.
- _____, 2010, 「고고학에서 이주의 개념과 물질문화의 변이-개념 및 서구 사례를 중심으로」, 『제3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4, 「유럽 내 철기시대의 개념과 시기 구분」, 『중부고고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발표요지』, 중부고고학회.
- _____, 2017, 「민족주의적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6.
- 박찬승, 2010, 『민족 · 민족주의』, 천화.
- 정대영, 2004, 「中國文明起源研究의 動向과 成果-中國考古學의 研究成果를 중심으로-」, 『中國史研究』 33.
- 성춘택, 2017, 「고고학과 물질문화의 기원과 계통: 비판적 검토」, 『한국고고학보』 102.
- Abercromby, J., 1904, A proposed chronological arrangement of the drinking cup or Beaker class of fictilia in Britain,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Antiquaries of Scotland* 45.
- _____, 1912, *A study of the Bronze Age Potter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and its associated Grave goods*, Vol.1, Oxford: The Clarendon Press.
- Anthony, D., 1995, Nazi and eco-feminist prehistories: ideology and empiricism in Indo-European archaeology, In Kohl, P. and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2007, *The Horse, the Wheel and Langu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rnold, B., 1990, "The Past as Propaganda: Totalitarian Archaeology in Nazi Germany," *Antiquity* 64, Vol.244.

- Arnold, B. and H. Hassmann, 1995, Archaeology in Nazi Germany: the legacy of the Faustian bargain, In Kohl, P. and C. Fawcett eds.,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rnold, C. J., 1984, *From Roman Britain to Saxon England*, London: Croom Helm.
- Boas, F., 1920, The Methods of Ethnology, *American Anthropologist* 22, pp.311~321.
- Casella, E. C. and C. Fowler eds., 2004, *The Archaeology of Plural and Changing Identities*, New York: Springer.
- Childe, V. G., 1925, *The Dawn of European Civilizatio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_____, 1926, *The Aryans: A Study of Indo-European Origins*, London: Bailey Bros. & Swinfen.
- _____, Childe, 1929, *The Danube in Prehistory*, Oxford: Clarendon.
- _____, Childe, 1954, *What Happened in History*, London: Penguin Books.
- _____, Childe, 1956, *Piecing Together the Past*, London: Routledge.
- _____, Childe, 1957, *The Dawn of European Civilisation*, (6th ed.), London: Routledge.
- Clark, J. G. D., 1965, Radiocarbon Dating and the expansion of farming culture from the Near East over Europe, *Proceedings of the Prehistoric Society* 31, pp.58~73.
- Clarke, D. L., 1978, *Analytical Archaeology*. (2nd ed.), London: Methuen and Co. Ltd.
- _____, 1976, The Beaker network—Social and economic models, In Lanting, J. and D. V. D. Waals eds., *Glockenbecher symposium Oberried 1974*, Bassum/Haarlem: Fibula—van Dishoeck, pp.459~476.
- Coblenz, W., 1992, In memoriam Wilhelm Unverzagt, 21. 5. 1892~17. 3. 1971, *Prähistorische Zeitschrift* 67, pp.1~14.
- Collingwood, R. G. and I. Richmond, 1969, *The Archaeology of Roman Britain*,

- London: Methuen.
- Collis, J., 1984, *The European Iron Age*, Batsford: B. T. Batsford LTD.
- Cunliffe, B., 1988, *Greeks, Romans & Barbarians*, London: Batsford.
- _____, 1997, *The Ancient Celts*, London: Penguin.
- Daniel, G., 1977, *150 years of Archaeology* (2nd ed.), London: Duckworkth.
- Feuer, B., 2016, *Boundaries, Borders and Frontiers in Archaeology—A Study of Spatial Relationships—*, Jefferson, North Carolina: Mafarland & Company, Inc. Publishers.
- Fitzjohn, M., 2007, Equality in the colonies: concepts of equality in Sicily during the eighth to six centuries, *World Archaeology* Vol.39(2), pp.215~228.
- Gebühr, M., 1987, Montelius und Kossinna im Himmel, *Archäologische informationen* 10, pp.109~115.
- Gimbutas, M., 1970, Proto-Indo-European Culture: The Kurgan Culture during the Fifth, Fourth, and Third Millennia B.C. In Cardona G. et. al. eds., *Indo-European and Indo-Europeans: Papers Presented at the Third Indo-European Conference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155~197.
- Gimbutas, M., 1982, "Old Europe in the Fifth Millenium B.C.: The European Situation on the Arrival of Indo-Europeans," In Polomé E. C. ed., *The Indo-Europeans in the Fourth and Third Millennia*, Ann Arbor: Karoma Publishers.
- Graebner, F., 1911, *Die Methode der Ethnologie*, Heidelberg.
- Gramsch, A. and U. Sommer, 2011a, *A History of Central European Archaeology*, Budapest: Archaeolingua foundation.
- _____, 2011b, German Archaeology in Context. An Introduction to History and Present of Central European Archaeology, In Gramsch, A. and U. Sommer, 2011, *A History of Central European Archaeology*, Budapest: Archaeolingua foundation, pp.7~40.
- Gräslund, B., 1987, *The Birth of Prehistoric Chron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merow, H., 1997, Migration theory and the Anglo-Saxon “identity crisis”, In Chapman, J. and H. Hamerow eds., *Migrations and invasions in archaeological explanation*, British Archaeological Reports 664, Oxford: Archaeopress, pp.33~44.
- Härke, H., 2000,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Hassmann, H., 2000, Archaeology in the ‘Third Reich’, In Härke, H., 2000,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Hills, C., 1998, Did the People of Spong Hill come from Schleswig-Holstein?, In Hassler, H-J., ed., 1988, *Studien zur Sachsenforschung* 11, Hidelshiem: Lax, pp.145~154.
- Hills, C., K. Penn and R. Rickett, 1984, The Anglo-Saxon Cemetery at Spong Hill, North Elmham Part III: Catalogue of Inhumations, Norfolk: Norfolk Archaeological Unit.
- Hines, J., 1998, The Anglian Migration in British Historical Research, In Hassler, H-J., ed., *Studien zur Sachsenforschung* 11, Hidelshiem: Lax, pp.155~165.
- Hirst, S. and D. Clark, 2009, *Excavations at Mucking: Volume 3, The Anglo-Saxon cemeteries*, London: Museum of London Archaeology.
- Hodder, I., 1982, *Symbols in Action: Ethnoarchaeological studies of material cul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dge, A. T., 1998, *Ancient Greek France*, London: Gerald Duckworth.
- Hurst, H. and S. Owen eds., 2005, *Ancient Colonizations: Analogy, Similarity and Difference*, London: Gerald Duckworth.
- Insoll, T., 2007, *The Archaeology of Identities*, London: Routledge.
- Jones, S., 1997, *The Archaeology of Ethnicity*, London: Routledge.
- Kohl, P. and C. Fawcett eds., 1995, *Nationalism, Politics and the Practice of Archae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ssack, G., 1999, *Prähistorische Archäologie in Deutschland im Wandel der*

- geistigen und politischen Situation*, München: Verlag der Bayer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 Kossinna, G., 1920, *Die Herkunft der Germanen—Zur Methode der Siedlungsarchäologie*, Leipzig: Verlag von Curt Kobitzsch.
- _____, 1941, *Die Deutsche Vorgeschichte—eine hervorragend nationale Wissenschaft*, Verlag Leipzig.
- Leeds, E. T., 1949, *A Corpus of Early Anglo-Saxon Great Square-Headed Brooches*, Oxford: Clarendon Press.
- Lubbock J., 1865, *Pre-Historic Times, As Illustrated by Ancient Remains, and the Manners and Customs of Modern Savages*, London: Williams & Northgate.
- Lucy, S., 2000, *The Anglo-Saxon Way of Death: Burial Rites in Early England*, Gloucestershire: Sutton Publishing.
- Lucy, S., 2005, Ethnic and cultural identities, In Diaz-Andreu, M., 2005, eds., *The Archaeology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 Meinander, C. F., 1981, The concept of culture in European archaeological literature, In Daniel, G., 1981, *Towards a History of Archaeology*, London: Thames and Hudson, pp.100~111.
- Methieson, I. et.al., 2018, The genomic history of southeastern Europe, *Nature* 25778.
- Montelius, O., 1885(B. Gräslund Trans. 1986), *Dating in the Bronze Age with special reference to Scandinavia*, With an introduction by Bo Gräslund, Stockholm.
- Montelius, O., 1903, *Die ältere Kulturperioden im Orient und in Europa*, Stockholm: K. L Beckmans Buchdruckerei.
- Murray, T. and C. Evans, 2008, *Histories of Archae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wen, S., 2005, Analogy, Archaeology and Archaic Greek Colonization, In Hurst H. and S. Owen eds., 2005, *Ancient Colonizations: Analogy, Similarity and Difference*, London: Gerald Duckworth, pp.5~22,

- Powlesland, D., 1997, Early Anglo-Saxon Settlements, Structures, Form and Layout, ed., 1997, *Anglo-Saxons from the Migration Period to the Eighth Century: An Ethnographic Perspective*,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pp.101~117.
- Ratzel, F., 1896(A. J. Butler, trans.), *The History of Mankind*, London: Macmillan.
- Renfrew, C., 1984, *Approaches to Social Archae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_____, 1987, *Archaeology and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use, I., 1986, *Migrations in Prehistory: Inferring Population Movement from Cultural Remains*,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 Sackett, J. R., 1982, Approaches to style in lithic archaeology, *Journal of Anthropological Archaeology* 1, pp.59~112.
- Sangmeister, E., 1964, Die Glockenbecher im Oberrheintal, *Jahrbuch des Römisch-Germanischen Zentralmuseums* 11, pp.81~114.
- _____, 1967, Die Datierung des Reckstroms der Glockenbecher und ihre Auswirkung auf die Chronologie der Kupferzeit in Portugal, *Palaeohistoria* 12, pp.395~407.
- Schutz, H., 1985, *The Romans in Central Europe*,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ull, C., 1998, Migration Theory and Early England: some contexts and dynamics of cultural change, In Hassler, H-J. ed., 1998, *Studien zur Sachsenforschung* 11, Hidelshiem: Lax, pp.167~185.
- Shennan, S. J., 1977, *Bell Beakers and Their context in Central Europe: a new approach*, Unpublished Ph. D thesis, Department of Archaeology, University of Cambridge.
- Shennen, S., 1994,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Identity*, London: Routledge.
- _____, 2018, *First farmers i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 Shepherd, G., 2005, The Advance of the Greek: Greece, Great Britain and Archaeological Empires, In Hurst, H. and S. Owen eds., 2005, *Ancient Colonizations: Analogy, Similarity and Difference*, London: Gerald Duckworth, pp.23~44.
- Sherratt, A., 1990, *The genesis of megaliths*, World Archaeology 22, pp.147~167.
- Smolla, G., 1979/80, Das Kossinna-Syndrom, *Fundberichte aus Hessen* 19/20, pp.1~9.
- _____, 1981, Umweltprobleme der "Pfahlbauforschung," *Archäologische informationen* 15, pp.24~32.
- Price, T. D., G. Grupe and P. Schröter, 1998, Migration in the Bell Beaker period of central Europe, *Antiquity* 72, pp.405~411.
- Price, T. D., C. Knipper, G. Grupe and V. Smrcka, 2004, Strontium Isotopes and Prehistoric human migration: The Bell Beaker Period in Central Europe, *European Journal of Archaeology* Vol. 7(1), pp.9~40.
- Thomsen, C. J., 1848, *A Guide to Northern Archaeology*, London.
- Trigger, B., 1989, *The History of Archaeolog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it, U., 1994, Ethnic concepts in German prehistory: a cas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archaeological objectivity, In Shennan, S., 1994, *Archaeological Approaches to Cultural Identity*, London: Routledge.
- Veit, U., 2000, Gustaf Kossinna and his concept of a national archaeology, In Härke, H., 2000, *Archaeology, Ideology and Society—German Experienc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Webster, J., 1997, "Necessary of comparisons: a post-colonial approach to religious syncretism in the Roman provinces," *World Archaeology* 28 (3), pp.324~338.
- Whitley, J., 2001, *The Archaeology of ancient Greece*, Cambridge: Cambridge

- University Press.
- Wiessner, P., 1983, Style and social information in Kalahari San projectile points, *American Antiquity* 49, pp.253~276.
- Wiwjorra, I., 1996, German archae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nationalism and racism, In Diaz-Andreu, M. and T. Champion, 1996, *Nationalism and archaeology in Europe*, London: UCL Press.
- Wobst, H. M., 1977, Stylistic behaviour and information exchange, In Cleland, C. E. ed. *For the Director: Research Essays in Honor of James B. Griffin*, University of Michigan, Museum of Anthropology, Anthropological paper 61, pp.317~342.
- Wood, I., 1997, Before and After the Migration to Britain, In Hines, J. ed., *The Anglo-Saxons from the Migration Period to the Eighth Century: An Ethnographic Perspective*,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pp.41~54.
- Zvelebil, M. ed., 1986, *Hunters in tran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Zvelebil, M. and P. Rowley-Conwy, 1984, Transition to farming in northern Europe: a hunter-gatherer perspective, *Norwegian Archaeological Review* 17, pp.104~128.

유럽 선사 및 고대 시기의 민족과 민족적 경계에 대한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의 검토

김종일

이 글에서는 고고학 연구에서 전제되어 온 민족 (종족)과 민족적 (종족적) 경계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형식 분류와 시공간상에서 유형 및 문화의 설정, 그리고 이를 종족 집단 혹은 민족 집단과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하는 문화사 고고학의 시도는 엄밀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성립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또한 매우 임의적이며 주관적일 수 있고 따라서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이러한 시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는 최종적인 것이 아닌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헌 기록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 단편적이거나 불완전하며 고고학 자료 역시 직접적으로 종족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며 그것의 공간적 범위 역시 곧바로 근대적 의미의 국경과 같은 경계나 영토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공간적 범위는 일종의 활동 가능 영역이나 이동 범위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설정되는 경계는 문화 접변과 문화 동화와 같은 활발한 문화 교류가 일어났던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장소로 파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일 수 있다.

문화사 고고학의 연구 성과가 적어도 근대 고고학의 시작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었고 실제로 나름의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민족 (종족)과 민족적 (종족적) 경계를 찾기 위해 사용된 문화사 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더 높은 수준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필요절차이자 단계일 뿐 그 자체가 자기 완결적이며 따라서 변할 수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유일무이한 방법론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주제어: 민족 (종족), 경계, 문화사 고고학, 문화 접변, 형식 분류, 유형

ABSTRACT

A Critical Review on Archaeological theory and Methodology for the Concept of 'Nation' and 'Its Boundary' in European pre- and Ancient History

Kim Jongil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archaeological theories and methodologies adopted to find specific nation (ethnic group) and its boundary, and many flaws inherent to these theories and methodologies.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any attempts made by cultural historical approach, for instance, establishment of archaeological assemblage and culture based upon typology and its association with nation (ethnic group) and its boundary, were not based at rigid theoretical argument and consideration. The results drawn from these attempts also seem to be very arbitrary and subjective. Therefore, even if those attempts would be needed at the first stage of research, the results drawn should be recognised as tentative one. This is because historical documents tend to be partial and imperfect in many cases, and archaeological data would not reflect

the identities of nation and ethnic group directly. Furthermore, their (possible) boundary on space drawn from these historical documents and archaeological data, would indicate a sort of feasible area for various social action or a possible route for move rather than modern concept of border or territory. And it would be also much more reasonable to recognise the boundary as an active and dynamic place on which various cultural exchange such as cultural assimilation and acculturation would take place.

It seems true that some attempts and their achievement made by cultural historical archaeology were significant and meaningful to some extents and that they contributed to a better understanding at the starting stage of modern archaeology. Nevertheless, it should be reminded that archaeological theories and methodologies adopted by cultural historical approach to find nation (ethnic group) and its boundary and the results drawn from these attempts, are just a step and process necessary for further research and that they should not be accepted as self-evident, unchangeable and untouchable ones.

Keyword: Nation (ethnic group), boundary, cultural historical approach, cultural assimilation, typology, archaeological assemblage.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6세기 2개의 요동(遼東)

—북위(北魏)의 천하관(天下觀)과 역사왜곡이 만들

어낸 고구려(高句麗)의 요동과 북위의 요동—

최진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고구려(高句麗)의 요동
- III. 북위의 '요동': 『위서』와 묘지명의 '요동'
- IV. 북위의 천하관: 정통성의 주장과 동진남조(東晉南朝)의 폄하
- V. 천하관의 분석: 요령(遼嶺)·허봉(虛封)
- VI. 맺음말

I. 머리말

전국시대 설치된 요동군은 전한시대 요수 동쪽뿐만 아니라 서쪽도 관할하였다. 후한시대 일부 요수 서쪽 지역에 설치된 요동속국도위(遼東屬國都尉)는 274년 창려군(昌黎郡)으로 바뀌었다. 고구려(高句麗)는 105년 요동군을 처음 공격한¹ 이후 계속 요동군을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모용부의 전연·후연과 요동의 지배권을 두고 다투다가 결국 요동을 지배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고구려가 망할 때까지 요동은 고구려의 땅이었다. 그러나 『위서』와 북조시대 묘지명을 보면 북위에도 요동이 있었다. 중국의 사서에는 고구려가 요동군을 점령한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서』 「고구려전」의 기록을 제외하면, 고구려가 요동군을 점령하지 않은 것처럼 서술하였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북위가 요수 동쪽의 요동 지역 일부를 지배했다고 생각하였고 일본의 대표적인 위진남북조사 연구가 谷川道雄은 그의 연구서에 요동이 북위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삽입하였다.

학계에서는 고구려의 요동과 북위의 요동이 양립한 현상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고대사 연구자들이 『위서』의 기록에 천착하지 않았고, 위진남북조사 전공자들은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북위의 요동을 분석한 결과 요수 동쪽의 요동이 아니라 요수 서쪽에 위치한 교군(僑郡) 혹은 관습적인 지역 명칭임을 발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위가 실제로 지배하지 못한 ‘요동’이란 지명을 고수한 이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북위는 요동뿐만 아니

* 투고: 2018년 8월 12일, 심사 완료: 2018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18년 11월 16일

- 1 『後漢書』卷4, 「和帝紀」元興元年條, 193~194쪽, “元興元年春正月戊午, 引三署郎召見禁中, 選除七十五人, 補謁者·長·相, 高句驪寇郡界……秋九月, 遼東太守耿夔擊獮人, 破之.”; 『後漢書』卷85, 「東夷·高句驪傳」, 2814쪽, “和帝元興元年春, 復入遼東, 寇略六縣, 太守耿夔擊破之, 斬其渠帥.” 이하 중국의 정사류와 資治通鑑은 中華書局標點校勘本에 의거한다.

라 동진남조의 영토인 양주(揚州)·형주·익주 등 지배하지 못한 지역도 자기의 땅처럼 분식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이를 알게 되었고 그 의도를 분석하다가 이러한 ‘역사왜곡’이 해당 지역의 실효지배가 아니라 허구적인 영토권 주장임을 간파하게 되었다. 탁발부가 세운 북위는 화북을 통일한 이후 중국의 정통성을 주장하였지만, 강남의 남조가 존재하는 이상 비지배층인 한인(중국인)에게 정통성을 각인시키려면 중국인의 천하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고 허구적인 영토관은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 글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상세히 논증하려고 한다.

본고는 『위서』 주변국 열전, 천하관과 요령(遙領)·허봉(虛封)의 개념²을 차용하여 북위의 요동 지배 주장이 천하관과 관련 있음을 검토하려고 한다. 먼저 2장에서는 고구려가 요동을 지배하게 된 과정과 요동을 지배했음이 확실한 근거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위서』와 묘지명에 기록을 검토하여 북위가 요동을 자신의 영토로 간주했던 사례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북위의 억지 주장의 논리를 살펴보기 위해 『위서』에 기록된 북위의 정통성과 주변 국가 폄하 주장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천하관의 분석을 위해 요령과 허봉을 이용했던 사례를 밝힘으로써 북위의 요동 영유 기록이 이러한 천하관의 논리에서 만들어진 조작임을 밝히려고 한다.

II. 고구려(高句麗)의 요동

고구려는 105년 태조왕의 요동군 6현 공격³ 이후 상제·안제 시기 여러 차례의

2 天下觀과 遙領·虛封의 관계는 최진열, 1999, 「三國時代 天下觀念과 그 현실적 변용 - 遙領·虛封·‘四方’將軍의 수용을 중심으로 -」, 『서울大東洋史學科論集』 23 참조.

3 『後漢書』卷4, 「和帝紀」元興元年條, 193~194쪽, “元興元年春正月戊午, 引三署郎召見禁中, 選除七十五人, 補謁者·長·相. 高句驪寇郡界. ……秋九月, 遼

요동 공격,⁴ 118년 요동으로 옮긴 현토(玄菟) 공격,⁵ 121년 요동·현토 공격,⁶ 환제(桓帝) 말기 요동 공격,⁷ 169년 백고(伯固)의 요동 공격,⁸ 242년 동천왕의 서

東太守耿夔擊貊人，破之。”；『後漢書』卷85，「東夷·高句驪傳」，2814쪽，“和帝元興元年春，復入遼東，寇略六縣，太守耿夔擊破之，斬其渠帥。”；『三國史記』卷15，「高句麗本紀」3 太祖王五十三年條，“五十三年，春正月，扶餘使來，獻虎，長丈二，毛色甚明而無尾，王遣將入漢遼東，奪掠六縣，太守耿夔出兵拒之，王軍大敗，秋九月，耿夔擊破貊人。”

- 4 『三國志』卷30，「魏書」30 東夷·高句麗傳」，844~845쪽，“至蕩·安之間，句麗王宮數寇遼東，更屬玄菟。遼東太守蔡風·玄菟太守姚光以宮為二郡害，與師伐之，宮詐降請和，二郡不進，宮密遣軍攻玄菟，焚燒候城，入遼隧，殺吏民，後宮復犯遼東，蔡風輕將吏士追討之，軍敗沒。”
- 5 『後漢書』卷5，「孝安帝紀」元初五年夏六月條，228쪽，“夏六月，高句驪與穢貊寇玄菟。”；『後漢書』卷85，「東夷·高句驪傳」，2814쪽，“元初五年，復與穢貊寇玄菟，攻華麗城。”；『三國史記』卷15，「高句麗本紀」3 太祖王六十六年六月條，“夏六月，王與穢貊襲漢玄菟，攻華麗城。”
- 6 『後漢書』卷85，「東夷·高句驪傳」，2814~2815쪽，“建光元年春，幽州刺史馮煥·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諷等將兵出塞擊之，捕斬穢貊渠帥，獲兵馬財物，宮乃遣嗣子遂成將二千餘人逆光等，遣使詐降；光等信之，遂成因據險隄以遮大軍，而潛遣三千人攻玄菟·遼東，焚城郭，殺傷二千餘人，於是發廣陽·漁陽·右北平·涿郡屬國三千餘騎同救之，而貊人已去。夏，復與遼東鮮卑八千餘人攻遼隧，殺略吏人，蔡諷等追擊於新昌，戰歿，功曹耿耗·兵曹掾龍端·兵馬掾公孫酺以身扞諷，俱沒於陳，死者百餘人。秋，宮遂率馬韓·穢貊數千騎圍玄菟，夫餘王遣子尉仇台將二萬餘人，與州郡并力討破之，斬首五百餘級。”；『三國史記』卷15，「高句麗本紀」3 太祖王六十九年條，“六十九年，春，漢幽州刺史馮煥·玄菟太守姚光·遼東太守蔡諷等，將兵來侵，擊殺穢貊渠帥，盡獲兵馬財物，王乃遣弟遂成，領兵二千餘人，逆煥·光等，遂成遣使詐降，煥等信之，遂成因據險以遮大軍，潛遣三千人，攻玄菟·遼東二郡，焚其城郭，殺獲二千餘人，……夏四月，王與鮮卑八千人，往攻遼隧縣[遼隧縣]，遼東太守蔡諷，將兵出於新昌，戰歿，功[兵]曹掾龍端·兵馬掾公孫酺，以身扞諷，俱沒[歿]於陣，死者百餘人……十二月，王率馬韓·穢貊一萬餘騎，進圍玄菟城，扶餘王遣子尉仇台，領兵二萬，與漢兵并力拒戰，我軍大敗。”
- 7 『後漢書』卷51，「橋玄傳」，1696쪽，“桓帝末，鮮卑·南匈奴及高句驪嗣子伯固並畔，為寇鈔，四府舉玄為度遼將軍，假黃鉞，玄至鎮，休兵養士，然後督諸將守討擊胡虜及伯固等，皆破散退走。”
- 8 『資治通鑑』卷56，「漢紀」48 靈帝建寧二年條，1824쪽，“高句驪王伯固寇遼東，玄菟太守耿臨討降之。”

안평 공격,⁹ 307년 미천왕의 잦은 요동 공격,¹⁰ 319년 서진 평주자사 최비(崔毖), 우문부(宇文部), 단부(段部)와 모용외 공격,¹¹ 320년 모용부 치하의 요동 공격,¹² 385년 요동·현토 공격¹³ 등 요동 진출을 꾀하며 중국의 여러 나라와 자주 전쟁을 벌였다. 중국 사서와 『삼국사기』의 무성의한 기록 때문에 이 전쟁의 결과 고구려가 구체적으로 요동의 어느 지역까지 점령했는지 알 수 없다.

- 9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十六年條, “十六年, 王遣將, 襲破遼東西安平.”
- 10 『梁書』卷54, 「諸夷·東夷·高句麗傳」, 803쪽, “句麗王乙弗利頻寇遼東, 虜不能制.”;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三年條, “三年, 秋九月, 王率兵三萬, 侵玄菟郡, 虜獲八千人, 移之平壤.”;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十二年條, “十二年, 秋八月, 遣將襲取遼東西安平.”;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十六年條, “十六年, 春二月, 攻破玄菟城, 殺獲甚衆.”
- 11 『晉書』卷108, 「慕容廆載記」, 2806쪽, “時平州刺史·東夷校尉崔毖自以為南州士望, 意存懷集, 而流亡者莫有赴之, 毖意廆拘留, 乃陰結高句麗及宇文·段國等, 謀滅廆以分其地. 太興初, 三國伐廆……”;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二十年條, “二十年, 冬十二月, 晉平州刺史崔毖來奔. 初, 崔毖陰說我及段氏·宇文氏, 使共攻慕容廆, 三國進攻棘城. 廆閉門自守, 獨以牛酒, 犒宇文氏, 與國疑宇文氏與廆有謀, 各引兵歸. 宇文大人悉獨官曰: “二國雖歸, 吾當獨取之.” 廆使其子皝與長史裴嶷, 將精銳為前鋒, 自將大兵繼之, 悉獨官大敗, 僅以身免. 崔毖聞之, 使其兄子肅詣棘城偽賀, 廆臨之以兵, 肅懼首服, 廆遣肅歸, 謂毖曰: “降者, 上策; 走者, 下策也.” 引兵隨之. 毖與數十騎, 棄家來奔, 其衆悉降於廆. 廆以其子仁, 鎮遼東官府, 市里案堵如故, 我將如孥據于河城, 廆遣將軍張統掩擊擒之, 俘其衆千餘家, 歸于棘城. 王數遣兵寇遼東, 慕容廆遣慕容翰·慕容仁, 伐之, 王求盟, 翰·仁乃還.”
- 12 『晉書』卷108, 「慕容廆載記」, 2807쪽, “明年, 高句麗寇遼東, 廆遣眾擊敗之.”;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二十一年條, “二十一年, 冬十二月, 遣兵寇遼東, 慕容仁拒戰破之.”
- 13 『晉書』卷123, 「慕容垂載記」, 3086쪽, “高句麗寇遼東, 垂平北慕容佐遣司馬郝景率眾救之, 為高句麗所敗, 遼東·玄菟遂沒.”; 『十六國春秋輯補』(崔鴻撰, 湯球輯補, 王魯一·王立華點校, 濟南: 齊魯書社, 1998) 卷43, 「後燕錄」2, 346쪽;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二年條, “二年, 夏六月, 王出兵四萬, 襲遼東. 先是, 燕王垂命帶方王佐, 鎮龍城, 佐聞我軍襲遼東, 遣司馬郝景, 將兵救之, 我軍擊敗之, 遂陷遼東·玄菟, 虜男女一萬口而還. 冬十月, 燕慕容農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郡.”

『삼국사기』와 중국 정사인 『진서(晉書)』와 『위서』에 고구려가 요동 지역을 점령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 385년 고국양왕은 요동과 현토 2군을 점령하였다.¹⁴ 그러나 후연의 모용농은 고구려를 공격하여 요동과 현토 2군을 점령하였고,¹⁵ 결국 385년 유주와 평주를 평정하였다. 고구려의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은 402년 후연의 숙군(宿軍)을 공격하니 후연 평주자사 모용귀가 도망갔다.¹⁶ 후연이 406년 비여와 숙군 2성을 크게 쌓고 구니예를 영주자사로 임명하여 숙군성에, 유주자사 모용의에게 영지에, 기주자사 유목에게 비여에 각각 주둔하게 한 기사¹⁷를 보면, 고구려는 숙군성을 점령하고 숙군성의 수비를 포기하고 돌아간 것처럼 보인다. 404년에도 고구려는 후연을 공격하였다.¹⁸ 『진서』

- 14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二年條, “二年, 夏六月, 王出兵四萬, 襲遼東. 先是, 燕王垂命帶方王佐, 鎮龍城. 佐聞我軍襲遼東, 遣司馬郝景, 將兵救之, 我軍擊敗之, 遂陷遼東·玄菟, 虜男女一萬口而還. 冬十月, 燕慕容農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郡.”
- 15 『晉書』卷123, 「慕容垂載記」, 3086쪽, “慕容農攻克令支, 斬徐巖兄弟, 進伐高句驪, 復遼東·玄菟二郡, 還屯龍城.”; 『十六國春秋輯補』卷43, 「後燕錄」2, 346쪽; 『資治通鑑』卷106, 「晉紀」28 孝武帝太元十年條, 3356쪽, “慕容農至龍城, 休士馬十餘日, 諸將皆曰: ‘殿下之來, 取道甚速, 今至此, 久留不進, 何也?’ 農曰: ‘吾來速者, 恐餘巖過山鈔盜, 侵擾良民耳. 巖才不逾人, 誑誘饑兒, 烏集為群, 非有綱紀, 吾已扼其喉, 久將離散, 無能為也. 今此田善熟, 未收而行, 徒自耗損; 當俟收畢, 往則梟之, 亦不出旬日耳.’ 頃之, 農將步騎三萬至令支, 巖眾震駭, 稍稍逾城歸農. 巖計窮出降, 農斬之, 進擊高句驪, 復遼東·玄菟二郡, 還至龍城上, 上疏請繕修陵廟.”;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壤王二年冬十月條, “冬十月, 燕慕容農將兵來侵, 復遼東·玄菟二郡.”
- 16 『資治通鑑』卷112, 「晉紀」34 安帝元興元年五月條, 3543쪽, “高句麗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棄城走.”;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十一年條, “十一年, 王遣兵攻宿軍, 燕平州刺史慕容歸, 棄城走.”
- 17 『晉書』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大城肥如及宿軍, 以仇尼倪為鎮東大將軍·營州刺史, 鎮宿軍, 上庸公懿為鎮西將軍·幽州刺史, 鎮令支; 尚書劉木為鎮南大將軍·冀州刺史, 鎮肥如.”; 『十六國春秋輯補』卷47, 「後燕錄」6, 371쪽.
- 18 『資治通鑑』卷113, 「晉紀」35 安帝元興三年十一月條, 3577쪽, “高句麗侵燕.”;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十三年冬十一月條, “十三年, 冬十一月, 出師侵燕.”

「모용희재기」에는 이때 연군(燕郡)을 공격했다고 기록하였다.¹⁹ 모용성은 405년 정월 요동성을 공격했으나 고구려 군사들의 완강한 저항과 비·눈이 많이 내려 사졸들이 많이 죽자 후퇴하였다.²⁰ 이 기사에서 이미 요동성이 고구려의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 요동성은 요동군의 치소 양평현(襄平縣)이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미 ‘요동 전역’을 정복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송서』에서는 연대를 구체적으로 특정(特定)하지 않았지만 광개토대왕 시기에 요동군을 점령하였다고 기록하였다.²¹ 『양서』에서는 후연 모용보가 즉위한 이후 광개토대왕이 요동군을 점령했다고 기록하였고,²² 『통전』도 이 기사를 따랐다.²³ 이처럼 『진서』와 『위서』가 고구려의 요동 점령을 기록하지 않은 반면, 남조계 사서와 당후기 편찬된 『통전』에서는 고구려의 요동 정복 사실을 기록하였고 그 시점이 후연 모용보의 즉위 이후였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모호한 기록 때문에 고구려의 요동 점령 시기는 학계의 논란이 되었다. 「광개토대왕비」에 따르면, 광개토대왕은 영락(永樂) 5년(395), 패려(裨麗)를 정복한 후 양평도(襄平道), □성(□城), 역성(力

19 『晉書』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會高句驪寇燕郡, 殺略百餘人.”

20 『晉書』卷124, 「慕容熙載記」, 3106쪽, “會高句驪寇燕郡, 殺略百餘人. 熙伐高句驪, 以苻氏從, 爲衝車地道以攻遼東. 熙曰: ‘待剗平寇城, 朕當與后乘輦而入, 不聽將士先登.’ 於是城內嚴備, 攻之不能下. 會大雨雪, 士卒多死, 乃引歸.”; 『十六國春秋輯補』卷47, 「後燕錄」6, 371쪽; 『資治通鑑』卷114, 「晉紀」36 安帝義熙元年正月條, 3579쪽, “燕王熙伐高句麗. 戊申, 攻遼東. 城且陷, 熙命將士: ‘毋得先登, 俟剗平其城, 朕與皇后乘輦而入.’ 由是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廣開土王九年十四年春正月條, “十四年, 春正月, 燕王熙來攻遼東城, 且陷, 熙命將士: “毋得先登, 俟剗平其城, 朕與皇后, 乘輦而入.” 由是, 城中得嚴備, 卒不克而還.”

21 『宋書』卷97, 「夷蠻·東夷·百濟國傳」, 2393쪽, “百濟國, 本與高驪俱在遼東之東千餘里, 其後高驪略有遼東, 百濟略有遼西, 百濟所治, 謂之晉平郡晉平縣.”

22 『梁書』卷54, 「諸夷·東夷·高句驪傳」, 803쪽, “垂死, 子寶立, 以句驪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23 『通典·邊防典』卷186, 「邊防」2 東夷下 高句麗傳, 5013쪽, “其後慕容寶以句麗王安爲平州牧, 封遼東·帶方二國王. 安始置長史·司馬·參軍官, 後略有遼東郡.”

城), 북풍(北豊), 오비□(五備□)를 거쳐 영토를 시찰하고, 사냥하였다.²⁴ 이 기사에서 양평도는 한대 이래 요동군의 치소였던 양평현 일대에 있던 길로 추정되므로 패려를 격파하고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으로 돌아왔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의 학설이다.²⁵ 그러나 400~402년 사이에 점령한 요동 지역을 「광개토대왕비」에서는 395년 이전 점령한 것처럼 기술하였다고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²⁶ 양자의 주장을 절충하여 395년 무렵까지 고구려와 후연이 요동을 분점하였다고 보기도 한다.²⁷ 한편 고구려의 요동 점령 시기를 398년,²⁸ 404년,²⁹ 406년부터³⁰ 등으로 보는 주장도 있다. 필자는 『수경주』에 인용된 『십삼주지』에서 요동속국

- 24 「廣開土大王碑」, “永樂五年歲在乙未, 王以稗麗不□□[人], 躬率往討, 過富山[負]山, 至鹽水上, 破其三部洛六七百營, 牛馬群[羊], 不可稱數, 於是旋駕, 因過襄平道, 東來□城, 力城, 北豊, 五備□, 遊觀土境, 田獵而還.”
- 25 고구려가 395년 이전 遼東을 점령했다는 주장은 徐榮洙, 1988, 「廣開土大王陵碑文」의 정복기사 재검토(中), 『역사학보』 119, 94~103쪽; 武田幸男, 1989, 「長壽王의 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14쪽; 田中俊明, 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 北方領域形成史에 있어서 廣開土王時代 -」, 『高句麗研究』 2, 514~516쪽; 孔錫龜, 2012, 「廣開土王의 遼西地方 進出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67, 125~157쪽; 井上直樹, 2012,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の對稗麗戰」, 『韓國古代史研究』 67, 206쪽; 임기환, 2013,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94~10쪽.
- 26 여호규, 2005, 「광개토대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현실』 55, 36쪽.
- 27 이성제, 2012,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 - 396년 後燕의 廣開土王 冊封問題를 중심으로 -」, 『韓國古代史研究』 68, 35~66쪽.
- 28 趙智濱, 2015, 「高句麗占領遼東時間略考」, 『東北史地』 2015 - 2, 39원쪽~43오른쪽. 구체적인 논증은 없지만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이 趙智濱의 견해와 같다(耿鐵華, 2006, 「跋高句麗金銅佛造像」, 『東北史地』 2006 - 6, 18왼쪽~18오른쪽; 馮立君, 2015, 「高句麗“西進”遼東問題再探討」, 『東北史地』 2015 - 3, 31원쪽~39쪽.
- 29 曾憲妹, 1996, 「高句麗好太王時期的擴張活動」, 『通化師範學報(社會科學)』, 1996 - 1(總第31期), 43쪽; 許明綱, 徐吉洙 옮김, 2000, 「대련지구(大連地區)에 있는 4개의 고구려 산성에 대한 소고」, 『高句麗研究』 9, 395~396쪽.
- 30 武田幸男, 1989, 「長壽王의 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도위의 치소가 창려도(昌黎道)이었다는 기사³¹에 주목하여 양평도의 ‘道’는 길(도로)이 아니라 현급행정구역(縣級行政區域)인 ‘도(道)’라고 해석하고, 양평도의 존재는 고구려가 이미 395년 당시 한대-서진 요동군의 치소 양평이 고구려의 땅이었음을 밝혔다.³²

앞에서 『진서』와 『위서』에서 고구려의 요동 점령 기사를 누락했음을 살펴보았다. 『위서』 「고구려전」에는 고국원왕(劄)이 모용황에게 패한 기사만 기록하였을 뿐,³³ 광개토대왕 시기의 사건은 쓰지 않았다. 이어서 북위 태무제 시기 고구려가 북위에 사신을 보내자 이오를 고구려에 파견하였다. 아래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자.

“세조[太武帝] 때 쇠(劄, 고국원왕)의 증손 련(璉)(장수왕)이 비로소 사자 안동(安東)을 보내 표(表)를 받들고 방물을 바치고 아울러 국휘(國諱)를 청하였다. 세조는 그 정성을 가상히 여겨 제계(帝系) 명휘(名諱)를 그 나라에 내려주도록 하였고, 원외산기시랑 이오(李敖)를 보내 련을 도독요해제군사(都督遼海諸軍事) 정동장군(征東將軍) 영호동이중랑장(領護東夷中郎將) 요동군개국공(遼東郡開國公) 고구려왕(高句麗王)에 배수(拜授)하였다. 이오는 련이 거주하는 평양성에 이르러 고구려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요동 남쪽 1천여 리이며, 동쪽으로 책성에 이르고 남쪽으로 소해(小海)에 이르며 북쪽으로 옛 부여(夫餘)에 이르렀다. 민호(民戶)는 전의 세 배이다. 위(魏)[삼국시대 위] 때 고구려는 동

31 『水經注』(酈道元 注, 楊守敬 纂疏, 段熙仲 點校, 陳橋驛 復校, 『水經注疏』,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89) 卷14, 大遼水·又東南過房縣西條, 1273쪽, “白狼水又北徑黃龍城東. 十三州志曰: 遼東屬國都尉治, 昌黎道, 有黃龍亭者也.”

32 崔珍烈, 2016, 「후연(後燕) ‘용성시대(龍城時代)’의 정치적·경제적 자멸(自滅)－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 후연 공략의 대외적 배경－」, 『동북아역사논총』 52, 112~118쪽.

33 『魏書』 卷100, 「高句麗傳」, 2214쪽, “其玄孫乙弗利, 利子劄, 烈帝時與慕容氏相攻擊. 建國四年, 慕容元真率眾伐之, 入自南陝, 戰於木底, 大破劄軍. 乘勝長驅, 遂入丸都, 劄單馬奔竄. 元真掘劄父墓, 載其屍, 并掠其母妻·珍寶·男女五萬餘口, 焚其宮室, 毀丸都城而還. 自後劄遣使來朝, 阻隔寇讎, 不能自達. 劄後為百濟所殺.”

서로 2천 리, 남북으로 1천여 리였다.”³⁴

『삼국사기』에 따르면 이는 장수왕 23년(435) 유월의 기사이며, 북위는 고구려에 이오를 보낸 다음 북연을 공격하였다. 이에 북연의 풍홍은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³⁵ 북위와 고구려 사이에는 북연이 있었는데, 고구려와 북위의 사신이 육로 혹은 해로 가운데 어떤 길로 왕래했는지는 불분명하다.

위의 인용문의 밑줄 친 부분은 고구려의 강역을 설명하는 대목이므로 요동이 고구려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서』 권97 「해이풍발전부제문통전」에는 북위가 북연을 공격하자 고구려가 개입하는 장면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였다.

“태연 2년(436) 고려(高麗)는 장수 갈로(葛盧) 등을 보내 무리를 이끌고 풍문통(풍홍)을 맞이하도록 파견하였다. 고구려의 군사들이 화룡성에 들어가서 그 헤진 옷을 벗었다. 갈로 등은 북연의 날카로운 무기를 취하여 고구려 군사들에게 주었다. 풍문통은 이에 화룡성 안의 사녀(士女)를 데리고 고려로 들어갔다. ……(중략)…… 문통이 요동에 이르자, 고려는 사신을 보내 위로하며 ‘용성왕(龍城王) 풍군(馮君)이 들에서 머무르게 되었으니 사마(士馬)가 피곤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였다. 문통은 부끄럽고 노하여 제(制)를 칭하고 답하여 비난하니, 고려는 그를 평곽(平郭)에 거주하게 하였다가 북풍으로 옮겼다. 문통은 본래 고려를 깔보고 정형(政刑)과 상벌(賞罰)을 자기 나라에서처럼 행하였다. 고려는 이에 그의 시인(侍

34 『魏書』卷100, 「高句麗傳」, 2214~2215쪽, “世祖時, 釗曾孫璉始遣使者安東奉表貢方物, 并請國諱. 世祖嘉其誠款, 詔下帝系名諱於其國, 遣員外散騎侍郎李敖拜璉為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敖至其所居平壤城, 訪其方事, 云: 遼東南一千餘里, 東至柵城, 南至小海, 北至舊夫餘, 民戶參倍於前. 魏時, 其地東西二千里, 南北一千餘里.”

35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二十三年條, “二十三年, 夏六月, 王遣使入魏朝貢, 且請國諱. 世祖嘉其誠款, 使錄帝系及諱以與之. 遣員外散騎侍郎李敖, 拜王為都督遼海諸軍事征東將軍領護東夷中郎將遼東郡開國公高句麗王. 秋, 王遣使入魏謝恩. 魏人數伐燕, 燕日危蹙. 燕王馮弘曰: “若事急, 且東依高句麗, 以圖後舉.” 密遣尙書陽伊, 請迎於我.”

人)을 빼앗고, 왕인(王仁)을 질임(質任)으로 삼았다. 문통은 화내고 원망하여 장자 남쪽으로 도망갈 것을 모의하였다. 세조(태무제)는 고려에 문통을 보낼 것을 요구 하자 고려는 문통을 북풍에서 살해했고, 같은 때에 죽은 자손이 10여 인이었다.”³⁶

『삼국사기』 장수왕 26년(438)조에 위의 인용문과 달리 유송(劉宋)이 사신 왕백구(王白駒)를 보내 풍흥을 데려 가려고 하는 기사를 실었다.³⁷ 즉 『삼국사기』는 유송이 왕백구가 이끄는 7천여 인을 보내 고구려의 장수 손수(孫漱)를 죽이고 고구(高仇) 등 2인을 죽였다는 『송서』 권97 「이만·동이·고구려국전(高句麗國傳)」의 기사를 따랐다.³⁸

위의 인용문의 밑줄 친 북연주(北燕主) 풍흥이 요동에 이르렀을 때 고구려의 사신이 마중나온 대목에 주목하자. 여기에서 요동이 이미 고구려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풍흥을 평곽(현)에 거주하게 하는데, 현재의 통설로는 요하하류에 있는 현재의 요령성(遼寧省) 가이저우시[蓋州市] 부근의 가이현[蓋縣] 현

- 36 『魏書』卷97, 「海夷馮跋傳附弟文通傳」, 2128~2129쪽, “太延二年, 高麗遣將葛盧等率眾迎之, 入和龍城, 脫其弊褐, 取文通精仗以賦其眾. 文通乃擁其城內士女入于高麗. ……文通至遼東, 高麗遣使勞之曰: ‘龍城王馮君爰適野次, 士馬勞乎?’ 文通慚怒, 稱制答讓之, 高麗乃處之於平郭, 尋徙北豐. 文通素侮高麗, 政刑賞罰, 猶如其國, 高麗乃奪其侍人, 質任王仁, 文通忿怨之, 謀將南奔. 世祖又徵文通於高麗, 高麗乃殺之於北豐, 子孫同時死者十餘人.”
- 37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二十六年條, “二十六年, 春三月, 初, 燕王弘至遼東. 王遣使勞之曰: ‘龍城王馮君, 爰適野次, 士馬勞乎!’ 弘慙怒, 稱制讓之. 王處之平郭, 尋徙北豐. 弘素侮我, 政刑賞罰, 猶如其國. 王乃奪其侍人, 取其太子王仁爲質. 弘怨之, 遣使如宋, 上表求迎. 宋太祖遣使者王白駒等迎之, 并令我資送. 王不欲使弘南來, 遣將孫漱·高仇等, 殺弘于北豐, 并其子孫十餘人. 白駒等帥所領七千餘人, 掩討漱·仇, 殺仇, 生擒漱. 王以白駒等專殺, 遣使執送之. 太祖以遠國, 不欲違其意, 下白駒等獄, 已而原之.”
- 38 『宋書』卷97, 「夷蠻·東夷·高句麗國傳」, 2393쪽, “十五年, 復為索虜所攻, 弘敗走, 奔高麗北豐城, 表求迎接. 太祖遣使王白駒·趙次興迎之, 并令高麗料理資遣, 璉不欲使弘南, 乃遣將孫漱·高仇等襲殺之. 白駒等率所領七千餘人掩討漱等, 生禽漱, 殺高仇等二人. 璉以白駒等專殺, 遣使執送之, 上以遠國, 不欲違其意, 白駒等下獄, 見原.”

성(縣城)의 한대 고성이라고 한다.³⁹ 「광개토대왕비」에도 언급된 북풍은 지금의 요령성 수암(岫巖) 지역으로 비정하기도 하지만,⁴⁰ 『독사방여기요』 권37 「산동」 8 심양중위·북풍성조에는 명대 심양중위(瀋陽中衛)의 서북쪽에 있었다고 기록하였다.⁴¹ 『독사방여기요』의 기술이 옳다면, 고구려는 당시 심양 주변의 북풍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 동선을 보면 요동 지역이 이미 고구려의 땅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세기 이후 요동이 고구려 땅이었음은 『삼국유사』 권3 「탐상」 제4 요동성육왕탐조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고려의 성왕(聖王)이 순행하다가 요동성에 이르렀고 당(唐)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설인귀가 육왕탐을 목격하였다.⁴² ‘성왕(聖王)’이 고구려의 어떤 왕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으나,⁴³ 고구려왕이 자신의 영토를 순행했고 요동성을 방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요동 지역이 고구려의 땅이었다는 증거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양

39 孫進己·王綿厚·馮永謙, 1989, 『東北歷史地理』 1, 黑龍江人民出版社, 293~294쪽; 王連春, 1987, 「丹東最早的城池 - 論漢代西安平和武次的方位問題」, 『丹東史志』 合正本(『中國考古集成』(東北, 卷10), 1179쪽 재인용).

40 임기환, 2013,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87~89쪽.

41 『讀史方輿記要』(顧祖禹 撰, 賀次君·施和金 點校, 中華書局, 2005) 卷37, 「山東」 8 瀋陽中衛·北豐城條, 1737쪽, “北豐城在衛西北, 後漢末, 公孫度據遼東, 置城於此, 謂之豐城. 司馬懿伐遼東, 豐人南徙青齊, 其留者曰北豐. 宋元嘉十五年, 北燕主馮弘奔高麗, 至遼東, 高麗處之平郭, 既而徙之北豐, 尋殺之. 胡氏曰: 慕容翰議以偏師從北道攻高麗, 即此豐道云.”

42 『三國遺事』 卷3, 「塔像」 第四 遼東城育王塔條, “三寶感通錄載, 高麗遼東城傍塔者古老傳云, 昔高麗聖王按行國界次, 至此城見五色雲覆地往尋雲中, 有僧執錫而立, 既至便滅遠看還現, 傍有玉塔三重, 上如覆釜不知是何, 更往覓僧, 唯有荒草, 掘尋一丈得杖并履, 又掘得銘上有梵書, 侍臣識之云 ‘是佛塔,’ 王委曲問詰, 答曰 ‘漢國有之, 彼名蒲昌王 本作休屠王, 祭天金人,’ 因生信起木塔七重後佛法始至具知始末, 今更損高, 卒塔朽壞, 育王所統一閣浮提洲處處立塔, 不足可怪, 又唐龍朔中有事遼左, 行軍薛仁貴行至隋主討遼古地乃見山像, 空曠蕭條絕於行往, 問古老, 云 ‘是先代所現,’ 便圖寫來京師.”

43 이 ‘聖王’을 轉輪聖王으로 해석하여 高句麗王을 轉輪聖王으로 粉飾했음을 지적한 견해도 있다(판카즈, 1994.8, 「新羅‘中古’期の 轉輪聖王 理念 - 인도 아소카왕과 新羅 眞興王의 政治理念의 比較 -」,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제가 611년에 고구려를 친정(親征)하여 요동성에 이르렀다는 『수서』 권81 「동이·고려전(高麗傳)」의 기사이다. 이때 수양제는 요수 서쪽의 무려라(武厲邐)를 점령하여 요동군과 통정진(通定鎭)을 설치하였다.⁴⁴ 이 기사에서 7세기 초까지 요동이 고구려의 영토였을 뿐만 아니라 요수 서쪽의 무려라도 고구려의 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3세기 말 혹은 4세기 초에서 7세기 초까지 요동 지역이 고구려의 땅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위서』 「고구려전」에서는 이를 모호하게 기록하였고 『위서』 권97 「해이풍발전부제문통전」에 요동이 고구려의 영토임을 시사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서술태도는 무엇 때문일까? 이는 3장에서 살펴보자.

III. 북위의 ‘요동’: 『위서』와 묘지명의 ‘요동’

『위서』에서는 요동·낙랑·대방·현토의 명칭이 발견된다. 예컨대 북위의 북연 공격 기사에서 창려(昌黎)·요동,⁴⁵ 대방·건덕(建德)·기양(冀陽) 3군,⁴⁶ 영구(營丘)·성주(成周)·요동·낙랑·대방·현토 6군⁴⁷의 이름이 확인된다. 또 석성군

44 『隋書』卷81, 「東夷·高麗傳」, 1817쪽, “大業七年, 帝將討元之罪, 車駕渡遼水, 上營於遼東城, 分道出師, 各頓兵於其城下, 高麗率兵出拒, 戰多不利, 於是皆嬰城固守, 帝令諸軍攻之, 又勅諸將: ‘高麗若降者, 即宜撫納, 不得縱兵.’ 城將陷, 賊輒言請降, 諸將奉旨不敢赴機, 先令馳奏, 比報至, 賊守禦亦備, 隨出拒戰, 如此者再三, 帝不悟, 由是食盡師老, 轉輸不繼, 諸軍多敗績, 於是班師, 是行也, 唯於遼水西拔賊武厲邐, 置遼東郡及通定鎭而還.”

45 『魏書』卷3, 「太宗紀」永興三年春正月己亥條, 51쪽, “昌黎·遼東民二千餘家內屬.”

46 『資治通鑑』卷122, 「宋紀」4 文帝元嘉九年八月條, 3840쪽, “八月, 燕王使數萬人出戰, 魏昌黎公丘等擊破之, 死者萬餘人, 燕尚書高紹帥萬餘家保羌胡固; 辛巳, 魏主攻紹, 斬之, 平東將軍賀多羅攻帶方, 撫軍大將軍永昌王健攻建德, 驃騎大將軍樂平王丕攻冀陽, 皆拔之.”

47 『魏書』卷4上, 世祖紀上 延和元年九月乙卯條, 81쪽, “車駕西還, 徙營丘·成

(石城郡)과 이름이 확인되지 않은 10군⁴⁸ 혹은 10여 군⁴⁹이 있었다. 『위서』 「지형지」에는 요동군,⁵⁰ 양평현,⁵¹ 신창현,⁵² 낙랑군,⁵³ 대방현⁵⁴이 보이지만 북위말인 효명제 정광 년간(520~525)에 설치되었다.⁵⁴ 『위서』 「지형지」의 기록을 신뢰할 수 있다면, 북위가 북연으로부터 빼앗은 요동·낙랑·대방·현토 등 본래 고구려의 영토에 있었던 군현은 태무제 시기에 없어졌다가 북위 말에 다시 설치되었다. 그런데 「석육묘지(石育墓誌)」에 따르면, 석육(石育)의 할아버지 석수(石遂)가 요동호군(遼東護軍)으로 재직하다가 연(燕)을 따라 3천 호를 거느리고 북위에 항복하였다. 석수는 건위장군(建威將軍)과 요동·신성(新城) 2군 태수를 역임하였다.⁵⁵ 석수가 요동태수에 임명된 시기는 북위가 북연을 정복한 이후로 추

周·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民三萬家于幽州，開倉以賑之。”；『魏書』卷97，「海夷馮跋傳附文通傳」，2127쪽，“延和元年，世祖親討之，文通嬰城固守，文通營丘·遼東·成周·樂浪·帶方·玄菟六郡皆降，世祖徙其三萬餘戶于幽州。”；『資治通鑑』卷122，「宋紀」4 文帝元嘉九年夏條，3840쪽，“八月，燕王使數萬人出戰，魏昌黎公丘等擊破之，死者萬餘人，燕尚書高紹帥萬餘家保羌胡固；辛巳，魏主攻紹，斬之，平東將軍賀多羅攻帶方，撫軍大將軍永昌王健攻建德，驃騎大將軍樂平王丕攻冀陽，皆拔之，九月，乙卯，魏主引兵西還，徙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民三萬家於幽州。”

- 48 『資治通鑑』卷122，「宋紀」4 文帝元嘉九年秋七月條，3839쪽，“燕石城太守李崇等十郡降於魏，魏主發其民三萬穿圍塹以守和龍，崇，績之子也。”
- 49 『魏書』卷46，「李訢傳」，1039쪽，“李訢，字元盛，小名眞奴，范陽人也，……父崇，馮跋吏部尚書·石城太守，延和初，車駕至和龍，崇率十餘郡歸降，世祖甚禮之，呼曰‘李公’以崇爲平西將軍·北幽州刺史·固安侯。”
- 50 『魏書』卷106上，「地形志」2上 營州·遼東郡條 細注，2495쪽，“秦置，後罷，正光中復，治固都城。”
- 51 『魏書』卷106上，「地形志」2上 營州·遼東郡·襄平縣條 細注，2495쪽，“二漢·晉屬，後罷，正光中復，有青山。”
- 52 『魏書』卷106上，「地形志」2上 營州·遼東郡·新昌縣條 細注，2495쪽，“二漢·晉屬，後罷，正光中復。”
- 53 『魏書』卷106上，「地形志」2上 營州·樂良郡條 細注，2495쪽，“前漢武帝置，二漢·晉曰樂浪，後改，罷，正光末復，治連城。”
- 54 『魏書』卷106上，「地形志」2上 營州·樂良郡·帶方縣條 細注，2495쪽，“二漢屬，晉屬帶方，後罷，正光末復屬。”
- 55 「魏故使持節都督滄州諸軍事滄州刺史石(育)使君戴夫人墓誌銘」，307쪽，“祖遂，

정되기 때문에 『위서』 「지형지」의 기록과 달리 적어도 태무제 시기까지 교군(僑郡)인 요동군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서』 열전과 묘지명에 ‘요동’이 자주 등장하였다. 예컨대 고도열(高道悅)⁵⁶과 조청(晁淸),⁵⁷ 조숭(晁崇),⁵⁸ 서위북주 팔주국의 한 사람 이필의 할아버지 이귀추(李貴醜)와 아버지 이영(李永),⁵⁹ 화산왕비(華山王妃) 공손씨(公孫氏, 公孫甌生; 501~537),⁶⁰ 공손략(公孫略, 472~538),⁶¹ 이모(李謀, 497~523),⁶² 공손의(公孫猗, 462~526)⁶³ 우문경상(宇文景尙, 521~556),⁶⁴ 이면영(爾綿永; 段永) (503~570)⁶⁵ 이벽(李璧, 460~519)의 아내 (遼東公孫氏; 字 佛仁),⁶⁶ 원휘(元暉)

遼東護軍, 從燕歸闕, 領戶三千, 賜爵昌邑子, 建威將軍·遼東·新城二郡太守.”

56 『魏書』卷62, 「高道悅傳」, 1399쪽, “高道悅, 字文欣, 遼東新昌人也.” 高道悅의 墓誌銘에서는 본적을 遼東郡 新昌縣 安鄉 北里라고 기록하였다(『高道悅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趙超, 1992,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04쪽).

57 『魏書』卷87, 「晁淸傳」, 1585쪽, “晁淸, 遼東人也. 祖暉, 濟州刺史·潁川公. 淸襲祖爵, 例降為伯. 為梁城戍將.”

58 『魏書』卷91, 「晁崇傳」, 1943쪽, “晁崇, 字子業, 遼東襄平人也. 家世史官. 崇善天文術數, 知名於時. 為慕容垂太史郎. 從慕容寶敗於參合, 獲崇, 後乃赦之. 太祖愛其伎術, 甚見親待. 從平中原, 拜太史令, 詔崇造渾儀, 歷象日月星辰.”

59 『周書』卷15, 「李弼傳」, 239쪽, “李弼字景和, 遼東襄平人也. 六世祖根, 慕容垂黃門侍郎. 祖貴醜, 平州刺史. 父永, 太中大夫, 贈涼州刺史.”

60 「公孫甌生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 321쪽, “妃姓公孫, 字甌生, 遼東襄平人也.”

61 「公孫略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 333쪽, “公諱略, 字永略, 遼東人也.”

62 「李謀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 178쪽, “君諱謀, 字文略, 遼東襄平人, 晉司徒胤之十世孫, 大魏青州刺史貞侯之第二子也.”

63 「孫猗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 197쪽, “君諱猗, 字榮寶, 遼東襄平人也.”

64 「宇文景尙墓誌」, 『墨香閣藏北朝墓誌』(葉煒·劉秀峰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6), 112쪽.

65 『庾子山集注』(庾信 撰, 倪璠 注, 許逸民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0) 卷14, 「周柱國大將軍大都督同州刺史爾綿永神道碑」, 853쪽. 이 神道碑에 따르면, 爾綿永(段永)의 본적은 東燕 遼東 石城縣 靈泉里였다.

66 「李璧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 120쪽.

의 아내 요동공손씨(遼東公孫氏),⁶⁷ 원노괴(元奴瑰)의 아내 요동이씨(遼東李氏)⁶⁸ 등 요동군 출신 인물이 산견된다. 이밖에 이원호(李元昊)는 본적이 요동군 양평현이지만, 이후지(李後智)가 모용덕(慕容德)을 따라 청주로 이주하면서 청주에 거주하였기 때문에⁶⁹ 본적에서 완전히 멀어졌다. 이들의 본적인 요동군은 이미 고구려의 지배를 받았지만, 여전히 요동군을 자신의 본적 혹은 조적(祖籍)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 살거나 무덤을 만들었다. 예컨대 이모(李謀)는 낙양현 현중리(顯中里)에서 죽었고, 제군(齊郡) 안평현(安平縣) 황산리(黃山里)의 선영에 묻혔다.⁷⁰ 고도열은 효문제의 황태자 원순(元恂)의 낙양 탈출을 막다가 살해되었고⁷¹ 낙양의 송인향(崇仁鄉) 효의리(孝義里)에 묻혔다.⁷² 매장지도 본적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요동을 본적으로 표기해도 낙양 등 매장지가 실질적인 본적이 될 수 있다.

또 화산왕비 공손씨의 아버지 공손경(公孫瓘)은 영주대중정(營州大中正)을 역임하였다.⁷³ 요동군 출신인 공손경이 영주대중정을 역임했던 점에 주목하자. 공손경 일족은 요동군이 다시 설치되기 전에 영주(營州)의 동쪽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요동군을 본적으로 삼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주가 본

67 「魏故龍驤將軍太常少卿元(悛)君墓誌銘」, 『漢魏南北朝墓誌彙編』, 231쪽.

68 「元睿墓誌」,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羅新·葉煒, 北京:中華書局, 2005), 75쪽.

69 『魏書』卷71, 「李元護傳」, 1585쪽, “李元護, 遼東襄平人, 八世祖胤, 晉司徒·廣陸侯, 胤子順·璠及孫沉·志, 皆有名宦, 沉孫根, 慕容寶中書監, 根子後智等隨慕容德南渡河, 居青州, 數世無名位, 三齊豪門多輕之.”

70 「李謀墓誌」, 179쪽, “正光四年歲次甲辰七月廿七日病卒於洛陽顯中里, 春秋廿七, 至孝昌二年二月十五日葬齊郡安平縣黃山里, 祔使君之神塋.”

71 『魏書』卷22, 「廢太子恂傳」, 588~589쪽, “[元]恂不好書學, 體貌肥大, 深忌河洛暑熱, 意每迫樂北方, 中庶子高道悅數苦言致諫, [元]恂甚銜之, 高祖幸崧岳, [元]恂留守金墉, 於西掖門內與左右謀, 欲召牧馬輕騎奔代, 手刃[高]道悅於禁中.”

72 「高道悅墓誌」, 105쪽, “神龜二年歲次己亥, 春二月辛亥朔, 廿日庚午卒於崇仁鄉孝義里昔太和之世塋內.”

73 「公孫瓘生墓誌」, 321쪽, “父瓘, 字九略, 大鴻臚少卿·營州大中正·使持節·冠軍將軍·燕州刺史·義平子.”

적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영주 일대의 인사 천거권을 가진 영주대중정에 임명될 수 있었다.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과 낙랑을 본적으로 하고 영주 등지에 거주하는 교인(僑人)들도 대중정(大中正)의 임무인 인재 등용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없어진 요동군을 본적지로 한 인물들의 기록이 보였고, 일부는 관리를 추천하는 대중정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서』에는 요동이 실토(實土)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 고숭(高崇)의 아버지 고잠(高潛)은 현문제 시기에 고구려에서 북위로 이주하여 ‘요동’에 거주했다고 한다.⁷⁴ 현문제 시기는 고구려 장수왕 시기였는데, 이때 요동은 북위의 땅이 아니라 고구려의 땅이었다. 그렇다면 고구려를 떠나 북위에 정착한 고잠이 거주한 ‘요동’은 어느 곳일까?

요동군은 북연 시대에 자주 등장하였다. 풍발이 415년 건국공신 손호 등을 제거할 때 요동태수 무은제를 살해하였다.⁷⁵ 또 카간 계승 분쟁에서 패한 유연(柔然)의 곡률(斛律)이 416년 북연에 오자 곡률을 요동군에 두었다.⁷⁶ 432년 북

74 『魏書』卷77, 「高崇傳」, 1707쪽, “高崇, 字積善, 勃海蓐人, 四世祖撫, 晉永嘉中與兄顧避難奔於高麗, 父潛, 顯祖初歸國, 賜爵開陽男, 居遼東, 詔以沮渠牧犍女賜潛為妻, 封武威公主.”

75 『晉書』卷125, 「馮跋載記」, 3132쪽, “昌黎尹孫伯仁·護弟叱支·叱支弟乙拔等俱有才力, 以驍勇聞, 跋之立也, 並冀開府, 而跋未之許, 由是有怨言, 每於朝饗之際, 常拔劍擊柱曰: ‘興建大業, 有功力焉, 而滯於散將, 豈是漢祖河山之義乎!’ 跋怒, 誅之, 進護左光祿大夫·開府儀同三司·錄尚書事以慰之, 護自三弟誅後, 常怏怏有不悅之色, 跋怒, 酖之, 尋而遼東太守務銀提自以功在孫護·張興之右, 而出為邊郡, 抗表有恨言, 密謀外叛, 跋怒, 殺之.”; 『十六國春秋輯補』卷99, 「北燕錄」2, 672쪽; 『資治通鑑』卷116, 「晉紀」38 安帝義熙十一年十月條, 3683쪽, “燕尚書令孫護之弟伯仁為昌黎尹, 與其弟叱支拔皆有才勇, 從燕王跋起兵有功, 求開府不得, 有怨言, 跋皆殺之, 進護開府儀同三司·錄尚書事, 以慰其心, 護怏怏不悅, 跋鴆殺之, 遼東太守務銀提自以有功, 出為邊郡, 怨望, 謀外叛, 跋亦殺之.”

76 『晉書』卷125, 「馮跋載記」, 3132쪽, “蜚蠕斛律為其弟大但所逐, 盡室奔跋, 乃館之于遼東郡, 待之以客禮.”; 『十六國春秋輯補』卷99, 「北燕錄」2, 673쪽. 『資治通鑑』에 따르면, 馮跋은 斛律에게 上谷侯의 작위를 주고 斛律의 딸을 昭儀로 받

위의 공격을 받아 항복한 4군 가운데 요동군의 명칭이 보인다.⁷⁷ 북위는 요동군을 포함한 6군의 백성 3만 가(家)를 유주로 이주시켰다.⁷⁸ 이 요동군이 311년 부새선비(附塞鮮卑) 소련(素連)과 목진(木津)을 격파하고 두 사람을 참한 후 2부(部)를 극성(棘城)으로 옮겨 설치한 요동군⁷⁹과 동일한 군(郡)인지는 단정할 수

아들였다. 그러나 柔然 카간 大檀을 의식하여 北燕의 萬陵이 斛律을 죽이자 大檀이 말 3천 필과 양 만 마리를 北燕에 주었다(『資治通鑑』 卷116, 『晉紀』 38 安帝義熙十年條, 3668~3669쪽, “斛律至和龍, 燕王跋賜斛律爵上谷侯, 館之遼東, 待以客禮, 納其女為昭儀, 斛律上書請還其國, 跋曰: ‘今度國萬里, 又無內應, 若以重兵相送, 則饋運難繼, 兵少則不足成功, 如何可還?’ 斛律固請, 曰: ‘不煩重兵, 願給三百騎, 送至敕勒, 國人必欣然來迎.’ 跋乃遣單于前輔萬陵帥騎三百送之, 陵憚遠役, 至黑山, 殺斛律而還, 大檀亦遣使獻馬三千匹·羊萬口於燕.”).

77 『十六國春秋輯補』 卷100, 『北燕錄』 3, 677쪽, “七月, 魏師來伐神高. 八月 石城遼東營丘成周四郡並降魏. 九月, 魏師引還, 徙民四萬餘戶而西.”

78 『資治通鑑』 卷122, 『宋紀』 4 文帝元嘉九年夏條, 3840쪽, “八月, 燕王使數萬人出戰, 魏昌黎公丘等擊破之, 死者萬餘人, 燕尚書高紹帥萬餘家保羌胡固; 辛巳, 魏主攻紹, 斬之. 平東將軍賀多羅攻帶方, 撫軍大將軍永昌王健攻建德, 驃騎大將軍樂平王丕攻冀陽, 皆拔之. 九月, 乙卯, 魏主引兵西還, 徙營丘·成周·遼東·樂浪·帶方·玄菟六郡民三萬家於幽州.”

79 『晉書』 卷108, 『慕容廆載記』, 2805쪽, “永嘉初, 廆自稱鮮卑大單于. 遼東太守龐本以私憾殺東夷校尉李臻, 附塞鮮卑素連·木津等託為臻報讎, 實欲因而為亂, 遂攻陷諸縣, 殺掠士庶, 太守袁謙頻戰失利, 校尉封釋懼而請和, 連歲寇掠, 百姓失業, 流亡歸附者日月相繼, 廆子翰言於廆曰: ‘求諸侯莫如勤王, 自古有為之君靡不杖此以成事業者也, 今連·津跋扈, 王師覆敗, 蒼生屠膾, 豈甚此乎! 豎子外以龐本為名, 內實幸而為寇, 封使君以誅本請和, 而毒害滋深, 遼東傾沒, 垂已二周, 中原兵亂, 州師屢敗, 勤王杖義, 今其時也, 單于宜明九伐之威, 救倒懸之命, 數連·津之罪, 合義兵以誅之, 上則興復遼邦, 下則并吞二部, 忠義彰於本朝, 私利歸於我國, 此則吾鴻漸之始也, 終可以得志於諸侯.’ 廆從之, 是日, 率騎討連·津, 大敗斬之, 二部悉降, 徙之棘城, 立遼東郡而歸.”; 『十六國春秋輯補』 卷23, 『前燕錄』 1, 176쪽; 『資治通鑑』 卷87, 『晉紀』 9 懷帝永嘉五年條, 2773쪽, “廆少子鷹揚將軍翰言於廆曰: ‘自古有為之君, 莫不尊天子以從民望, 成大業, 今連·津外以龐本為名, 內實幸災為亂, 封使君已誅本請和, 而寇暴不已, 中原離亂, 州師不振, 遼東荒散, 莫之救恤, 單石不若數其罪而討之. 上則興復遼東, 下則并吞二部, 忠義彰於本朝, 私利歸於我國, 此霸不之基也.’ 廆笑曰: ‘孺子乃能及能此乎!’ 遂帥眾東擊連·津, 以翰為前鋒, 破斬之, 盡併二部之眾, 得所掠民三千餘家, 及前歸廆者悉以付郡遼東賴以復存.”

없다. 이 당시 요수 동쪽의 요동군은 고구려의 영토였다. 그런데 『위서』 「지형지」 요동군조의 세주(細注)에 “진(秦)이 설치하였으며, 후에 없었다. 정광 년간에 다시 설치하였다. 치소는 고도성(固都城)이다.”⁸⁰, 요동군의 속현인 양평현의 세주에 “전한·후한(二漢)과 진(晉)에 속하였고 후에 없었다. 정광 년간 다시 설치하였다. 청산(靑山)이 있다”⁸¹는 기록이 있다. 『중국역사지명대사전』에 따르면, 청산은 현재의 요령성 이셴[義縣] 동쪽이라고 한다.⁸² 또 고도성의 위치는 알 수 없으나, 고도하(固都河)는 현재의 요령성 베이파시[北票市] 서남쪽을 흐르는 고동하(顧洞河)이며, 대릉하의 지류이다.⁸³ 田立坤의 고증에 따르면 청산은 차오양시[朝陽市]로부터 이셴에 이르는 대릉하 양안 지대, 극성은 이셴에서 서쪽의 베이파시 서부의 삼관영자(三官營子) 유적이었다.⁸⁴ 이는 사위락(史爲樂) 주편의 『중국역사지명대사전』과 구체적인 위치는 다르지만, 화룡, 즉 당시의 영주의 치소와 가까운 곳에 있었을 것이다.⁸⁵ 요컨대 북연 또는 북위말 다시 설치된 요동군은 현재의 요녕성 이셴과 베이파시 일대에 있었다. 이 지역은 고구려와 북위의 수도 평성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다. 고구려를 탈출한 고잠이 머무른 ‘요동’은 요수 서쪽, 특히 의무려산(醫無閭山) 지역을 지칭했을 것이다. 즉 당시 요동군이 존재하지 않았어도 요동군과 양평현의 교민(僑民)이 살았던 요수와 의무려산 서쪽과 영주 동쪽 사이의 지역을 관습상 ‘요동’으로 지칭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지명 고증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북위가 요동 지역을 지배한 것

80 『魏書』 卷106上, 「地形志」 2上 營州·遼東郡條細注, 2495쪽, “秦置, 後罷, 正光中復, 治固都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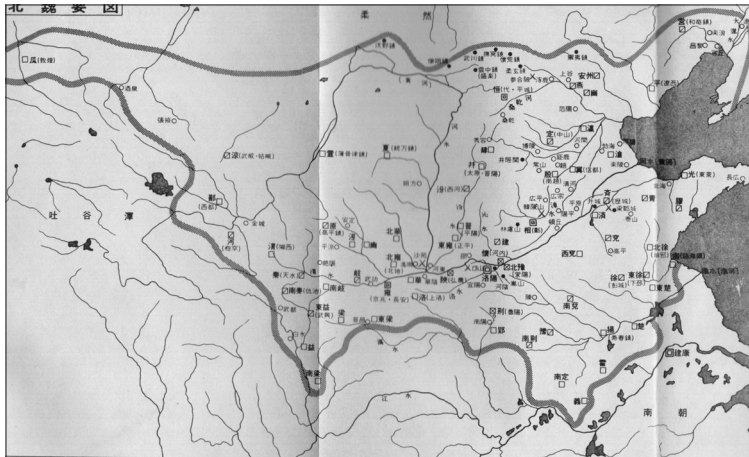
81 『魏書』 卷106上, 「地形志」 2上 營州·遼東郡·襄平縣條細注, 2495쪽, “二漢·晉屬, 後罷, 正光中復, 有靑山.”

82 史爲樂 主編, 2005, 『中國歷代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442오른쪽.

83 史爲樂 主編, 『中國歷代地名大辭典』, 1540왼쪽.

84 田立坤, 1996, 「棘城新考」, 『遼海文物學刊』 1996-2.

85 崔珍烈, 2015, 「16국시대 요서(遼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燕)의 대응」, 『백제와 요서지역』, 한성백제박물관, 236~238쪽.



지도 1 북위 후기 주군(州郡) 지도⁸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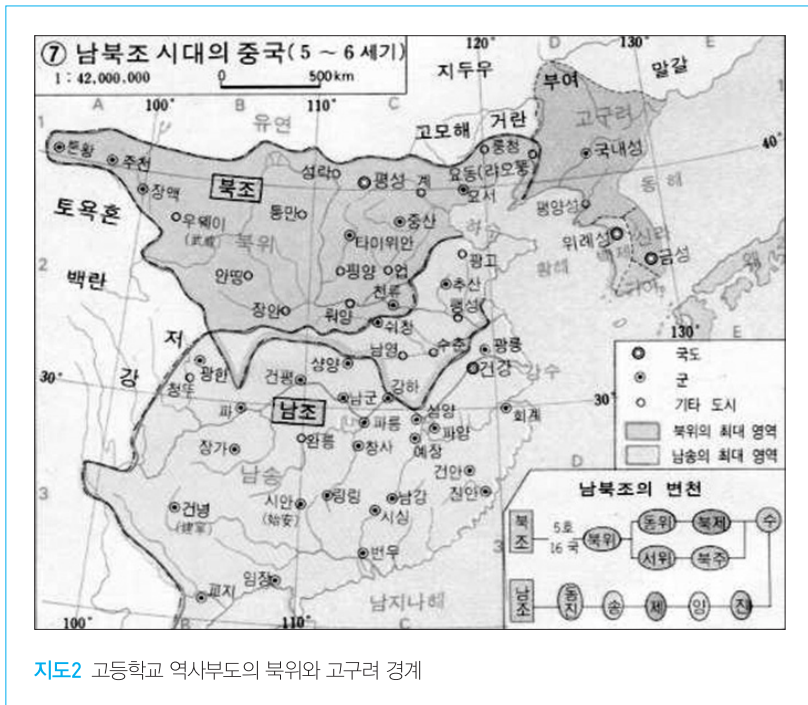
으로 오인하게 된다.

〈지도 1〉에서 요동반도의 서쪽, 즉 천산산맥(千山山脈) 서쪽이 북위의 영토로 표기되었다. 〈지도 2〉처럼 한때 우리나라의 일부 역사부도에도 요동의 일부가 북위의 영토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일본의 북위사 연구자도 북위의 ‘요동’이 현재의 요하 서쪽 지역이라고 오인할 만큼 『위서』의 요동 관련 서술은 교묘하였다.

이처럼 지배하지 않은 지역을 지배한 것처럼 기록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는 4장에서 살펴본다.

86 谷川道雄, 1971,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부록의 지도.

87 오인석 등, 1990, 『역사부도』, 동아출판사.



IV. 북위의 천하관: 정통성의 주장과 동진남조(東晉南朝)의 폄하

유목국가 선비(鮮卑)의 한 부족이었던 탁발부가 여러 유목민 집단을 통합하고 후연의 하북(河北) 지역과 하(夏)·북연(北燕)·북량(北凉) 등 5호 제국(五胡諸國)을 정복하여 화북(華北)을 통일하였다. 메이원핑[米文平]이 1980년 내몽고 자치구(內蒙古自治區) 후룬베이얼맹[呼倫貝爾盟] 어룬춘자치기[鄂倫春自治旗]에서 발견한 북위 태무제 시대의 알선동석각문(爰仙洞石刻文)에서 황제(皇帝)와 황후(皇后) 대신 유목민 고유의 군주호인 카간(可寒)·카툰(可敦)의 칭호가 사

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⁸⁸ 따라서 북위의 군주는 유목민 혹은 호인(胡人)들에게 카간, 한인(중국인)들에게 황제로 인식되었다.⁸⁹

호족군주(胡族君主)로서 중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 정통성을 분식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는 국호⁹⁰ 문제뿐만 아니라 행차(行次)의 제정에서 나타났다. 도무제는 천흥 원년(天興元年, 398) 최굉(崔宏, 崔玄伯) 등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차(行次)를 토덕(土德)으로 정하고 복색(服色)은 황색, 성수(聖數)는 5, 달력은 하정(夏正)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다.⁹¹ 효문제 태화 14년(490)에 토덕(土德)을 수덕(水德)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었다. 이때 중서감 고려(高閭)는 북위토덕설(北魏土德說)에 입각하여 토덕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였다.⁹² 반면 이표는 고려

88 米文平, 1994, 『鮮卑史研究』, 開封: 中州古籍出版社.

89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174~176쪽.

90 北魏의 국호 문제는 松下憲一, 2007, 「北魏の國號「大代」と「大魏」」, 『北魏胡族體制論』, 札幌: 北海道大學出版會(2004, 「北魏の國號「大代」と「大魏」」, 『史學雜誌』 113-6); 崔珍烈, 2005, 「雲崗石窟 曇曜五窟 五帝의 재해석-廟號와 國號로 본 北魏의 정체성-」, 『中央아시아研究』 10 참조.

91 『魏書』卷2, 「太祖紀」天興元年十二月己丑條, 34쪽, “十有二月己丑, 帝臨天文殿, 太尉·司徒進璽綬, 百官咸稱萬歲, 大赦, 改年, 追尊成帝已下及后號諡, 樂用皇始之舞, 詔百司議定行次, 尚書崔玄伯等奏從土德, 服色尚黃, 數用五, 未祖辰臘, 犧牲用白, 五郊立氣, 宣贊時令, 敬授民時, 行夏之正.”

92 『魏書』卷108之1, 「禮志」1, 2744~2745쪽, “十四年八月詔曰: ‘丘澤初志, 配尚宜定, 五德相襲, 分釐有常, 然異同之論, 著於往漢, 未詳之說, 疑在今史, 羣官百辟, 可議其所應, 必令合衷, 以成萬代之式.’” 中書監高閭議以為: ‘帝王之作, 百代可知, 運代相承, 書傳可驗, 雖祚命有長短, 德政有優劣, 至於受終嚴祖, 殷薦上帝, 其致一也, 故敢述其前載, 舉其大略, 臣聞居尊據極, 允應明命者, 莫不以中原為正統, 神州為帝宅, 苟位當名全, 化迹流洽, 則不專以世數為與奪, 善惡為是非, 故堯舜禪揖, 一身異尚; 魏晉相代, 少紀運殊, 桀紂至虐, 不廢承歷之敘; 厲惠至昏, 不闕周晉之錄, 計五德之論, 始自漢劉, 一時之議, 三家致別, 故張蒼以漢為水德, 賈誼·公孫臣以漢為土德, 劉向以漢為火德, 以為水德者, 正以嘗有水溢之應, 則不推運代相承之數矣, 以土德者, 則以亡秦繼曆, 相即為次, 不推逆順之異也, 以為火德者, 懸證赤帝斬蛇之符, 棄秦之暴, 越惡承善, 不以世次為正也, 故以承周為火德, 自茲厥後, 乃以為常, 魏承漢, 火生土, 故魏為土德, 晉承魏, 土生金, 故晉為金德, 趙承晉, 金生水, 故趙為水德, 燕承趙, 水生木, 故燕為木德, 秦承燕, 木生火, 故秦為火德, 秦之末滅, 皇魏未

의 중원점거설(中原占據說)에서 물러나 한(漢)이 주(周)를 계승한 고사를 답습하여 서진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³ 결국 효문제는 고려의 주장 대신 이표의 의견을 채용하여 북위가 서진을 계승한 행차(行次)의 논리대로 토덕에서 수덕으로 바꾸었다.⁹⁴

효문제와 이표·최광(崔光) 등이 북위가 서진의 뒤를 잇는 정통왕조로 천명할 당시 한인(중국인)이 정통성으로 여겼던 동진과 남조 여러 나라의 자리매김이 쟁점이 되었다. 『위서』에서는 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을까? 이는 『위서』

克神州，秦氏既亡，大魏稱制玄朔，故平文之廟，始稱『太祖』，以明受命之證，如周在岐之陽，若繼晉，晉亡已久；若棄秦，則中原有寄，推此而言，承秦之理，事為明驗，故以魏承秦，魏為土德，又五緯表驗，黃星曜彩，考氏定實，合德軒轅，承土祖未，事為著矣。又秦趙及燕，雖非明聖，各正號赤縣，統有中土，郊天祭地，肆類咸秩，明刑制禮，不失舊章，奄岱踰河，境被淮漢，非若齷齪邊方，僭擬之屬，遠如孫權·劉備，近若劉裕·道成，事繫蠻夷，非關中夏，伏惟聖朝，德配天地，道被四海，承乾統曆，功侔百王，光格同於唐虞，享祚流於周漢，正位中境，奄有萬方，今若并棄三家，遠承晉氏，則蔑中原正次之實，存之無損於此，而有成於彼；廢之無益於今，而有傷於事，臣愚以為宜從尚黃，定為土德。”

- 93 『魏書』卷108之1, 「禮志」1, 2745~2746쪽, “秘書丞臣李彪·著作郎崔光等議以為: ‘尚書閭議, 繼近秦氏, 臣職掌國籍, 頗覽前書, 惜此正次, 慨彼非緒, 輒仰推帝始, 遠尋百王, 魏雖建國君民, 兆朕振古, 祖黃制朔, 繇迹有因, 然此帝業, 神元為首, 案神元·晉武, 往來和好, 至于桓·穆, 洛京破亡, 二帝志摧劉·勒, 思存晉氏, 每助劉琨, 申威并翼, 是以晉室銜扶救之仁, 越石深代王之請, 平文·太祖, 抗衡苻石, 終平燕氏, 大造中區, 則是司馬祚終於郊廓, 而元氏受命於雲代, 蓋自周之滅及漢正號, 幾六十年, 著符尚赤, 後雖張·賈殊議, 暫疑而卒從火德, 以繼周氏, 排虐羸以比共工, 蔑暴項而同吳廣, 近鑄謬偽, 遠即神正, 若此之明也, 寧使白蛇徒斬, 雕雲空結哉! 自有晉傾淪, 暨登國肇號, 亦幾六十餘載, 物色旗幟, 率多從黑, 是又自然合應, 玄同漢始, 且秦并天下, 革創法度, 漢仍其制, 少所變易, 猶仰推五運, 竟踵隆姬, 而況劉·石·苻·燕, 世業促編, 綱紀弗立, 魏接其弊, 自有彝典, 豈可異漢之承木, 捨晉而為土耶? 夫皇統崇極, 承運至重, 必當推協天緒, 考審王次, 不可難以僭竊, 參之強狡, 神元既晉武同世, 桓·穆與懷·愍接時, 晉室之淪, 平文始大, 廟號太祖, 抑亦有由, 紹晉定德, 孰曰不可, 而欲次茲偽僭, 豈非惑乎? 臣所以悽悽惜之, 唯垂察納, 詔令羣官議之。”

- 94 川本芳昭, 1998b,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東京: 汲古書院(原載 1997,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25), 72~78쪽.

권95부터 권99에 실린 ‘참위(僭僞) 국가’들의 배열과 그 의도를 살펴보자. <표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위서』 권95~99 열전의 구성

卷數	列傳名	國名	위치	卷數	列傳名	國名	위치
卷95	匈奴劉聰	前趙	華北	卷97	島夷桓玄	楚	長江 中下流
	羯胡石勒	後趙	華北		海夷馮跋	北燕	華北(遼西)
	鐵弗劉虎	夏	華北		島夷劉裕	宋(劉宋)	長江 유역
	徒何慕容廆	前燕, 西燕, 後燕, 南燕	華北	卷98	島夷蕭道成	齊(南齊)	長江 유역
	臨渭氏苻健	前秦	華北		島夷蕭衍	梁	長江 유역
	羌姚萇	後秦	華北	卷99	私署涼州牧張寔	前涼	河西回廊 혹은 河隴(隴右)
	略陽氏呂光	後涼	河西回廊		鮮卑乞伏國仁	西秦	
卷96	僭晉司馬叡	東晉	長江 中下流		鮮卑秃髮烏孤	南涼	
	賓李雄	成漢	長江 上流		私署涼王李暠	西涼	
					盧水胡沮渠蒙遜	北涼	

<표 1>을 보면 권95는 후량(後涼)을 제외하면 대부분 화북 지역에 할거했던 5호제국, 권96은 동진과 성한(成漢), 권97은 동진말 권신(權臣) 환현(桓玄)이 세운 단명 왕조 초(楚)와 북연, 유송, 권98은 남조(南齊·梁), 권99는 하서회랑(河西回廊)에 세운 여러 량(諸涼)과 농우(隴右)의 서진(西秦)을 배열하였다. <표 1>에 보이는 『위서』의 국가 배열에서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동진과 남조의 폼하이다. 권96에서는 강남의 정통왕조 동진과 파촉(巴蜀)을 지배한 16국의 하나인 성한을 동렬(同列)로 놓았다. 권97에서는 동진 남조사에서 정식 왕조로 간주하지 않는 환현의 초와 북방의 북연을 강남의 정통 왕조 유송과 동렬로 놓았다. 동진은 ‘참진사마예(僭晉司馬叡)’로, 나머지 강남의 여러 나라는 ‘도이(島夷)’로 폼하하였다.⁹⁵ 이는 위수(魏收)뿐만 아니라 고려도

95 川本芳昭,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1998b, 위의 글, 81~82쪽.

“참의(僭擬)의 무리는 멀리는 손권(孫權)·유비(劉備), 가까이는 유유(劉裕)·소도성(蕭道成)은 모두 만이(蠻夷)와 관련되어 있으니 중하(中夏)라고 할 수 없다”⁹⁶라고 하여 유송과 남조를 만이로 엮어 참위(僭僞)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위수는 고려와 동일한 사관(史觀)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를 『위서』 열전의 체례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고려의 시각이 결코 소수의 주장이 아니라 한인관료(漢人官僚)의 상당수의 지지를 얻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카와모토 요시아키[川本芳昭]는 이러한 사관이 북위 태무제의 화북 통일 무렵부터 한인관료에게 널리 수용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⁹⁷

둘째, 『위서』에서 북위는 중국의 정통왕조임을 자임하고 나머지 왕조나 국가는 참위, 즉 황제를 참칭하거나 지방정권으로 격하시켰다. 『위서』 권95부터 권99까지 나열된 국가들은 현재의 용어로는 16국과 동진, 남조이다. 이 가운데 『자치통감』과 남조계 사서 등 사서에는 동진과 남조가 중국의 정통왕조로 간주된다. 그러나 『위서』에서는 동진과 성한, 유송과 초·북연을 같은 권에 배치함으로써 동진남조의 입장에서 보면 정통왕조인 동진 또는 남조 여러 나라가 ‘오랑캐 나라’와 동급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동진을 참진사마예, 유송을 도이 유유(島夷劉裕), 남제를 도이 소도성(島夷蕭道成), 양(梁)을 도이 소연(島夷蕭衍)으로 표기하여 황제국 혹은 정통왕조가 아닌 강남의 지방정권으로 격하시켰다. 따라서 비정통(非正統)인 지방정권으로 격하된 16국과 동진남조과 달리 북위는 정통왕조임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앞에서 북위 전체 시대의 정통성 분석 작업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위서』가 효문제의 사관대로 편찬된 사서이기 때문에 남조를 강남의 지방정권으로 격하한 기록이 효문제 이후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유송이 망

96 『魏書』卷108之1, 「禮志」4之1 祭祀上, 2745쪽, “非若醜醜邊方, 僭擬之屬, 遠如孫權·劉備, 近若劉裕·道成, 事繫蠻夷, 非關中夏.”

97 川本芳昭,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1998b, 앞의 글, 81~82쪽.

한 후 얼마되지 않아 편찬된⁹⁸ 『송서』의 기록을 검토해 보자.

“우리 대위(大魏)의 흥성은 덕이 해·달과 짝을 짓고 자연과 함께 병립한 것이다. 하와 은(殷) 이전에 공업(功業)이 높았고, 주(周)와 진(晉) 이후에도 공업이 빛나서 선대(先代)를 비추어왔다. 공업은 우리의 열조(烈祖)[북위 도무제, 필자]에게 이르러 성명(聖明)을 더하여 천명에 응하여 용(龍)이 날아올라 연(燕)·조(趙) 지역을 깨끗이 일소하였다. 현재의 황제[북위 태무제, 필자]께서는 왕업(王業)의 자질을 이어받고 뛰어난 무용의 지략을 발휘하여, 멀리 삼진(三秦)을 평정하고 서쪽으로는 총령(葱嶺, 파미르 고원)에 미쳤으며 동쪽으로 요수와 갈석산(碣石山)[에 이르는 지역]을 평정하니 바다의 한 구석[에 있는 나라들이] 복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종산(鍾山)에 이르러 만국(萬國)이 조공을 바치니, 이 위엄 있는 바람이 부는 곳에 저들 조야가 모두 그 위엄스런 덕을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 유씨(劉氏)[전조(前趙)], 석씨(石氏)[후조(後趙)], 부씨(苻氏)[전진(前秦)], 요씨(姚氏)[후진(後秦)]가 번갈아 3군을 차지하고 사마씨(사마씨) 낭야왕(琅邪王)은 양주와 월(越)을 지키며 끊임없이 이어져서 많은 세월이 지났다. 사마씨의 운수가 다하고 바뀌어 송씨(宋氏)가 제위(帝位)를 계승하였지만 여전히 진(晉)의 옛 [정책]을 답습하여 멀리 사신을 보내 예를 갖추어 방문하고 예물을 바쳤다. 따라서 우리 조정은 무기를 풀고 동남쪽을 경락하려는 생각을 버렸으니 이는 선제(先帝)의 큰 신의를 어기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⁹⁹

98 沈約은 永明 6년(488) 『宋書』를 완성하여 南齊 武帝에게 바쳤다(『宋書』 卷100, 「自序」, 2466쪽, “史臣年十三而孤, 少頗好學, 雖棄日無功, 而伏膺不改. 常以晉氏一代, 竟無全書, 年二十許, 便有撰述之意. 泰始初, 征西將軍蔡興宗為啟明帝, 有勅賜許, 自此迄今, 年逾二十, 所撰之書, 凡一百二十卷. 條流雖舉, 而採掇未周, 永明初, 遇盜失第五帙. 建元四年末終, 被勅撰國史. 永明二年, 又忝兼著作郎, 撰次起居注. 自茲王役, 無暇搜撰. 五年春, 又被勅撰宋書. 六年二月畢功, 表上之, ……”.)

99 『宋書』 卷95, 「索虜傳」, 2334쪽, “十九年, 虜鎮東將軍武昌王宜勒庫莫提移書益·梁二州, 往伐仇池, 侵其附屬, 而移書越詣徐州曰: 我大魏之興, 德配二儀, 與造化並立. 夏·殷以前, 功業尚矣, 周·秦以來, 赫赫堂堂, 垂耀先代. 逮我烈

위의 인용문은 『송서』 「삭로전」에 실린 북위가 유송에 보낸 격문이다. 인용문의 전반부에서 북위 도무제는 천명을 받아 즉위하고 하복을 점령했으며, 태무제는 요수에서 중앙아시아에 걸친 지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을 세웠음을 밝혔다. 북위 황제가 천명을 가졌기 때문에 강남의 동진남조는 지방정권으로 격하되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동진의 황제를 ‘사마씨 낭야왕’으로 격하하여 표기하였다. ‘낭야왕’은 동진을 세운 사마예가 즉위 전에 책봉된 왕호(王號)였다. 또 동진이 지배한 지역을 양주와 월 지역으로 표기하였다. ‘월’은 춘추 전국시대 장강 하류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전한 무제 이전 현재의 절강성(浙江省)과 복건성(福建省) 일대에 있었던 민월(閩越)과 동구(東甌)¹⁰⁰ 등 이민족 혹은 이민족국가를 지칭한다. 동진남조의 강역을 ‘월’로 표기한 것은 북위가 동진남조를 ‘도이(島夷)’라고 멸시한 것처럼 야만인이 거주하는 공간이란 이미지가 강하다. 또 북위는 동진과 유송이 북위에 조공했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북위만이 정통성을 가졌음을 분식한 것이다.

동진을 정통성을 지니지 않은 지방정권임을 분식하기 위해 『위서』 「참진사마예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가) 정통왕조로 망령되어 참칭한 진(晉)의 사마예(司馬叡)의 자는 경문(景文)이고, 진장(晉將) 우금(牛金)의 아들이다. 예전에 진 선제(宣帝)는 대장군(大將軍)

祖, 重之聖明, 應運龍飛, 廓清燕·趙. 聖朝承王業之資, 奮神武之略, 遠定三秦, 西及葱嶺, 東平遼碣, 海隅服從, 北暨鍾山, 萬國納貢, 威風所扇, 想彼朝野, 備聞威德. 往者劉·石·苻·姚, 遞據三郡, 司馬琅邪, 保守揚·越, 綿綿連連, 綿歷年紀, 數窮運改, 宋氏受終, 仍晉之舊, 遠通聘享, 故我朝廷解甲, 息心東南之略, 是為不欲違先故之大信也.”

- 100 『史記』卷114, 「東越列傳」, 2979쪽, “閩越王無諸及越東海王搖者, 其先皆越王句踐之後也, 姓騶氏. 秦已并天下, 皆廢為君長, 以其地為閩中郡. 及諸侯畔秦, 無諸·搖率越歸鄱陽令吳芮, 所謂鄱君者也, 從諸侯滅秦, 當是之時, 項籍主命, 弗王, 以故不附楚. 漢擊項籍, 無諸·搖率越人佐漢. 漢五年, 復立無諸為閩越王, 王閩中故地, 都東冶. 孝惠三年, 舉高帝時越功, 曰閩君搖功多, 其民便附, 乃立搖為東海王, 都東甌, 世俗號為東甌王.”

낭야무왕(琅邪武王) 주(卣)를 낳았고, 주는 용종복야(元從僕射) 낭야공왕(琅邪恭王) 근(覲)을 낳았다. 근의 비(妃) 초국하후씨(譙國夏侯氏)는 자가 동환(銅環)인데, [우]금과 간통하여 예(叡)를 낳게 되는데 이르러 성(姓)을 사마(司馬)라고 모칭(冒稱)하고 여전히 근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다. 이 때문에 스스로 하내군(河內郡) 온현(溫縣) 사람이라고 자칭하였다. 처음에 [낭야]왕세자가 되었고 또 낭야왕의 작위를 이어받았으며, 산기상시(散騎常侍)에 배수(拜授)된 후, 사성교위(射聲校尉), 월기교위(越騎校尉), 좌군장군(左軍將軍), 우군장군(右軍將軍)으로 승진하였다. …(중략)… (나) 평문제(平文帝) 초에 예는 진왕(晉王)이라 자칭하고 건무(建武)로 개원하였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을 세우고 백관(百官)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아들 소(紹)를 태자로 삼았다. 예는 진왕으로써 남교(南郊)에 제사를 지냈다. 그 해 예는 참람되어 황제의 자리에 올라 대흥원년(大興元年)이라 개원하였다. 조정의 의(儀)와 도읍(都邑)의 제(制)는 왕자(王者)의 것을 본따고, 중국(中國)을 흉내냈다. 수도로 정해진 단양(丹陽)은 손권의 구소(舊所)였으니 곧 우공(禹貢)의 양주 땅(揚州之地)였고 낙양에서 2,700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중략)… (다) 동남을 양주라고 하며, 그 산진(山鎭)을 회계(會稽), 그 수택(藪澤)을 구구(具區), 그 천(川)을 삼강(三江), 그 침(浸)을 오호(五湖)라고 한다. 날카로운 것은 금석죽전(金錫竹箭)이며, 그 백성은 2남 5녀이고, 그 가축은 새와 짐승이 서식하기 적합하며, 그 곡식은 벼가 자라기에 적합하다. 춘추시대에 오월(吳越)의 땅이었다. 오월이 참람되어 왕이라 칭하였고, 편벽되고 먼 한 귀퉁이를 차지하였으며 화토(華土)에 알려지지 않았다.”¹⁰¹

101 『魏書』卷96, 「僭晉司馬叡傳」, 2091~2092쪽, “僭晉司馬叡, 字景文, 晉將牛金子也. 初晉宣帝生大將軍·琅邪武王卣, 卣生元從僕射·琅邪恭王覲. 覲妃譙國夏侯氏, 字銅環, 與金姦通, 遂生叡, 因冒姓司馬, 仍為覲子. 由是自言河內溫人. 初為王世子, 又襲爵, 拜散騎常侍, 頻遷射聲·越騎校尉, 左·右軍將軍. ……東南曰揚州, 其山鎭曰會稽, 其藪澤曰具區, 其川三江, 其浸五湖, 其利金錫竹箭, 其民二男五女, 其畜宜鳥獸, 其穀宜稻. 春秋時為吳越之地. 吳越僭號稱王, 僻遠一隅, 不聞華土.”

위의 인용문의 (가)는 사마예의 출생을, (나)는 동진 원제(元帝)의 즉위를, (다)는 강남 지역의 지리와 역사를 기록하였다. (가)에서 사마예(원제)가 하후씨(夏侯氏)와 우금의 간통으로 태어난 사생아였다고 기록하였다. 『진서』 「원제본기」에는 사통 기사가 없다.¹⁰² (가) 부분은 동진의 창업군주 원제(사마예)가 사마씨가 아닌 우씨(牛氏)라고 하여 혈통상 동진의 사마씨의 서진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한 복선이다. (나)에서 동진과 춘추전국시대 오(吳)와 월(越)을 대비시켜 동진이 정통성이 있는 왕조가 아니라 오나 월처럼 감히 왕을 참칭한 지방정권이었음을 시사하였다. 그리고 강남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정보는 황하 중류의 중원을 지리적 정통성으로 간주하는 중원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동남쪽의 변방에 불과하다는 이미지를 제공하였다. 또 춘추전국시대 오와 월의 군주가 왕을 자칭했음을 지적하며, 오와 월의 참칭(僭稱)이 화토(華土)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기록하여 이들의 왕 자칭이 정통성을 지니지 않았음을 기록하였다.

이밖에 『위서』 「서기(序紀)」에 탁발부 군장의 선조를 중국의 시조인 황제(黃帝)라고 서술한 기록¹⁰³은 서진 사마씨의 선조가 고양(高陽)의 아들 중려(重黎),¹⁰⁴ 유송 유씨(劉氏)의 선조는 진한 초왕(楚王) 유교(劉交),¹⁰⁵ 남제 소씨(蕭

102 『晉書』 卷6, 「元帝紀」, 143쪽, “元皇帝諱睿, 字景文, 宣帝曾孫, 琅邪恭王觀之子也. 咸寧二年生於洛陽, 有神光之異, 一室盡明, 所藉藁如始刈. 及長, 白豪生於日角之左, 隆準龍顏, 目有精曜, 顧眄煒如也.”

103 『魏書』 卷1, 「序紀」, 1쪽, “昔黃帝有子二十五人, 或內列諸華, 或外分荒服, 昌意少子, 受封北土, 國有大鮮卑山, 因以為號. 其後, 世為君長, 統幽都之北, 廣漠之野, 畜牧遷徙, 射獵為業, 淳樸為俗, 簡易為化, 不為文字, 刻木紀契而已, 世事遠近, 人相傳授, 如史官之紀錄焉. 黃帝以土德王, 北俗謂土為托, 謂后為跋, 故以為氏. 其裔始均, 入仕堯世, 逐女魃於弱水之北, 民賴其勤, 帝舜嘉之, 命為田祖. 爰歷三代, 以及秦漢, 獯鬻·獫狁·山戎·匈奴之屬, 累代殘暴, 作害中州, 而始均之裔, 不交南夏, 是以載籍無聞焉.”

104 『晉書』 卷1, 「宣帝紀」, 1쪽, “宣皇帝諱懿, 字仲達, 河內溫縣孝敬里人, 姓司馬氏. 其先出自帝高陽之子重黎, 為夏官祝融, 歷唐·虞·夏·商, 世序其職. 及周, 以夏官為司馬. 其後程伯休父, 周宣王時, 以世官克平徐方, 錫以官族, 因而為氏. 楚漢間, 司馬卬為趙將, 與諸侯伐秦. 秦亡, 立為殷王, 都河內. 漢以其地為郡, 子孫遂家焉.”

105 『宋書』 卷1, 「武帝紀」 上, 1쪽, “高祖武皇帝諱裕, 字德興, 小名寄奴, 彭城縣綏

氏)의 선조가 전한 개국공신 상국(相國) 소하(蕭何)¹⁰⁶라는 기사와 비교하면, 동진남조 황실보다 우월함을 강조하기 위한 계보조작이었을 것이다.¹⁰⁷ 또 『낙양가람기』에 북위말 잠시 낙양을 점령한 진경지(陳慶之)와 북위 관리들의 대화가 기록되었다. 진경지는 소표(蕭彪)와 장고(張嵩)과 정통을 논하고 북위를 5호(五胡)로 치칭하며 정삭(正朔)이 강좌(江左), 즉 양조(梁朝)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양원신(楊元愼)은 강남 사람들이 문신을 하며 화음(華音)이 섞였고 민(閩)·초(楚)의 음(音)을 회복했다고 반박하며 유소(劉劭)의 송문제(宋文帝) 살해, 산음공주의 문란한 성생활을 거론하고 남조에 예화(禮化)가 퍼지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북위는 이풍역속(移風易俗)에 성공하고, 낙양에 도읍을 정했으며, 예악이 성함을 강조하면서 남조 사람들을 “魚鱉之徒(어벌지도)”라고 폄하하였다.¹⁰⁸ 이 일화에서 호인지배층(胡人支配層)뿐만 아니라 북위에 벼슬하는 한인

輿里人, 漢高帝弟楚元王交之後也.”

106 『南齊書』卷1, 「高帝紀」上, 1쪽, “太祖高皇帝諱道成, 字紹伯, 姓蕭氏, 小諱關將, 漢相國蕭何二十四世孫也.”

107 崔珍烈, 「前近代 中國의 ‘민족’과 ‘민족’문제 - 同床異夢의 동화론 -」, 『역사와교육』 15, 2012. 유목민 혹은 유목국가의 계보조작은 朴漢濟, 1993, 「西魏北周時代의賜姓與鄉兵的府兵化」, 『歷史研究』 4 및 2004, 「魏晉—隋唐時代 胡族君主의 中華帝王으로의 變身過程과 그 論理—‘多民族國家’ 形成의 一 契機에 대한 探索—」, 『中央아시아研究』 9, 17쪽 참조.

108 『洛陽伽藍記』(范祥雍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卷2, 「城東」景寧寺條, 117~118쪽, “永安二年, 蕭衍遣主書陳慶之送北海入洛陽, 僭帝位. 慶之為侍中. 景仁在南之日, 與慶之有舊, 遂設酒引邀慶之過宅. 司農卿蕭彪·尚書右丞張嵩並在其坐. 彪亦是南人, 唯有中大夫楊元愼·給事中大夫王昀是中原士族. 慶之因醉謂蕭·張等曰: ‘魏朝甚盛, 猶曰五胡, 正朔相承, 當在江左, 秦皇玉璽今在梁朝.’ 元愼正色曰: ‘江左假息, 僻居一隅. 地多濕熱, 攢育蟲蟻, 疆土瘴癘, 蛙黾共穴, 人鳥同羣. 短髮之君, 無杼首之貌; 文身之民, 稟叢陋之質. 浮於三江, 棹於五湖. 禮樂所不沾(沾), 憲章弗能革. 雖復秦餘漢罪, 雜以華音, 復閩·楚難言, 不可改變. 雖立君臣, 上慢下暴. 是以劉劭殺父於前, 休龍淫母於後, 見逆人倫, 禽獸不異. 加以山陰請婚賣夫, 朋淫於家, 不顧譏笑. 卿沐其遺風, 未沾(沾)禮化, 所謂陽翟之民, 不知瘦之為醜. 我魏膺錄受圖, 定鼎嵩洛, 五山為鎮, 四海為家. 移風易俗之典, 與五常而並跡; 禮樂憲章之盛, 凌百王而獨高. 豈卿魚鱉之徒, 慕義來朝, 飲我池水, 啄我稻粱; 何為不遜, 以(以)至於此?’

(중국인)들도 북위를 정통으로 간주하고 남조가 패륜으로 얼룩지고 예화(禮化)가 미치지 않는 미개한 곳으로 생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위서』에 기록된 북위의 정통성과 동진남조의 폄하는 북위의 호인지배층뿐만 아니라 중원의 한 호인지배층도 받아들였고 체화하였다. 또 『낙양가람기』에서는 서진을 ‘중조(中朝)’라고 칭하였지만, 남조 양 사람들을 ‘오인(吳人)’으로 칭하였고¹⁰⁹ 남조에서 항복한 사람들이 사는 귀정리(歸正里)를 오인방(吳人坊)이라 불렀으며, 남조 사람들을 ‘오아(吳兒)’로 호칭하였다.¹¹⁰ 이는 모두 남조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오(吳)’라는 지방정권에 불과했다고 인식한 것이다.

慶之等見元愼清詞雅句，縱橫奔發，杜口流汗，合聲不言。於後數日，慶之遇病，心上急痛，訪人解治。元愼自云‘能解’，慶之遂憑元愼。元愼即口含水嚔慶之曰：‘吳人之鬼，住居建康，小作冠帽，短製衣裳，自呼阿儂，語則阿傍，菰稗為飯，茗飲作漿，呬啜蓴羹，唼嚼蟹黃，手把荳蔻，口嚼檳榔。乍至中土，思憶本鄉，急手速去，還爾丹陽。若其寒門之鬼，口頭猶脩，網魚漉鱉，在河之洲，咀嚼菱藕，拊拾雞頭，蛙羹蛙臠，以為膳羞。布袍芒屨，倒騎水牛，洗(沅)·湘·江·漢，鼓棹遨遊，隨波溯浪，噉鴨沈浮，白苧起舞，揚波發謳。急手速去，還爾揚州。’慶之伏枕曰：‘楊君見辱深矣。’自此後，吳兒更不敢解語。”

109 『洛陽伽藍記』卷2, 「城東」龍華寺條에서 南齊 蕭寶卷의 暴政에 “吳人苦之”라고 하여 南朝 사람들을 ‘吳人’이라 칭하였다(『洛陽伽藍記』卷2, 「城東」龍華寺條, 75쪽, “綜字世□, 偽齊昏主寶卷遺腹子也, 寶卷臨政姪亂, 吳人苦之, 雍州刺史蕭衍立南康王寶融為主, 舉兵向秣陵, 事既克捷, 遂殺寶融而自立, 寶卷有美人吳景暉, 時孕綜經月, 衍因幸景暉, 及綜生, 認為己子, 小名緣覺, 封豫章王. 綜形貌舉止, 甚似昏主, 其母告之, 令自方便, 綜遂歸我聖闕, 更改名曰讚, 字世務, 始為寶卷追服三年喪. 明帝拜綜太尉公, 封丹陽王.”). 이는 南朝를 春秋時代 吳와 동일시하여 일개 지방정권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110 『洛陽伽藍記』卷2, 「城東」景寧寺條, 117쪽, “孝義里東即是洛陽小市, 北有車騎將軍張景仁宅. 景仁會稽山陰人也. 正光年初, 從蕭寶卷歸化, 拜羽林監, 賜宅城南歸正里, 民間號為吳人坊, 南來投化者多居其內. 近伊洛二水, 任其習御. 里三千餘家, 自立巷寺, 市所賣口味多是水族, 時人謂為魚鱉寺也. 景仁住此以為恥, 遂徙居孝義里焉. 時朝廷方欲招懷荒服, 待吳兒甚厚, 蹇(襄)裳渡於江者, 皆居不次之位. 景仁無汗馬之勞, 高官通顯.”

V. 천하관의 분식: 요령(遙領)·허봉(虛封)

중화의 정통성을 자임한 북위는 원가 23년(446) 유송에 공문을 보내 유송의 교주군현(僑州郡縣) 설치를 비난하였다.

“원가 23년(446)에 索虜의 안남장군부(安南將軍府)와 평남장군부(平南將軍府)에서 또 연주(兗州)에 공문을 보내 남국(南國)이 주(州)를 교치(僑置)하고 [원래의] 성(城)과 토지(土地)에 의거하지 않고 북경(北境) 명호(名號)[북위의 영토에 있는 지명들]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또 [유송의 오군(吳郡)에 있는] 구구(具區)에서 유렵(遊獵)하고자 함을 [피력하였다.]”¹¹¹

위의 인용문에서 북위의 영토에 있는 지명들을 사용한 교주군현의 명칭 사용을 비난한 것은 북위가 화북 지역을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함과 동시에 실존하지 않은 교주군현의 설치로 지리적으로 정통성을 분식하려고 하는 유송의 꾀수를 차단하려는 시도였다. 이와 동시에 도리어 유송의 영토에 해당하는 주자사를 임명하였다.

(가) “영초(永初) 3년(422) 시월에 탁발사(拓跋嗣)[명원제(明元帝)]는 스스로 무리를 이끌고 방성[현](方城縣)에 이르러 정병장군(鄭兵將軍) 양주자사(揚州刺史) 산양공(山陽公) 달해근(達奚斤)과 오병장군(吳兵將軍) 광주자사(廣州刺史) 창오공(蒼梧公) 공손표(公孫表), 상서(尙書) 활계(滑稽)에게 보병과 기병 2만여 인을 이끌고 진격하게 하니 활대(滑臺)의 서남쪽 동연현(東燕縣)의 경계인 석제[진](石濟津)에서 남쪽으로 황하를 건넜고, 치중(輜重)[부대와] 약한 사람들

111 『宋書』卷95, 「索虜傳」, 2338쪽, “二十三年, 虜安南平南府又移書兗州, 以南國僑置州, 不依城土, 多濫北境名號, 又欲遊獵具區.”

은 그 뒤를 따르게 하였다.”¹¹²

(나) “정병[장군 달해군]과 공손표, 송병장군(宋兵將軍) 교주자사(交州刺史)였던 교지후(交趾侯) 보기(普幾)가 1만 5천 기를 이끌고 다시 호뢰성으로 향하여 [호뢰]성의 동남쪽 5리 [떨어진 곳]에 군영을 설치하고 보병과 기병을 나누어 성고[현](成阜縣)으로부터 호뢰성의 외곽(外郭) 서문으로 향하게 하였으나 모덕조가 역공하여 백여 인을 죽이고 상해하니, 삭로는 물러나 돌아가 군영을 지켰다.”¹¹³

(다) “삭로는 또 초병장군(楚兵將軍) 서주자사(徐州刺史) 안평공인 섭귀변능건(涉歸幡能健), 월병장군(越兵將軍) 청주자사(靑州刺史) 임치후(臨菑侯)인 설도천(薛道千), 진병장군(陳兵將軍) 회주자사(淮州刺史) 수장자(壽張子)인 장모(張模)가 동쪽으로 청주(靑州)를 공격하니 [삭로의 군대가] 향하는 성읍(城邑)[의 관리와 군사들]은 모두 달아났다.”¹¹⁴

당시 북위는 황하 이북을 지배하고 황하 이남에는 낙양 등 일부 지역만 지배하였다. 따라서 인운문 (가), (나), (다)에 언급된 무장(武將)들의 자사(刺史) 앞에 표기된 지명인 양주·광주(廣州)·교주(交州)·서주(徐州)·청주(靑州)·회주(淮州)는 북위 영토에 있는 주명(州名)이 아니었다. 황하 중류에 있었던 사마초지

112 『宋書』卷95, 「索虜傳」, 2323쪽, “永初三年十月, 嗣自率眾至方城, 遣鄭兵將軍揚州刺史山陽公達奚斤·吳兵將軍廣州刺史蒼梧公公孫表·尚書滑稽, 領步騎二萬餘人, 於滑臺西南東燕縣界石濟南渡, 輜重弱累自隨, 滑臺戍主·寧遠將軍·東郡太守王景度馳告冠軍將軍·司州刺史毛德祖, 戍虎牢, 遣司馬翟廣率參軍龐諶·上黨太守劉談之等步騎三千拒之.”

113 『宋書』卷95, 「索虜傳」, 2324쪽, “鄭兵與公孫表及宋兵將軍·交州刺史交趾侯普幾萬五千騎, 復向虎牢, 於城東南五里結營, 分步騎自成皋開向虎牢外郭西門, 德祖逆擊, 殺傷百餘人, 虜退還保營.”

114 『宋書』卷95, 「索虜傳」, 2325쪽, “虜又遣楚兵將軍徐州刺史安平公涉歸幡能健·越兵將軍靑州刺史臨菑侯薛道千·陳兵將軍淮州刺史壽張子張模東擊靑州, 所向城邑皆奔走.”

(司馬楚之)는 형주자사(荊州刺史)에 임명되었는데,¹¹⁵ 당시 장강 중류에 위치한 형주는 북위의 영토가 아니었다. 초(譙)·양(梁)·팽성(彭城)·패(沛) 백성 5천여가(家)를 모아 27영(營)으로 편제하고 제음(濟陰)에 주둔하였으며 후에 서주(徐州) 일대에서 활동하던 조웅(刁雍)은 태평진군(太平眞君) 2년(441) 사지절(使持節) 시중(侍中) 도독양예연서사주제군사(都督揚豫兗徐四州諸軍事) 정남장군(征南將軍) 서예이주자사(徐豫二州刺史)에 임명되었다.¹¹⁶ 태무제 시기 북위 영토가 황하와 회수(淮水) 유역에서 변했기 때문에 조웅이 임명된 서예이주자사의 직함 가운데 서주와 예주(豫州)가 실제의 지역(實土)인지 판단하기 모호하다. 그러나 도독으로 임명된 관할구역 가운데 양주는 확실히 북위의 영토가 아니었다. 태무제는 연화(延和) 2년(433) 낙안왕(樂安王) 원범(元範)을 도독진웅경량익오주제군사(都督秦雍涇梁益五州諸軍事) 위대장군(衛大將軍) 의동삼사(儀同三司)에 임명하고 장안에 주둔하게 하였다.¹¹⁷ 원범이 도독제군사(都督諸軍事)로서 관할하게 된 양주(梁州)와 익주(益州)는 당시 북위의 영토가 아니었다. 원범 이외에도 도독양익형삼주제군사(都督梁益荊三州諸軍事) 정남대장군(征南大將軍) 양주자사(梁州刺史) 원징(元澄)¹¹⁸과 도독진웅형양익오주제군사(都督秦雍荊梁

115 『魏書』卷37, 司馬楚之傳, 855쪽, “乃劉裕自立, 楚之規欲報復, 收衆據長社, 歸之者常萬餘人, ……於是假楚之使持節·征南將軍·荊州刺史, 奚斤既平河南, 以楚之所率戶民分置汝南·南陽·南頓·新蔡四郡, 以益豫州.”

116 『魏書』卷38, 「刁雍傳」, 866~867쪽, “雍遂鎮尹卯固, 又詔令南入, 以亂賊境, 雍攻克項城, 會有敕追令隨機立效, 雍於是招集譙·梁·彭·沛民五千餘家, 置二十七營, 遷鎮濟陰, 延和二年, 立徐州於外黃城, 置譙·梁·彭·沛四郡九縣, 以雍爲平南將軍·徐州刺史, 賜爵東安侯, 在鎮七年, 太延四年, 徵還京師, 頻歲爲邊民所請, 世祖嘉之, 眞君二年復授使持節·侍中·都督揚豫兗徐四州諸軍事·征南將軍·徐豫二州刺史.”

117 『魏書』卷4上, 「世祖紀」上 延和二年春正月丙寅條, 82쪽, “丙寅, 以樂安王範爲假節·加侍中·都督秦雍涇梁益五州諸軍事·衛大將軍·儀同三司, 鎮長安.”

118 『魏書』卷19中, 「景穆十二王中·任城王雲傳附澄傳」, 462~480쪽; 『北史』卷18, 「景穆十二王下·任城王雲傳附澄傳」, 654~661쪽.

益五州諸軍事) 피표자(皮豹子),¹¹⁹ 도독진웅형양익오주제군사 피희(皮喜, 皮歡喜)¹²⁰가 도독제군사(都督諸軍事)로 관할하게 된 양주·익주·형주 도독양익녕삼주제군사(都督梁益寧三州諸軍事) 원영(元英)¹²¹과 도독양익진녕사주제군사(都督梁益秦寧四州諸軍事) 사마초지(司馬楚之)¹²²의 관할 구역인 양주·익주·영주(寧州), 도독진양익삼주제군사(都督秦梁益三州諸軍事) 목량(穆亮)¹²³과 도독진경양익웅오주제군사(都督秦涇梁益雍五州諸軍事) 왕탁(王度),¹²⁴ 도독진웅양익사주제군사(都督秦雍梁益四州諸軍事) 이순(李順)¹²⁵의 관할구역인 양주·익주 역시 북위의 영토가 아닌 유송의 영토였다.

요컨대 북위 명원제-태무제 시기 자사의 관할구역인 양주·광주·교주·서주·청주·형주·양주·익주 등은 북위의 영토가 아니었다. 이 가운데 양주·광주·교주·형주·양주·익주는 장강 유역에 있었고, 특히 광주(현재의 광둥성(廣東省)·광서성(廣西省)에 해당)와 교주(현재의 베트남 북부에 해당)는 북위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조차 점령하지 못했던 곳이었다. 이처럼 북위는 지배하지 못한 주의 자사를 임명하여 마치 이 지역을 통치하는 것처럼 분식하였다. 이를 요령(遙領)이라고 한다.¹²⁶

119 『魏書』卷51, 「皮豹子傳」, 1129~1132쪽; 『北史』卷37, 「皮豹子傳」, 1351~1352쪽.

120 『魏書』卷51, 「皮豹子傳附喜傳」, 1132~1134쪽; 『北史』卷37, 「皮豹子傳附喜傳」, 1352~1353쪽.

121 『魏書』卷19下, 「景穆十二王下·南安王楨傳附英傳」, 495~502쪽; 『北史』卷18, 「景穆十二王下·南安王楨傳附英傳」, 668~670쪽.

122 『魏書』卷37, 「司馬楚之傳」, 854~857쪽; 『北史』卷29, 「司馬楚之傳」, 1042~1043쪽.

123 『魏書』卷27, 「穆崇傳附亮傳」, 667~671쪽; 『北史』卷20, 「穆崇傳附亮傳」, 741~743쪽.

124 『魏書』卷30, 「王建傳附度傳」, 711쪽.

125 『魏書』卷36, 「李順傳」, 829~833쪽; 『北史』卷33, 「李順傳」, 1212~1215쪽.

126 胡阿祥, 1994, 「孫吳特殊政區制度考論」, 『贛南師範學院學報(社科版)』(復印報刊資料 K21 1994-5), 65쪽.

그런데 요령(遼嶺)에 해당하는 8주 가운데 교주·익주·형주 3주는 한때 설치된 적이 있었다. 『위서』 권106상 「지형지」 2상 안주·안락군조 세주에 따르면, 교주는 연화 원년(延和元年, 432) 북쪽 변경인 안주(安州) 안락군(安樂郡)에 설치되었다가 태평진군 2년(441) 없어졌다.¹²⁷ 익주는 연화원년(432) 안주에 설치되었다가 태평진군 2년(441) 광양군(廣陽郡)으로 바뀌었다.¹²⁸ 교주와 익주는 북위의 남쪽이 아니라 북변인 안주에 설치되었다. 이는 북위의 강역에 남쪽의 교주와 익주를 두어 북위가 통일왕조 서진이 지배했던 중국 전역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려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태연 연간(435~439) 상락군(上洛郡)에 설치된 형주¹²⁹도 비슷한 취지로 설치되었다. 광주는 효장제(孝莊帝) 영안(永安) 연간(528~530)에 설치되었는데,¹³⁰ 봉찬(封粦),¹³¹ 이영(李詠),¹³² 정선호(鄭先護)¹³³가 광주자사에 임명되었다. 형주와 광주는 오랫동안 남아 있었던 반면, 교주와 익주의 경우 10여 년 동안 요령이 아니라 실제 설치된 형식적인 단명한 소규모의 지방행정구역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요령과 함께 지배하지 않는 지역의 명칭을 띤 작위를 허봉이라 한다.¹³⁴ 북위의 봉호(封號)를 보면 허봉이 빈출한다. 북위의 영토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위서』와 묘지명의 봉호에서 허봉과 실봉(實封)을 구별하기 쉽지 않

127 『魏書』 卷106上, 「地形志」 2上 安州·安樂郡條 細注, 2486쪽, “延和元年置交州, 真君二年罷州置.”

128 『魏書』 卷106上, 「地形志」 2上 安州·廣陽郡條 細注, 2486쪽, “延和元年置益州, 真君二年改為郡.”

129 『魏書』 卷106下, 「地形志」 2下 荊州條 細注, 2633쪽, “後漢治漢壽, 魏·晉治江陵, 太延中治上洛, 太和中治穰城.”

130 『魏書』 卷106中, 「地形志」 2中 廣州條 細注, 2543쪽, “永安中置, 治魯陽, 武定中陷, 徙治襄城.”

131 『魏書』 卷32, 「封懿傳附粦傳」, 764쪽.

132 『魏書』 卷39, 「李寶傳附詠傳」, 891쪽.

133 『魏書』 卷56, 「鄭義傳附先護傳」, 1247~1248쪽; 『北史』 卷35, 「鄭義傳附先護傳」, 1316쪽.

134 胡阿祥, 「孫吳特殊政區制度考論」, 1994, 앞의 글, 65오른쪽.

다. 그런데 화평(和平) 2년(461) 세워진 「문성제남순비(文成帝南巡碑)」의 봉호에서 허봉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

〈표 2〉 「문성제남순비(文成帝南巡碑)」의 허봉

이름	爵位名	西晉시대 소속 州郡縣	北魏 영토 여부	출전
一佛步□□ (乙渾) ¹³⁵	太原王	并州 太原國	○	『晉書』卷14「地理志」上 并州·太原國條, 428쪽
呂河一西 ¹³⁶	襄邑子	兗州 陳留國	○	『晉書』卷14「地理志」上 兗州·陳留國條, 419쪽
尉遲其地 ¹³⁷	西郡公	涼州 西郡	○	『晉書』卷14「地理志」上 涼州·西郡條, 433쪽
斛骨乙莫干 ¹³⁸	日南公	交州 日南郡	×	『晉書』卷15「地理志」下 交州·日南郡條, 466쪽
乙旃惠也拔 ¹³⁹	福祿子	涼州 酒泉郡 福祿縣	○	『晉書』卷14「地理志」上 涼州·酒泉郡條, 433쪽
代伏云右子尼 ¹⁴⁰	魏昌男	冀州 中山國	○	『晉書』卷14「地理志」上 冀州·中山國條, 424쪽
乙旃阿奴 ¹⁴¹	安吳子	揚州 宣城郡 安吳縣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宣城郡條, 460쪽
蓋婁太拔 ¹⁴²	晉安男	揚州 晉安郡 혹은 揚州 晉安郡 晉安縣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晉安郡條, 462쪽
杜利幡乃婁 ¹⁴³	陰陵男	揚州 淮南郡 陰陵縣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淮南郡·陰陵縣條, 460쪽
是婁勅万斯 ¹⁴⁴	東平公	兗州 東平國	○	『晉書』卷14「地理志」上 兗州·東平國條, 419쪽
尉遲查亦干 ¹⁴⁵	建安男	揚州 建安郡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建安郡條, 462쪽
賈愛仁 ¹⁴⁶	平陽公	司州 平陽郡	○	『晉書』卷14「地理志」上 司州·平陽郡條, 416쪽
吐難子如剗 ¹⁴⁷	□陽男	?	?	

135 山西省考古研究所·靈丘縣文物局, 1997, 「山西靈丘北魏文成帝《南巡碑》」(『文物』1997-12), 72오른쪽.

136 위와 같음, 72오른쪽.

137 위와 같음, 72오른쪽.

一佛阿伏眞 ¹⁴⁸	江乘男	揚州 丹楊郡 江乘縣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丹楊郡·江乘縣條, 460쪽
賀若盤大羅 ¹⁴⁹	□武子	?	?	
胡墨田 ¹⁵⁰	水平子	?	?	
賀若貸別 ¹⁵¹	建德子	揚州 吳郡 建德縣(西晉) 혹은 營州 建德郡(北魏)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吳郡·建德縣條, 461쪽; 『魏書』卷106上「地形志」2上 營州·建德郡條, 2494쪽
宿六斤阿□ ¹⁵²	蔡陽男	荊州 義陽郡 蔡陽縣	×	『晉書』卷15「地理志」下 荊州·義陽郡·蔡陽縣條, 455쪽
茹茹常友 ¹⁵³	□□郡王	?	?	
素和勅侯伏 ¹⁵⁴	□□公	?	?	
比子乙得 ¹⁵⁵	□城子	?	?	
符眞衛 ¹⁵⁶	丹陽公	揚州 丹楊郡(丹陽郡)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丹楊郡·江乘縣條, 459쪽
胡優比西□陀 ¹⁵⁷	□□侯	?	?	
拔拔侯頭 ¹⁵⁸	安復侯	荊州 安成郡 安復縣	×	『晉書』卷15「地理志」下 荊州·安成郡·安復縣條, 458쪽
袁紇尉斛 ¹⁵⁹	汝南公	豫州 汝南郡	×	『晉書』卷14「地理志」上 豫州·汝南郡條, 421쪽
熱阿久仁 ¹⁶⁰	永興侯	揚州 會稽郡 永興縣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會稽郡·永興縣條, 461쪽
黃盧頭	東□公 ¹⁶¹	?	?	
斛律頰拔 ¹⁶²	□□侯	?	?	
胡莫那 ¹⁶³	□□男	?	?	
蓋婁內亦干 ¹⁶⁴	河中□□子	?	?	

楊丑頽 ¹⁶⁵	高平男	兗州 高平國 혹은 荊州 邵陵郡 高平縣	△	『晉書』卷14「地理志」上 兗州·高平國條, 419쪽; 『晉書』卷15「地理志」下 荊州·邵陵郡·高平縣條, 457쪽
丘目陵口仁 ¹⁶⁶	口口子	?	?	
胡翼以吉智 ¹⁶⁷	壽張子	兗州 東平國 壽張縣	○	『晉書』卷14「地理志」上 兗州·東平國·壽張縣條, 419쪽
趙騰 ¹⁶⁸	新安子	司州 河南郡 新安縣 혹은 揚州 新安郡	△	『晉書』卷14「地理志」上 司州·河南郡·新安縣條, 415쪽 혹은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新安郡條, 461쪽
任玄通 ¹⁶⁹	武安子	司州 廣平郡 武安縣	○	『晉書』卷14「地理志」上 司州·廣平郡·武安縣條, 417쪽
楊思福 ¹⁷⁰	馳魚男	?	?	
胡比他紇 ¹⁷¹	南口男	?	?	
屋引立眞口 ¹⁷²	武原子	徐州 彭城國 武原縣	×	『晉書』卷15「地理志」下 徐州·彭城國·武原縣條, 451쪽
莫那婁愛仁 ¹⁷³	新安子	司州 河南郡 新安縣 혹은 揚州 新安郡	△	『晉書』卷14「地理志」上 司州·河南郡·新安縣條, 415쪽 혹은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新安郡條, 461쪽
趙三月 ¹⁷⁴	泰昌男	?	?	
斛律羽都居 ¹⁷⁵	鍾離侯	揚州 淮南郡 鍾離縣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淮南郡·鍾離縣條, 460쪽
斛律出六拔 ¹⁷⁶	晉安子	揚州 晉安郡 혹은 揚州 晉安郡 晉安縣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晉安郡條, 462쪽
獨孤去頽 ¹⁷⁷	沙渠男	荊州 建平郡 沙渠縣	×	『晉書』卷15「地理志」下 荊州·建平郡·沙渠縣條, 456쪽
達奚高勾 ¹⁷⁸	比陽男	荊州 南陽國 比陽國	?	『晉書』卷15「地理志」下 荊州·南陽國·比陽國條, 455쪽

拔烈蘭步愛 ¹⁷⁹	比陽男	荊州 南陽國 比陽國	?	『晉書』卷15「地理志」下 荊州·南陽國·比陽公國條, 455쪽
獨孤□□ ¹⁸⁰	夾道男	?	?	
段去斤 ¹⁸¹	□□男	?	?	
大野□石頂 ¹⁸²	祁陽男	荊州 零陵郡 祁陽縣	×	『晉書』卷15「地理志」下 荊州·零陵郡·祁陽縣條, 457쪽
茹茹命以斤 ¹⁸³	靈開男	?	?	
斛律西姑 ¹⁸⁴	永寧男	寧州 雲南郡 永寧縣 혹은 揚州 臨海郡 永寧縣	×	『晉書』卷14「地理志」上 寧州·雲南郡·永寧縣條, 441쪽;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臨海郡·永寧縣條, 461쪽
泣利儻但 ¹⁸⁵	宣道男	?	?	
獨孤平城 ¹⁸⁶	建德子	揚州 吳郡 建德縣(西晉) 혹은 營州 建德郡(北魏)	△	『晉書』卷15「地理志」下 揚州·吳郡·建德縣條, 461쪽; 『魏書』卷106上「地形志」2上 營州·建德郡條, 2494쪽
叱奴地□ ¹⁸⁷	曲梁子	司州 廣平郡 曲梁縣	○	『晉書』卷14「地理志」上 司州·廣平郡·曲梁縣條, 417쪽
長兒大食勤 ¹⁸⁸	□□子	?	?	

【범례】○'는 北魏의 영토인 경우, '×'는 北魏의 영토가 아닌 劉宋의 영토인 경우, '?'는 지명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는 北魏와 劉宋의 지명 모두 가능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 2〉는 화평 2년 당시 문성제의 순행(巡幸)을 따라간 수행원의 작위를 정리한 표이다. 당시 북위는 아직 황하 하류 남쪽의 청제(靑齊) 지역과 회수 일대를 지배하지 못하였고, 황하 중류와 위수(渭水) 일대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봉호

138 위와 같음, 72오른쪽.

139 위와 같음, 72오른쪽.

140 위와 같음, 72오른쪽~73왼쪽.

의 지명이 북위의 영토인지, 유송의 영토인지 구분하기 쉽고 작위 수여 시점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위서』와 달리 봉작 수여 식점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 2〉의 54개 봉호(작위명) 가운데 북위의 영토안의 군현명임이 확실한 것은 10개, 유송의 영토 안의 군현명임이 확실한 지명은 16개, 모두 가능한 경우는 6개이다. 나머지 22개의 지명은 확인이 불가능한 지명이다. 요컨대 「문성제

-
- 141 위와 같음, 73왼쪽.
 - 142 위와 같음, 73왼쪽.
 - 143 위와 같음, 73왼쪽.
 - 144 위와 같음, 73왼쪽.
 - 145 위와 같음, 73왼쪽.
 - 146 위와 같음, 73왼쪽.
 - 147 위와 같음, 73왼쪽.
 - 148 위와 같음, 73왼쪽.
 - 149 위와 같음, 73왼쪽.
 - 150 위와 같음, 73오른쪽.
 - 151 위와 같음, 73오른쪽.
 - 152 위와 같음, 73오른쪽.
 - 153 위와 같음, 73오른쪽.
 - 154 위와 같음, 73오른쪽.
 - 155 위와 같음, 73오른쪽.
 - 156 위와 같음, 73오른쪽~74왼쪽.
 - 157 위와 같음, 74왼쪽.
 - 158 위와 같음, 74왼쪽.
 - 159 위와 같음, 74왼쪽.
 - 160 위와 같음, 74왼쪽.
 - 161 위와 같음, 74왼쪽.
 - 162 위와 같음, 74왼쪽.
 - 163 위와 같음, 74왼쪽.
 - 164 위와 같음, 74오른쪽.

남순비」의 54개 작위명(봉호) 가운데 최소 16개, 최대 22개의 군현명이 북위의 영토가 아닌 유송의 영토에 있었다. 이처럼 자기 나라의 영토가 아닌 지명을 취한 봉호를 허봉이라고 한다. 이처럼 허봉이 존재한 것은 효문제의 작위 개혁 이전의 봉호는 식읍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⁸⁹

165 위와 같음, 74오른쪽.

166 위와 같음, 74오른쪽.

167 위와 같음, 74오른쪽.

168 위와 같음, 74오른쪽.

169 위와 같음, 74오른쪽.

170 위와 같음, 74오른쪽.

171 위와 같음, 74오른쪽.

172 위와 같음, 74오른쪽.

173 위와 같음, 74오른쪽.

174 위와 같음, 74오른쪽.

175 위와 같음, 74오른쪽~75왼쪽.

176 위와 같음, 75왼쪽.

177 위와 같음, 75왼쪽.

178 위와 같음, 75오른쪽.

179 위와 같음, 77왼쪽.

180 위와 같음, 77왼쪽.

181 위와 같음, 77왼쪽.

182 위와 같음, 77왼쪽.

183 위와 같음, 77왼쪽.

184 위와 같음, 77왼쪽.

185 위와 같음, 77왼쪽.

186 위와 같음, 77왼쪽.

187 위와 같음, 77왼쪽.

188 위와 같음, 77오른쪽.

189 張維訓, 1984, 「略談北魏後期的實封和虛封」, 鄭州: 『史學月刊』 1984 - 2(K22 三國兩晉隋唐史 1984 - 5); 川本芳昭, 1998a, 「封爵制度」,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東京: 汲古書院, 258~262쪽; 翟桂金, 2004, 「北魏爵祿制度研究」.

이밖에 해당 주군(州郡) 인재를 천거하는 중정(中正)에도 유송의 영토인 형주·양주 등의 지명이 붙었다. 태원군(太原郡) 진양현(晉陽縣) 출신을 자처한 왕혜룡(王慧龍)은 태상(泰常) 2년(417) 북위에 망명한 후 낙안왕범부(樂安王範傳) 영병형양삼주대중정(領并荊揚三州大中正)에 임명되었다.¹⁹⁰ 왕혜룡의 본적인 태원군은 병주(并州)에 속했는데 형주와 양주가 덧붙여진 것은 그가 동진에서 망명했기 때문이다. 남제에서 북위로 망명한 낭야왕씨(瑯邪王氏)의 한 사람 왕숙(王肅)¹⁹¹과 아들 왕연(王衍),¹⁹² 하동배씨(河東裴氏)인 배숙업(裴叔業)¹⁹³과 배경(裴炯),¹⁹⁴ 배찬(裴粲),¹⁹⁵ 하동유씨(河東柳氏)인 유승습(柳僧習)¹⁹⁶은 양주대중정(揚州大中正)에 임명되었다. 이들은 모두 남조인 남제와 양에서 망명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초군(譙郡) 초현(譙縣) 출신인 하후도천(夏侯道遷)¹⁹⁷과 하후패(夏侯夬)¹⁹⁸는 남연주대중정(南兗州大中正)에 임명되었다. 남연주(南兗州)

『許昌學院學報』23-6.

- 190 『魏書』卷38, 「王慧龍傳」, 876쪽, “久之, 除樂安王範傳, 領并荊揚三州大中正.”; 『北史』卷35, 「王慧龍傳」, 1287쪽.
- 191 『魏書』卷63, 「王肅傳」, 1408쪽, “高祖遣散騎侍郎勞之, 以功進號平南將軍, 賜駿馬一匹, 除持節·都督豫東豫東鄆三州諸軍事·本將軍·豫州刺史·揚州大中正. 肅善於撫接, 治有聲稱.”
- 192 『魏書』卷63, 「王肅傳附衍傳」, 1413쪽, “誦弟衍, 字文舒. 名行器藝亞於誦. 自著作佐郎, 稍遷尚書郎·員外常侍·司空諮議·光祿大夫·廷尉·揚州大中正·度支尚書, 仍轉七兵, 徙太常卿.”
- 193 『魏書』卷71, 「裴叔業傳附植傳」, 1570쪽, “尋除揚州大中正, 出爲安東將軍·瀛州刺史. 罷州, 復除大鴻臚卿.”
- 194 『魏書』卷71, 「裴叔業傳附炯傳」, 1572쪽, “領軍元叉納其金帛, 除鎮遠將軍·散騎侍郎·揚州大中正, 進伯爲侯, 改封高城縣, 增邑一千戶.”
- 195 『魏書』卷71, 「裴叔業傳附粲傳」, 1573쪽, “世宗末, 除前將軍·太中大夫·揚州大中正, 遷安南將軍·中書令.”
- 196 『周書』卷22, 「柳慶傳」, 369쪽; 『北史』卷64 「柳蚪傳」, 2278쪽.
- 197 『魏書』卷71, 「夏侯道遷傳」, 1583쪽, “歲餘, 頻表解州, 世宗許之. 除南兗州大中正, 不拜.”
- 198 『魏書』卷71, 「夏侯道遷傳附夬傳」, 1584쪽, “長子夬, 字元廷. 歷位前軍將軍·鎮遠將軍·南兗州大中正.”

는 동진남조 북부병(北府兵)의 근거지인 경구(京口)에 설치되었다가 광릉군(廣陵郡)으로 옮긴 주였다.¹⁹⁹ 하후도천과 하후쾌 역시 앞에서 살펴본 인물들처럼 남조에서 항복하였다. 선조의 본적이 북위의 영토에 있었던 태원왕씨, 낭야왕씨, 하동배씨, 하동유씨, 초군하후씨는 자신의 본적이 아닌 남조의 영역인 양주와 남연주의 대중정(大中正)에 임명되었다. 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 첫째, 북위가 양주대중정과 남연주대중정을 임명하여 이 지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북위가 정통왕조이며, 실제와 달리 중국 전체를 지배한다는 허위관념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둘째, 이들이 남조에서 활동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맡은 양주대중정과 남연주대중정은 남조에서 항복한 사람들의 품평과 인재 천거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실제 양주와 남연주가 실제 인재등용이라는 행정작용이 실현된 실효지배의 행정구역으로 오도할 수 있었다.

북위가 남조의 영토를 자기 영토처럼 간주하며 장강 유역의 지명을 따서 지방관(遙領)과 작위(虛封), 대중정을 임명한 조치는 북위가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고 분식하기 위한 장치이며, 3장에서 살펴본 요동군, 혹은 요동의 존재와 유사하다. 요동 이외에 낙랑도 존재하였다. 북조 묘지에 따르면, 왕온(王溫)은

199 『宋書』卷35, 「州郡志」1 南兗州條, 1053~1054쪽, “南兗州刺史, 中原亂, 北州流民多南渡, 晉成帝立 南兗州, 寄治京口, 時又立南青州及并州, 武帝永初元年, 省并併南兗, 文帝元嘉八年, 始割江淮間為境, 治廣陵, ……元嘉二十八年, 南兗州徙治盱眙, 三十年, 省 南兗州併南徐, 其後復立, 還治廣陵, ”; 『南齊書』卷14, 「州郡志」上 南兗州條, 255쪽, “鎮廣陵, 漢故王國, 有江都浦水, 魏文帝伐吳出此, 見江壽盛壯, 歎云: ‘天所以限南北也.’ 晉元帝過江, 建興四年, 揚聲北討, 遣宣城公褒督徐·兗二州, 鎮廣陵, 其後或還江南, 然立鎮自此始也, 時百姓遭難, 流移此境, 流民多庇大姓以為客, 元帝太興四年, 詔以流民失籍, 使條名上有司, 為給客制度, 而江北荒殘, 不可檢實, 明帝太寧三年, 郗鑒為兗州, 鎮廣陵, 後還京口, 是後兗州或治盱眙, 或治山陽, 桓玄以桓弘為青州, 鎮廣陵, 義熙二年, 諸葛長民為青州, 徙山陽, 時鮮卑接境, 長民表云: ‘此蕃十載戮故相襲, 城池崩毀, 荒舊散伏, 邊疆諸戍, 不聞鷄犬, 且犬羊侵暴, 抄掠滋甚,’ 乃還鎮京口, 晉末氏廣陵控接三齊, 故青·兗同鎮, 宋永初元年, 罷青并兗, 三年, 檀道濟始為 南兗州, 廣陵因此為州鎮.”

연국(燕國) 낙랑 낙도(樂都),²⁰⁰ 왕도민(王道岷)의 딸 왕씨(王氏, 480~509)는 낙랑군(樂浪郡) 수성현(遂城縣),²⁰¹ 한도민(韓道岷)의 딸 한씨(韓氏, 482~513)는 수성현,²⁰² 왕정(王禎, 477~515)은 낙랑군 수성현,²⁰³ 왕기(王基, 481~522)는 낙랑군 수성현,²⁰⁴ 왕서(王舒)는 낙랑(樂梁)郡 □성현,²⁰⁵ 장문(張問)의 아내 낙랑왕씨(447~525)는 낙랑군,²⁰⁶ 공손씨(公孫氏)의 아내 왕경비(王敬妃, ?~515)는 영주(營州) 낙랑군²⁰⁷을 본적으로 기록하였다. 왕경비의 본적 영주 낙랑군은 낙랑군이 영주, 즉 요수 서쪽 지역에 교치(僑置)되었음을 시사한다. 『위서』 「지형지」에 따르면 영주의 속군(屬郡)인 낙랑군(樂良郡, 樂浪郡의 誤記)은 정광말(550~555)에 다시 설치되었다.²⁰⁸ 『위서』 「지형지」의 기록이 옳다면, 북위 조정은 존재하지 않는 낙랑군의 본적을 취하도록 허용하였고, 특히 영주에 속했다는 오기(誤記)를 묵인하였다. 이는 낙랑군 지역을 이미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지만, 낙랑군 백성들이 북위에 살고 있음을 강조하여 마치 북위가 낙랑군을 지배한 것처럼 선전한 것이다. 또 왕온은 경명원년(景明元年, 500)과 연창 4년(515) 사이

200 「王溫墓誌」,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 134쪽.

201 「魏黃鉞大將軍太傅大司馬安定靖王第二子給事君夫人王氏之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 56쪽.

202 「大魏揚列大將軍太傅大司馬安樂王第三子給事君夫人韓氏之墓誌」, 『漢魏南北朝墓誌彙編』, 71쪽. 그러나 이 墓誌는 王氏墓誌와 내용이 유사하여 가짜라는 주장이 있다(馬立軍, 2010, 「北魏《給事君夫人韓氏墓誌》與《元理墓誌》辨偽—兼論北朝墓誌著錄中的偽刻問題—」, 『江漢考古』 2010-2, 90원쪽~90원쪽).

203 「魏故恒州治中晉陽男王(禎)墓誌銘」, 『漢魏南北朝墓誌彙編』, 80쪽.

204 「魏故處士王(基)君墓誌銘」, 『漢魏南北朝墓誌彙編』, 138쪽.

205 「魏故王君墓誌銘」, 『漢魏南北朝墓誌彙編』, 272쪽. 누락된 글자는 ‘遂(수)’자로 추정된다.

206 「魏張問墓誌并蓋」, 『魏洛墓刻拾零』(趙君平·趙文成 編,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32쪽(‘梁’은 浪의 誤記).

207 「公孫氏妻王敬妃墓誌」, 『墨香閣藏北朝墓誌』(葉煒·劉秀峰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6), 124쪽.

208 『魏書』 卷106上, 「地形志」 2上 營州·樂良郡條 細注, 2495쪽, “前漢武帝置, 二漢·晉曰樂浪, 後改, 罷. 正光末復. 治連城.”

에 연국낙랑중정(燕國樂浪中正)에 임명되었다.²⁰⁹ 왕온이 연국낙랑중정에 임명된 사실에서 낙랑군이 교군(僑郡)이었지만, 해당 지역 본적지 인물을 관리로 임명되는 낙랑중정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북위는 낙랑군을 명목상의 교군(僑郡)이 아니라 관리 등용 등 행정력이 미치는 실군(實郡)처럼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북위시대 낙랑군이 요수 서쪽에 존재했던 것도 요동군이나 남조의 영토처럼 천하관을 분식하기 위해 고구려의 땅이 된 지역을 자신의 땅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VI. 맺음말

『진서』와 『위서』가 고구려의 요동 점령을 기록하지 않은 반면, 남조계 사서와 당 후기 편찬된 『통전』에서는 고구려의 요동 정복 사실을 기록하였고 그 시점은 후연 모용보의 즉위 이후였음을 명시하였다. 고구려가 요동을 지배했음은 「광개토대왕비」, 중국 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권3 「탐상」제사 요동성육왕탐조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는 수양제가 611년에 고구려를 친정(親征)하여 요동성에 이르렀다는 『수서』 권81 「동이·고려전」의 기사이다. 이때 수양제는 요수 서쪽의 무려라를 점령하여 요동군과 통정진을 설치하였다. 이 기사에서 7세기 초까지 요동이 고구려의 영토였을 뿐만 아니라 요수 서쪽의 무려라도 고구려의 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3세기 말 혹은 4세기 초에서 7세기초까지 요동 지역이 고구려의 땅이었음은 분명하다.

『위서』에서는 이미 고구려의 땅이 된 요동·낙랑·대방·현토의 명칭이 발견

209 「王溫墓誌」, 『新出魏晉南北朝墓誌疏證』, 134쪽. 王溫이 燕國樂浪中正에 임명되기 전에 景明년간 平原公國郎中令에 임명되었고, 이후 濟州刺史 高植의 輔國府司馬, 羽林監 直閣將軍을 거쳐 延昌 4년(515) 長水校尉에 임명되었다. 王溫이 燕國樂浪中正에 임명된 시기는 景明元年(500)과 延昌 4년(515)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된다. 특히 『위서』와 묘지명에 ‘요동’이 자주 등장하였다. 즉 요동군을 본적지로 한 인물들의 기록이 보였고, 일부는 관리를 추천하는 대증정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서』에는 요동이 실토(實土)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 고승의 아버지 고잠은 현문제 시기에 고구려에서 북위로 이주하여 ‘요동’에 거주했다고 한다. 현문제 시기는 고구려 장수왕 시기였는데, 이때 요동은 북위의 땅이 아니라 고구려의 땅이었다. 따라서 고구려를 탈출한 고잠이 머무른 ‘요동’은 요수 서쪽, 특히 의무려산 서쪽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일본의 북위사 연구자도 북위의 ‘요동’이 현재의 요하 서쪽 지역이라고 오인할 만큼 『위서』의 요동 관련 서술은 교묘하였다.

북위가 요동을 지배한 것처럼 서술한 이유는 북위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있다. 북위의 황제들은 호족군주로서 중국을 잘 통치하기 위해 국호와 행차(行次), 중국 제도와 의례 동원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정통성을 분식하려고 하였다. 또 북위를 정통왕조로, 동진남조를 지방정권(僭僞)으로 격하한 역사관은 『위서』 편찬 때 그대로 반영되었다. 중화의 정통성을 자임한 북위는 원가 23년(446) 유송에 공문을 보내 유송의 교주군현 설치를 비난하였다. 이처럼 북위의 영토에 있는 지명들을 사용하는 것(교주군현)을 비난한 것은 북위가 화북 지역을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함과 동시에 실존하지 않은 교주군현의 설치를 명분으로 지리적으로 정통성을 분식하려고 하는 유송의 조치를 차단하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양주·광주·교주·서주·청주·회주 등 유송의 영토에 해당하는 주의자사를 임명하였다. 요령에 해당하는 8주 가운데 교주·익주·형주 3주는 한때 설치된 적이 있었다. 화평 2년(461) 세워진 「문성제남순비」의 봉호에서 허봉(虛封)의 예를 발견할 수 있다. 「문성제남순비」의 54개 작위명(봉호) 가운데 최소 16개, 최대 22개의 군현명이 북위의 영토가 아닌 유송의 영토에 있었다. 이 밖에 해당 주군 인재를 천거하는 중정에도 유송의 영토인 형주·양주 등의 지명이 붙었다. 선조의 본적이 북위의 영토에 있었던 태원왕씨, 낭야왕씨, 하동배씨, 하동유씨, 초군하후씨는 자신의 본적이 아닌 남조의 영역인 양주와 남연주의 대증정에 임명되었다. 이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 첫째, 북위가 양주대증정

과 남연주대중정을 임명하여 이 지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었다. 이는 북위가 정통왕조이며, 실제와 달리 중국 전체를 지배한다는 허위관념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둘째, 이들이 남조에서 항복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맡은 양주대중정과 남연주대중정은 남조에서 항복한 사람들의 품평과 인재 천거 임무를 맡았을 것이다.

요컨대 이민족이 세운 북위는 정통왕조임을 강조하기 위해 북위 중심의 천하관과 역사관을 만들었고 외교를 통해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였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북위가 지배하지 못하는 지역을 지배하는 것처럼 분식하기 위해 동진 남조의 주군현 이름을 차용한 자사·태수 등 지방관 임명(遙領), 작위 수여(虛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북위는 남방 지역을 지배하여 중국의 유일한 통일왕조라는 허위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북위의 문서에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을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도 이러한 허위의식의 결과였다.

참고문헌

1. 사료

- 『史記』(司馬遷 撰, 裴駟 集解, 司馬貞 索隱, 張守節 正義, 北京: 中華書局, 1959)
『後漢書』(范曄 撰, 李賢 等注, 北京: 中華書局, 1965)
『三國志』(陳壽 撰, 裴松之 注, 北京: 中華書局, 1959)
『晉書』(房玄齡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4)
『魏書』(魏收 撰, 北京: 中華書局, 1974)
『宋書』(沈約 撰, 北京: 中華書局, 1974)
『南齊書』(蕭子顯 撰, 北京: 中華書局, 1972)
『梁書』(姚思廉 撰, 北京: 中華書局, 1973)
『隋書』(魏徵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3)
『資治通鑑』(司馬光 編著, 胡三省 音注, 北京: 中華書局, 1956)
『洛陽伽藍記』(范祥雍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通典』(杜佑 撰, 王文錦 等 點校, 中華書局, 1988)
『十六國春秋輯補』(崔鴻 撰, 湯球 輯補, 王魯一·王立華 點校, 濟南: 齊魯書社, 1998)
『漢魏南北朝墓誌彙編』(趙超,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1992)
『讀史方輿紀要』(顧祖禹 撰, 賀次君·施和金 點校, 中華書局, 2005)
『河洛墓刻拾零』(趙君平·趙文成 編,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
『墨香閣藏北朝墓誌』(葉煒·劉秀峰 主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6)
『三國史記』
『三國遺事』
『廣開土大王碑』

2. 연구서

<중문>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중문>

米文平, 1994, 『鮮卑史研究』, 開封: 中州古籍出版社.

史爲樂 主編, 2005, 『中國歷代地名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일문>

谷川道雄, 1971, 『隋唐帝國形成史論』, 東京: 筑摩書房.

3. 연구논문

<국문>

공석구, 2012, 「廣開土王의 遼西地方 進出에 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67.

박한제, 1993, 「西魏北周時代의 賜姓與鄉兵的 府兵化」, 『歷史研究』 4.

_____, 2004, 「魏晉-隋唐時代 胡族君主의 中華帝王으로의 變身過程과 그 論理
- '多民族國家' 形成의 契機에 대한 探索 -」, 『中央아시아研究』 9.

서영수, 1988, 「廣開土大王陵碑文」의 正복기사 재검토(中), 『역사학보』 119.

여호규, 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현실』 55.

이성제, 2012, 「4世紀 末 高句麗와 後燕의 關係-396년 後燕의 廣開土王 冊封 問題
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68.

임기환, 2013, 「고구려의 요동 진출과 영역」, 『高句麗渤海研究』 45.

田中俊明, 1996, 「高句麗의 北方進出과 『廣開土王碑文』-北方領域形成史에 있어
서 廣開土王時代-」, 『高句麗研究』 2.

井上直樹, 2012, 「廣開土王의 對外關係와 永樂 5年의 對靺婁戰」, 『韓國古代史研究』 67.

최진열, 1999, 「三國時代 天下觀念과 그 현실적 변용-遙領·虛封·四方將軍의 수
용을 중심으로-」, 『서울大東洋史學科論集』 23.

_____, 2005, 「雲崗石窟 曇曜五窟 五帝의 재해석-廟號와 國號로 본 北魏의 정체
성-」, 『中央아시아研究』 10.

_____, 2012, 「前近代 中國의 '민족'과 '민족문제'-同床異夢의 동화론-」, 『역사와교육』 15.

_____, 2015, 「16국시대 요서(遼西)의 인구 증감과 전연(前燕)·후연(後燕)·북연(北
燕)의 대응」, 『백제와 요서지역』, 한성백제박물관.

_____, 2016, 「후연(後燕) '용성시대(龍城時代)'의 정치적·경제적 자멸(自滅)-광개
토대왕(廣開土大王) 후연 공략의 대외적 배경-」, 『동북아역사논총』 52.

판카즈, 「新羅‘中古’期の轉輪聖王 理念－인도 아소카왕과 新羅 眞興王의 政治理念의 比較－」, 서울대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8.

許明綱, 서길수 옮김, 「대련지구(大連地區)에 있는 4개의 고구려 산성에 대한 소고」, 『高句麗研究』 9, 2000.

<중문>

耿鐵華, 2006, 「跋高句麗金銅佛造像」, 『東北史地』 2006-6.

馬立軍, 2010, 「北魏《給事君夫人韓氏墓誌》與《元理墓誌》辨偽－兼論北朝墓誌著錄中的偽刻問題－」, 『江漢考古』 2010-2.

山西省考古研究所·靈丘縣文物局, 1997, 「山西靈丘北魏文成帝《南巡碑》」, 『文物』 1997-12.

張維訓, 1984, 「略談北魏後期的實封和虛封」, 鄭州: 『史學月刊』 1984-2(K22 三國兩晉隋唐史 1984-5).

翟桂金, 2004, 「北魏爵祿制度研究」, 『許昌學院學報』 23-6.

田立坤, 1996, 「棘城新考」, 『遼海文物學刊』 1996-2.

趙智濱, 2015, 「高句麗占領遼東時間略考」, 『東北史地』 2015-2.

曾憲妹, 1996, 「高句麗好太王時期的擴張活動」, 『通化師範學報(社會科學)』, 1996-1(總第31期).

馮立君, 2015, 「高句麗“西進”遼東問題再探討」, 『東北史地』 2015-3.

胡阿祥, 1994, 「孫吳特殊政區制度考論」, 『贛南師範學院學報(社科版)』(復印報刊資料 K21 1994-5)

<일문>

武田幸男, 1989, 「長壽王の東アジア認識」,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松下憲一, 2007, 「北魏の國號「大代」と「大魏」」, 『北魏胡族體制論』, 札幌: 北海道大學出版會(2004, 「北魏の國號「大代」と「大魏」」, 『史學雜誌』 113-6).

川本芳昭, 1998(a), 「封爵制度」,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東京: 汲古書院.

_____, 1998(b),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魏晉南北朝時代の民族問題』, 東京: 汲古書院(原載 1997, 「五胡十六國・北朝時代における「正統」王朝につい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25).

5~6세기 2개의 요동(遼東)

—북위(北魏)의 천하관(天下觀)과 역사왜곡이 만들어낸
고구려(高句麗)의 요동과 북위의 요동—

최진열

이 논문은 학계에서 주목하지 고구려의 요동과 북위의 요동이 양립한 현상과 그 배경을 북위의 정통성과 천하관 분석이라는 시각에서 논증한 글이다.

『위서』에서는 요동·낙랑·대방·현토의 명칭이 발견된다. 특히 『위서』와 묘지명에 ‘요동’이 자주 등장하였다. 즉 요동군을 본적지로 한 인물들의 기록이 보였고, 일부는 관리를 추천하는 대중정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서』에는 요동이 실토(實土)로 오인할 수 있는 기사가 있다. 고송의 아버지 고잠은 현문제 시기에 고구려에서 북위로 이주하여 ‘요동’에 거주했다고 한다. 현문제 시기는 고구려 장수왕 시기였는데, 이때 요동은 북위의 땅이 아니라 고구려의 땅이었다. 따라서 고구려를 탈출한 고잠이 머무른 ‘요동’은 요수 서쪽, 특히 의무려산 서쪽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민족이 세운 북위는 정통왕조임을 강조하기 위해 북위 중심의 천하관과 역사관을 만들었고 외교를 통해 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위가 지배하지 못하는 지역을 지배하는 것처럼 분석하기 위해 동진남조의 주군현명을 차용한 자사·태수 등 지방관 임명(遙領), 작위 수여(虛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북위는 남방 지역을 지배하여 중국의 유일한 통일왕조라는 허위의식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북위의 문서에 고구려의 영토인 요동을 자신의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것도 이러한 허위의식의 결과였다.

주제어: 요동(遼東), 고구려(高句麗), 북위(北魏), 고구려의 요동, 북위(北魏)의 요동, 요령(遼領), 허봉(虛封), 천하관(天下觀), 정통성

ABSTRACT

“Two Ryodongs” in 5~6th Century: Koguryo’s Ryodong and Northern Wei’s Liaodong fabricated by the World View of Northern Wei Dynasty and History Distortion

Choi JinYeoul

Although Chinese history has no record on the periods of Koguryo’s occupation of Ryodong or occupation of Ryodong at all, Ryodong had been Koguryo’s territory from the fourth or fifth century until its collapse, as can be seen in a number of Chinese historical publications, including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三國史記) and the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三國遺事). However, the History of Northern Wei(魏書) records as if Ryodong was in Northern Wei’s territory. Japanese researchers accepted this history distortion and produced maps showing Ryodong as part of Northern Wei’s territory.

Such distortion of history results from attempts to give legitimacy to the Northern Wei Dynasty, whose rulers originated from the Tuoba tribe of Xianbei tribes and ruled the Northern Chinese territory, to argue

that Northern Wei is the only legitimate dynasty of China and ruled the Whole China Proper through remote governance(遙領) and empty investiture(虛封) by appointing officials of prefectures and commanderies, and by investing fiefs in Koguryo and Southern Dynasties. In doing so, the Tuoba rulers were satisfied with the false recognition of being the only legitimate and unified dynasty, and Ryodong was a scapegoat of Northern Wei's attempt to distort the outlook on the world and history.

keyword: Ryodong(Liaodong), Koguryo, Northern Wei, Ryodong of Koguryo territory, Ryodong of Northern Wei, remote governance, empty investiture, the World View of Northern Wei, legitimacy of Northern Wei

왕진이(王辰爾) 일족의 문서 행정과 시조전승

연민수 |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왕진이(王辰爾)의 이주배경과 국서해독사건
- III. 왕진이 일족의 문서행정
- IV. 선수왕후(船首王後)의 묘지명과 선사(船史)
- V. 선사씨(船史氏)와 외교·수사·불교
- VI. 왕진이계(王辰爾系) 씨족의 시조전승의 성립과 배경
- VII.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¹

백제에서 왜국으로 이주한 왕진이(王辰爾)는 왕인(王仁)과 더불어 일본고대사회의 대표적인 교양인으로서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일본 최고의 한시집(漢詩集)인 『화풍조(懷風藻)』(751)의 서문에서도 “왕인은 응신조에 학문을 깨닫게 하였고, 왕진이는 민달조에 가르침을 널리 알렸다. 그 결과 사회에 유학의 풍습이 퍼져 사람들은 공자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8세기 나라시대에서도 왕진이의 학문적 업적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예찬하고 있다.

설화성이 가미된 왕인전승과는 달리 왕진이는 실체가 분명한 도래인으로 그의 일족들이 왜왕권에서 이룩한 업적은 문서행정 등 다방면에 걸쳐있다. 특히 문서행정의 기본은 한문에 대한 지식으로 유식자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5~6세기에 걸쳐 왜왕권은 영토확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의 행정을 조직화하고 확대된 관료기구에 상응하여 문필에 능한 인물의 등용이 절실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진이의 등장은 왜왕권의 문서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고구려왕이 보낸 국서를 왜왕권의 사관들이 누구도 해독하지 못하자 왕진이가 이를 능히 해결했다는 전승은 단지 특출한 유식자의 등장이 아니라 왜왕권의 문서행정 체계에 새로운 변화를 말해준다. 왕진이를 비롯한 그의 일족들은 문서행정을 담당하는 사성(史姓) 씨족으로 재정, 조세, 수사(修史), 외교, 불교 등 다방면에 걸친 활약상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왕진이계 씨족은 가문의 번영과 더불어 새로운 시조전승을 만들었다. 고귀한 신분으로 출자를 바꾸는 행위는 당시의 씨족들에게는 신분상승을 위한 보편

* 투고: 2018년 8월 2일, 심사 완료: 2018년 11월 13일, 게재 확정: 2018년 11월 16일

1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특정분야기획연구(역사기초자료연구)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AKS-2016-SRK-1230007)

적 행위였다. 『속일본기』 연력(延歷) 9년(790)조에 왕진이의 후손인 진연진도(津連眞道)의 상표문에 따르면, 이 씨족의 본계는 백제 귀수왕(貴須王)이고 그 손자인 진손왕(辰孫王)이 왜국으로 건너와 그 후손인 왕진이로 이어지는 계보였다고 주장한다. 이 전승은 왕인전승과 매우 흡사하여 왕진이계 시조전승이 왕인계 후손과의 동족, 동조(同祖) 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동족의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8세기 이후가 되면 양 씨족 간에는 동족의식이 희박해지고 분파씨족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왕진이의 이주 배경과 왜왕권 내에서 그의 일족의 활약상을 살펴보고, 그 후예들의 족적 기반이 된 문필씨족으로서의 새로운 시조전승의 생성과정과 배경에 대해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왕진이(王辰爾)의 이주배경과 국서해독사건

왕진이에 관한 초견은 『일본서기』 흠명기(欽明紀) 14년(553)조에 소아대신(蘇我大臣)이 왕명을 받들어 왕진이에게 선부(船賦)를 기록시키고, 왕진이를 선장(船長)으로 삼아 선사(船史)의 성(姓)을 내렸다는 그 유래를 밝힌 기록이다.² 여기서 선부란 조정에 공납하는 공진물, 즉 조운선에 적재한 국가의 조세를 가리킨다. 왕진이에게 부여된 선장의 지위는 각지로부터 운반된 물자를 항구에 집적하여 이를 기록하고 보관, 관리하는 임무였다. 5세기 이후 왜왕권은 북속시킨 지역에 둔창(屯倉)을 설치하여 해당지로부터 조세형태의 공진물을 상납받았다. 지방으로부터의 공납물은 육로와 해로, 하천, 운하를 이용하였다. 특히 6세기 중엽에 조성된 고시대구(古市大溝)는 주로 서일본에서 대화(大和)로 향하는 수운 교통

2 『日本書紀』欽明紀14年秋7月條, “蘇我大臣稻目宿禰, 奉勅遣王辰爾, 數錄船賦, 卽以王辰爾爲船長, 因賜姓爲船史, 今船連之先也”

로인 난파진(難波津), 동제천(東除川)을 거쳐 대구(大溝)의 종점에서 육지로 이어지는 공납물 운송을 위한 운하이다.³ 각 지역 수장들이 대왕가에 물품을 공납할 때 왕궁에 가까운 항구에 물자의 입하를 관리하는 관청이 설치되었다고 보인다.

왜왕권의 재무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왕진이의 이주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속일본기』 연력 9년(790) 추7월조의 진련진도의 상표문에는 왕진이의 계보를 백제 귀수왕의 손자인 진손왕 때의 일로서 도래전승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것은 8세기대의 후예씨족들이 현실의 높은 성을 하사받기 위해 만들어진 계보이다. 왕수왕후(船首王後)의 묘지명에는 ‘선씨중조왕지인(船氏中祖王智仁)’이라 하여 왕지인(王智仁)을 선씨(船氏)의 ‘중조(中祖)’라고 부르고 있다. 왕지인은 왕진이와 동일인물이고 그의 후손들에 의해 중시조이자 중흥의 조로 추앙받고 있듯이 왜국으로의 이주 1세대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왕진이의 도래시기는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활동이 초견되는 흙명 14년(553) 이전의 가까운 시기라고 추정된다.

왕진이가 왜왕권에서 공진물의 문서담당관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의 국제정세를 살펴보자. 이 시기 백제는 북으로는 고구려와 남으로는 가야제국을 둘러싸고 신라와 대립하던 전란의 극점에 있었다. 『삼국사기』에는 성왕 31년(553)에 신라가 동북변을 취하여 신주를 두었다고 하여 한수유역의 상실을 전하고, 『일본서기』 흙명 13년조에도 “이 해에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포기하였다. 신라가 이를 틈타 한성으로 들어갔다”고 하여 동일 사건을 전한다. 이때 왜왕권은 백제의 요청에 응해서 축자(筑紫)의 병사 1천 병을 비롯하여 군마, 병선, 활, 화살 등 군수물자를 보내고, 이어 의박사(醫博士), 역박사(易博士), 역박사(曆博士)와 복서, 역본, 약물을 요청한다. 당시 백제는 중국 남조로부터 경전, 유학, 의학, 역

3 野上丈助, 1975, 『増補河内の古代遺跡と渡來系氏族』, 私家版, 4~5쪽; 吉田晶, 1977, 「船氏の氏族傳承について」, 羽曳野市史編纂紀要『羽曳野史』2, 2~3쪽.

학 등 최신의 학문을 수입하고 있었고, 중국과 교류가 없었던 왜왕권으로서는 백제는 유일한 선진문물의 창구였다.

백제가 왕진이를 왜왕권에 보낸 것도 이러한 정세하에서였다. 무령왕대의 제박사의 파견은 대략 3년 주기였지만, 왕진이는 정주를 전제로 한 일족의 이주로 고급인력의 수출이었다. 한편으로는 백제왕권이 왕진이에게 기대한 것은 문물전수뿐 아니라 왜왕권의 관료로서 백제와 왜왕권의 외교현안에 대한 역할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시기 백제의 대외 군사외교의 성공, 문물의 교류에는 왕진이와 같은 백제계 왜인관료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다. 왜왕권 내에서 왕진이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백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소아대신의 총애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신 소아도목(蘇我稻目)은 왕실의 외척으로 정무를 장악하고 있었고, 한반도계 도래인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면서 불교 등 선진문화의 수용하면서 권력을 강화해 나갔다. 그가 왕진이를 향만의 공진물을 관장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도 문서행정의 장악을 통해 재정의 독점적 집행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소아대신과 왕진이의 결합은 왜왕권의 친백제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왕진이가 왜왕권의 관료가 된 지 18년이 지난 민달(敏達) 원년(572) 5월에 고구려 사신이 갖고 온 국서의 해독을 둘러싸고 왜왕과 소아대신, 사관들 사이에 이른바 국서해독을 둘러싼 사건이 발생하였다.

천황이 고구려의 국서를 대신에게 주었다. 여러 사관들을 불러 그것을 해독시켰다. 이때 여러 사관은 3일 동안 아무도 읽어내지 못하였다. 그런데 선사의 시조인 왕진이만이 능히 읽어내어 바쳤다. 이에 천황과 대신이 모두 칭찬하며 “수고하였다. 진이야, 훌륭하구나. 그대가 만약 학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누가 능히 읽어낼 수 있었겠느냐. 마땅히 지금부터는 조정에서 근시하라”고 하였다. 이윽고 동서 여러 사관에게 “그대들이 학문을 제대로 익혔더라면, 어찌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그대들은 비록 숫자는 많으나, 진이에게 미치지 못하는구나”라고 하였다. 또한 고구려가 바친 국서는 까마귀 깃털에 쓴 것이었다. 글자가 깃털의 검은색 때문

에 식별할 수가 없었다. 이에 왕진이가 깃털을 밥증기로 찌서, 이를 비단에 눌러 새겨내 모든 글자를 읽어내었다. 조정에서는 모두 그것을 기이하게 여겼다.⁴

사실과 설화가 혼재된 이 기록은 570년에 왜국의 동쪽 해안인 월(越) 지방에 도착한 고구려사의 국서가 왜왕에게 전달되고 개봉되는 과정이다. 흠명 말년에 왜국에 온 고구려사는 흠명의 사후 민달 원년에 비로서 접견하게 되었다. 흠명기 32년 3월조에는 “고구려사의 헌물과 표문(表文)을 주상하지 못했다. 수십 일 사이에 점치고 길일을 기다렸다”는 내용으로부터 왜왕이 상당기간 중병에 앓고 있던 까닭에 국서의 전달 등 외교적 의례가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고구려의 국서를 유식자 집단인 동서의 사관들에게 해독을 맡겼으나 3일이 지나도 판독을 못하였다고 한다. ‘동서제사(東西諸史)’란 『영집해(令集解)』 ‘학령’ 대학생조 소인의 고기(古記)에 “왜내천(倭川內)의 문기촌(文忌寸)을 본(本)으로 하는 동서의 사(史)는 모두 이것이다⁵”라고 기록되어 있다. 왕인을 선조로 하는 동문씨(東文氏)와 서문씨(西文氏) 휘하에 결집한 후히토(史)를 가리키는데, 동서사부(東西史部)로 표현은 울령적 지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들은 왕진이보다 이른 시기에 건너온 선주 도래인이다. 종래 이 기록은 왕진이를 새로 온 도래인이라 보고 서문씨계가 장악하고 있던 문필의 업을 왕진이 일족의 제씨가 대신한 것으로 본다.⁶ 그러나 문필의 업무가 서문씨계에서 왕진이계로 이동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동서의 여러 사관 중에서 왕진이가 가장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화로 보인다.⁷ 국서해독에 왕진이의 ‘능봉독석(能奉讀釋)’에 비해 제 사관들의 ‘개부능독(皆不能讀)’이라는 상대적 우위적 표현은 가장 최근에 도래한 지식인으로서의 신구의 능력의 차이를 말해준다.

4 『日本書紀』敏達紀元年5月條.

5 『令集解』學令 大學生條, “古記云, 東西史部子, 謂, 倭川內, 文忌寸等爲本, 東西史等皆是. 朱云, 東西史部子者”.

6 關晃, 1966, 『歸化人』, 至文堂, 47쪽.

7 請田正幸, 1989, 「渡來人論・序章」, 『歷史學研究』582, 19쪽.

한편 까마귀 깃털에 새겨 국서의 내용을 해독하지 못했다는 표현은 기밀이 생명인 국서의 성격을 상징하는 설화로 보인다. 중간에 누군가에 탈취당해 기밀이 누설되는 위험을 방지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이다.⁸ 『일본서기』 추고 16년조에 건당사 소야신매자(小野臣妹子)가 귀로 중에 백제에서 당 황제의 국서를 약탈당했다고 보고하자, 군신들이 “무릇 사자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번 사자는 어찌 태만하여 대국의 국서를 잃었는가”라고 말하고 소야신매자를 즉시 유형에 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듯이 국서는 국가의 기밀문서이다.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을 제외하면 종전의 사관들이 국서의 해독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이 국서의 해독에는 왜왕을 비롯하여 소아대신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다. 소아대신의 측근으로 한문에 능통한 지식인이자 한반도정세에 밝은 관료였기에 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조정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왕진이는 “근시전중(近侍殿中)”하라는 왜왕의 명을 받아 조정에 출사하는 영예를 얻었다.

왜왕권에서 문필, 기록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부(史部)의 성립은 언제일까. 『일본서기』 이충기(履中紀) 4년 8월조에는 “처음으로 제국(諸國)에 국사(國史)를 두었다. 언사를 기록하여 국내의 정세를 보고하게 하였다”는 후히토 설치기가 보이지만, 이것은 중국고전에 의거한 작문이다.⁹ 웅략기(雄略紀) 2년 10월(是月)조에 “사호(史戶)와 하상사인부(河上舍人部)를 두었다. …단지 총애한 이는 사부인 신협촌주청(身狹村主靑)과 회외민사박덕(檜隈民使博德) 등이었다¹⁰”고 한다. 이 기사는 조정의 문필, 기록을 담당하는 후히토로서 2인을 거론하고 사호의 설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가바네(姓)는 촌주(村主), 민사(民使)이지 후히

8 延敏洙, 2005, 「고대일본의 고구려관 연구」, 『북방사논총』 2; 2014, 『고대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 역사공간.

9 『春秋左氏傳』序, “周禮有史官, 掌邦國四方之事, 達四方之志, 諸侯亦各有國史”

10 『日本書紀』雄略紀2年10月條, “是月, 置史戶河上舍人部, 天皇以心爲師, 誤殺人衆, 天下誹謗言, 大惡天皇也, 唯所愛寵, 史部身狹村主靑檜隈民使博德等”.

토가 아니다.¹¹ 5세기 후반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고분 대도명에 보이는 전조인(典曹人)은 관청의 문서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조정 내에서 관사에 소속된 서기관을 가리킨다.¹²

후히토의 원래의 뜻은 서인(書人), 문인(文人)으로 문서작성 담당관이다. 도래계 씨족에게 부여했던 후히토에 사(史)의 한자표기로 고치고 후에 가바네로 정착하였다. 사료에서 출자를 알 수 있는 사성 씨족은 도래계이고, 사성의 성립기는 흠명, 민달기에 보이는 왕진이와 그 일족에게 준 선사, 백저사(白猪史), 진사(津史) 3씨이다.¹³ 사성의 성립의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율령적 관사제의 시원으로서 왕진이의 등장은 중요한 의미가 있고, 왜왕권의 행정문서체계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고 생각한다.

Ⅲ. 왕진이 일족의 문서행정

왕진이의 일족으로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로서 담진(膽津)과 우(牛) 2인이 보인다. 우선 이들의 활동상황을 설명해 주는 흠명기 30년조와 민달기 3년조의 기록을 살펴보자.

- ① 흠명 30년 봄 정월 신묘삭(1일)에 조를 내려 “전부(田部)를 둔 지 오래되었다. 세월이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호적에서 빠져 과역을 면한 자가 많다. 마땅히 膽津[담진은 왕진이의 조카이다]을 보내 백저전부(白猪田部)의 정적(丁籍)을 조사하

11 關晃, 1966, 『歸化人』, 至文堂, 30~31쪽.

12 直木孝次郎, 1979, 「稻荷山古墳出土鐵劍銘の問題點」, 『古代研究』 16; 佐伯有清, 1988, 『雄略天皇とその時代』, 吉川弘文館.

13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 인용된 元興寺塔露盤銘에 보이는 ‘書人伯加博士, 陽古博士’의 書人과 博士가 후히토일 가능성이 있다. 書人伯加博士는 『日本書紀』崇峻紀 원년 시세조에 畫工百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동일인으로, 도래계 화공으로서 露盤의 명문 작성 등 문필, 기록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록 하라.”고 하였다. 여름 4월에 담진이 백저전부의 정(丁)의 수를 조사하여 조칙에 따라 호적을 작성하였다. 이리하여 전호(田戶)가 되었다. 천황은 담진이 적을 정한 공적을 기뻐하여 백저사(白猪史)의 성을 내렸다. 즉시 전령(田令)에 임명하고 서자(瑞子)의 부(副)로 삼았다[瑞子は 위에 보인다]¹⁴

② 민달 3년 겨울 10월 무자삭 병신(9일)에 소아마자대신(蘇我馬子大臣)을 길비국(吉備國)에 보내어 백저둔창(白猪屯倉)과 전부를 증액하게 하였다. 곧 전부의 명적(名籍)을 백저사담진(白猪史膽津)에게 주었다. 무술(11일)에 선사 왕진이의 동생 牛에게 진사의 성을 내렸다.¹⁵

위 기록에서 보듯이 왕진이의 조카인 담진에게 백저사의 성을 주고,¹⁶ 왕진이의 동생에게는 진사의 성을 내렸다고 한다. 왕진이가 선사의 성을 받은 이후 그의 일족이 사성 씨족으로서 자리 잡은 사실을 전하고 있다.¹⁷ 이 기록은 백저사의 성의 유래를 설명하고 이 성을 취한 최초의 인물인 담진의 공적을 현창하는 내용으로부터 백저사의 가기(家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¹⁸ 백저사 담

14 『日本書紀』欽明紀30年春正月條.

15 『日本書紀』敏達紀3年冬10月條.

16 膽津이 받았다는 白猪史의 白猪를 백제의 族稱으로 보는 설(山尾幸久, 1988, 『日本古代王權史論』, 岩波書店)이 있고, 이를 『新撰姓氏錄』, 『未定雜姓』 “河內國大友史條에 “百濟國人白猪奈世之後也”의 예를 들어 白猪를 백제의 2字姓일 가능성을 제기하여 白猪氏 家記의 윤색일 것으로 보는 설도 있다(加藤謙吉, 2002, 『大和政權とフミヒと制』, 吉川弘文館, 270쪽).

17 『續日本紀』延暦9年(790)秋7月에는 貴須王의 손자 辰孫王(智宗王)의 계보에 太阿郎王－玄陽君－牛定君으로 이어지고, 우정군의 아들 味沙, 辰爾, 麻呂 3인이 분가되어 葛井, 船, 津으로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본서기』에는 津史의 선조 牛가 왕진이의 弟, 白猪史의 선조인 胆津이 왕진이의 조카로 나오는데, 『속일본기』에는 津史 牛는 왕진이의 弟, 白猪史 胆津은 왕진이 형 味沙로 나온다. 『속일본기』의 계보는 津連眞道の 家傳에서 나온 것으로 이 씨족은 백제왕씨와도 동족임을 주장하며 근구수왕대로부터 선조의 계보를 조작하고 있다.

18 榮原永遠男, 1975, 「白猪・兒嶋屯倉に関する史料的研究」, 『日本史研究』 160,

진의 활동에 대해 사료①에 보이듯이 왕진이 조카인 담진은 흠명 30년(569)에 백저둔창 설치 후 10년이 경과한 뒤 현지 경작민인 전부의 호적을 재작성하고, 백저둔창의 전부의 성년남자인 정남(丁男)을 조사해서 호적을 만들어 전호로 편성했다고 한다. 동년 담진은 길비지역의 둔창의 장관이었던 갈성직서자(葛城直瑞子)의 부전령(副田令)으로 임명되었다.¹⁹ 흠명 17년 7월에 “소아대신도목숙네 등을 비전(備前)의 아도군(兒嶋郡)에 보내어 둔창을 두도록 하였다. 갈성산전직서자를 전령으로 삼았다”라고 하여 전령의 임명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만달기 3년(574)에는 백저둔창과 전부를 증액하고, 전부의 명적을 백저사 담진에게 주었다고 한다. 전부 명적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연령에 달한 성인남자를 가리킨다. 길비지방의 백저둔창의 설치와 관련하여 흠명기 16년조에는 길비5군에 백저둔창을 설치했다는 기사가 보인다.²⁰ ‘길비5군(吉備5郡)’은 길비지역의 5개 군으로 백저둔창은 길비의 복수 장소에 설치된 곳이고 전체적으로 백저사가 관리했기 때문에 씨족명을 관칭한 둔창의 명칭이 되었다.²¹ 이 시점에서 백저둔창에 대한 담진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여주고 있다. 길비지역에 백저부(白猪部) 성을 갖은 자의 분포와 전부의 호구 인적사항이 기록된 명적을 담진이 장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실질적인 둔창의 운영자였음을 말해준다. 이 길비지역에 백저사를 설치한 사실은 평성경(平城京) 출토 목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동보고서에는 길비의 행정구역을 구성하는 비전국(備前國), 비중국(備中國), 그하부 행정단위인 군향리(郡鄉里), 그리고 백저부라는 씨명을 관칭한 부명이 나

12쪽.

19 『日本書紀』欽明紀30年夏4月條.

20 『日本書紀』欽明紀16年秋7月條, “遣蘇我大臣稻目宿禰・穗積磐弓臣等, 使于吉備五郡, 置白猪屯倉”

21 狩野久, 2001, 「白猪屯倉の設置事情」, 『京都橘女子大學研究紀要』27, 森公章; 2010, 「吉備白猪・児島屯倉と屯倉制」, 武光誠編, 『古代国家と天皇』, 同成社, 32쪽.

온다.²² 평성경 목간의 백저부의 사례는 이 지역에서 왕진이계 씨족인 백저씨의 세습적 직무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도래인들의 이주가 활발해지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대에는 둔창 설치의 획기를 이루고 있다. 흙명기 17년조의 둔창 설치 사례를 보면, “왜국의 고시군(高市郡)에 한인 대신협둔창(大身狹屯倉), 고려인 소신협둔창(小身狹屯倉), 기국(紀國)에 해부둔창(海部屯倉)을 두었다”고 한다.²³ 고시군은 금래군(今來郡)이라고도 하며, 일찍부터 대화지방의 도래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지역이다. 대신협둔창 설치기사의 분주에 “한인자백제야(韓人者百濟也)”라 하여 대신협둔창의 관리자가 백제인이었고, 기국의 해부둔창 설치기사의 분주에 도처의 한인을 대신협둔창의 전부로 삼았다는 한인도 백제인이라고 생각된다. 동 분주에는 고구려인을 전부로 삼았다는 기록도 나오지만, 당시 고구려인의 집단이주는 생각하기 어렵고 백제인 혹은 가야인으로 생각된다. 이들 기사는 왕진이 일족보다 이른 시기에 이주한 백제계 도래집단을 대상으로 설치한 둔창으로 왕진이의 도래를 계기로 새롭게 편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상기 둔창 설치 기사는 율령제 지방지배 성립의 연원으로서 계보적으로 연결시키는 사료로서 중시되어 왔다. 둔창의 전령(田令)의 직무는 후에 대보 율령에 의한 국사제(國司制) 시행으로 폐지된 전령(田領, 『속일본기』 대보 원년 4월 무오조)과 유사하고, 담진이 백저둔창의 전부의 정적(丁籍)을 관리한 것은 율령국가가 전 주민을 상대로 호적을 만든 역사적 단서가 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왕권의 직할령인 둔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담진이 만든 것은 성년남자를 중심으로 한 정적이고, 그들을 전호로 편성했기 때문에 후에

22 奈良文化財研究所編, 1975, 『平城京發掘調査出土木簡概報』 16, “三宅郷白猪部少國” “備前國邑久郡方上郷寒川里, 白猪□色不知□二尻” “備前國子嶋郡小豆郷志磨, 里白猪部乙嶋調三斗” “備中國哲多郡□□郷白米五豆, □人白猪部身万呂”.

23 『日本書紀』欽明紀17年冬10月條, “遣蘇我大臣稻目宿禰等於倭國高市郡, 置韓人大身狹屯倉[言韓人者百濟也] 高麗人小身狹屯倉, 紀國置海部屯倉”.

율령제의 호적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양자의 차이는 분명하고 담진의 업적은 율령국가의 호적제도의 역사적 전제로서 위치시킬 수 있다.²⁴

이러한 호를 단위로 한 고대일본의 지배의 원류는 도래인의 파악방식에 유래되었고 최초의 편호제는 한반도계 도래인들을 일정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시켜 ‘호(戶)’의 호칭을 사용했다.²⁵ 실제로 둔창을 장악한 형태는 호를 단위로 하는 지방방식은 대부분 도래인 씨족 중에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웅락기 9년 7월조에 ‘하내국비조호군인(河內國飛鳥戶郡人)’의 사례, 웅락기 2년 10월조에, “사호와 하상사인부(河上舍人部)를 두었다”는 ‘사호’가 나온다. 하내국(河內國)의 비조호군(飛鳥戶郡)은 비조호의 본관지로서 5세기 후반 백제 개로왕 때 외국에 보낸 곤지(昆支)를 제신으로 모시는 후에씨족들의 집단거주지이다. 『정창원문서』에도 ‘백제비조호기미광성(百濟飛鳥戶伎彌廣成)’이라고 하여 백제를 관칭한 도래계 비조호(飛鳥戶)씨의 인명이 보인다.²⁶ 흠명기 원년 8월조에 “진인(秦人), 한인(漢人) 등 제번(諸蕃) 투화자를 불러모아 국군(國郡)에 안치하고 호적을 작성했다. 진인의 호수는 총 7,053호였다. 대장연(大藏掾)를 진반조(秦伴造)로 임명했다”고 하는 도래인의 집단적 이주전승에서 보이듯이 호 단위의 주민편성은 한반도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한다. 『주서』 백제전에는 호구의 작성, 징발 등 호적의 관리를 담당했던 점구부(點口部)라는 관부가 존재하고 있었다. 백제에서 호구와 관련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따르면 구수왕 9년(222)조에 “군사를 보내 신라의 우두진에 들어가 민호를 약탈하였다”, 아신왕 8년(399)조에 “백성들은 전역에 시달려 신라로 많이 도망하니 호구가 줄었다”, 문주왕 2년(476)조에 “대두산성을 수리하고 漢北의 민호들을 이주시켰다”는 ‘민호(民

24 吉田晶, 1997, 「渡來人氏族の定着とその役割」, 『羽曳野市史』第1巻, 390~391쪽.

25 岸俊男, 1973, 「日本における戸の源流」, 『日本古代帳籍の研究』, 塙書房, 37쪽, 43~44쪽.

26 『正倉院文書』17-5, “位子无位百濟飛鳥戶伎彌廣成[年三十二河內國安宿國人]”.

戶) ‘호구(戶口)’의 사례가 보인다. 『일본서기』 흠명기 4년 11월조에도 “재임내 지하(在任那之下韓), 백제군령성주(百濟郡令城主)”라 하여 6세기대 백제의 지방관으로서 군령(郡令), 성주의 관직이 확인되고 있어 주민지배의 말단조직인 호도 편제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여능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상하 4단으로 횡선으로 구분하여 인명을 묵서한 목간은 인력을 파악, 관리한 형태이고, 부여 궁남지에서 출토된 목간에도 ‘정(丁)’ ‘중구(中口)’ ‘소구(小口)’ 등의 문자가 확인되고 있어 연령구분에 의한 호구를 파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⁷

이와 같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왜왕권의 전호(田戶)의 호적은 새로운 도래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이고, 호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주민지배였다. 즉 전통적으로 주민지배는 재지호족을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왕권에 의한 주민의 직접적 지배로 전환하여 주민 자신의 가족적 결합체를 단위로 왕권이 그들을 공적 단위인 호로 편성하고 이를 문서상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과세를 부과하게 된다.²⁸ 즉 국가가 모든 민중을 파악하여 지배질서 안에 두고 조세원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호구조사의 제도적 정비가 도래인에 의해 시작되었고, 담진(膽津)이 백저둔창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본국 백제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백저둔창이 설치된 길비지방은 왜왕권 측에서 보면 풍부한 철, 소금 등의 생산지로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대상 지역이다.²⁹ 특히 대화(大和)의 해

27 윤선태, 2004, 「한국고대목간의 출토현황과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田中史生, 2012, 「倭國史と韓國木簡」, 『日本古代の王權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참조.

28 吉田晶, 1997, 「渡來人氏族の定着とその役割」, 『羽曳野市史』第1卷, 391쪽.

29 백저둔창의 설치목적은 철생산, 염생산과 관련하여 고고학적으로 검토한 연구로는, 龜田修一, 2006, 「久世に白猪屯倉はあったか」, 『旭川を科學する』(シリーズ, 『岡山学』4), 岡山理科大学岡山學研究會; 2008, 「吉備と大和」, 『古墳時代の實像』, 吉川弘文館, 이에 따르면 백저둔창 관련유적으로 생각되는 五反廢寺의 특이한 기와가 한반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岡山縣 남부지역의 철, 철기생산과 한반도와의 관련성을 표시하는 주변의 유적군과 문자자료 등을 거론하고 있다.

상출구인 난파(難波)로부터 세토내해를 거쳐 한반도로 이어지는 해외관문인 축자(筑紫)로 통하는 중간기착지에 있는 길비(吉備)에 대한 직접지배는 왕권의 주요 과제였다. 게다가 길비씨의 반란사건도 발생하였다. 웅략 23년(479)에는 왕의 사망 직후 왕비 길비치원(吉備稚媛)이 성천황자(星川皇子)에게 왕위계승을 위해 “천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거든 먼저 대장(大藏)의 관(官)을 장악해야 한다”고 사주하자 반대세력 간에 내란으로 번졌다. 이에 길비상도신(吉備上道臣)은 길비치원이 낳은 성천황자를 구하기 위해 병선 40척을 이끌어 출병했으나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으로 듣고 길비로 철수했고, 이 사건 후 조정은 길비상도신의 지배하에 있던 산부(山部)를 빼앗기고 말았다.³⁰ 이 난의 발단이 된 왕비 길비치원은 원래 길비상도신의 부인이었지만, 그녀의 미모에 빠진 웅략에게 빼앗긴 비극의 가족사가 있었다. 길비치원은 웅략의 사후 자신이 낳은 왕자를 왕위에 세울 목적으로 전 남편 길비상도신의 지원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 상대적으로 왜왕권에 대해 독립성이 강했던 길비에 중앙의 관리가 파견되어 직접 지배의 형식을 취한 것은 당연한 조치였다. 이 반란의 제압에는 왜왕권의 충신 대반실옥대련(大伴室屋大連)이 동한국직(東漢掬直)을 투입하여 성공시켰다. 동한씨(東漢氏)는 백제계 도래인으로 흙명조에 들어오면 소아씨 휘하에서 활동하게 되며 선주한 도래인으로서 그의 씨족은 왕진이 일족과도 교류하고 있었음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왕진이의 일족인 담진이 백제둔창의 관리자로 파견된 것도 동한씨와의 백제계라는 지연적 동류의식, 교류의 인연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백제둔창의 설치를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길비씨가 백제, 가야 등 한반도 제국과의 오랜 교류로 그 교역의 이권을 계승한다는 경제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웅략기 7년조를 보면 길비상도신전협(吉備上道臣田狹)을 임나국사(任那國司)에 파견했다는 전승이 있다. 국사제는 제도상으로 7세기 후반의 용어의 투영이지만, 그가 가야제국과의 교류의 일단을 설명해주고 있다. 또 그의 아들인 길비신제군(吉備臣弟君)은 웅략기 7년 시세조의 분주에 백제에서 돌아

30 『日本書紀』清寧天皇 即位前期.

와 한수인부(漢手人部), 의봉부(衣縫部), 육인부(宥人部)를 바쳤다고 한다.³¹ 동사료의 본문에도 백제로부터 각종 수공업, 기술자 집단의 도래전송이 보이듯이 길비씨의 백제와의 교류를 통해 선진문물의 수입을 보여주고 있다.³² 540년대 흠명조에 들어가면 가야제국이 신라, 백제에 의해 침탈당할 당시, 안라국이 중심이 되어 전개한 이른바 가야독립운동인 임나부흥회의에 길비씨를 참석시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가야와 길비지역의 호족 간의 오랜 우호적 교류의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왜왕권의 재지세력의 뿌리가 강한 길비지방에 백제둔창을 설치한 것도 크게 보면 한반도제국과의 교류를 통해 얻어지는 선진문물의 혜택을 왜왕권이 흡수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선사 왕진이의 동생 우(牛)에게 진사의 성을 내렸다는 ‘진(津)’도 선박이 정박하는 항구를 의미하고 선씨의 분가(分家)에 어울리는 직명이다.³³ 선사씨(船史氏)가 ‘數錄船賦’에 종사했듯이 사성을 받은 진씨(津氏) 역시 문필을 기반으로 한반도제국과의 무역활동을 통해 왜왕권의 재정을 확충하고 씨족의 번영을 추구해 나갔을 것이다. 『속일본기』 양노 6년(722) 5월조에 보이는 진사주치마려(津史主治麻呂)는 식부성(式部省) 대록(大錄)으로서 문안(文案)과 공문(公文)관계의 사무를 담당한 관인으로 견신라대사(遣新羅大使)가 되어 신라에 파견되었다. 동 연력 9년의 진련진도(津連眞道)의 상표문에서도 “자신의 선조들은 가문 대대로 문업(文業)에 종사하며 일족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직에 종사했다³⁴”라고 주장하였다. 문필씨족으로서 진씨의 직무의 전통이 나라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31 『日本書紀』雄略紀7年 是歲條, “或本云, 吉備臣弟君, 還自百濟, 獻漢手人部・衣縫部・宥人部”.

32 吉備지역의 渡來人과 한반도계 유물의 실태에 대해서는 龜田修一, 1997, 「考古學からみた吉備の渡來人」, 武田幸男編,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참조.

33 井上光貞, 1943, 「王仁の其の後裔氏と佛教」, 『史學雜誌』54-9; 1986, 『井上光貞著作集』第2卷, 岩波書店, 450쪽.

34 『續日本紀』延歷9年7月條, “眞道等先祖, 委質聖朝, 年代深遠, 家傳文雅之業, 族掌西庠之職”.

IV. 선수왕후(船首王後)의 묘지명과 선사(船史)

다음은 왕진이의 후손인 선수왕후(船首王後)에 대해 그의 묘지명을 통해 살펴보자.

故 선씨왕후수(船氏王後首)는 선씨의 중조인 왕지인수(王智仁首)의 아들인 나패고수(那沛故首)의 아들이다. 민달천황의 세에 태어나 추고천황 조정에서 봉사하고, 서명천황의 대에 이르렀다. 천황이 그 재능의 탁월함과 높은 공적을 알고 제 3위 대인(大仁)의 관위를 받았다. 서명천황의 말년, 신축(641) 12월 3일에 사망하였다. 무진년(668) 12월에 송악산(松岳山) 위에 묻었다. 부인 안리고능도자(安理故能刀自)의 묘와 합장하고, 그의 장형 도나고수(刀羅古首)의 묘 옆에 만들었다. 즉 만대의 영역(靈域)으로 이 땅을 영원히 굳건하게 지키려 한다.³⁵

묘지명의 주인공인 선씨 왕후수(王後首)는 민달(敏達)조에 출생하여 추고(推古)조에 봉사하고 서명(舒明)조에 그 재능을 인정받아 관위12계의 3위에 해당하는 대인을 받는다. 당시 기내(畿內) 지역의 수장층에게만 주는 대인은 중앙관인으로서 지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가 조정에 출사한 기간은 추고조 때 시작하여 641년 사망 시점까지 40여 년에 달한다. 이 묘지명에 따르면, 왕후수는 왕진이의 아들인 나패고수의 아들이다. 『일본서기』에는 조부에 해당하는 왕진이가 사성을 받았는데 묘지명에서는 왕지인(王智仁, 王辰爾) 이하 3대가 모두 수(首)의 성이다. 일반적으로 가네바는 세습된다는 점에서 의문이다.

35 船氏王後墓誌, “惟船氏故王後首者, 是船氏中祖王智仁首兒那沛故首之子也, 生於乎娑陀宮治天下天皇之世奉仕, 於等由羅宮治天下天皇之朝至於阿須迦宮治天下天皇之朝, 天皇照見知其才異仕有功勳勅賜官位大仁品為第三, 殞亡於阿須迦天皇之歲次辛丑十二月三日庚寅, 故戊辰年十二月殯葬於松岳山上, 共婦安理故能刀自同墓 其大兄刀羅古首之墓並作墓也 即為安保萬代之靈墓牢固永劫之寶地也”.

그럼 『일본서기』와 묘지명의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 기왕의 학설은 왕진이가 받은 史를 성으로 보는 통설³⁶과 왕진이가 받은 최초의 성은 수였으나 『일본서기』 편찬과정에서 왕진이계 씨족들이 관여한 결과 사성으로 바뀌었다는 신설이다.³⁷ 특히 후자의 입장은 『일본서기』의 7세기중엽까지 나오는 사성 기록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³⁸ 묘지명에 따르면 왕후수(王後首)는 신축년(641)에 사망한다. 이 묘지명의 제작연대는 무진년(668)에 부인 안리고능도자(安理故能刀自)의 사망과 더불어 개장한 시점이 아니라 ‘천황(天皇)’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천황호가 시작되는 천무조(672~686)라고 생각된다.³⁹ 즉 이 묘지명은 왕후(王後) 부부의 합장 이후 무언가의 사정에 의해 십수년이 지난 천무조 때 그의 후손에 의해 새로 만들어져 부장된 것이다.⁴⁰ 그런데 왕후의 사망에서 묘지명이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개성이 있었다면 묘지명에 반영되어야 한다. 천무조 때 이미 선씨는 사성 신분이었다. 성은 정치적 신분이자 가문의 상징이기 때문에 묘지명을 만들 당시의 가문의 성을 명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서기』에는 천무 13년(684)에 ‘8색(色)의 성(姓)’이 제정되기까지 개성

- 36 關晃, 1966, 『歸化人』, 至文堂, 115쪽; 東野治之, 1979, 『日本古代の墓誌』, 同朋社, 168쪽.
- 37 請田正幸, 1989, 「渡來人論・序章」, 『歴史學研究』 582, 19~20쪽; 加藤謙吉, 2002, 『大和政權とフミヒ制』, 吉川弘文館, 22~34쪽; 서보경, 2017, 「고대일본의 文筆實務職과 한국계 渡來씨족」, 『사림』 59, 307쪽.
- 38 다만 請田正幸의 경우는 史姓의 성립을 6세기 말까지 소급될 수 있다고 한다. 앞의 논문 20쪽.
- 39 일본에서의 군주호로서의 천황호의 사용시기는 唐 高宗 上元원년(674)에 皇帝에서 天皇으로 개칭한 정보가 일본에 전해진 이후이고, 飛鳥寺 근처의 飛鳥池 유적에서 天武・持統朝에 해당되는 ‘天皇’이 새겨진 목간이 발견으로 680년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 40 東野治之는 묘지명에 ‘官位’라는 용어는 관직과 위계에 대응하는 반영하는 용어이고, 관위상당제가 제도로써 확립되는 8세기 이후에 용례가 많이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이 묘지는 적어도 천무조 말년 이후에 船氏의 묘역을 명시할 의도로 追葬되었을 것으로 본다.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된다(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飛鳥資料館編, 1979, 『日本古代の墓誌』, 同朋社, 「船王後墓誌」해설, 169쪽).

한 사례는 천무 9년에서 동 12년까지 3년간 총 78씨이고 모두 연(連) 성을 받는다. 이때 왕진에게 선사씨도 선련(船連)으로 개성된다. 그러나 『일본서기』를 보는 한 최초의 성을 취한 씨족이 천무 9년에 이르기까지 개성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⁴¹ 왕진이보다 먼저 도래한 문수(文首)씨도 천무 12년 9월에 연으로 개성될 때까지 수의 성을 유지하였다. 대화전대(大化前代)의 각 씨족의 성은 고착화, 세습화되었으며 임신의 난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천무조에 이르러 호족에 대한 융합책, 논공행상으로 대규모의 개사성(改賜姓)을 추진했고, 곧이어 ‘8색의 성’ 제정으로 새로운 신분질서를 만들었다. 한편 『일본서기』 지통기 5년(691) 8월조에 조정에서 18씨에 대해 조상의 묘기(墓記)를 바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⁴² 이때의 묘기는 묘지명으로 그 내용은 부장하기 전에 기록하여 조상을 현창하는 가기(家記)의 일부로서 활용되고 있었다. 상기 18씨 중에 왕진에게 선씨는 보이지 않지만 『일본서기』 편찬의 재료로서 관련자료가 수사국(修史局)에 제출되었음은 그 활동 내용으로부터 확인된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일본서기』 편찬시에 시조전승의 가상, 부회, 개찬을 할 수 있는 것은 왕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수의 특권씨족에 한정된다는 사실이다. 성을 조작하는 행위는 경쟁 관계에 있는 타 씨족에게 발각될 수 있고 편찬과정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상의 검토에서 선사씨는 개성된 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묘지명의 ‘수’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원래 수는 ‘대인’의 의미가 있듯이 유력자에 대한 존칭에서 유래하여 성으로 성립했다. 묘지명의 수는 성이 아니라 가문의 직통을 나타내는 우두머리로 사용되었다고 본다. 『원흥사가람연기병유기자재장(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에 인용된 탑노반명(塔露盤銘)에 무신년(588)에 백제

41 推古朝, 舒明朝의 高向漢人玄理가 大化新政府에서 國博士로 임명된 高向史玄理로 나타나는 것은 漢人에서 史로 개성된 사례라는 주장도 있으나(加藤謙吉, 2017, 『渡來系氏族の謎』, 祥傳社新書, 178쪽), 漢人은 백제 혹은 가야계 도래인에게 붙인 칭호이고 정식 가바네로 성립한 명칭은 아니다.

42 『日本書紀』持統紀5年8月條, “詔十八氏, 大三輪·雀部·石上·藤原·石川·巨勢·膳部·春日·上毛野·大伴·紀伊·平群·羽田·阿倍·佐伯·采女·穗積·阿曇, 上進其祖等墓記”.

에서 파견한 공인들이 불탑을 만들 때 탑의 노반에 금을 입히는 금작인(金作人)으로 의노미수(意奴彌首), 아사도마수(阿沙都麻首), 안부수(鞍部首), 산서수(山西首) 등 4인을 사부수(四部首)의 장으로 삼았다고 한다.⁴³ 이들 인명 말미의 수에 대해 중앙의 생산분담조직의 오호히토[首長]의 지위를 표시하는 칭호라는 견해⁴⁴에 따르면 수의 용례는 성뿐 아니라 집단의 장, 우두머리로서도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묘지명의 수는 가바네[姓]가 아니라 존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왕진이는 처음부터 사성을 받았다. 그의 일족으로 추고조의 선사왕평(船史王平), 선사룡(船史龍), 황극기의 선사혜척(船史惠尺) 등의 인물이 나온다. 특히 선사혜척의 경우는 사서 편찬과 관련있는 인물로서 그의 사성은 부정하기 어렵다. 왕후는 묘지명에 ‘천황조견지기재이(天皇照見知其才異)’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천황으로부터 재능을 인정받아 수십 년간 중앙의 고위관리로 복무할 수 있었다.

V. 선사씨(船史氏)와 외교·수사·불교

선사씨 중에는 외교업무에 종사한 인물이 있다. 왜왕권이 견수사로 파견한 소야 신매자(小野臣妹子)가 추고 16년(608)에 수사(隋使) 배세청을 동반하고 귀국했다. 이때 수의 사절에 대한 접대역인 장객사(掌客使)로서 중신궁처련조마려(中臣宮處連鳥麻呂), 대하내직당수(大河內直糖手)와 함께 선씨의 일족인 선사왕평

43 竹內理三編, 『寧樂遺文』 中卷(東京堂出版, 1962), “始請百濟王名昌王法師及諸佛等, 改遣上釋令照律師, 惠聰法, 鏤盤師將德自昧淳, 寺師丈羅未大·文賈古子, 瓦師麻那文奴·陽貴文·布陵貴·昔麻帝彌, 令作奉者, 山東漢大費直名麻高垢鬼·名意等加斯費直也, 書人百加博士·場古博士, 丙辰年十一月既爾時使作金人等意奴彌首名辰星也, 阿沙都麻首名未沙乃也, 鞍部首名加羅爾也, 山西首名都鬼也, 以四部首爲將, 諸手使作奉也”.

44 山尾幸久, 1993, 『大化年間の國司·郡司』, 『立命館文學』 530.

(船史王平)이 담당하였다.⁴⁵ 왜왕권으로서는 5세기대에 남조와의 교류 이후 120여 년만에 중국왕조와의 통교를 재개하였고 게다가 중국왕조의 사신이 왜국에 온 것은 최초의 일이었다. 이 중요한 외교업무에 선사왕평이 발탁된 것은 사성 씨족으로서 높은 학식과 도래계라는 국제적 식견이 작용했다고 보인다.

추고 17년 4월에 백제승 도흔, 헤미 등 85인이 비후국(肥後國) 위북진(葦北津)에 표착했을 때 난파길사덕마려(難波吉士德摩呂)와 함께 그 표착의 사정을 묻는 관인으로 중앙에서 선사룡(船史龍)이 파견되었다. 비후국 위북진은 구주(九州) 중서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이른 시기부터 백제와의 교류가 있었다. 해외의 관문에서 대외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축자대재(筑紫大宰)의 보고에 따라 중앙에서 긴급히 파견한 것이다. 선사룡과 함께 온 난파길사덕마려도 도래인 출신으로 2인 모두 백제어에 능통하고 해외사정에 비교적 밝은 인물이었다고 보인다. 선사룡은 백제인들의 표착사정을 듣고 귀국시키는 한편, 11인은 왜국 체재를 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정에 보고하여 백제의 지원으로 설립된 비조(飛鳥)의 원흥사에 거주하게 하였다.⁴⁶ 여기에 거주한 인물은 아마도 승려인 도흔, 헤미 등이었다고 보이고 당시 집권자인 대신 소아마자의 불교진흥책, 백제불교수용에 대한 열망이 이들의 영주를 권유했을 것임을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소아씨의 신사(氏寺)였던 비조사에 찰주를 세워 불사리를 봉안하던 날, 소아마자를 비롯한 왜왕권의 중신 100여 명이 백제옷을 입고 참석했다⁴⁷고 전할 만큼 이 사찰의 건립은 왜왕권의 선진화, 국제화의 상징물이었다. 게다가 비조사에는 고구려승 혜자와 함께 백제승 혜충이 주지로서 설법하고 있었다.

역사편찬과 관련있는 선사혜척(船史惠尺)에 대해 살펴보자. 황극기(皇極紀) 4년 6월조에는 소아본종가 멸망시에 소아하이(蘇我蝦夷)는 자신의 집에 불을

45 『日本書紀』推古紀16年夏4月條.

46 『日本書紀』推古紀17年 夏4月條

47 『扶桑略記』推古天皇元年 正月條, “蘇我大臣馬子宿禰依合戰願, 於飛鳥地建法興寺, 立刹柱日, 嶋大臣并百餘人皆着百濟服, 觀子悉悅, 以佛舍利籠刹柱礎中”.

질렀는데, 이때 『천황기(天皇記)』, 『국기(國記)』 등 역사서가 불타는 상황에서 선사해척이 『국기』를 빼돌려 중대형황자(中大兄皇子)에게 바쳤다고 한다. 이보다 앞서 추고기 28년조에 “이해 천황기와 국기, 臣·連·伴造·國造·百八十部, 아울러 公民 등의 本記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기서 「천황기」란 천황의 계보와 치적 등을 기록한 사서이고, 『고사기』 서문에 보이는 ‘帝紀·帝王本紀·帝皇日繼’와 같은 종류의 역대왕의 기록이다. 『국기』는 문자 그대로 국가의 기록이고 나머지는 왜왕관내에서 봉사하는 씨족, 호족들의 기록으로 보인다. 사서는 원래 기록, 문서담당 씨족이고 도래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645년 소아씨 본종가가 멸망당할 당시 이 저택에 보관되어 있던 일련의 국가 문서류 중에서 제1급 기록인 역사서를 선사해척이 건져냈다는 사실은 해당 사서에 대한 기록, 보관, 유포 등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사관으로서 이 사서의 편찬에 관여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마도 이때 불길에서 살아남은 사서들은 『일본서기』 편찬시의 역대왕들의 계보, 활동에 대해 기초적인 정보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활동시기로 보아 왕진이의 3세손으로 보이고 앞의 선사룡의 아들이거나 조카로 추정된다.

다음은 선사해척의 아들이자 고승으로 알려져 있는 도소(道昭)에 대해 살펴보자. 『속일본기』 문무 4년(700) 3월조에는 도소(道照, 道昭)의 졸년(卒年)과 생애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의 사망소식을 접한 문무천황은 사자를 보내 조문과 포상을 내려 국가의 고승에 대한 예의를 표하고 있다. 도소화상의 본거지는 하내국인(河內國人)이고, 속성(俗姓)은 선련(船連), 부는 소금하(少錦下) 혜석(惠釋)이라고 한다. 「졸전(卒傳)」에는 혜척(惠尺)을 혜석(惠釋)으로 기록했는데 아마도 고승의 주(父)에 대한 존숭의 의미에서 석가(釋迦)의 석(釋)을 취했다고 보인다. 척과 석은 ‘사카’라는 동음이기도 하다. 선사씨는 천무 12년 10월에 선련(船連)으로 사성되었다. 도소는 효덕 백치 4년(653)에 견당사와 함께 내대신(內大臣)의 중신겸족(中臣兼足)의 장자인 정혜(定惠)를 비롯하여 도엄(道嚴), 도통(道通), 도광(道光), 혜시(惠施), 각승(覺勝), 변정(辨正), 혜조(惠照), 승인(僧

忍), 지충(知聰), 안달(安達), 도관(道觀) 등 많은 학문승과 당 유학을 떠난다.⁴⁸ 왜왕권의 대당 통교 이후 최대 규모의 견당사절이다. 특히 학문승이 유학의 길을 떠난 것은 새로운 불교사상에 대한 왜왕권의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졸전』에 따르면 도소는 당에 들어가 현장삼장(玄奘三藏)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학했고, 삼장은 도소를 총애해서 구법시 고행담을 들려주며 불법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도소는 삼장이 소지하고 있던 불사리와 경론을 받아 660년에 일본으로 귀국하여 원흥사 동남편에 선원을 만들고 불법을 전파하였다. 뿐만 아니라 10여 년간 전국을 돌며 교량, 항만, 선박, 도로 등 많은 토목공사를 추진해 나갔다. 국제도시 당의 장안(長安)의 잘 정비된 웅장한 경관, 견당사의 교통로인 대운하를 따라 목격한 항만시설, 물류의 운반 등은 목격한 도소에게는 충격적이고 경이로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그가 선방을 나와 기간시설을 정비한 것은 민중의 삶을 개선하려는 사회구제사업이었다. 다시 선원으로 돌아온 도소는 3일, 7일간의 반복적인 좌선을 수행하였다. 도소화상의 나이 72세로 생을 마감하자 그의 제자들이 유언에 따라 화장했는데, “천하화장종 차이시아(天下火葬從此而始也)”라고 하여 천하의 화장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⁴⁹ 왕진이의 4세대 후손인 도소화상은 견당 학문승으로서 일본에 중국의 법상종, 섭론종 등 새로운 불법을 알린 교단의 스승이자 사회구제사업에 온몸을 바친 지도자였다. 도소의 유업은 그의 제자인 백제계 승려 행기(行基)에 의해 계승되어 갔다. 나라시대에도 왕진이계 씨족의 활약은 계속된다. 승강(僧綱)의 직에 오른 경준(慶俊)과 자훈(慈訓), 양노 3년(719)과 양노 6년(722)에 각각 견신라대사로 파견된 백저사광성(白猪史廣成)과 진사주치마려(津史主治麻呂), 한문학의 대가 갈정련광성(葛井連廣成), 대보율령의 제정에 참여한 백저사골(白猪史骨), 『속일본기』 편찬자 관야조신진도(菅野朝臣眞道) 등 불교와 외교, 학문의 세계에서 두각

48 이때의 견당사의 기록은 『日本書紀』 孝德紀 白雉4年條에 상세하다.

49 일본에서 火葬의 기원은 논란이 있지만, 도소화상의 화장 이후 持統, 文武, 元明, 元正 등 천황들의 화장이 이어지고 있어 이 시기에 葬法의 변화를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을 나타내고 있다.

VI. 왕진이계(王辰爾系) 씨족의 시조전승의 성립과 배경

선씨왕후(船首王後)의 묘지명에 왕진이를 ‘중조’로만 표현하고 있고 그 선대 시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일본서기』에도 왕진이를 필두로 하는 선사씨 등 후예씨족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씨족의 유래와 시조의 출자를 밝힌 것은 8세기 말 『속일본기』 연력 9년(790) 추7월 신사조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중5위상 진련진도(津連眞道)는 백제왕인정(百濟王仁貞), 백제왕원신(百濟王元信), 백제왕충신(百濟王忠信) 등과 함께 자신들의 출자에 대해 상표문을 올린다. 자신들의 본계(本系)는 백제국 귀수왕으로부터 나왔고, 근초고왕 때에 귀국에 조빙을 시작하였는데, 신공황후가 섭정하던 해의 일이라고 한다. 응신이 황전별을 백제에 파견해서 유식자를 구하자 귀수왕은 손자인 진손왕(辰孫王)[일명 지종왕(智宗王)]을 보내어 황태자의 스승이 되어 비로소 서적이 전해지고 유풍(儒風)이 크게 열려 문교가 발흥되었음을 고한다. 인덕천황은 진손왕의 장자인 태아랑왕을 근시로 삼았는데, 태아랑왕의 아들은 해양군이며, 그 아들은 오정군인데 여기서 세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은 미사(味沙), 차남은 진이(辰爾), 막내는 마려(麻呂)이고, 이들로부터 갈정(葛井), 선(船), 진련(津連) 등 3성으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이어 왕진이의 고구려 국서해독사건을 기록하고 이는 모두 국사와 가첩에 그 일이 자세히 실려 있다고 한다. 자신들의 가문은 문필의 업을 계승하고 교학의 직을 맡고 있어 천자의 은혜에 감사의 정을 술하고, 이어 연(連) 성을 조신(朝臣)으로 올려 줄 것을 상주하자, 칙을 내려 관야조신(菅野朝臣)의 성을 하사했다고 한다.

이 전승은 이미 지적되고 있듯이 문씨(文氏, 書氏)의 시조인 왕인의 사적과 동일하다. 『일본서기』 응신 16년조에 “소위 왕인은 서수(書首) 등의 시조이다”, 『고사기』 응신천황단에는 “화이길사(和邇吉師)는 문수 등의 조(祖)이다”라고 하

여 왕인을 문씨(文氏)의 조상임을 기록하고 있다. 앞의 왕진이계인 진련씨의 계보는 귀수왕－○－진손왕(지종왕)－태아랑왕－해양군－오정군으로 이어지고 장남 미사으로부터 갈정씨(葛井氏), 차남 진이로부터 선씨, 막내 마려로부터 진련씨(津連氏)로 분씨(分氏)되어 있다. 즉 왕진이계 선씨는 일본 도래의 시조를 진손왕으로 주장하고, 왕진이는 진손왕의 5대손에 해당한다. 『고사기』와 『일본서기』(이하 『기기(記紀)』) 응신조에 왕인이 귀수왕 때 도래했다는 점, 황태자의 스승이 되었다는 점, 유학과 서적의 전래 등 등 사건의 전개, 모티브가 모두 일치한다.⁵⁰ 진손왕을 왕인으로 대체하면 양 전승은 동일한 시조전승이다. 이 전승에서 왕진이계는 왕인에 해당하는 진손왕을 귀수왕의 손자라는 백제왕족으로 변형시켰다. 즉 일반 백제인 왕인에 대해서 왕족 진손왕으로 신분을 승격시킨 것이다. 이것은 왕진이계가 왕인계의 시조전승을 도용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한 신분조작일 뿐이지 실상은 왕인전승의 각색에 불과하다. 양 전승의 선후관계를 밝히자면 『기기』에 왕인전승을 갖는 문씨계(文氏系) 씨족전승이 먼저 생겼고 이를 모방하여 선사씨 왕진이계가 8세기말에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명백하다.

이에 대해 선씨계(船氏系)가 7세기전반에 왕진이를 과거에 투영시켜 왕인전승을 만들어냈다는 견해가 있다.⁵¹ 그러나 자신의 시조전승에 앞서 타씨족의 시조전승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일본서기』의 왕인전승은 문씨계의 독자전승이고, 8세기 말 『속일본기』 편찬 단계에서 왕진이계가 왕진이를 모델로 내세워 왕인전승을 차용한 것이다. 『속일본기』의 왕진이계 시조로 나오는 진손왕(辰孫王)의 ‘진(辰)’은 왕진이의 가운데 글자를 차용했고,⁵² ‘손(孫)’

50 請田正幸은 왕인, 아직기 전승 중에서 황태자의 스승, 유학과 서적을 전한 유식자의 도래담 역시 7세기에서 8세기 초에 많은 학자, 문인이 황태자 등 유력 황자들에게 近侍한 사례를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請田正幸, 1988, 「渡來人論・序章」, 『歴史學研究』 582, 197~198쪽). 사료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타당한 지적이다.

51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331~332쪽.

52 山尾幸久, 1983, 위의 책.

은 귀수왕의 손이라는 의미에서 진손왕이 만들어졌다.⁵³ 진손왕의 다른 이름인 지종왕(智宗王)이라는 명칭도 ‘종왕(宗王)’이 선조왕을 의미하고 ‘지(智)’는 고대 한국어의 인명어미에 보이는 미칭이지만 이를 관칭하면 선조에 대한 존칭이 된다. 또 왕인의 별칭인 왕지인의 ‘지’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진손왕은 왕진이가 모델이 되어 왕인의 사적 속에 투영된 것이다. 당시 귀족사회에서 교양인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던 왕인의 현인관은 타씨족의 시조전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기기』의 응신조에 왕인이라는 조상전승을 갖고 있던 문씨계와는 달리 왕진이 이후 조정의 사성 씨족으로서 문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선사씨의 시조전승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현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조상의 유래를 더 멀리, 보다 존귀한 가문으로부터 출처를 주장하는 등의 조상계보의 가상, 부회 등이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기기』에 도래전승의 형식을 갖춘 것은 왕인과 아직기, 궁월군 정도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서기』 편찬시에 각 씨의 세력관계에 기반하여 소수 씨족의 시조전승만이 선정된 결과로 보인다. 『기기』 편찬사업이 개시된 천무조 때에 문씨계의 지덕(智德), 근마려(根麻呂), 성각(成覺) 등은 임신의 난 때 천무의 장수로 활약한 덕분에 천무 12년에 서직(書直)에서 서련(書連), 동 14년에 문기촌(文忌寸)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사된 공봉(功封), 공전(功田)은 나라시대에도 자손에

53 『新撰姓氏錄』河內國諸蕃 百濟條에, 「岡原連, 出自百濟國辰斯王子知宗」이라 하여 辰斯王의 子 知宗의 이름이 나온다. 이에 근거해서 진손왕의 다른 이름인 智宗王을 가리킴으로 진손왕은 진사왕의 아들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金恩淑, 「西文氏の歸化傳承」, 『歷史學報』 118, 1988, 77쪽). 그렇다면 진손왕은 『속일본기』의 계보대로 귀수왕의 손자이다. 이를 복원하면 구수왕(근구수왕)－진사왕－진손왕으로 『삼국사기』 백제왕력의 근구수왕－진사왕과도 일치한다. 다만 『삼국사기』에는 진사왕의 아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진사왕은 재위 8년만에 정치적인 음모라고 생각되는 죽음을 당하는데, 만약 이때 그의 아들 일족이 왜국으로 탈출해서 생존했다면 『속일본기』에 진손왕의 一名을 智宗王, 『신찬성씨록』의 진사왕의 아들 知宗이라는 인물은 사실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신찬성씨록』의 辰斯王은 『日本書紀』 웅신기3년 시세조에 나오는 백제 辰斯王과 『속일본기』의 智宗을 차용해서 岡原連의 출처를 만들었다는 의문도 있다.

게 상속되었다. 문씨계의 시조인 왕인전승이 『기기』에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⁵⁴ 소아본종가의 멸망 당시 선사혜척은 『천황기』, 『국기』를 불길에서 건져내 중대형황자에게 바칠 만큼 양자의 관계는 돈독하였다. 그러나 천지의 사후 권력싸움에서 패한 천지계 인물들은 일정기간 권력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 같고 실제로 선사씨의 활동은 천무에서 지통, 문무 초년까지 보이지 않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실이 왕진이계의 시조전승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만일 독자의 전승이 있었다면 구태여 『속일본기』 연력 9년조에 전하는 문씨계 시조전승을 차용할 필요는 없었다. 7세기 전반 수십 년간 왜왕권의 관료로 있던 선씨왕후의 묘지명에 그의 원시조명이 없는 것도 시조전승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즉 『기기』 편찬의 시점까지 왕진이계 시조전승은 없었다는 것은 확실하고, 최초의 도래자 왕진이가 『일본서기』 민달기 원년조에 보이듯이 ‘선사조왕진이(船史祖王辰爾)’라고 하여 선사씨의 시조였다.

그럼 8세기 말에 이르러 왕진이계가 문씨계 왕인전승을 차용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양자 사이에 씨족적 공통의식, 의제적 동조의식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상광정(井上光貞)은 왕인을 시조로 하는 문씨(文氏), 장씨(藏氏), 마씨(馬氏)와 왕진이 일족이 시조로 하는 선씨, 백저씨(白猪氏, 葛井氏), 진씨(津氏, 菅野氏) 등을 총괄해서 왕인후예씨족으로 파악한다. 이 6씨가 주거지역이 극히 근접하여 정신적=생활적 공동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속일본기』 신호경운 4년(770)조에 보이는 칭덕(稱德) 천황이 하내(河内)의 유의궁(由義宮) 설치를 축하하는 행사에 양 계통의 6씨가 공동으로 가원(歌垣)을 행했던 사실을 지적한다.⁵⁵ 가원이란 일종의 집단가무로 중국

54 吉田晶, 1973, 『日本古代國家成立史論』, 東京大学出版会, 372쪽; 1977, 「船氏の氏族傳承について」, 羽曳野市史編纂紀要『羽曳野史』2, 7쪽.

55 井上光貞, 1943, 「王仁の其の後裔氏と佛教」, 『史學雜誌』54-9; 1986, 『井上光貞著作集』第2卷, 岩波書店, 416~421쪽. 그러나 井上光貞은 船氏, 白猪氏, 津氏は 원래 왕진이 일족이 왕인의 후예씨족은 아니고 왕인을 시조로 삼은 스스

에서 한반도를 거쳐 전해져 처음에는 도래계 씨족이 주체가 되어 행해졌다고 한다.⁵⁶

이러한 사실은 양 씨족이 밀접히 연휴하면서 그들 독자의 문화적 전통을 장기에 걸쳐 공유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만 이러한 자연적, 문화적 공통성이 양 씨족 간 동류의식을 느끼고 씨족적 친연관계를 유지시킨 요인이 되었겠지만, 시조전승을 공유할 정도의 동족의식으로는 발전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왕진이계가 왕인계의 시조전승을 차용하는 8세기 말까지 수백 년간 시조 공유를 통해 씨족적 결합을 유지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속일본기』 연력 9년조와 10년조의 사성 청원 상표문에 왕진이계의 진씨는 선씨, 갈정씨와 동조 관계임을 언급하고 있듯이 양자 상호 간에는 동족으로서의 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왕진이계선, 갈정, 진 3씨는 항상 동조 관계를 강조하면서 상위의 성을 청원하는 왕진이계로서 동족의식이 깔려있지만, 문씨 그룹과의 동족임을 주장하는 일은 없다.⁵⁷ 연력 9년의 상표문에 동족으로서 백제왕씨의 인명은 보이지만, 문씨계 인명은 배제되어 있다. 『일본후기』 연력 18년(799) 3월조에 당시 왕진이계 3씨 중에서 궁정관인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관야조신진도(菅野朝臣眞道)가 조상의 묘역에 대한 청원문에는 “우리의 선조인 갈정, 선, 진 3씨의 묘지는 하내국 단비군(丹比郡) 야중사(野中寺)의 남쪽에 있고, 사산(寺山)라고 한다. 자손들이 대대로 침해받지 않도록 지켜왔다”⁵⁸고 한다. 이 청원문에서 왕진이계의 후예씨족들은 동족으로서 일체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왕인계와의 동족의식은 보이지 않는다.

로의 존귀성을 강조하고 궁정 내에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

56 荻美津夫, 1977, 『日本古代音楽史論』, 吉川弘文館.

57 吉田晶, 1977, 『船氏の氏族傳承について』, 羽曳野市史編纂紀要『羽曳野史』2, 6쪽.

58 『日本後紀』延暦18年3月丁巳條, “正四位下行左大弁兼右衛士督皇太子学士伊勢守菅野朝臣眞道等言, 己等先祖, 葛井・船・津三氏墓地, 在河内国丹比郡野中寺以南, 名曰寺山, 子孫相守, 累世不侵, 而今樵夫成市, 採伐冢樹, 先祖幽魂, 永失所歸, 伏請依旧令禁, 許之”.

게다가 『속일본기』 천평보자 2년(758) 8월조에 진사추주(津史秋主) 등 34인은 선, 갈정, 진 3씨는 원래 동조 관계를 내세우면서 진씨도 선씨, 갈정씨와 같이 연(連) 성으로 내릴 것을 청원한다. 동일 씨족이 분파를 거치면서 상하의 위계가 형성되어 동족 간에도 경쟁의식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연력 9년(790) 7월에 종5위상 진련진도는 백제왕인정 등 백제왕씨를 끌어들이 스스로를 백제왕의 자손인 진손왕으로 그 후예인 왕진이 일족이라고 주장하여 관야조신(菅野朝臣)의 성을 받는데 성공하였다. 백제왕씨는 백제멸망 후의 의자왕자인 선광(善光)에게 준 특별 성으로 왕진이의 후예씨족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백제왕씨가 진련진도의 청원문에 연명(連名)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적 의도이고, 일종의 명의를 빌려준 대가를 기대한 것이다. 이러한 왕진이계의 작위적인 주장의 배경에는 우선 왕족출신이어야만 조신(朝臣)의 성을 받을 수 있다⁵⁹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백제왕씨를 우대한 환무(桓武) 천황의 정치적 성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특히 연력 16년(797) 5월 28일 「格」에는 환무천황은 백제왕씨에 대해 과역과 잡요를 영구히 면제하라는 칙을 내린다.⁶⁰ 그 사유로서 귀수왕이 재사를 보내 문교를 진흥시켰고, 유학을 현창했다는 백제왕씨와의 역사적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진련진도의 청원문과 왕인전승에 나오는 내용이다. 왕진이계 후예씨족인 진련진도는 백제왕씨와 동족임을 주장하고 왕인전승을 차용한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환무천황의 특혜를 염두에 둔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다. 진련진도(津連眞道, 菅野朝臣眞道)는 환무의 신임이 두터워 동궁학사, 도서두(圖書頭), 이예수(伊豫守) 등 요직을 거쳐 平安 천도에도 관여하였고 연력 16년에는 정4위하로 승진

59 金恩淑, 1988, 「西文氏의 歸化傳承」, 『歷史學報』 118, 8쪽.

60 『類聚三代格』 卷17, 「蠲免事」, “延曆十六年五月廿八日格云, 勅, 百濟王等, 遠慕皇化航海梯山, 輸款久矣. 神功攝政之世, 則肖古王遣使貢其方物. 輕嶋御宇之年, 則貴須王擇人獻其才士, 文教以之蔚興, 儒風由其闡揚, 煥乎賦斌, 于今為盛, 又屬新羅肆虐并吞扶余, 即舉宗婦仁, 爲我士庶, 陳力從事, 夙夜奉公, 朕嘉其忠誠, 情深矜愍, 宜百濟王等, 課并雜徭永從蠲除, 勿有所事, 主者施行”.

하고 참의라는 공경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왕진이계의 계보조작은 환무천황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관야조신진도가 『속일본기』 편찬을 주도함으로써 용이하게 진행되었다.⁶¹ 한편 시조전승을 왕진이계에 빼앗긴 왕인계 문씨는 새로운 계보를 창출한다. 『속일본기』 연력 10년 4월조의 문기촌최제(文忌寸最弟) 등은 상표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고조의 후손인 란(鸞), 그의 후손인 왕구(王狗)가 백제에 이주해 왔는데, 구소왕(久素王) 때에 성조에서 사신을 보내 문인을 찾으니 구소왕이 왕구의 손자인 왕인을 바쳤다. 이가 곧 문·무생 등의 선조다”라고 하였다. 이 청원문에 보이는 종전의 백제국인 왕인 위에 원조를 한고조에 두고, 백제에 이주한 왕구를 추가한 계보를 만들어 전년도에 청원한 왕진이계보다 우월하다는 시조전승을 주장하였다. 즉 한고조에서 왕구-왕인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중국왕조의 왕통을 잇는 계보이다. 『기기』 편찬 이전에서는 왕인은 단지 백제인의 유식자였는데 그 혈통을 중국왕조로 완전히 바꾼 것이다. 이것은 시조전승에서 왕진이계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상대 씨족에 대한 공격적인 선언문이었다.

요컨대 왕진이계의 시조전승은 왕인전승을 차용했지만, 왕인계와의 동조 의식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시 환무천황의 총애를 받던 백제왕씨와의 동족관계를 주장하며 현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실제로 양 씨족군은 7세기 이후의 동향을 보면 분파 씨족 단위로 움직이지 상호 간의 동족 개념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인다. 청덕천황 때의 후히토계 6씨의 집단무회는 지연적 요인에 의해 차출된 집회이지 동조 의식의 발로는 아니었다. 서문씨의 서림사(西琳寺), 선씨의 야중사(野中寺), 갈정씨의 등정사(藤井寺), 진씨의 대진신사(大津神社) 등 개별 씨족이 세운 사찰, 신사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족 간에도 분화가 진행되어간다.

61 서보경, 2016, 『同祖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仁·王辰爾系 씨족』, 『韓日關係史研究』53, 105~108쪽.

VII. 맺음말

백제 성왕이 왜왕권에 파견한 왕진이 일족은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행해진 두뇌 수출이었다. 당시 동아시아의 격동기에 대외 군사동맹, 문류교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왜왕권의 선진문물의 유일한 창구였던 백제와의 친연관계의 결과였다. 왕진이는 행전문서에 능숙한 관료경험이 있었던 지식이었다. 그는 왜왕권에 발탁되어 백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서행정의 새로운 체계를 세웠다. 왕진이의 등장으로 왜왕권의 행정조직으로서의 史部의 성립을 보게 되었고, 행정문서의 체계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왜왕권사상의 중요한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다.

왕진이의 일족인 백저사는 당시 왜왕권이 지방세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왕권의 직할령으로 설치한 둔창의 관리자로 파견되었다. 그가 파견된 길비지역은 세토내해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철 생산과 염산지가 있었고, 한반도제국과의 교류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왜왕권의 길비지역의 장악은 국내통합의 시작이자 대외교섭권의 일원화였다. 백저사 일족은 세습적 지위를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왜왕권의 전통적 주민지배는 재지호족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를 계기로 한반도에 기원을 갖는 호를 단위로 한 주민편제로 민중을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들어오게 하였다. 담진이 백저둔창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본국 백제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왕진이의 동생 진사우(津史牛) 역시 항구의 선박을 관리하는 직무에 종사하여 문필을 기반으로 한반도제국과의 무역활동을 통해 왜왕권의 재정을 확충하고 씨족의 번영을 추구해 나갔다. 왜왕권의 사관으로 활동한 선사혜척(船史惠尺)은 『국기』, 『천황기』 등 역사편찬에도 관여하였다. 게다가 그의 아들인 도소는 대당유학승이 되어 현장법사의 사사를 받아 일본 법상종의 개조가 되었으며 10여 년간 전국을 돌며 교량, 항만, 도로 등을 국가기간시설을 정비해 나갔다.

왕진이계 후손들은 씨족의 결속과 번영을 위해 중시조 왕진이를 모델로 한

시조전승을 만들어 냈다. 백제 귀수왕에서 시작하여 그의 손인 진손왕을 도래의 시조로 삼고 5대손인 왕진이로 이어지는 계보전승을 만들었다. 이 시조전승은 유학과 서적을 전했고 왜왕자의 스승이 되었다는 왕인 전승을 차용하였다. 즉 진손왕은 왕진이를 왕인의 사적 속에 투영시킨 결과이다. 당시 귀족사회에서 교양인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던 왕인의 현자상(賢者像)을 시조전승에 반영시키는 일은 씨족의 현실적 지위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왕진이계의 왕인 시조전승의 차용은 왕인계와의 동조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효용성에서 이용된 것으로 씨족 상호 간의 교류도 점차 소멸되어 간다. 양 씨족의 공동의 사찰이나 신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족 간 혹은 분파 씨족 단위로 사찰(氏寺), 신사(氏社)가 성립되어 도래 당시의 동족의식은 종료한다.

참고문헌

1. 원자료

『三國史記』, 『日本書紀』, 『續日本紀』, 『日本後紀』, 『寧樂遺文』, 『扶桑略記』, 『扶桑略記』, 『元興寺伽藍緣起并流記資財帳』, 『新撰姓氏錄』, 『正倉院文書』, 『令集解』

2. 단행본

加藤謙吉, 2002, 『大和政權とフミヒ制』, 吉川弘文館.
_____, 2017, 『渡來系氏族の謎』, 祥傳社新書.
關晃, 1966, 『歸化人』, 至文堂.
吉田晶, 1973, 『日本古代國家成立史論』, 東京大学出版会.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飛鳥資料館編, 1979, 『日本古代の墓誌』, 同朋社.
山尾幸久, 1983,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岩波書店.
野上丈助, 1975, 『増補河内の古代遺跡と渡來系氏族』, 私家版.
延敏洙, 2014, 『고대일본의 대한인식과 교류』, 역사공간.
荻美津夫, 1977, 『日本古代音樂史論』, 吉川弘文館.

3. 논문

龜田修一, 1997, 「考古學からみた吉備の渡來人」,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_____, 2006, 「久世に白猪屯倉はあったか」, 『旭川を科學する』(シリーズ『岡山学』4).
_____, 2008, 「吉備と大和」, 『古墳時代の實像』, 吉川弘文館.
吉田晶, 1977, 「船氏の氏族傳承について」, 羽曳野市史編纂紀要『羽曳野史』2.
_____, 1997, 「渡來人氏族の定着とその役割」, 『羽曳野市史』第1卷.
金恩淑, 1988, 「西文氏의 歸化傳承」, 『歷史學報』118.
山尾幸久, 1993, 「大化年間の國司・郡司」, 『立命館文學』530.
森公章, 2010, 「吉備白猪・児島屯倉と屯倉制」, 『古代国家と天皇』, 同成社.
서보경, 2016, 「同祖 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仁・王辰爾系 씨족」, 『韓日關係史研究』53.

- _____, 2017, 「고대일본의 文筆實務職과 한국계 渡來씨족」, 『사람』 59.
- 狩野久, 2001, 「白猪屯倉の設置事情」, 『京都橘女子大學研究紀要』 27.
- 岸俊男, 1973, 「日本における戸の源流」, 『日本古代帳籍の研究』, 塙書房.
- 榮原永遠男, 1975, 「白猪・兒嶋屯倉に関する史料的研究」, 『日本史研究』 160.
- 윤선태, 2004, 「한국고대목간의 출토현황과 전망」, 『韓國의 古代木簡』,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 田中史生, 2012, 「倭國史と韓國木簡」, 『日本古代の王權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 井上光貞, 1943, 「王仁の其の後裔氏と佛教」, 『史學雜誌』 54-9.
- 佐伯有清, 1988, 古代を考える『雄略天皇とその時代』, 吉川弘文館.
- 直木孝次郎, 1979, 「稻荷山古墳出土鐵劍銘の問題點」, 『古代研究』 16.
- 請田正幸, 1989, 「渡來人論・序章」, 『歷史學研究』 582.

왕진이(王辰爾) 일족의 문서행정과 시조전승

연민수

왕진은 백제의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왕권에 파견된 두뇌수출이었다. 당시 동아시아의 격동기에 대외 군사동맹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왕진의의 등장으로 왜왕권의 행정조직으로서의 사부의 성립을 보게 되었고, 행정문서체계가 제도적으로 완성되었다. 왕진의의 일족인 백저사는 왕권의 직할령으로 설치한 둔창의 관리자로 파견되었다. 이를 계기로 왜왕권의 주민지배는 한반도에 기원을 갖는 호를 단위로 한 주민편제가 이루어졌고, 민중을 국가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 왕진의의 동생 진사우는 항구의 선박을 관리하면서 한반도제국과의 교역을 통해 씨족의 번영을 추구해 나갔다. 왜왕권의 사관으로 활동한 선사혜척은 『국기』, 『천황기』 등 역사편찬에도 관여하였다. 그의 아들인 도소는 대당유학승이 되어 일본 법상종의 개창하였으며 전국을 돌며 교량, 향만, 도로 등을 국가기간시설을 정비해 나갔다. 왕진에게 후손들은 씨족의 결속과 번영을 위해 중시조 왕진이를 모델로 한 시조전승을 만들어 냈다. 이 시조전승은 왕인 전승을 차용한 것이다. 진손왕은 왕진이를 왕인의 사적 속에 투영시켜 새로운 왕인상(王仁像)이 탄생한 것이다.

주제어: 왕진이, 백저사, 선사혜척, 왕인, 진손왕

ABSTRACT

The Document Administration and Progenitor Transmission of the Wangjini Clan

Yeon Minsoo

Wangjini was a brain who was exported to the royal authority of Japan as part of Baekje's national strategy and its military alliance with Japan during the turbulent period of East Asia. The appearance of Wangjini at the Japanese royal family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Sabu a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completion of an administrative document system as an institution. Baekjeosa (Siraino Huhito), one of his family members, was dispatched to manage Dunchang, a union territory of the Japanese royal power. This created an opportunity for the Japanese royal authority to introduce a resident organization in the unit of household whose origin was in the Korean Peninsula for ruling purposes, and to put peopl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state. Jinsa (Tsnohubito), a younger brother of Wangjini, managed ships at the port and promoted trade with the empire on the Korean Peninsula in pursuit of the family's prosperity. Zen Master Hyecheok (Huneno

Esaka) served as an officer for the Japanese royal authority and got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historical books including Gukgi and Cheonhwanggi. His son, Doso, studied in the Tang Dynasty as a Buddhist priest and created Beopsangjong in Japan, developing national infrastructure including bridges, harbors and roads around the nation. The descendants of the Wangjini clan created a story of their progenitor with the model of Wangjini who revived the family for solidarity and prosperity of their clan. This story borrowed the format of the Wangin story. King Jinson projected Wangjini onto the traces of Wangin, creating a new image of Wangin.

Keywords: Wangjini, Baekjeosa, Zen Master Hyecheok, Wangin, King Jinson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김영수 |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원 교수

- I. 머리말
- II. 나카이 요자부로에의 ‘죽도’어업과 영토편입 요청
- III. 일본정부 관료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 개입
- IV.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사본 문제와 ‘고시’의 유무
- V. 맺음말

I. 머리말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둘러싼 일본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에 대해서 현재까지 한일 양국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일본은 1905년 전후 독도에 관한 편입과 관리를, 한국은 러일전쟁 전후 독도를 포함한 일본의 한국 침략 과정을 주목하였다.

일찍이 호리[堀和生]는 오쿠하라[奥原碧雲]의 『죽도급울릉도(竹島及鬱陵島)』 중 나카이[中井養三郎]의 진술 및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概要)』문서를 발굴하여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과정을 추적하였다. 호리는 첫째 ‘죽도’ 영토편입에 내무성 관료가 명확히 반대하였고, 둘째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야마자 엔지로[山座圓次郎] 등이 독도의 영토편입을 물고간 관료였고, 셋째 영토편입의 이론인 ‘무주지 선점’이 적용되었는데, 조선 영토에 대한 군사점령이 ‘조선병합’의 전제였다는 것으로 보면, “죽도 영토편입이 그 시작”이었다.¹

다케우치[竹內猛]와 김수희는 호리의 연구에 기초하여 나카이와 일본관료의 결탁을 보강하였다. 다케우치와 김수희에 따르면 “나카이는 한국영토로 믿었다→마키 수산국장을 만났으나 영토 소속을 확인도록 하였다→기모쓰키 수로부장은 일본영토편입원을 제출도록 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그런데 이 기록에

* 투고: 2018년 8월 6일, 1차 심사 완료: 2018년 11월 13일, 재심사 완료: 2018년 11월 21일, 게재 확정: 2018년 11월 26일

1堀和生, 1985,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4, 117~121쪽(堀和生, 2008, 「1905년 일본의 다케시마 영토편입」 『한국과 일본의 역사인식』, 나남, 119~123쪽)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죽도(竹島), 송도(松島)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필자는 예외적으로 일본학자와 일본자료가 죽도(竹島)라고 표기했을 경우에는 ‘타케시마’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필자의 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죽도’를 독도로 표기하였다.

서는 나카이가 ‘한국영토로 믿었다’는 근거가 없었다. 단지 마키 농상무성 수산 국장은 찬성하였고 수로부에 가서 영토소속을 확인하도록 한 사실이 기록되었다. 수로부장 기모쓰키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나카이에게 ‘본토로부터 10리 가깝기 때문에’에 일본영토로 소속을 결정하라고 사주하였다.²

한철호는 일본수로부가 독도 강점 이전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한철호에 따르면 기모쓰키는 해군부 수로부장으로 약 16년간 재직하면서 독도와 오키를 비롯한 도서의 영역 혹은 소속 여부, 그리고 섬의 위치와 거리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기모쓰키는 일본인이 이미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당연히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사주한 인물이었다.³

그럼에도 기존연구는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 과정을 중요하게 파악했지만 독자적인 주제로 연구하지 못했다. 더구나 기존연구는 1905년 전후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의 과정에 생산된 시마네현 어업사료 및 일본 공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시마네현 어업사료 등의 일본 자료에 기초한 1905년 전후 일본의 독도 어업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진행되었다.

- 2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 2013,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서울: 선인, 174~177쪽; 김수희, 2014,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 17, 77쪽. 최장근은 ‘죽도문제연구회’가 발굴한 ‘죽도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씨 입지전’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조선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이 침략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증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영토로서의 권원이라고 강변한다고 주장하였다.(崔長根, 2008,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의 해석오류에 대한 고찰 : 죽도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 비판」, 『일어일문학』 40, 293~294쪽) 김화경은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에서 러일전쟁의 연관성을 주목하였고, 김영은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를 중심으로 일본의 독도 불법 편입을 살펴보았다.(김화경, 2011, 「동해 해전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 『대구사학』 103, 171~173쪽; 김영, 2017,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에 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 23, 194~195쪽)
- 3 한철호, 2013, 「일본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 65, 32~33쪽.

허영란은 나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독도 어업의 전개 과정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였다. 허영란은 나카이의 대하원을 일본의 영토편입의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허영란은 1903년 이전까지 독도에서의 어업행위는 울릉도를 거점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1905~1910년 사이 독도에서 일본의 강치(海驢) 남획에 따른 어장이 피해를지자, 1920년 이후 울릉도의 어업행위가 울릉도 거주민으로 다시 넘어갔다고 주장하였다.

허영란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적 팽창과정에서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시켜 영유의 대상으로 관념화시킨 다음 그 역사적 근거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다시 그것을 근거로 영유권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관념화된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일제 식민주의의 연장이라는 의미까지 내포하였다.⁴ 오키도사[隱岐島司]는 1904년 11월 독도를 일본의 신영토로 편입한 다음 오키도(隱岐島)소관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그 이름으로는 ‘죽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하였다.⁵

김수희는 나카이 요자부로에 ‘죽도어업해려합자회사’ 설립 전후의 연구를 시마네현 어업사료에 기초하였다. 김수희는 나카이 요자부로에 활동과 강치 포획 내용에 중점을 둔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수희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나카이의 공로를 인정하여 나카이를 사장으로 한 ‘죽도어업해려합자회사’를 설립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어업권을 소유한 사장이 되었고, 공동어업을 약속한 어민들은 회사 사원으로 전락하였다. 나카이는 권력을 배경으로 어업권을 소유하였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선두에 서서 국가정

4 허영란, 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 13, 253~254쪽.

5 허영란, 2013, 「19세기말 20세기 초 일본의 정부기록물에 나타난 울릉도 독도 인식」, 『독도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현황과 과제 학술회의』, 15~19쪽. 오키군(隱岐郡)은 원래 스기군(周吉郡), 오치군(穩地郡), 치부리군(知夫郡), 아마군(海土郡) 등 4개의 군으로 구성되었는데, 1904년 오치군 고카무라(五箇村)가 성립하였다. 오치군은 고카무라와 쓰마무라촌(都万村)으로 구성되었다.(송희영, 2014, 『일본 향토사료 속의 독도』, 선인, 141쪽)

책을 이용하는 제국주의자였다.⁶ 김수희는 나카이의 1900년대 초 잠수기 어업도 소개하였다. 또한 나카이가 작성한 문서에 기초하여 1903년과 1904년 ‘죽도’ 어업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⁷

유미림은 1903~05년 나카이의 강치어업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유미림은 독도 강치에 대한 세금을 일본인이 납부해야하는 품목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다. 유미림은 일본 자료에 근거한 울릉도와 독도의 명칭 변화도 주목하였다.⁸

그런데 러일전쟁 중 1905년 독도가 무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일본의 불법 비밀 편입은 일본이 무조건 항복 패망으로 불법 편입 시점에 소급하여 당연히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사실이다.⁹

필자는 1903~1905년 나카이의 독도 조사 및 ‘죽도’ 어업, 독도 영토편입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개입 등을 전체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이 논문은 나카이 요자부로와 ‘죽도’어업의 과정과 결과를 어업에 함께 참여한 가토 주조[加藤重造]와 나카토세 니스케[中渡瀬仁助]를 통해서 규명할 것이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영토편입 과정 등을 시마네현 어업사로 및 일본 정부의 공문서에 기초하여 파악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사본(寫本)의 문제와 ‘고시’의 유무(有無)를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6 김수희, 2010, 「나카이 요자부로와 독도어업」, 『인문연구』 58, 152쪽.

7 김수희, 2010, 앞의 논문, 133~136쪽.

8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264~267쪽.

9 박현진, 2013,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국제법학회논총』 58-3, 162쪽.

II.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업과 영토편입 요청

1. 나카이 요자부로의 ‘죽도’어업 시작과 강치어업 독점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¹⁰는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 이전의 독도에서의 어업활동 시기를 1903~1904년이라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1903년 5월 독도에 도착하여 강치를 발견하고 포획했는데, 1903년 귀항할 때 어업자 이구치 류타[井口龍太]¹¹ 등을 발견했다고 기록하였다.

나카이는 1903년 5월 6일 사이고(西郷) 항구를 출항했고, 5월 16일 ‘죽도(竹島)’에 도착하였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3년 5월 16일 ‘죽도’에 도착했을 때 다른 어업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강치는 전체 해안에 넘쳐나서 포획하기 매우 용이하였다. 어업자들은 기빠서 날뛰었고, 어사를 적당한 곳에 만들어 각종 어로 도구를 사용하여 강치를 포획하였고, 포획한 것을 제품으로 만드는 다양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10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는 1953년 7월 10일 자신의 아버지 나카이 요자부로의 이력서를 마츠에시(松江市) 기타호리쵸(北堀町) 93번지 자신의 집에서 구술하였다.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는 1864년 1월 27일 태어났다. 그는 1900년 유도강어업시험(鮪渡綱漁業試験)에 종사하였고, 1903년 강치어업(海驢漁業)에 종사하였다. 그는 1905년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를 조직하고 대표사원이 되었다. 그는 1934년 4월 26일 사망하였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겐지(元治) 元年(1864년) 1월 27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메이지 33년(1900년) 유도강어업시험(鮪渡綱漁業試験)에 종사했습니다. 그는 메이지 36년(1903년) 이후 강치어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는 메이지 37년(1904년) 강치(海驢)어장 ‘리앙코르도’ 열암을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내부 외부 농상무 3대신에게 출원합니다. 그는 메이지 38년 ‘리앙코르도’ 열암을 일본영토에 귀속시켰다. 그는 ‘죽도’(竹島)로 개명시켰고, 오키도사 관할에 두었다. 그 해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를 조직하고 대표사원이 되었습니다. 쇼와 9년(1934) 4월 26일 사망하였습니다.”(『アジア局2課, 昭和28年(1953)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中井養一 口述書」,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竹島關係綴)』, 44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11 시마네현 문서는 이구치 류타(井口龍太)로 적혀있지만, 최근 발굴된 위패에 따르면 이구치 류타로(井口龍太郎)로 보도되었다.(『山陰新聞』, 2018.7.3.) 그럼에도 필자는 당시 시마네현 공문서에 기록된 이구치 류타를 사용하였다.

나카이는 사냥을 통해서 강치를 포획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강치가 ‘죽도’에 상륙하면, 육상에서 총을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하였다. 하지만 ‘죽도’는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이라 돌아다니면서 강치를 잡을 수가 없었다. 어선(獵船)을 바위 뒤쪽으로 끌어 대놓고 사수가 상륙하여 바위 뒤에서 몰래 접근하여 머리를 겨냥하여 사격하였다.

나카이는 강치 어렵의 모선(母船)이 물건을 가득 싣고 귀향하려고 할 때, 오치군 고카촌 거주 이시바시 쇼타로[石橋松太郎]에 소속한 후루카와 고타[古川幸太]와 이구치 류타 등이 인부를 데리고 ‘죽도’에 도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카이에 따르면 그들은 집 한 채를 마련해서 강치 포획에 종사하였다. 1903년 어렵자는 나카이 이외에 이시바시조[石橋組] 밖에 없었으며, 각자 모선 한척과 어선 1척을 사용하면서 강치를 포획하였다.¹² 나카이는 1903년 자신이 직접 강치 어업을 시작했고, 소수의 일본인만 독도에서 강치어업을 전개했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1904년 4~5월 독도에서 일본 어부의 강치 포획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나카이는 이시바시 쇼타로와 이구치 류타 등의 일본 어부가 강치 포획에 종사했는데, 일본인 어부 5개 조가 독도에서 강치 어업을 전개했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1904년 4월 1일 사이고 항구를 출발했고, 4월 3일 ‘죽도’에 도착했고, 4월 10일 일단 귀향하였다. 또다시 4월 28일 사이고 항구를 출발했고, 5월 1일 ‘죽도’에 도착하였다. 나카이는 잠시 귀향한 이유에 대해서 ‘죽도’에 도착했을 때 강치가 모여드는 것을 방해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강치 포획을 보류하고 어사만 손질하고 귀국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4년 4월 28일 다시 도향했을 때 오치군 고카촌 오아자 쿠메 거주 이시바시 쇼타로의 작업조, 스키군 나카촌 오아자 미나토 거주 이구

12 島根縣隱岐島廳, 『明治36年 調査 營業人 中井養三郎』,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 - 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치 류타의 작업조가 있었다. 이시바시와 이구치의 작업조는 강치를 포획했는데, 나카이 작업조는 더 많은 강치를 포획하였다.

나카이에 따르면 그밖에 1904년 어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아마구치현 이와사키[岩崎]는 울릉도에서 한인을 데리고 포획에 나섰고, 오아자 니시마치 거주 가토 주조는 한창 때가 지나서 사이고 항구에서 ‘죽도’에 도항하였다. 이와사키와 이구치 2조는 어기의 절정기가 이르지 못하여 영업을 중지하였고, 가토 조는 절정기가 지나서 영업을 개시하였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4년 강치 포획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수렵법과 제조법에서 다소 경험을 쌓았으며 판로가 정해졌다. 나카이, 이시바시, 이구치 등 3개 조는 시장 가격이 크게 올라서 조금 이익을 올렸다. 가토와 이와사키의 2조는 손실을 입었다.¹³

나카이에 따르면 일본인은 울릉도 주민을 동원하여 ‘죽도’ 어업을 실행하였다. 이것은 한국인도 울릉도에서 강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독도의 어업적 가치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나카이와 함께 ‘죽도’에서 어업에 종사한 나카토세 니스케의 증언에 따르면 강치어업이 성공적이었다는 나카이의 보고서는 거짓말이었다. 나카토세 니스케[中渡瀬仁助, 73세]는 1953년 7월 10일 ‘죽도’ 어업을 구술하였다. 1903년 무렵 나카이 요자부로 등의 5개 조가 경쟁적으로 강치어업에 종사하여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 어부는 ‘죽도’ 강치 어업을 서로 경쟁하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나카토세에 따르면 “1903년 무렵 이소무라[磯村] 일행, 나카이 일행, 가토 주조 일행, 이구치 류타 일행, 고카촌[五箇村] 쿠메[久米] 1팀, 총 5팀이 경쟁하며 ‘죽도’의 강치어업을 종사하였다. 하지만 서로 서로가 방해하여 강치를 잘 잡

13 島根縣隱岐島廳, 『明治37年 調査 營業人 中井養三郎』,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 - 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을 수 없었다.”¹⁴

나카이는 독도에서의 강제 발견과 강제 포획을 수행하면서, 독도의 일본 영토 불법 편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나카이에 따르면 ‘죽도’는 절해에 우뚝 솟아 있는 ‘작은 바위섬’에 지나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방치해 두었다. 나카이는 ‘죽도’의 동도와 서도를 구별하면서 외부 모습을 상세하게 관찰하였다. 그는 ‘죽도’의 위치, 수목이 없는 모래와 자갈, 물의 존재 등을 기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리양코’라는 명칭 사용, ‘죽도’를 ‘무인도’로 판단, 동도의 ‘고인물’의 존재를 파악하였다는 사실이다.

“오키열도 서북 85리(里), 조선 울릉도 동남 55리 ‘리양코’라 불리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둘레가 약 15정(町)이나 되는 갑(동도: 필자)과 을(서도: 필자) 두 개의 바위섬이 서로 마주하고 있어서, 둘 사이에 하나의 해협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 천 개의 암초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으며, 중앙 두 개 섬은 사면이 바위를 깎아놓은 듯 절벽이 높고 솟아 있습니다. 그 정상에는 얼마 안 되는 토양을 덮고 있는 잡초가 자라고 있을 뿐 섬 전체에 한 그루의 수목이 없습니다. 해변의 만이 굽어지는 곳은 모래와 자갈이 여기저기 해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만한 곳은 갑의 해협에 접하고 있는 일부에 겨우 한 곳 있을 뿐입니다. 갑(동도: 필자)의 정상 움푹 패여 있는 곳에는 고인물이 있습니다. 담갈색을 띤 을에는 염분을 조금 머금은 맑고 찬 물이 가파른 암석에서 방울방울 떨어집니다.”

나카이는 ‘죽도’의 항로위치, 선박의 연결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선박은 해협을 중심으로 바람 부는 방향을 봐서 좌우로 피하여 정박하면 안전을 보전할 수 있었다. ‘죽도’는 오키열도와 울릉도를 거쳐 조선의 강원과 함경 지방으로 왕복하는 선박의 항로에 위치하였다. 만일 ‘죽도’를 경영하여 사람이 상주한다면, 연료와 식음료 등이 부족할 때 선박이 기항하여 보충할 수 있는 여

14 アジア局2課, 昭和28年(1953)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橋岡忠重 口述書」,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竹島關係綴)』, 39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었다. 나카이는 일본이 강원과 함경 지방에서 어업과 무역의 이익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죽도’의 경영이 앞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죽도’에서 강치 포획 과정과 강치의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나카이는 울릉도를 왕복하던 길에 우연히 독도에 들러 정박하면서 강치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카이는 강치를 내버려두는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강치포획에 관한 계획을 세웠다.

나카이는 1903년 자본을 투입하여 어사(漁舍)를 짓고 인부를 데려가서 사냥 도구를 갖추어 강치포획에 착수하였다. 그럼에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로 오기가 쉽지 않은 ‘무인도’(독도)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설비가 부족했고 사냥 방법과 제조 방법이 분명하지 않았다. 또 용도와 판로가 확실하지 않아 허다한 자본을 허비하였다.

나카이는 1905년 사냥 방법과 제조 방법을 모두 개발하고, 판로도 개척하였다. 강치 가죽은 소금에 절이고 우피(牛皮)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신선한 지방에서 뽑아낸 강치 기름은 품질과 가격 모두 고래 기름에 뒤지지 않았다. 기름의 찌꺼기는 물기를 빼내면 아교의 원료가 되었다. 살코기는 가루로 만들어서 뼈와 함께 비료로 만들 수도 있었다.

나카이는 ‘죽도’ 주변 어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았다. ‘죽도’는 동해의 요충에 해당하는 섬으로, 여러 가지 어족이 몰려와 서식하지 않을 리 없었다. 이 섬의 강치어업을 지속한다면 어류 탐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앞으로 더욱 유리하고 유망한 사업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 섬의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설비를 완전하게 하면 강치를 포획하는데 전도가 매우 유망하였다.

나카이는 ‘죽도’ 영토 소속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영토 소속이 확정된 이후에 ‘죽도’에 대한 경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이 섬은 영토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아 훗날 다른 나라가 이의(故障) 제기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다면) 이 섬의 경영에 물자와 힘을 쏟아 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나카이는 강치의 서식 기간을 기록하면서 강치 남획을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나카이는 강치의 절멸 가능성을 내세우며 강치 포획을 독점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죽도’의 강치는 보통 때는 서식하지 않고 4~5월에 몰려와서 생식을 마치고 7~8월에 흩어져 떠나갔다. 강치의 포획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번식을 적당히 보호하지 않는다면 금방 달아나버리고 절멸할 수도 있었다. 강치의 제한과 보호는 경쟁하는 동안에는 도저히 실행 할 수 없을 것이다. ‘죽도’의 경영은 영토의 소속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강치 포획에 반드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 때문에 보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카이는 독도의 영토편입과 강치 남획 금지의 필요성을 연관시켰다. 하지만 실제 강치의 남획은 영토편입과는 달리 일본 어부들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나카이는 강치 남획 방지를 대의명분으로 강치 어업의 독점을 청원하였다.

나카이에 따르면 포획할 수 있는 강치의 크기와 숫자 등은 제한시키고, 암컷과 새끼는 특별히 보호해야하고, 몇 군데 섬 안의 적당한 곳이 수렵 금지 장소로 설정되어야하고, 강치에게 해를 끼치는 범고래와 상어 등이 포획되어야 한다. 포획에 관한 여러 가지 정교한 기계를 갖추고 장치를 만드는 설비가 완비되어야 한다. 어구를 갖추고 다른 수족을 잡는 일도 시도해야 한다.

나카이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와 자신의 애국심을 동일하게 연결시켰는데,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촉구하면서 독도의 어업을 독점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었다. 나카이는 “사업의 안전과 이익 원천의 영속을 확보하여 이 섬의 경영을 끝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이 섬을 일본의 영토로 편입하고,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 대여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나카이는 ‘리양코’ 섬 약도를 첨부하면서 ‘죽도’의 위치와 지도를 제시하였다. “동경 131도 55분. 북위 37도 15분. 범례 : 강치양식장, 어사, 저수(瀦水, 웅덩이), 적수(滴水, 빗방울), 조약돌, 고깃배 정박장.” 나카이는 독도에서 물의 존

재를 웅덩이와 빗방울로 보았다. 기본적으로 독도는 웅덩이, 빗방울, 물골 등으로 물의 존재가 확인되었다.¹⁵

나카이는 독도를 ‘리양코’로 불렀는데, 나카이는 독도의 일본 불법 편입 제안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독도는 영토 소속이 정해지지 않았다. 둘째 다른 나라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이의(故障)를 제기할 수 있다. 셋째 일본 영토편입은 독도의 경영을 끝까지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 나카이는 기본적으로 독도를 ‘무인도’라고 설정하고 독도 편입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까지 파악하였다.

2. 나카이 요자부로와 가토 주조의 ‘죽도’어업의 방안과 실행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4년 9월 29일 별지로 ‘리양코 영토편입 및 대하원’(リヤンコ島領土編入并ニ貸下願)을 작성하였다.

나카이는 강치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초기 자본금 1,500엔을 이미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이익을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죽도’의 강치를 보호하고 포획을 제한하며, 설비를 완전하게 갖추어서 포획물을 충분히 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는 강치 보호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크기 8척 이상의 수컷이 아니면 절대 포획하지 않는다. 한 철에 500마리 이상을 포획하지 않는다. 총을 쏘는 사수 1명과 엽정 1척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보호 장소를 설정하고 그 장소 안에는 어떠한 포획도 할 수 없게 한다. 해로운 범고래와 상어 같은 것을 쫓아내며 포획한다. 해조류는 모두 베지 않는다. 포획 이외에 강치를 놀라게 하고 생식을 방해하는 행위는 철저히 기피한다. 보호장소는 몇 년씩 간격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섬 전체를 돌아가면서 옮긴다.

나카이는 독도에서 강치의 서식과 포획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나카이에 따

15 中井養三郎, 明治37年(1904)9月29日, 「庶1073號 別紙 リヤンコ島領土編入并ニ貸下願」,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르면 ‘죽도’는 매우 많은 강치가 군집하고 있으며, 해변에는 강치로 뒤덮여서 땅이 보이지 않았고, 강치의 숫자가 몇 천에서 몇 만을 헤아리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1904년에 처음 3척에서 6척의 배가 사용되었는데, 총 포획 숫자는 대략 수컷 850마리, 암컷 900마리, 새끼 1,000마리 등이었다.

나카이는 독도에서 사냥한 강치의 상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치의 지방과 살코기와 뼈 등은 품질 좋은 기름과 비료를 채취할 수 있었다. 가죽은 소금을 뿌려 놓기만 해도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먼 곳까지 수송하여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름과 비료를 뽑아서 제조하기 위해서는 설비가 필요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일본수로지』에 기초해서 기록하였다. 이것은 나카이가 해군성의 『일본수로지』까지 입수하여 독도를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이 섬은 동경 131도 55분 북위 37도 105분에 있습니다. 일본 오키 열도에 서 서북 85해리, 조선 울릉도에서 동남 55해리로 울릉도와 가깝다. 프랑스 선박 리양코르도(리양쿠르, Liancourt)는 1848년 처음으로 발견하여 호칭을 그 배 이름으로 붙였다. 러시아 전함 팔라다(Паллада)는 1854년 (동도와 서도를) ‘메넬라이와 올리부차’라고 이름을 붙였다. 영국 함대 호넷(Hornet)는 1855년 (독도를) 탐험하고 조사하여 ‘호넷’ 열암이라 이름 지었다. 호넷 함장 포시스(C.C. Forrsyth)에 따르면, 이 열암은 북위 37도 104분 동경 131도 55분에 위치하는 두 개의 암초이고, 새 똥이 늘 섬 위에 퇴적되어 섬 색깔이 흰 색이 되었다. 북서, 서동남, 동쪽의 길이가 약 1리이다. 서쪽 섬은 높이가 약 410척(呎)이다. 동쪽 섬은 약간 낮고 평평한 정상이 있었다.”

나카이는 1903년 5월 ‘죽도’에서 강치 포획을 계획하여 인부를 데려와서 어사를 지었다고 주장하였다. 나카이에 따르면 그 후 ‘죽도’에서 처음 건설물을 만들고 국기를 달았던 인물은 일본군 제4군(第4軍) 예비 중사(軍曹) 고하라 이와조[小原岩藏]가 인솔한 인부였다.¹⁶ 나카이가 1904년 독도에서 함께 작업한 인

16 中井養三郎, 明治37年(1904)9月29日, 「庶1073號 別紙 リヤンコ島領土編入并

물은 바로 일본 육군이었다.

그런데 나카이와 함께 독도 어업에 참가했던 가토 주조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이후 1905년 4월 13일 ‘죽도대여청원’(竹島貸與請願)을 시마네현지사(島根縣知事) 마쓰나가 타케요시[松永武吉]에게 독자적으로 보냈다. 가토 주조는 “죽도가 본래 리양코 섬으로 속칭되었다”며 ‘리양코’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1904~1905년 강치 어업 활동을 기록하였다.¹⁷

가토는 1904년 그물과 배 등 강치 포획에 관한 준비를 마치고 출항하였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도’에 닿지 못하고 귀항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역풍을 맞아 니시마치[西町] 북쪽 수 십리까지 떠내려갔고, 겨우 토토리현 슈요국[周陽國]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다시 날씨를 지켜보다가 ‘죽도’에 도항하여 강치 사업에 종사하였다. 왕래가 순조롭지 못하고 여러 날을 낭비하고, 어업 기간을 놓치게 되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다. 가토는 1905년 이미 고정 자본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서둘러 도항했지만, 지난해의 손실을 만회하지 못했다.

가토는 독도의 규모와 강치 보호를 주장하면서 3년 동안 ‘죽도’대여(竹島貸與)를 주장하였다. 가토는 ‘죽도’가 오키국(隱岐國)의 부속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강치 포획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가토에 따르면 강치를 포획할 때 법규에 따라 영업해야 하는데 1905년 갑자기 영업을 청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죽도’는 면적이 비좁아 다수가 출어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상당한 정도로 보호를 해서 포획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도저히 어업 이익의 오랜 지속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상당한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제재를 철

二貸下願,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나카이는 1903년 강치잡이로 독도를 방문하였고, 그 후 일본 육군과 함께 함께 독도를 방문했는데, 그 연도가 1904년이었다. 일본군 제4군(第4軍)은 1904년 6월 24일 노즈 미치쓰라(野津道貫) 대장을 중심으로 창설되었고, 포츠머스 조약 이후 1906년 1월 17일 해산되었다.

- 17 加藤重造一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4月13日, 「竹島貸與請願」,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저히 지켜야하고, 장래 영원히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¹⁸

시마네현은 1950년대 가토에 대한 독도 어업 관련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시마네현의 조사서에 따르면 스키군 사이고정 오아자 니시마치 거주 가토 주조는 1904년 7월 12일 ‘죽도’에 도항하였다. 가토는 1904년 6월 16일 그물을 포함한 포획 관련 준비를 마치고 출항했지만 풍파 때문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7월 12일 ‘죽도’에 도착하였다. ‘죽도’에 어사를 짓고 포획에 종사했으나, 이미 어기를 놓쳐 계획한 만큼 포획을 하지 못했고, 8월 22일 귀항하였다.¹⁹ 일본에서도 독도를 가는데 날씨는 매우 중요하였다. 가토는 러일전쟁 중 독도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러일전쟁 전후 일본 어부는 독도 강치 어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결국 나카이는 해군성의 『일본수로지』까지 입수할 정도로,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더구나 나카이가 1904년 독도에서 함께 작업한 인물은 바로 일본 육군이었다. 나카이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와 자신의 애국심을 동일하게 연결시켰다. 나카이는 기본적으로 독도를 ‘무인도’라고 설정하고 독도 편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까지 파악하였다.

III. 일본정부 관료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 개입

1.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 과정

시마네현(島根縣) 내무부장(內務部長) 서기관(書記官) 호리 신지[堀信次]는 1904년 11월 15일 나카이의 독도 편입에 대해서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東文

18 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4月13日, 「竹島貸與請願」,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 - 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19 島根縣隱岐島廳, 「調査書 加藤重造」,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 - 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輔]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소속을 결정할 경우 오키(隱岐) 도청 소관으로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도서의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잘 헤아려서 주길 바란다.”²⁰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1904년 11월 30일 호리 신지의 조회 내용에 대한 회답을 보냈다. 히가시는 독도의 일본영토편입에 관한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였다.

“일본 영토에 편입한 뒤 오키섬 소관으로 정해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명칭은 ‘죽도’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²¹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관리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문서를 주고 받았다. 무엇보다도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독도의 새로운 명칭 ‘죽도’까지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하였다. ‘죽도’ 명칭 사용은 바로 나카이의 편입 요청에 따른 히가시의 결정이었다.

1905년 1월 10일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는 소위 ‘비을(秘乙) 제337호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을 내각 총리대신 가쓰라 타로[桂太郎]에게 상신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가 청원한 것에 비롯하여, 오키도(隱岐島)에서 서북 85리(湊)에 위치한 ‘무인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여 ‘죽도’로 이름 붙이고, 시마네현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청원한 것이었다.(內務省請議書 1905.1.10.)²²

20 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隱岐島司 東文輔, 明治37年(1904)11月15日, 「庶1073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이 문서의 회답은 ‘乙庶 152호’이었다.

21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 明治37年(1904)11월 30日, 「乙庶152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22 明治三十八年, 『公文類聚』, 第二十九編, 卷一(國立公文書館所藏: <http://www.archives.go.jp>). 첫째 태정류전(太政類典)은 태정관 기록과에서, 태정관일기·일지, 공문록 등에서 전례조규(典例條規)에 해당하는 문서를 채록하여 19부문으로 분류·편찬한 것이다. 연대별로 편찬되어 있는데 1867년부터 1881년까지 모두 911책이다. 둘째 공문류취(公文類聚)는 태정류전의 명칭이 1882년부터 바뀐 것이다. 이 때 분류항목도 바뀌었다. 분류항목은 1891년에 다시 한번 바뀌었으며, 이

일본 내각은 1905년 1월 28일 내무성의 요청(請議)을 각의(閣議)에서 결정(決定文)하였다.

“별지(別紙) 내무대신이 청의(請議)한 ‘무인도의 소속에 관한 건’을 심사해 보니,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도에서 서북쪽으로 85리에 위치한 무인도는 타국(他國)에서 이를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形跡)이 없고, 메이지 36년(1903)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어사를 짓고, 인부(人夫)를 이동시키고, 사냥도구를 갖추어 강치 잡이를 착수하고, 이번에 영토편입 및 대하(貸下)를 제출했는데, 이번 기회에 소속 및 도명(島名)을 확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도(該島)를 ‘죽도’라고 명명하고, 지금부터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所管)으로 하려고 한다. 이에 심사한 바, 메이지 36년 이래 나카이는 해도에 이주해 어업에 종사한 일이 관계서류에 의해 명백하므로,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이를 일본(本邦) 소속으로 하고,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청의대로 각의결정(閣議決定)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한다.”(內閣決定文 1905.1.28.)²³

후 이 분류항목이 1945년까지 유지되었다. 편집 방식은 1886년에 크게 변화였다. 이전에는 여러 공문서를 등사하여 편찬하였으나, 1886년부터는 원본을 직접 수록하고 등사한 것은 부분으로 편찬하게 되었다. 또한 종전에는 전례조규를 채록한 반면, 이후에는 ①법률규칙, ②법률규칙의 설명서, ③법률의 정신에 따라 처분·시행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공문서를 수록하였다. 모두 2,957책이 있었다. 셋째 공문록(公文錄)은 1868년에서 1885년까지 태정관에서 수수(收受)한 각 성청의 품청(稟請), 상신(上申), 진달(進達) 등 일체의 공문서를 각 성청별, 월별로 편집한 것이다. 정본은 모두 4,102책이다. 넷째 공문잡찬(公文雜纂)은 1886년에서 1945년까지, 예규에 따라서 시행된 사항 및 임시로 시행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공문서 원본을 각 부서별로 수록하여 편찬한 자료이다. 공문서들은 연도별로 구분된 다음, 그 아래 각 성청별로 구분되어 있다. 각 성청별로 분류된 문서는 다시 자세히 세목이 분류되어 수록되었다. 모두 3,082책이 있었다. 일본의 내각제도가 성립한 것은 1885년 12월 인데, 1885년까지는 거의 모든 중요 공문서가 공문록에 수록되었으며, 그 중 전례조규에 해당하는 사항이 태정류전(공문류취)에 등사되었다. 1886년부터는 법률 관련 사항이 공문류취, 예규 관련 사항이 공문잡찬에 수록되었다.(국사편찬위원회, 2002, 『일본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1권, 국사편찬위원회 참조)

23 明治三十八年, 『公文類聚』, 第二十九編, 卷一(國立公文書館所藏 : <http://>

일본 각의는 ‘죽도’의 위치, 나카이의 강치어업, 나카이의 영토편입과 임대, ‘죽도’의 명칭부여, 오키도사의 소속 등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일본 각의는 나카이의 어업 종사 인정, 국제법상의 점령 사실 등을 근거로 해서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인정하였다. 그것은 전근대 조선의 울릉도와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부정하고, 근대의 ‘점령’이라는 국제법적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일본 각의의 독도 불법 편입 결정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각의는 독도의 지명을 ‘죽도’로 확정하였다. 둘째 각의는 ‘죽도’를 무인도로 규정하면서 타국이 점령한 적이 없었다. 셋째 1903년부터 일본인 나카이 요자부로가 ‘죽도’에서 강치 어업에 종사하였다. 넷째 각의는 ‘죽도’가 국제법상 점령의 사실에 기초하여 일본 소속으로 편입을 결정하였다.

일본 내무성 내무대신 요시카와 아키마사는 2월 15일 훈령(訓令) 제87호로 각의결정을 관내에 고시하도록 시마네현 현 지사 마쓰나가 타케요시[松永武吉]에게 지시하였다. 그 내용은 ‘죽도’의 위치, ‘죽도’라는 명칭, ‘죽도’의 오키섬 소속, 관내의 고시 등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일본은 ‘관내의 고시’ 관련 원본을 소장하지 않았다.

“훈 제87호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분, 오키섬을 사이에 두고 서북 85리에 있는 도서(島嶼)를 ‘죽도’라고 칭하고, 이제부터 이 섬의 소속은 오키섬 지방관의 소관으로 한다. 이 뜻을 관내에 고시해야 한다.”(內務省訓令 1905.2.15.)²⁴

그런데 나카이는 자신의 직접 작성한 『사업경영개요』에서 1905년 2월 전후

www.archives.go.jp)

- 24 쿠보이 노리오, 2017, 『독도의 진실』, 부산민족학교, 244쪽; 국회도서관, 2013, 『일본 자료로 보는 독도, 서울』, 국회도서관, 56쪽. 마쓰나가 타케요시(松永武吉, 1869~1936)는 가고시마(鹿兒島) 현 출신으로 도쿄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04년 11월 17일부터 1908년 3월 27일 시마네현 지사로 근무하였다. 초대 평안남도 장관(1910.10.1.~1916.3.28), 경기도 장관(1916.3.28.~1919.9.26), 조선총독부 중추원 서기관장 겸 사무관, 총독 관방 외사과장 등을 역임하였다.(국회도서관, 2013, 『일본 자료로 보는 독도』, 서울, 국회도서관, 56쪽)

일본정부 관료의 독도 편입 과정에 대한 개입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나카이가 1909년 치시마[千島] 열도(列島)의 해마도(海馬島)의 강치어업권 허가신청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력서』 및 『사업경영개요』를 작성하였는데, 두 문서는 시마네현의 총무과 소장 『행정제관청왕복잡서류(行政諸官廳往復雜書類)』에 포함되었다.

나카이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에 일본 농상무성 수산국장인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일본 해군성 수로부장(水路部長)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 일본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가 깊숙이 개입되었다고 기록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과정을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이자 한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통감 부와의 협의 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나카이가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라는 지리적 개념, 한국의 영토라는 영역적 개념 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나는) ‘죽도’가 울릉도에 부속하여 한국의 영토(所領)라는 생각을 갖고, 장차 통감부에 가서 할 일이 있다고 보았다. 상경(上京)해서 여러 가지를 획책하던 중 당시 수산국장인 마키 나오마사의 주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문이 들었다. 그 조사를 위해 여러 가지 분주한 끝에 당시 수로부장 기모쓰키의 단정(短艇)에 힘입어,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경영상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진술(具陳)하여 ‘죽도’를 일본(本邦) 영토에 편입하고, 아울러 대여해 줄 것을 내무·외무·농상부 3대신에게 출원하는 원서를 내무성에 제출하였다. 내무성 당국자에 따르면 러일전쟁 시기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일개 불모의 암초를, 눈을 부릅뜨는(環視) 여러 외국에게, 일본이 한국 병탄(併呑)의 야심이 있다는 의혹을 키울 것이다. 이익이 지극히 작은 데 반하여 상황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아무리 설득해도 출원이 끝내 각하될 형편이었다. 이렇게 좌절할 수는 없어서, 즉시 외무성으로 달려가서 당시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를 만나 자세히 설명하였다. 야마자 엔지로는 시국이 시국이니 만큼 빨리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망루(望場)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

선을 설치하면 적함(敵艦) 감시에 대단히 좋을 것이다. 특히 외교상 내무성의 고려가 필요한 일이 아니다. 마땅히 청원서를 외무성(外務省)에 회부해야 한다. 그래서 의기양양(意氣昂揚)하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죽도’는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다.”²⁵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나카이는 처음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이다. 일본의 불법 독도편입을 정리하면, 첫째 농상공부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는 반드시 ‘죽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주었다. 둘째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는 나카이에게 단정을 제공하여,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시켰다. 셋째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러일전쟁의

25 “매년 수획(收獲)을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메이지 38년(1905) 1천3마리 대금 2천 5백59엔 79전2리. 메이지 39년 1천3백85마리 대금 5천4백37엔 17전5리. 메이지 40년 1천6백 마리 대금 5천9백40엔 80전. 메이지 41년 1천6백80마리 대금 5천 8백78엔 55전5리. 메이지 42년 1천1백52마리 대금 4천3백44엔 19전. 메이지 43년 6백79마리 대금 2천3백17엔 13전4리.”(鳥根縣隱岐島廳, 從明治參拾八年, 『事業經營概要』, 『行政諸官廳往復雜書類』(鳥根縣總務科所藏) “어부들이 강치 포획 사업의 유리함을 알게 되었고, 1904년 여기에는 각 방면에서 속속 도항하여 경쟁적으로 남획하였다. 그 결과 그 폐해를 인식한 나카이는 리앙코 섬을 조선의 영토라고 믿어 조선 정부에 대하를 청원할 결심을 하고는 1904년의 어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상경하였다.”(奥村碧雲, 1906.6, 『竹島沿革考』, 『歷史地理』8-6, 7~24쪽) “당시 지방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井原 시마네현 지사는 농상주임인 시마네현 소속 藤田辛年을 수반해서 상경 중이었다. 나카이는 활로를 그것으로 구해서, 藤田을 여관에서 방문하는 것을 기도했고, 藤田도 크게 찬성해서 지방국으로 향해서 구신하는 것을 약속했다. 자연히 지방국의 의견은 전술과 같았다.” “지금 장래유망한 사업을 목적에서 잃고, 소속불명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경영의 시기를 잃고, 더구나 수년에 걸쳐 남획되면 앞으로 동업은 자못 어려워질 것이다. 나카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남아로서 다시 뜻을 결정하여 백난을 배제할 결심을 세웠다.” “같은 고향 출신의 桑田熊藏(현재 귀족원 多額納稅 의원)에게 이를 부탁하자 쿠와타(桑田) 박사는 즉시 글을 써서 나카이를 야마자(山座) 정부국장에게 소개하여, 나카이는 야마자 국장을 면담해서, 랑코도 경영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국장은 천천히 이를 다 듣고 외교상의 일은 다른 부처(他者)가 관여할 수 없으며, 작은 바위섬 편입이라고 하는 사소한 사건일 뿐, 지세상으로나, 역사상으로나, 또한 시기상으로도 지금 영토로 편입은 큰 이익이 된다고 뜻을 내비쳤다.”(奥村碧雲, 1906.5.20,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Web竹島問題研究会, 平成20年(2008)7月,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74쪽)

상황에서 시급히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여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고, 나카이의 청원서를 외무성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이것은 일본 관료가 독도 불법 편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무엇보다도 일본 내무성 당국자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암초”, “일본의 한국 병탄 야심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 불법 편입이 ‘일본의 한국 강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²⁶

- 26 시마네현지사(島根縣知事) 쓰네마쓰 야스오(恒松安夫)는 1952년 5월 12일 지방자치청(地方自治廳) 차장(次長)에게 독도 관련 조사 문서를 보냈다. 쓰네마쓰는 나카이가 1904년 어획이 끝나자 갭치 어획의 독점권을 얻기 위해 곧바로 상경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나카이는 오키 출신의 농상무성 수산국원 후지타 칸타로(藤田勘太郎)와 상담하고 마키 나오마사(牧朴眞) 수산국장(水産局長)과 면담하여 마키의 찬성을 얻었다.”(島根縣知事 恒松安夫→地方自治廳 次長・外務省 情報文化局 特別資料課, 昭和27年(1952)5月12日, 「總694號 別添 竹島(舊松島)をめぐる諸問題」,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쓰네마쓰에 따르면 나카이는 오키 출신의 농상무성 관료 후지타 칸타로를 통해서 수산국장과 면담할 수 있었다. 나카이는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肝付兼行)를 면담하면서 독도의 소속이 애매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카이는 1904년 9월 29일 독도의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내무 외무 농상무성에 제출하였다. 그 후 나카이는 내무성 지방국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에게 사정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나카이는 같은 고향 출신의 법학사 구와타(桑田) 귀족원의원의 소개로 외무성에서 야마자(山座) 정무국장과 상담하였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요청하였고, 시마네현은 오키 도청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고하였다. 그 결과 일본 각의는 영토편입을 결정하고 ‘리안코루토 섬’(마쓰시마)을 ‘죽도’라고 명명하였다.(島根縣知事 恒松安夫→地方自治廳 次長・外務省 情報文化局 特別資料課, 昭和27年(1952)5月12日, 「總694號 別添 竹島(舊松島)をめぐる諸問題」,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나카이는 기모쓰키(肝付) 수로부장과 만나, 이 섬의 소속은 확실한 증거가 없고, 한일 양국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하면 일본쪽이 10리 정도 가까우며, 일본인이 이 섬의 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이상, 일본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었다.”(奥村碧雲, 1906.6, 「竹島沿革考」『歴史地理』8-6, 7~24쪽; 奥村碧雲,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 1906.5.20. (Web竹島問題研究会,平成20年(2008)7月,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73쪽)

2.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죽도’ 면적 조사와 어업 허가 과정

히가시 분스케는 1905년 3월 7일 ‘죽도’의 ‘지적 편입’ 등의 부속 조치에 관한 훈령을 내려야 한다고 시마네현지사 마쓰나가 타케요시[松永武吉]에게 요구하였다. 또한 히가시는 “섬 전체 대역을 요청하거나 강제 어업 허가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으며, 향후 그것이 채택될지 여부와 의견은 조사 후 다시 자세하게 보고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²⁷

그 후 시마네현지사 마쓰나가는 1905년 5월 3일 “죽도 면적을 조사하여 개신(開申)할 것을 훈령한다”며 독도 면적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오키도청(隱岐島廳)에게 내렸다.²⁸ 그 결과 오키도사 히가시는 1905년 5월 17일 “1905년 5월 3일 지(地) 90호(號) 훈령에 따라 조사하였더니, 총 반별(反別) 23정(町) 3반(反) 3무보(畝步)입니다”며 별지에 도면을 첨부하여 독도의 면적을 시마네현지사 마쓰나가에게 보고하였다.²⁹

시마네현(島根縣) 내무부장(內務部長) 서기관(書記官) 호리 신지는 1905년 4월 11일 강제 어업에 관한 허가 방침 및 어업 종사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보냈다.

‘죽도’는 면적이 협소하여 자칫하면 어장이 황폐해질 염려가 있으니, 경쟁으로 말미암은 남획을 막고 어업을 영속시키겠다는 취지로 허가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많은 인원수가 허가될 수 없었다. 호리는 ‘죽도’를 경영해 온 사람 중 공로의 많고 적음, 사업 계획의 확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할

27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3月7日, 「甲庶16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28 島根縣知事 松永武吉→隱岐島廳, 明治38年(1905)5月3日, 「島根縣地90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29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5月17日, 「甲土4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것을 요구하였다.³⁰ 호리는 최소한 인원에 대한 허가 방침을 정하면서 독도 어업에 종사한 인물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오키도사의 보고서에 따라 독도 어업권 허가의 영향력이 크게 좌우되었다.

그 결과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1905년 5월 6일 ‘죽도’ 강치 관련 일본 어업자에 대한 조사를 시마네현 제3부장(第3部長) 호리 신지에게 보고하였다. 히가시는 4월 11일 농(農) 487호에 따라 ‘죽도’ 강치 어업자의 경영과 공로 등을 조사하였다.

1903년부터 나카이 요자부로, 이구치 류타[井口龍太], 하시오카 도모지[橋岡友次郎], 1904년부터 가토 주조 등이 ‘죽도’에 도항하여 업무에 종사하였다. 1903년 3명은 거의 누가 낚고 못하다고 할 만큼 차이가 없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4년 여름 상경하여 직접 담당자를 상대로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서 ‘죽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다음, 자기에게 대여해 줄 것을 청원하였다. 히가시는 1905년 영토편입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나카이의 공로가 처음부터 컸다고 보고하였다.

‘죽도’의 어업권을 나카이가 독점한다면, 지금까지 ‘죽도’의 경영에 착수한 다른 3명의 투자 설비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히가시는 4명 모두 공동으로 번식과 보호의 방법을 지정하고 일정 연한을 부여하여 영업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표 전에 4명을 불러서 공동 청원서를 대체할 것을 설명하고 지시하였다.³¹ 오키도사 히가시는 나카이 요자부로의 공로를 인정하면서 독도 어업권 관련 4명의 공동 청원서를 계획하였다. 이것은 히가시가 독도 어업권 허가와 관련하여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시마네현 제3부장(第3部長) 호리 신지는 1905년 5월 10일 ‘죽도’ 공동 청원서의 허가 관련 문서를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보냈다. 호리는 5월 6일 을농(乙

30 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隱岐島司 東文輔, 明治38年(1905)4月11日, 「農487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1 隱岐島司 東文輔→第3部長 堀信次, 明治38年(1905)5月6日, 「乙農92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農) 92호를 통해서 강치 어업 허가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고 답변하였다.

제시한 의견대로 나카이 요자부로,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 가토 주조 4명은 공동 원서가 아니면 허가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 호리는 4명에 대하여 공동 원서로 정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³²

시마네현은 ‘죽도’ 어업권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공동 청원에 대한 방침을 정했다. 시마네현 제3부장 호리 신지는 ‘죽도’ 어업권에 대해 오키도사 히가시가 제시한 공동 청원서를 승인하였다. 시마네현과 오키도는 일본 지방 관료가 의도한 방침에 따라 계획적으로 독도 어업권의 참가자를 공동으로 조직하였다.

이러한 시마네현과 오키도사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라 나카이 요자부로, 이구치 류타, 하시오카 도모지, 가토 주조 4명은 1905년 5월 20일 강치 관련 공동 사업으로 ‘해러어업허가원(海獵漁業許可願)’을 시마네현지사(島根縣知事) 마쓰나가에게 제출했다. “어업 구역 : ‘죽도’와 주변. 어구의 수 : 그물 2척. 허가 기간 : 1905년 6월부터 1908년 5월까지 3년간이었다.”³³

나카이를 비롯한 4명은 1905년 5월 20일 구체적인 공동 어업 관련 규약도 제출하였다. 첫째 합동 조직은 정식 합자회사이다. 둘째 사무소는 스키군 사이고정에 설치한다. 셋째 각자의 권리는 아래의 비율에 따른다. 나카이 100분의 40, 이구치 100분의 23, 하시오카 100분의 23, 가토 100분의 14이다. 넷째 위의 비율에 기초하여 각자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익을 배당한다. 다섯째 당국의 명령 규칙에 나와 있지 않은 강치 번식과 보호 방법은 나카이 요자부로가 당국에 제출한 의견을 채용한다. 다만 훗날 그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생길 때는 각자가 서로 의논하여 정한다.³⁴

32 島根縣 第3部長 堀信次→隱岐島司 東文輔, 明治38年(1905)5月10日, 「農685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3 中井養三郎·井口龍太·橋岡友次郎·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5月20日, 「乙農805號 別紙 海獵漁業許可願」,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4 “6. 영업 순익은 총액의 2할을 적립하고 그 나머지를 각자에게 배당한다. 7. 회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나카이 요자부로 주도의 합자회사였다. 즉 나카이의 권리가 40%로 최대였다. 강치 번식과 보호 방법은 나카이 요자부리가 제출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강치 번식과 보호 방법을 변경할 때는 상호 의견을 교환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강치 포획의 변경은 나카이 요자부리의 단독 결정이 아닌 합자회사 회원의 공동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했다. 합자회사는 “당국의 규칙과 명령”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하여 정부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어업 회사를 표방하였다.

오키도사 히가시는 1905년 5월 22일 ‘죽도’ 어업권 관련 허가를 요청하는 문서를 시마네현 제3부장 호리 신지에게 보냈다. 히가시는 4명이 공동 어업을 협정하여 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바로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였다.³⁵ 오키도사 히가시는 ‘죽도’ 공동 어업권 허가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고, 나카이 요자부리를 비롯한 4명에 대한 중재까지 진행하였다.

나카이는 1907년 7월 ‘1905년 죽도 영업 보고’를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정부의 영업 준비 내부 명령을 받은 것은 (1905년) 5월 19일이었다. 회사 설립 준비에 착수한 것은 6월 6일이었다. 실제 현지에 가서 어업을 시작한 것은 6월 9일이었다.”³⁶

현금은 모두 은행에 맡긴다. 8. 이 규약을 기초로 하여 회사의 정관을 만들고 등기를 한다. 9. 당국의 규칙과 명령, 이 규약과 다른 날 규정하는 정관에 배치되거나 혹은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또 언제든지 제명한다.”(中井養三郎・井口龍太・橋岡友次郎・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5月20日, 「乙農805號 別紙 申合規約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5 “‘죽도’ 강치 어업 허가와 관련하여 5월 5일 농(農)685호(號)로 조회하신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 第3部長 堀信次, 明治38年(1905)5月22日, 「乙農805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6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40年(1907)7月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38年(1905)度業務執行顛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그런데 1905년 5월 20일 강치 관련 공동 사업으로 ‘해리어업허가원’이 제출되었다. 오키도사 히가시는 1905년 5월 22일 공동 어업권에 대한 합의를 시마네현 제3부장 호리 신지에게 보냈다.³⁷ 하지만 나카이는 “5월 19일 정부의 영업 준비 내부 명령을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죽도’ 어업권이 오키와 시마네현의 지방 관료가 사전에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오키도와 시마네현의 합작품으로 ‘죽도’ 어업권을 나카이에게 준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였다.

시마네현지사 마쓰나가 타케요시는 1905년 6월 5일 “1905년 5월 20일 청원한 강치 어업 권을 허가하며 감찰 1매를 내려 보낸다”며 강치어업 허가와 감찰 교부 통지서를 공식적으로 보냈다.³⁸ 마쓰나가에 따르면 어업구역은 ‘죽도’ 주변이었고, 어구 수는 그물 2측(側)이었다. 허가 기간은 메이지 38년 6월부터 동 41년 5월까지 3년이었다.

3. 나카이 요자부로와 일본 해군성 독도 망루 건설 참가

나카이 요자부로는 1905년 7월 25일 일본 정부의 ‘죽도’ 측량 관련 지시를 수령

37 隠岐島司 東文輔→島根縣 第3部長 堀信次, 明治38年(1905)5月22日, 「乙農805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38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6月5日, 「島根縣農1926號」, 『竹島貸下・海鹽漁業書類(明治 38 - 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시마네현(島根縣) 총무부장(總務部長)은 오키도청장(隠岐島廳長)이 1951년 9월 10일자로 작성한 독도 조사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다. 오키도청장은 1900년대 나카이의 독도 관련 어업활동을 기록하였다. 오키도청장은 독도를 ‘마쓰시마’로 파악하였는데, 이것은 그만큼 독도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오키도청장에 따르면 어획물은 오키로 수송하여 강치 가족을 가공해 한신(阪神) 지방으로 보냈다. 1909년 물가 인하로 회사 경영이 곤란해져 사업을 중지하였다. 오키도청장은 나카이의 어업 관련 법적 근거를 “오키도사의 관할 아래 ‘죽도’ 어업권 일체를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隠岐島 廳長→島根縣 總務部長, 昭和26年(1951)9月10日, 「總第號外號 別添 總厚1478號」, 『昭和26年度 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이것은 독도 어업권과 관련하여 오키도사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했다며 오키도사 히가시에게 보고하였다. 나카이는 일본 해군성 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는데, 나카이와 일본정부가 ‘죽도’를 경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연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사원을 파견하여 어장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아래 조항의 명령을 시행한다. 해군성과 기타 정부 부서에서 ‘죽도’의 측량 등을 수행할 경우 인부를 동원하여 준비하라”고 나카이에게 지시하였다. 그러자 나카이는 “죽도 강치어장 작업장 청소 건과 관련하여 깨우쳐 일러주신 것에 따라 종업자(從業者)들이 동원할 것입니다”고 답변하였다.³⁹

나카이는 1907년 7월 11일 ‘죽도’에서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죽도어렵해려합자회사’의 독도 어장 감독과 어부는 1905년 일본 해군의 망루 건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나카이는 “1905년 영업 중 ‘죽도’에 제국 군함 하시(橋) 5호가 내항하여 가설 망루 건축 등을 시행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무엇보다도 나카이는 “진자가 사무관, 히가시 도사 이하 일행이 ‘죽도’ 시찰을 할 때, 자신을 포함하여 사원 2명 및 임시 고용 인부 5명과 함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그 ‘중요한 임무’는 바로 일본 해군의 독도 망루 설치에 참여한 것이다. 나카이는 일본 해군의 독도 망루 건설에 참여하였다.

나카이에 따르면 1905년 어렵이 끝날 무렵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 타케요시가 왔었다. 어장 감독을 맡은 사원은 모든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야와카 켄지(やわか けんじ)를 고용하였다. 많은 수의 인부를 이끌며 망루 건축원과 망루원 사이에서 시종 원만하고 화목한 우정을 유지하였다.⁴⁰

나카이는 독도에서 해군의 망루 불하 등의 일본 정부와의 특별한 관계를 주

39 中井養三郎—隠岐島司 東文輔, 明治38年(1905)7月25日, 「乙衛26號 別紙 御受書」,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40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40年(1907)7月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38年(1905)度業務執行顛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장하였다. 나카이는 “죽도 망루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의 특별한 은혜에 힘입어 마이즈루 진수부(舞鶴鎮守府)로부터 불하를 받았다”고 기록하였다. 나카이에 따르면 해군이 쓰던 물건이 ‘죽도’에 남았는데, 모두 정식으로 시마네현 지사에게 인계되었고, 나카이가 물건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나카이가 일본 정부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나카이와 정부와의 관계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나카이에 따르면 관계 당국의 관리는 ‘죽도’ 전체를 빌리고 지선과 수면의 배타적 이용권의 필요성도 인정하였다. 나카이는 5년 동안 기한을 정해서 ‘죽도’ 전체 대여에 관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나카이는 합법적인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선과 수면의 배타적 이용에 대해서 머지않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⁴¹

결국 나카이는 1906년 3월 진자이 사무관과 히가시 도사 이하 일행의 시찰 당시 독도의 다양한 독점권을 요구하여 각종 혜택을 받았다. 그 내용은 “가설 망루를 불하받는다. ‘죽도’ 섬 전체를 차용한다. 지선과 수면을 전용한다. 어렵 기간을 전후하여 어장의 감수를 철저하게 한다” 등이었다.⁴²

IV.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사본 문제와 ‘고시’의 유무

현재 시마네현청에 따르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45년 8월 시마네현(島

41 (1907)7월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39年(1906)度業務執行顚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나카이 요이치(中井養一)는 1905년 세워진 해군 망루를 그의 아버지 “나카이 요자부로가 불하받아 빚물을 모으는데 이용했다”고 기록하였다. (アジア局2課, 昭和28年(1953)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中井養一口述書』, 『昭和28年度 渉外關係綴(竹島關係綴)』, 44쪽(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廣報文書課))

42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40年(1907)7월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39年(1906)度業務執行顚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根県) 청사가 전소될 때 함께 원본도 소실되었다.⁴³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소장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 섬에서 서북으로 85해리(湮) 떨어진 곳에 있는 도서를(島嶼ヲ) ‘죽도’라 부르며 지금부터 본 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정해짐.”⁴⁴

그런데 시마네현 현청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일부 인쇄본은 ‘島嶼ヲ’(일본어 ‘오’는 한국어로 ‘를’)가 ‘島嶼ヲ’(일본어 ‘라’는 어조를 고르는 상태 또는 근처)로 표기되었다.⁴⁵ 원본이 없다면 인쇄본의 내용도 서로 다른 글자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 외무성은 “실제로 시마네현 고시는 메이지(明治) 38년 2월 22일자 시마네현현보(島根縣報)에 게재되어 있으며, 1905년 2월 24일자 『산인신문(山陰新聞)』 제5912호는 위의 공시가 있었던 사실 및 내용을 보도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⁶

그럼에도 현재 1905년 『시마네현현보(島根縣報)』는 존재하지 않는 문서이다. 또한 『산인신문』 제5912호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告示) 제40호’를 직접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었다.

43 『東亞日報』, 2013.11.9 ; 『오마이뉴스』, 2014.1.6.

44 島根縣隱岐島廳, 「島根縣告示40號」, 明治38年(1905)2月22日,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 섬에서 서북으로 85해리(湮) 떨어진 곳에 있는 도서를 ‘죽도’라 부르며 지금부터 본 현 소속 오키 도사의 소관으로 정해졌으니, 이런 내용을 잘 헤아리기 바람. 明治 38년 2월 22일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松永武吉).”(島根縣知事 松永武吉-隱岐島廳, 明治38年(1905)2月22日, 「島根縣庶11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45 한국 외무부 『독도문제개론』에는 ‘島嶼ヲ’로 표기되었다.(외무부 정무국, 1955, 『독도문제개론』, 외교문제총서 11호 :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편, 2012 재발행, 『독도문제개론』, 30쪽)

46 外務部編, 1977, 『獨島關係資料集』(I) : 往復外交文書(1952~76), 246쪽.

일본 국회와 시마네현 도서관을 살펴보면 시마네현 현립도서관(鳥根県立図書館)은 시마네현에서 편찬하는 1913년 『시마네현고시고유』(鳥根県告示告諭), 1916년 『시마네현보』, 1917년부터 1년에 2권씩 발간된 『시마네현보』를 소장하였다.⁴⁷ 일본 국립국회도서관(国立国会図書館)은 1886년 11~12월 발간된 『시마네현공보』(鳥根縣公報) 제1 - 16호, 1887년 4월부터 1888년 3월까지 『시마네현공보』를 소장하였다.⁴⁸ 결국 현재 『시마네현공보』는 1880년대 발간되었고, 『시마네현보』는 1910년대 발간되었다. 1905년 전후 『시마네현공보』 또는 『시마네현보』는 발간된 사실조차도 불분명하고, 일본 국회도서관과 시마네현립도서관에 소장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이 주장하는 『산인신문』⁴⁹을 살펴보면 『산인신문』은 시마네현 마쓰에시(松江市)에 사유본점(白湯本店) 58번지(番地)소재하였고, 1882년(明治15年)에 창간되었고, 1892년 3종(種) 우편물(郵便物)로 인가받았는데, 4면으로 구성되었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간되었다.

47 <https://www2.library.pref.shimane.lg.jp>

48 <https://ndlonline.ndl.go.jp>

49 1882년 5월 1일 산인신문사창립(山陰新聞社創立), 1901년 11월 3일 소요신문사창립(松陽新報社創立, 松陽新聞), 1942년 1월 1일 소요신문사(松陽新報社)와 산인신문사(山陰新聞社)가 합병하여 『시마네신문』(鳥根新聞)으로 변경되었다. 1973년 현재의 명칭인 『산인중앙신문』(山陰中央新報)으로 변경되었다. (<http://www.sanin-chuo.co.jp>) 1905년 전후 산인신문(山陰新聞)의 형태는 사설(社說)과 논설(論說), 잡보(雜報), 소설(小說), 동경특발전보(東京特發電報), 소현(小絃), 강담(講談), 광고(廣告), 물가(物價) 등으로 구성되었다. 잡보는 1면의 잡보와 2면의 잡보로 구별되었다. 1면은 사설과 잡보로 구성되었는데, 잡보에는 주로 칙어(勅語)와 조칙(詔勅)과 칙령(勅令), 황실동정, 중의원의사(衆議院議事)와 법안(法案)과 법률안(法律案), 국내외 주요 정치·경제·외교, 러일전쟁 주요 전투, 해외 소식 등을 보도하였다. 2면은 주로 동경특발전보, 잡보, 서임(敍任)과 사령(辭令), 소현(小絃)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잡보에는 국내외 일반 소식, 러일전쟁 일반 소식, 시마네현 주요 소식 등을 보도하였다. 3면은 현지사 마쓰나가(松永武吉) 등의 시마네현 관련 인물 소식, 시마네현을 비롯한 국내외 일반 소식, 상업등기공고(商業登記公告), 광고(廣告), 물가(物價) 등으로 구성되었다. 4면은 강담(講談), 광고, 신간소개(新刊紹介) 등으로 구성되었다.

『산인신문』 1905년 2월 24일자 2면 ‘잡보(雜報)’ 중 ‘현참사회(縣參事會)’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는데, 시마네현 참사회(參事會)는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어 추가예산과 부동산처분을 의결하고 폐회하였다.⁵⁰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시마네현 참사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산인신문』은 1905년 2월 24일자 2면 ‘잡보’ 중 ‘오키의 신도(隱岐の新島)’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북위 37도 9분 3초 동경 131도 55분 오키섬 거리 서북 85리(浬)에 있는 도서를 죽도로 칭(稱)하고, 지금부터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하게 되고, 현지사(縣知事)로부터 고시(告示)되었고, 우도서(右島嶼)는 주위 15 정위(町位)의 2도(島)로 구성되어 주위에는 무수(無數)의 군도산재(群島散在)해서, 해협(海峽)은 선박(船)의 정박에 편리하고 초목은 살아있지만 수목은 없다.”⁵¹

『산인신문』을 살펴보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라는 직접적인 명칭과 ‘고시’가 없었다. 단지 “시마네현지사(島根縣知事)로부터 고시가 있었고, 오키의 새로운 섬인 죽도가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해졌다”는 보도였다.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마쓰에시고시(松江市告示)’처럼 제호, 제목, 본문이 산인신문에 실린 적이 없다. 이것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공식적으로 고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영토 관련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마네현 참의회와 논의된 적도 없었다.

『산인신문』의 ‘고시’ 형태를 살펴보면, 『산인신문』 2월 22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고시 제15호’라는 제목으로 날짜까지(明治 38年 2月 20日) 실었는데, 화제에 따른 무료치료 관련 내용이었다. 산인신문 2월 23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

50 『山陰新聞』, 1905.2.24.

51 『山陰新聞』, 1905.2.24. 최철영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황제의 칙령이 아닌 하위의 각의결정의 형식으로 독도를 편입하여 관보게제 부담을 회피하고, 시마네현 행정 명령으로서 훈령을 내려 현의 고시를 통해 독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만을 마련한 것이다.(최철영, 2018, 「1905년 일본 정부 각의결정의 무주지선점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160쪽)

고시 제16호'(明治 38年 2月 21日)와 '마쓰에시고시 제17호'(明治 38年 2月 21日)가 실렸는데, 소유자의 인도(引渡)에 관한 청구(請求) 관련 내용이었다. 산인신문 2월 25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고시 제18호'라는 제목으로 날짜까지(明治 38年 2月 24日) 실었는데, 징병검사(徵兵檢査) 장소와 일시에 관한 내용이었다.⁵²

『산인신문』 2월 18일자 3면에는 광고 중 '공고(公告)'라는 형식으로 시마네현의 토제4호(土第八號) 방파제수선공사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였다. 『산인신문』 2월 26일자 3면에는 광고 중 '공고'라는 형식으로 시마네현의 토제8호(土第八號) 도로수선공사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였다. 결국 시마네현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행위를 '공고'라는 형식으로 『산인신문』을 통해서 발표하였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松永武吉)는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의 발표 날짜인 2월 22일 전후 시마네현에 없었다. 『산인신문』 2월 17일자 2면에 따르면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24일부터 개최되는 지방관회의(地方官會議) 참석(列席)을 위해서 19일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추가예산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정된 28일 시마네현 회의가 연기되었다.⁵³ 『산인신문』 2월 19일자 2면에 따르면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지방관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발하였다.⁵⁴ 『산인신문』 2월 20일자 2면에 따르면 23일 도쿄에 지방관은 소집되

52 산인신문 2월 3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고시 제9호'(松江市告示第九號)라는 제목으로 날짜까지(明治 38年 2月 1日) 실었는데, 송강시내(松江市内) 각구회의원(各區會議員) 당선자 명단이었다. 산인신문 2월 6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고시 제 10호'(松江市告示第十號)라는 제목으로 날짜까지(明治 38年 2月 4日) 실었는데, 송강사회(松江市會)의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에 대한 의결이었다. 산인신문 2월 19일자 2면에는 '마쓰에시고시 제13호'(松江市告示第十三號)라는 제목으로 날짜까지(明治 38年 2月 19日) 실었다. 산인신문 2월 20일자 3면에는 '마쓰에시고시 제14호'(松江市告示第十三號)라는 제목으로 날짜까지(明治 38年 2月 18日) 실었다.

53 『山陰新聞』, 1905.2.17.

54 『山陰新聞』, 1905.2.19.

고, 24일부터 내무성에서 개최되어 재정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⁵⁵ 『산인신문』 2월 27일자 1면에 따르면 지방관회의가 24일 오전 10시 내무성에서 개최되었고, 요시카와 아키마사[芳川顯正] 내무대신의 주요 연설 내용이 보도되었다.⁵⁶ 『산인신문』 3월 1일자 3면에 따르면 마쓰나가는 도쿄에서 시마네현 상무회장과 함께 시마네현 출신 부상자(傷病兵)를 위문하였다.⁵⁷ 『산인신문』 3월 4일자 2면에 따르면 지방관회의는 3월 1일에도 개최되어 지방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⁵⁸ 적어도 마쓰나가는 1905년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시마네현에 없었다.⁵⁹ 이것은 마쓰나가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필기체 문서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당시 일본정부의 『관보(官報)』를 살펴보면, 1905년 2월 22일 일본 『관보』 중 고시는 내무성고시제14호(內務省告示第十四號, 二月二十二日), 대장성고시제41호(大藏省告示第四十一號, 二月二十二日) 등의 정부 내각의 고시문이 수록되었고, 지방행정(地方行政)은 야마구치현(山口縣)의 임시현회(臨時縣會)가 소개되었다.⁶⁰ 1905년 2월 23일 관보 중 고시는 내무성고시제15호(內務省告示第十五號, 二月二十三日), 대장성고시제43호(大藏省告示第四十三號, 二月二十三

55 『山陰新聞』, 1905.2.20.

56 『山陰新聞』, 1905.2.27.

57 『山陰新聞』, 1905.3.1.

58 『山陰新聞』, 1905.3.4.

59 ‘시마네현 고시 제39호’는 공보(公報)와 현보(縣報) 관련 내용(警視廳 東京府 公報 등)으로 1905년 2월 19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시마네현 고시 제41호’는 조합사무소(組合事務所) 관련 내용(塩田嘉戸浦魚業), ‘시마네현 고시 제42호’는 명부취소 관련 내용(産姿名簿)으로 모두 1905년 2월 24일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60 大藏省印刷局, 明治三十八年二月二十二日 水曜日, 「告示」, 『官報』(国立国会図書館) 일본 관보(官報)는 법률(法律), 칙령(勅令), 훈령(訓令), 고시(告示), 서임급사령(敍任及辭令), 궁정록사(宮廷錄事), 전보(戰報), 휘보(彙報), 제국의회(帝國議會), 지방행정(地方行政), 공사관급영사관보고(公使館及領事館報告), 관상(觀象), 광고(廣告) 등으로 구성되었다.

日), 체신성고시제67호(遞信省告示第六十七號, 二月二十三日), 농상공부고시 제46호(農商務省告示第四十六號, 二月二十三日) 등의 정부 내각의 고시문이 수록되었다.⁶¹ 『관보』에는 시마네현의 소식 및 ‘죽도’ 관련 고시가 수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1905년 5월 29일 울릉도와 독도 주변 러일해전 소식을 공지하며 독도에 대한 명칭을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ールド岩)’이라고 공식적으로 『관보』에 게재하였다. 당시 일본 관보는 대장성인쇄국(大藏省印刷局)에서 발간되었다. 이것은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일본 정부조차도 인지하지 못했고, 시마네현이 고시의 ‘공개 발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하였다.⁶² 또한 일본 정부는 1905년 5월 30일 울릉도 주변 러일해전 소식을 공지하며 독도에 대한 명칭을 다시한번 ‘리양코루도암’이라고 공식적으로 『관보』에 게재하였다.⁶³ 『관보』 내용을 살펴보면 일본 해군성(海軍省)이 러일해전 공식 보고에도 독도를 ‘리양코루도암’으로 기록했는데, 이것은 해군성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존재를 몰랐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공개 발표’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본 정부는 1905년 6월 5일 『관보』 중 전보(戰報)에서 러일해전과 러일전

61 大藏省印刷局, 明治三十八年二月二十三日 木曜日, 「告示」, 『官報』(国立国会図書館)

62 “연합함대의 주력은 27일 이래 잔적(殘敵)에 대해서 추격을 속행해서 28일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ールド岩) 부근에서 적함 ‘니코라이’ 제(第)1세(戰艦), ‘아리요루’(戰艦), ‘세니아왕’(裝甲海防艦), ‘아뿌라키싱’(裝甲海防艦) 및 ‘이드무루도’(巡洋艦) 등으로 구성된 일군(一群)을 만나서 공격했다.”(大藏省印刷局, 明治三十八年五月二十九日 月曜日, 「戰報」, 『官報 號外』(国立国会図書館))

63 “일본해 해전 속보(日本海海戰續報), 일본해해전에 관한 그 후 접수(接手)한 연합함대사령장관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의 보고는 좌와 같다.(海軍省) 30일 오후 저전(著電), 연합함대의 대부는 전에 전보한 것과 같이 28일 오후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ールド岩) 부근에서 패잔적함대(敗殘敵艦隊)의 추격을 포위공격하고 그 항복(降伏)을 받아 추격을 중지하였다.”(大藏省印刷局, 明治三十八年五月三十日 火曜日, 「戰報」, 『官報 號外』(国立国会図書館))

쟁 소식을 공지하면서 ‘리양코루도암’을 ‘다케시마(竹島)’로 정정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1905년 5월 일본 해군성과 대장성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다케시마’ 용어를 알지 못했고 공식적으로 독도를 ‘리양코루도암’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관보』가 게재된 이후 5일이 지나서야 대장성은 ‘리양코루도암’을 ‘다케시마’로 정정하였다.⁶⁴ 결국 이것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공개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성과 대장성도 파악하지 못했고, 단지 시마네현의 관료와 관련 인물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2월 『신문』, 『현보』, 『관보』 등에 공식적으로 게재된 적이 없었다. 더구나 ‘고시’에 서명을 해야 할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1905년 2월 22일 전후 도쿄 출장으로 시마네현에 없었다. 결국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일본인 소수만 알고 있었던 ‘고시’되지 않은 종이에 불가하였다.

V. 맺음말

나카이는 독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일본수로지』에 기초해서 기록하였다. 이것은 수산업자 나카이가 해군성의 『일본수로지』까지 입수하여, 일본 해군수로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독도를 인식하고 소유하려는 사실을 알려준다. 더구나 나카이가 1904년 독도에서 망루 건설을 함께 작업한 인물은 바로 일본 육군이였다. 나카이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와 자신의 애국심을 동일하게 연결시켰는데,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촉구하면서 독도의 어업을 독점하게 해 달라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었다. 나카이는 기본적으로 독도를 ‘무인도’라고 설정

64 “정정(訂正) : 지난달 29일 관보 호외 본란(本欄) 일본해해전 전보의 항(項) 기삼(其三) 및 동(同) 30일 동일(同日) 일본해 해전 속보 항(項) 기오(其五) 중(中)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ルド岩) 모두 다케시마(竹島)로 정정함.”(大藏省印刷局, 明治三十八年六月五日 月曜日, 『戰報』, 『官報 號外』(国立国会図書館))

하고 독도 편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까지 파악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이자 한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통감부와의 협의 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나카이가 처음에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라는 지리적 개념, 한국의 영토라는 영역적 개념 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관리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문서를 상호 주고 받았다. 특히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독도의 새로운 명칭 ‘죽도’까지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하였다. ‘죽도’ 명칭 사용은 바로 나카이의 편입 요청에 따른 히가시의 결정이었다.

나카이는 독도 불법 편입 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다. 첫째 농상공부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眞]는 반드시 ‘죽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주었다. 둘째 해군성 수로부장(水路部長) 기모쓰키는 나카이에 단정을 제공하여,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시켰다. 셋째 일본외무성 정부국장 야마자 엔지로는 러일전쟁의 상황에서 시급히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望場)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여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고, 나카이의 청원서를 외무성(外務省)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 내무성 당국자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압초”, “일본의 한국 병탄(併呑) 야심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 불법 편입이 ‘일본의 한국 강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기준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마네현청에 따르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함께 원본도 소실되었다. 1905년 관찬문서 『공문류취(公文類聚)』가 필기체로 작성되었고, 현재 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소장 1905년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의 표지는 필기체로 작성되었다. 그렇다면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원본은 당연히 필기체로 작성

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시마네현청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인쇄체 형태로 작성되었고, 심지어 시마네현 지사의 도장과 서명도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시마네현 지사 마쓰나가는 최소 1905년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쿄 출장 때문에 시마네현에 없었다. 이것은 원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원본 문서가 없다면 그 문서에 기반을 둔 일본의 증거력도 국제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지금까지 실제로 일본의 지방과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고시’ 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결국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원본이 없는 사본으로만 존재하고, 사본을 인정하더라도 시마네현의 소수의 관료 및 ‘죽도’의 어업자만 공유한 문서에 불과하였다.⁶⁵

65 『공문류취』 문서에는 동경부고시(東京部告示) 제58호(第五十八號)는 실려있지만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없었다. 일본정부는 1898년 미나미토리섬(南鳥島) 편입을 참고하여 ‘죽도’ 편입의 제도적인 방법을 진행하였다. 일본정부는 동경부고시제 58호 메이지31년(1898) 7월 24일 미나미토리섬(南鳥島)을 오가사와라섬(小笠原島)의 도청에 편입시켰다.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2013, 『일본 자료로 보는 독도, 서울』, 국회도서관.
- 堀和生, 1985, 「一九〇五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朝鮮史研究會論文集』24.
- 김수희, 2010, 「나카이 요자부로와 독도어업」, 『인문연구』58.
- _____, 2014,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와 독도 강점」, 『독도연구』17.
- 김영, 2017,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 가네유키(肝付兼行)에 관한 고찰」, 『한일군사문화연구』23.
- 김화경, 2011, 「동해 해전과 독도의 전략적 가치」, 『대구사학』103.
-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 2013,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선인.
- 박현진, 2013, 「17세기 말 울릉도쟁계 관련 한·일 ‘교환공문’의 증명력」, 『국제법학회는 총』58-3.
- 외무부 정무국, 1955, 『독도문제개론』, 외교문제총서 11호(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편, 2012 재발행, 『독도문제개론』).
- 유미림, 2013, 『우리 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 지식산업사.
- 崔長根, 2008, 「竹島經營者中井養三郎氏立志傳의 해석오류에 대한 고찰: 죽도문제 연구회의 『최종보고서』비판」, 『일어일문학』40.
- 최철영, 2018, 「1905년 일본 정부 각의결정의 무주지선점론」,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 쿠보이 노리오, 2017, 『독도의 진실』, 부산민족학교.
- 한철호, 2013, 「일본 수로부의 오키 측량과 독도 인식」, 『한국근현대사연구』65.
- 허영란, 2006,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동북아역사논총』13.
- Web竹島問題研究会, 平成20年(2008)7月,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 明治三十八年, 『公文類聚』, 第二十九編, 卷一(國立公文書館所藏: <http://www.archives.go.jp>)
- アジア局2課, 昭和28年(1953)8月, 「(秘) 竹島漁業の變遷 中井養一 口述書」, 『昭和

28年度 涉外關係綴(竹島關係綴)』, p.44(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4月13日, 「竹島貸與請願」,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隱岐島司 東文輔, 明治37年(1904)11月15日, 「庶1073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隱岐島司 東文輔, 明治38年(1905)4月11日, 「農487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島根縣 第3部長 堀信次-隱岐島司 東文輔, 明治38年(1905)5月10日, 「農685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島根縣 總務部長-隱岐島 廳長, 昭和26年(1951)9月5日, 「總第號外 記」,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島根縣隱岐島廳, 「明治36年 調查 營業人 中井養三郎」,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_____, 「明治37年 調查 營業人 中井養三郎」,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_____, 「調查書 加藤重造」,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_____, 從明治參拾八年, 「事業經營概要」, 『行政諸官廳往復雜書類』(島根縣總務科所藏)

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6月5日, 「島根縣農1926號」, 『竹島貸下・海驢漁業書類(明治 38-41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島根縣知事 松永武吉-隱岐島廳, 明治38年(1905)5月3日, 「島根縣地90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島根縣知事 恒松安夫-地方自治廳 次長・外務省 情報文化局 特別資料課, 昭和27年(1952)5月12日, 「總694號 別添 竹島(舊松島)をめぐる諸問題」,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隱岐島 廳長-島根縣 總務部長, 昭和26年(1951)9月10日, 「總第號外號 別添 總厚1478號」,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 內務部長 書記官 堀信次, 明治37年(1904)11月30日, 「乙庶152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 第3部長 堀信次, 明治38年(1905)5月22日, 「乙農805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3月7日, 「甲庶16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隱岐島司 東文輔→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年(1905)5月17日, 「甲土4號」,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隱岐島司 東文輔→第3部長 堀信次, 明治38年(1905)5月6日, 「乙農92號」, 『(秘)竹

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日本外務省, 昭和27年(1952)2月2日, 「(極秘) 日本海の竹島について」, 『昭和26年度

涉外關係綴』(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竹島漁獵合資會社 代表社員 中井養三郎, 明治40年(1907)7月11日, 「會社營業報告

別紙 明治38年(1905)度業務執行顛末」,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中井養三郎, 明治37年(1904)9月29日, 「庶1073號 別紙 リヤンコ島領土編入并ニ貸

下願」,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中井養三郎・井口龍太・橋岡友次郎・加藤重造→島根縣知事 松永武吉, 明治38

年(1905)5月20日, 「乙農805號 別紙 海驢漁業許可願」, 『(秘)竹島』(島根縣總務

部總務課所藏)

中井養三郎→隱岐島司 東文輔, 明治38年(1905)7月25日, 「乙衛26號 別紙 御受書」,

『(秘)竹島』(島根縣總務部總務課所藏)

일본정부의 독도 불법 영토편입의 과정 및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고시'의 유무

김영수

나카이 요자부로(野澤 次郎)는 독도의 위치와 명칭에 대해서 『일본수로지』에 기초해서 기록하였다. 이것은 나카이가 해군성의 『일본수로지』까지 제공받아, 정부와 개인이 합작하여 독도를 인식하고 소유하려는 사실을 알려준다. 더구나 나카이가 1904년 독도에서 망루 건설을 함께 작업한 인물은 바로 일본 육군이었다. 나카이는 영토를 확장하려는 제국주의와 자신의 애국심을 동일하게 연결시켰는데,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을 촉구하면서 독도의 어업 독점해 달라는 자신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나카이는 기본적으로 독도를 '무인도'라고 설정하고 독도 편입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까지 파악하였다.

나카이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과정을 다음과 같았다. 일본의 시마네현과 오키도의 관리는 독도의 불법 영토편입과정에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문서를 주고 받았다. 특히 오키도사 히가시 분스케는 독도의 새로운 명칭 '죽도'까지 작명할 정도로 깊숙이 개입하였다. '죽도' 명칭 사용은 바로 나카이의 편입 요청에 따른 히가시의 결정이었다.

나카이는 독도 불법 편입 과정에서 정부 관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다. 첫

째 농상공부 수산국장 마키 나옴사[牧朴眞]는 반드시 ‘죽도’가 한국령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의를 주었다. 둘째 해군성 수로부장 기모쓰키는 나카이에게 단정을 제공하여, ‘죽도’가 완전히 무소속인 것을 확인시켰다. 셋째 일본외무성 정무국장 아마자 엔지로는 러일전쟁의 상황에서 시급히 독도를 영토로 편입할 필요가 있으며, 독도에 망루(望臺)를 세우고 무선 또는 해저 전선을 설치하여 러시아함대를 감시하고, 나카이의 청원서를 외무성(外務省)에 회부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 내무성 당국자는 러일전쟁 이후 “한국령의 의심이 있는 암초”, “일본의 한국 병탄(併呑) 야심이 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일본 스스로 독도 불법 편입이 일본의 한국 강점의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이자 한국의 영토, 독도에 대한 통감부와의 협의 등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나카이가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라는 지리적 개념, 한국의 영토라는 영역적 개념 등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현재까지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기준으로 일본의 독도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시마네현청에 따르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가 전소될 때 함께 원본도 소실되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당시 필기체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현재 시마네현청의 고시 40호는 인쇄체 형태이다. 이것은 원본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원본 문서가 없다면 그 문서에 기반을 둔 일본의 증거력도 국제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주제어: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 히가시 분스케[東文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울릉도, 독도, 리양코도

ABSTRACT

Incorporation of Japan's Dokdo into Illegal Territory and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40'

Kim Youngsoo

In 1904, Nakai Yozaburo worked with the Japanese army to build a watchtower on Dokdo. Nakai linked his patriotism with the imperialistic ambition for territorial expansion, expressing his desire to monopolize the Dokdo fisheries, while urging Japan to incorporate Dokdo. Basically, Nakai defined Dokdo as “uninhabited” and was aware of the procedural problems of the Dokdo incorporation.

In this context, such a chaotic circumstance was fundamentally caused by the scheme of the Shimane Prefecture Office which attempted to incorporate two Korean islands in the East Sea, Dokdo and Ulleungdo, into Japanese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this prefecture. However, when it was confirmed as a historical fact that Ulleungdo has been part of Korean territory; the Shimane Prefecture Office tried to have Dokdo under its jurisdic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the prefecture office intentionally created the confusion surrounding the names of Dokdo and Ulleungdo around 1905.

In conclusion, Japanese occupation of Dokdo was closely related to the Russo-Japanese War, which broke out in February 1904. The Japanese government illegally incorporated Dokdo into its territory in February 1905, before the end of the Russo-Japanese War. The last naval sea fight, the Battle of Tsushima, broke out in the sea near Dokdo. The Japanese Navy completed the watchtower construction in Dokdo in August 1905. On top of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provided Nakai with a special treatment of granting him the watchtower.

To date, Japan has been advocating for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on the basis of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 40." According to the Shimane Prefecture Office,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 40" was lost in August 1945 when the white hall was burned down.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 40" was handwritten in 1905 when it was first created. However, the currently available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 40" is in a printed form. This raises the possibility that not only did the original document disappear, but also its copy has been manipulated. In addition,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 40" should be examined internationally based on the document, unless its original copy is available.

Keywords: Nakai Yozaburo 中井養三郎, Higashi Bunsuke 東文輔, Dokdo, Ulleungdo, Ryangko Shima, "Shimane Prefecture Notification No. 40"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박병섭 | 일본 竹島=독도연구넷

- I. 머리말
- II. 일본이 발명한 고유영토론
- III. 「일본정부견해」에 대한 검증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일본 외무성은 팸플릿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10포인트』로 약칭)를 12개국 언어로 작성하고,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분명히 일본국 고유의 영토입니다”¹라고 주장한다. 고유영토의 근거로써 『10포인트』는, “이 기간(17세기) 중에 오키[隱岐]에서 울릉도에 이르는 길에 위치한 다케시마[독도]는 항행의 목표지점으로서, 배의 중간 정박지로서 또한 강치나 전복 잡이의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여 일본은 늦어도 에도[江戸]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²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조선 땅인 가능성이 있다고 본 독도를 단지 자연스럽게 이용했던 것이 왜 일본은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도 없다. 이는 논리의 비약이며,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현상대로라면 외무성 견해는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다”³고 지적한다.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반세기 전에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보낸 「일본정부견해」 외에는 없다. 한·일 양국 정부는 1953년부터 1965년까지 4번에 걸쳐 독도 영유권에 관한 논쟁을 벌였는데 그때 일본정부는 고유영토의 근거라고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⁴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다케시마[竹島]는 기본적으로 울

* 투고: 2018년 8월 13일, 1차 심사 완료: 2018년 11월 13일, 재심사 완료: 2018년 11월 21일, 게재 확정: 2018년 11월 26일

1 일본 외무성, 2014,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 2쪽.

2 일본 외무성, 2014, 위의 책, 8쪽.

3 池内敏,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62쪽.

4 「일본정부견해1」의 날짜는 1953.7.13, 「일본정부견해2」는 1954.2.10, 「일본정부견

릉도를 가리키며,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를 가리킨다.

- ① 1681년 요나고[米子] 조닌[町人] 오야[大谷]가 에도 막부(幕府)에 제출한 「청서(請書)」에 따르면, 오야 및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1656년 이전에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의 주선으로 막부에게서 마쓰시마(독도)를 배령해 강치잡이를 조금씩 하였다. 이는 막부의 ‘마쓰시마 도해면허’ 아래 행해졌으므로 일본은 마쓰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것이다.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실제로 마쓰시마를 경영한 것은 많은 자료에서 분명하다.
- ② 1695년 돗토리번(鳥取藩)이 막부로 제출한 「회답서」에 어민들이 다케시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쓰시마에서 전복을 조금 채취했다고 기록되었다.
- ③ 1696년 돗토리 번주가 막부로 제출한 「각(覺)」에 어민들이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하였다고 기록되었다.
- ④ 1720년대 돗토리번이 막부로 제출한 「다케시마도[竹島圖]」에 마쓰시마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며, 일본은 마쓰시마를 잘 인지하고 있었다.
- ⑤ 1724년 돗토리번이 막부로 제출한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松島・竹島の圖]’는 일본인의 마쓰시마 경영과 그 인식의 정확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⑥ 1741년 오야가 나가사키봉행[長崎奉行]에게 제출한 「구상서」, 이를 「일본정부 견해2」는 영유권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 ⑦ 1667년 사이토 아무개[齋藤某]가 편찬한 『인슈(온슈)⁵시청합기(隱州視聽合

해3」은 1956.9.20, 「일본정부견해4」는 1962.7.13이다. 서인원은 아래 논문에서 「일본정부견해3」의 날짜를 1954.9.25, 「일본정부견해4」의 날짜를 1959.1.7이라고 썼으나, 이들은 「한국정부견해2」 및 「한국정부견해3」의 날짜이며 잘못된 것 같다. 서인원, 2018,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장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15호, 35쪽. 한편 「일본정부견해」 및 「한국정부견해」의 전문은 외무부, 1977, 『왕복외교문서(1952-1976)』 및 外務省, 『日韓外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竹島問題(公開文書番号 910, 발간 연도는 불명)에서 공개되고 있다.

- 5 ‘隱州’의 읽기는 ‘因州’와 구별하기 위해서인지, 아래 문헌에 따르면 에도시대에는 ‘온슈’라고 읽었다. 油井宏子, 2009, 『江戸時代&古文書虎の巻』, 柏書房, 105쪽.

記)』에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일본 서북의 한계라고 기록되어 있다.

⑧ 1751년 기타조노 쓰안[北園通菴]의 『다케시마도설[竹島圖說]』에 ‘오키국 마쓰시마’라고 기록되었다.

⑨ 1801년 야다 다카마사[矢田高當]의 『장생다케시마기[長生竹島記]』에 마쓰시마는 본조(本朝) 서해 끝이라고 기록되었다.

⑩ 1775년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일본여지로정전도(日本輿地路程全圖)」에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다.

⑪ 1804년 곤도 모리시게[近藤守重]의 『변요분계도고(邊要分界圖考)』에 마쓰시마가 그려져 있다.

⑫ ‘텐포[天保]다케시마일건’ 때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1836)에 마쓰시마로 도향한다는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도향하는 방법이 있다는 글이 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문제가 없었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는 고유영토의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들 중에서 ①, ③, ⑦~⑪은 당시 외무성 직원이었던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지은 『다케시마의 영유[竹島の領有]』(1953)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견해」의 역사 분야는 주로 가와카미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했던 것이다. 이런 「일본정부견해」가 제시한 자료들에 대해 「한국정부견해」는 단지 ⑦『인슈시청합기』의 오독을 지적했을 뿐이었다. 한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 및 논쟁에 관해서는 후술하겠지만 개략은 다음과 같다.

①오야의 「청서」 자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없다. 단지 「청서」를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주장한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에 대해 호리 가즈오[堀和生]가 지지했지만,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이케우치 사토시 등이 부정적으로 보았다. ②돗토리번의 「회답서」에 관해서는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이케우치 사토시 등이 「일본정부견해」 및 가와카미의 주장을 비판했다. ③돗토리 번주의 「각」은 이 안에 “마쓰시마는 어느 지방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라는 글이 있는데, ‘어느 지방’은 ‘돗토리번의 어느 지방’인지, ‘일본의 어느 지방’인지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 ④돗토리번의 「다케시마도」는 박병섭이 분석했지만, 일본정부가 의도한 지도와 다를 수도 있다. ⑤「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에 관한 분석은 거의 없다. ⑥나가사키봉행에 제출한 오야의 「구상서」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가 약간 언급했다. ⑦『인슈시청합기』에 관해서는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가 「일본정부견해」를 지지했으나, 이를 이케우치 사토시가 철저히 반박했다. ⑧기타조노 쓰안의 『다케시마도설』에 대한 검토는 거의 없다. ⑨야다 다카마사의 『장생다케시마기』에 관해서는, 자료의 편찬 의도에 관한 권정의 연구나,⁶ 희문의 해석을 통해 편자의 의도를 살피는 권혁성의 연구가 있으나,⁷ 이들은 「일본정부견해」를 논하는 것이 아니다. ⑩「일본여지도정전도」 및 ⑪곤도 모리시게의 「변요분계도고」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거의 없다. ⑫하치에몬의 판결문에 대한 분석은 없지만, 이에 관한 「일본정부견해」를 이케우치 사토시가 비판했다.

이처럼 일본정부가 제시한 자료에 대해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진 자료는 12개 중 ②「회답서」와 ⑦『인슈시청합기』 등 2개뿐이며,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일본정부견해」의 고유영토론에 대한 분석이나 비판이 미흡함은 자명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을 비판하는 글은 많이 있으나,⁸ 이들은 일본정부가 제시한 고유영토론의 자료에 대해서는 2~3개 자료에만 반론했을 뿐이다. 그런데 영유권 논쟁에 있어서는 우선 상대방의 주장을 직

6 권정, 2014, 「18세기말 오키도(隠岐島)의 죽도전승」, 『일본어문학』 65집, 241~260쪽.

7 권혁성, 2014, 「『長生竹島記』의 戲文」, 『일본어교육』 69집, 245~264쪽.

8 서인원, 2018, 앞의 글; 박진오, 2014,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호, 161~176쪽;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독도연구』 16호, 209~240쪽; 김호동, 2011,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호, 329~356쪽. 필자가 본고를 두고 (2018.8.15)한 뒤, 아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밝혀둔다. 송휘영, 2018/9, 「독도에 대한 일본의 「고유영토론」과 독도 인식」, 『한국동양정치사상연구』 제17권 2호, 167~198쪽.

접 반론하는 것이 필수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아직 해명되지 않는 일본정부의 자료나, 해명이 충분하지 않은 자료를 포함해 일본정부의 고유영토론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검증한다.

본고의 인용문에서 ()안은 원문대로이며, []안은 필자의 주다. 독도의 일본 호칭인 ‘다케시마’는 인용문 안에서는 그대로 쓰고, 필자의 주로써 [독도]를 추가한다.

II. 일본이 발명한 고유영토론

고유영토론은 일본이 발명했다고 한다.⁹ 1945년 패전으로 많은 영토를 잃은 일본은 실지 회복을 위하여 고유영토라는 말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러·일 국경 지대에 있는 하보마이·시코탄 두 섬에 대해 사용했으나,¹⁰ 1956년에는 외상 시게 미쓰 마모루[重光葵]가 처음으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그 이전에는 참의원(参議院)의원 단 이노[团伊能]가 외무위원회(1951.2.15)에서 발언했듯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인해 독도는 일본에서 분리된다는 견해가 유력했으며, 일본정부도 단 의원의 발언을 묵인하고 있었다. 또한 독도에 관심이 깊은 시마네현(島根縣)에서도 그런 풍설이 파다했다.¹¹ 일본에서

9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 平凡社新書, 32쪽.

10 일본정부는 미국에 제출한 아래 ‘영토 조서’의 부속 지도에서 하보마이·시코탄은 홋카이도(北海道)의 일부라고 쓰고 치시마(쿠릴)열도에 있다고 하는 구나시리·에토로후와 구별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하보마이·시코탄을 고유영토로 간주한 것이다. Foreign office Japanese Government, 1946, *Minor Islands Adjacent to Japan Proper, Part I, The Kurile Islands, The Habomais And Shikotan*.

11 『毎日新聞』1951.12.14, 「宝庫竹島」; 박병섭, 2015a,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VII』, 선인, 460쪽; 朴炳涉, 2014,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3)」, 『北東アジア文化研究』39호, 66쪽.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인식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한편 일본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던 것은 1962년 「일본정부견해 4」가 처음이다.

일본에서는 고유영토라는 단어를 ‘고래(古來)의 영토’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래’는 언제부터인지, 100년 전인지, 혹은 그보다 이전인지 그 시기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일본에서는 아마베 겐타로[山辺健太郎]에 따르면 메이지[明治]헌법을 작성할 때 ‘고래의 영토’가 검토되었다고 한다.¹² 그 헌법 기초자의 한 사람인 이토 미요지[伊東巳代治]는 『제국판도(帝國版圖)』에서 “우리 제국의 판도는 옛날에 오야시마[大八島]”¹³라고 하고 그 이후에 게이코[景行]천황이 동쪽 에미시[蝦夷]나 서쪽 구마소[熊襲]를 정복하고 점점 판도를 넓혀, 드디어 근대에는 홋카이도[北海道], 오키나와[沖縄]제도, 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를 일본제국의 판도로 했다고 썼다. 이토가 생각한 ‘고래의 영토’는 오야시마이며,¹⁴ 근세·근대에 획득한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마베에 따르면 어느 일본 역사가는 이토가 말하는 오야시마야말로 일본 고유의 영토에 대한 명백한 정의라고 했다고 한다. 이 역사가에 따르면, 홋카이도나 오키나와 등은 일본 고유의 영토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를 일본정부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연구자들을 보면, 독도 문제 연구의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나 다무라 세이이치부로[田村清三郎] 등은 고유영토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았다. 고유영토라는 말은 모호한 정치 용어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그 사용을 주저할 것이

12 山辺健太郎, 1965,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評論』 7卷2号, 4쪽; 朴炳涉, 2014,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 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9号, 47쪽.

13 伊東巳代治, 『帝國版圖』, 国会圖書館所藏「伊東巳代治關係文書」42(쪽수는 없음, 명확한 발간 연도는 불명); 朴炳涉, 2014, 앞의 글, 47쪽.

14 오야시마(大八島, 大八洲)는 아와지시마(淡路島), 아키쓰시마(秋津島, 本州), 이요노 후타나시마(伊予の二名島, 四國), 쓰쿠시지마(筑紫島, 九州), 이키시마(壱岐島), 쓰시마(津島, 對馬), 오키노시마(隱岐島), 사도가시마(佐渡島)다.

다. 또한 외무성이 주장하는 고유영토론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연구자가 많다.

예를 들면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일본 외무성이 17세기를 기점으로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위화감(違和感)을 느낀다고 한다.¹⁵ 시모조는 일본은 1905년에 ‘무주지’인 독도를 편입한 것이며, 17세기 당시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시모조는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유영토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외국에 의해 지배당한 일이 없는 영토를 말한다···[도중 생략] 무주지를 편입한 일본은 다케시마[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¹⁶는 것이다.

그러나 시모조의 정의대로라면 외국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고유영토가 없었던 것이 된다. 또한 유럽에서는 19~20세기에 국가가 취득한 영토를 고유영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¹⁷ 시모조의 정의는 세계사적인 시야가 모자란 견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쓰카모토 다카시는 외무성의 고유영토론을 지지하는 한편 ‘무주지선점’설도 인정하고, “일본은 [1905년] 영토 편입 때 선점(先占)의 논리를 내세웠지만 그것과 고유영토의 주장은 모순되지 않는다”¹⁸라고 주장한다. 쓰카모토가 말하는 선점의 논리는 “국제법상 영토 취득 방법의 하나인 무주지 ‘선점’의 논리”¹⁹라는 것이다. 요컨대 쓰카모토는 일본이 고유영토인 독도를 무주지로서 선점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시모조처럼 위화감을 느끼는 자가 많을 것이다. ‘무주지’를 사전에서 보면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 토지, 혹은 어느 나라

15 山陰中央新報社, 2006, 『発信 竹島～下條正男・拓殖大学教授に聞く』, 山陰中央新報社, 24쪽.

16 下條正男, 2011, 『実事求是 第20回「東北アジア歴史財団」の愚挙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09年度, 34쪽.

17 羽場久美子, 2013,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 『世界』, 43쪽.

18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ク, 29쪽.

19 塚本孝, 2014, 「竹島領土編入(1905年)の意義について」, 『島嶼研究ジャーナル』3巻2号, 50쪽.

에도 영유되지 않은 토지”(『デジタル大辞泉』)라고 한다. 따라서 ‘무주지’라는 말은 ‘고유영토’와 상충되며, 쓰카모토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외무성은 고유영토의 정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러·일 국경 지대에 있는 남부 치시마(쿠릴)열도에 대해, “북방4도는 우리 국민의 선조 전래(父祖傳來)의 땅으로서 이어받은 것이며 여태까지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입니다”²⁰라고 쓰고 있다. 외무성이 북방4도에 관해 ‘고래의 영토’라든지 ‘본래의 영토’라고 쓰지 않고 “선조 전래의 땅”이라고 쓴 것은 이케우치가 말하듯이 “북방4도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본래 일본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²¹는 사정을 고려한 듯하다.

한편 외무성은 ‘무주지’를 선점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센카쿠(다오위다오)제도도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므로²² “선조 전래의 땅”인지 여부는 고유영토의 정의와는 관계없다. 이런 경우 고유영토의 의미는 ‘고래의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정치학자 기무라 간[木村幹]에 따르면 이런 고유영토의 의미는 예로부터 자국 영토라는 소박하고도 낡은 고유영토론이 아니라, “특정 영토가 그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발하기 전에 자국 외에는 지배되지 않았던 영토”²³라고 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센카쿠(다오위다오)제도에는 맞지 않는다. 센카쿠 제도 및 오키나와는 1945~1952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에 의해 통치되었고, 1952~1972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미국에 의해 통치되었으며, 일본인도 일본국이 발행하는 여권 없이는 ‘입국’ 할 수 없는 외국이

20 外務省, 2015年版, 『われらの北方領土』, 4쪽.

21 池内敏, 2016, 앞의 책, iii쪽.

22 外務省, 『尖閣諸島』2014는 이 섬의 편입에 대해, “어느 나라도 지배가 미치지 않았음을 신중히 확인했습니다. 그런 뒤 일본정부는 1895년 1월 14일에 현지에 표목을 세운다는 각의 결정을 하고 정식으로 일본의 영토에 편입했습니다. 이 행위는 국제법상 정당한 영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합니다”(6쪽)라고 주장한다.

23 木村幹, 2014, 「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권 4호, 111쪽.

었다. 또한 화폐도 미국 달러가 사용되었으며, 확실히 미국의 영토였다.²⁴ 이처럼 외국의 영토로 된 적이 있었던 오키나와 및 센카쿠제도도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므로 기무라의 해석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외무성이 말하는 고유영토는 뚜렷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일찍이 일본정부는, “고유본토(固有本土)의 해석에 관해서는 최소한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가라후토[樺太]를 버리고 치시마는 남반부를 보유할 정도”²⁵라고 1945년 7월에 결정한 일이 있었다. 고유본토는 고유영토와 같은 뜻이다. 이에 관해 와다 하루키(和田春樹)는 오키나와 등을 고유본토에서 뺀 것은 이미 미국에 점령당하고 있어 일본 영토로 돌아올 가망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오키나와에 사는 일본제국 신민의 일은 포기하더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 외에도 오키나와 등은 메이지시대에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으므로 고유영토의 의식이 희박했던 사실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 독도의 경우인데, 앞의 시게미쓰 발언을 받들어 「일본정부견해4」는 처음으로 고유영토라는 용어를 썼으며, 또한 고유영토의 필요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국제법상 어느 지역이 오래전부터 일국의 고유영토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그 나라가 문제 지역에 관해 이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지배, 경영해 왔는지가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²⁶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은 ‘울릉도 쟁계’(겐로쿠[元祿]다케시마일건)의 예로 쉽게 알 수 있다. 울릉도는 조선 정부가 300년간 버려두었다고 인식하고 있던 섬이다. 여기에 1625년경에 에도 막부[江戸幕府]의 도해면허를 받은 요나고 상인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도항하여 강치잡이나 전복 채취 등 「일본정부견해」가 말하는 ‘실효적인 지배나 경

24 법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오키나와 등은 신탁통치가 정식으로 결정될 때까지 “미 합중국은 영수(領水)를 포함한 이들 제도의 영역 및 주민에 대해 행정, 입법 및 사법상의 권력의 전부 및 일부를 행사하는 권리를 가진다”(제3조)고 규정되었다.

25 和田春樹, 2012, 前掲書, 25쪽에서 재인용.

26 外務省, 앞의 책,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162쪽.

영'을 70년에 걸쳐 행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일본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의 고유영토로 되지 않았고 조선 영토가 되었다. 즉 실효적인 지배·경영이라는 근대 국제법에서 중요한 영토의 취득 요건은 17세기 조·일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대체로 19세기 중반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일본이나 조선 등에게서 권익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근대국제법을 17세기로 거슬러 조·일 간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이다.

Ⅲ. 「일본정부견해」에 대한 검증

일찍이 「일본정부견해3」 및 「4」가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의 근거로 제시한 12개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1. 오야의 「청서」와 ‘마쓰시마 도해면허’설

일찍이 「일본정부견해3」이 인용한 오야의 「청서」는 1681년에 호키국[伯耆國]을 순찰한 막부의 순견사(巡見使)가 오야에게 다케시마(울릉도)의 상황을 질문했을 때 오야가 제출한 회답서다. 이 「청서」는, “겐유인[嚴有院, 德川家綱]님 시기 [1651~ 1679] 다케시마로 가는 길에 주위 20정[2.2km] 정도의 소도가 있습니다. 이는 초목도 없는 바위섬입니다. 25년 이전에 아베 시로고로 님의 주선으로 막부로부터 배령해 배로 건너갔습니다. 이 소도에서도 강치 기름을 조금씩 채취했습니다”²⁷라고 기록했다. 위의 ‘소도’는 마쓰시마(독도)라고 생각된다. 또한 아베 시로고로는 다케시마 도해면허의 발급 등을 주선한 막부 가신(幕臣)이다. 이 「청서」는 오야가 다케시마처럼 소도를 배령했다고 썼으나, 오야 같은 조년이 막부로부터 섬 등을 배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는 분명히 오야의 윤

27 『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三代目九右衛門勝信條.

색이다.

그런데 「일본정부전해3」은 ‘배령’이라는 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656년 혹은 그 이전에 오야가 마쓰시마도 막부로부터 배령하고 어려움을 포함해 이를 독점적으로 경영하는 면허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배령’이라는 글에서 곧바로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논리의 비약이다. 이 결함을 메우기 위해 가와카미 겐조는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을 발전시켰다. 가와카미는 마쓰시마 도해에 관해 아베가 막부의 최고 집권자인 로주(老中)의 내의(内意)를 얻었다고 쓴 가메야마 쇼자에몬(龜山庄左衛門)의 서장(1660.9.5) 등을 ‘오야가 문서[大谷家文書]’에서 발굴해 이 설을 보강했다. 가메야마는 아베의 가신이다. 가메야마의 서장은, “내년부터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로 당신 배가 건너가게 될 일에 관해 선년 시로고로가 로주님의 내의를 얻었습니다.”²⁸라고 쓰고 있다. 가와카미는 ‘로주의 내의’라는 글에서 ‘마쓰시마 도해면허’가 내려졌다고 해석한 것이다.²⁹

가와카미의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에 대해 호리 가즈오가 찬동했으나,³⁰ 쓰카모토 다카시는 다케시마의 경우와 같은 도해면허는 발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보았다.³¹ 또한 이케우치 사토시도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을 부정하고 ‘로주의 내의’는 마쓰시마 도해를 무라카와 단독에서 오야·무라카와 양가의 공동사업으로 조정하는 작업과 관련된 의향이라고 보았다.³² 무라카와 단

28 원문은, “来年より竹嶋之内松嶋へ貴様舟御渡之筈ニ御座候旨 先年四郎五郎御老中様へ得御内意申候”이다. 로주는 에도 막부의 최고 집권자다. 가메야마 서장은 東京大学史料編纂所가 소장하는 『大谷氏舊記』三에 사본이 게재되어 있다.

29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73쪽.

30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101쪽.

31 塚本孝, 1994,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 244号, 1쪽. 또한 第2版(1996), 第3版(2011)도 같음.

32 池内敏, 2016, 앞의 책, 60~61쪽.

독의 마쓰시마 도해가 기정사실이 되었으므로 마쓰시마 도해의 신규 허가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케우치가 말하는 조정 작업에 관해 박병섭은 이는 어렵 조건이 나쁜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싫어하는 오야를 아베가 설득한 작업으로 보고, ‘로주의 내의’는 도해면허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³³ 이처럼 ‘마쓰시마 도해면허’ 설은 거의 부정되었고, 현재 이 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데 쓰카모토 다카시는 최근에 ‘도해면허’ 대신 ‘도해허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가와카미의 앞의 설을 수정하고, “시로고로가 로주의 내의를 얻었다고 하므로, 기록상 1661년 이후는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에도 막부의 공인 아래 도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⁴라고 주장한다. 이 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이름도 분명하지 않은 모 로주의 ‘내의’를 가지고 ‘막부의 공인’, ‘막부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폭론이다. 더구나 이 사료가 말한 ‘내의’ 그 자체가 혹시 아베 시로고로 마사유키[正之]의 재량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인, 가공의 작위 가능성조차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가와카미 자신이 말하고 있다. 이런 공소(空疎)한 자료 해석으로 외무성 견해의 구멍 메우기(穴埋め)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³⁵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쓰카모토나 가와카미는 가메야마 서장에서 ‘로주의 내의’에 주목한 나머지 그 직전에 있는 글을 간과 혹은 경시했다. 가메야마 서장은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로 내년부터 오야가 도해할 것에 대해 아베가 로주의 내의를 얻었다고 쓴 것이다. 즉 로주는 마쓰시마가 다케시마 안에 있는 섬, 즉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에 부속된 섬임을 양해했던 것이다. 본래 마쓰시마는 오야의 「청서」가 말하는 ‘다케시마로 가는 도중에 있는’ 섬이다. 게다가 ‘로주의 내의’ 이전에 무라카와는 마쓰시마 도해 허가 등과 상관없이 이미 마쓰시마로 도해했는데, 이를

33 박병섭, 2013,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5호, 160~162쪽; 朴炳涉, 2012b,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5号, 20~25쪽.

34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앞의 책, 142 및 184쪽.

35 池内敏, 2016, 앞의 책, 63쪽.

아베 등 막부의 다케시마 관계자가 문책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문제가 없었으며, 허가 등은 필요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가 고유영토론의 근본으로 삼은 ‘마쓰시마 도해면허’ 설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쓰카모토가 주장한 ‘마쓰시마 도해 허가’ 설도 성립되지 않는다.

2. 돗토리번의 「회답서」와 번주의 「각」

조선 정부는 ‘울릉도 쟁계’ 와중에 쓰시마번[對馬藩]과의 교섭 방침을 전환했다. 그 전에는 다케시마와 울릉도는 다른 섬인 것처럼 다루었지만, 1694년 8월 갑자기 정부는 일본이 말하는 다케시마는 조선의 울릉도라는 ‘1도 2명’ 설을 주장하고, 그 섬에 일본인들이 침입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양국의 교섭은 암초에 부딪혔다.

1695년 쓰시마번에게서 이런 설명을 들은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阿部豊後守]는 조선이 말하는 ‘1도 2명’ 설을 확인하기 위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다고 생각한 돗토리번에 다케시마 및 주변 섬들의 소속이나 실정을 7개조로 질문했다. 이에 대한 12월 25일자 「회답서」를 「일본정부견해3」이 인용한 것이다. 이 「회답서」에 “올해 이국인[조선인]이 [다케시마에] 많이 있었으므로 착안하지 않고 돌아오는 길에 마쓰시마에서 전복을 조금 채취했습니다”³⁶라고 기록되었듯이, 일본인들은 마쓰시마를 기항지로 이용함과 동시에 어렵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은 이 「회답서」는 나이토 세이추가 지적했듯이,³⁷ 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는 자료다. 즉 이 「회답서」 7개조는 제1조에서 “다케시마는 이나바[因幡]·호키 부속이 아닙니다”라고 쓰고, 제4조에서 위의 일본정부의

36 『竹嶋之書附』(鳥取県立博物館所藏), 「회답서」 제목은 「亥十二月四日 竹嶋之御尋書之御返答書 同廿五日平馬持參 曾我六兵衛ニ渡ス」.

37 内藤正中, 2004, 「竹島(独島)問題の問題点」,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0号, 9쪽.

설명대로 쓰고, 제7조에서 “다케시마·마쓰시마 기타 양국[이나바국·호키국]에 부속된 섬은 없습니다”³⁸ 라고 썼다. 즉 이나바국과 호키국을 다스리는 돗토리번은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자기 번의 소속이 아님을 보고한 것이다.

이 「회답서」에 등장한 마쓰시마 등에 관해 로주는 돗토리번에 두 번째 질문을 하였다. 이에 대한 회답이 「일본정부견해3」이 인용한 번주의 「각」(1696.1.23)이며, 번주는 10개조로 회답했다. 이 중에서 제3조를 인용한 「일본정부견해3」은 「각」이, “마쓰시마에 어렵하러 간 것은 다케시마로 도해할 때 길목에 있으므로 들러서 어렵을 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어렵하러 갔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즈모국[出雲国], 오키국 사람들은 요나고 사람들과 함께 같은 배로 갔습니다”³⁹ 라고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유권 문제에 중요한 조항은 제2조다. 이에 돗토리 번주는,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지방]에도 부속된 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⁴⁰ 라고 기록했다. 이 ‘어느 나라’에 대해 가와카미 겐조는 ‘이나바국과 호키국’을 가리킨다고 좁게 해석했다.⁴¹ 이케우치 사토시도 마찬가지다.⁴² 한편 쓰카모토 다카시는 ‘어느 나라’는 이나바·호키 양국이거나, 혹은 앞의 「회답서」에서 마쓰시마에 관한 단정적인 대답 형식과의 차이로 보아 일본의 다른 나라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38 원문은, 一 竹嶋は因幡 伯耆附属ニては無御座候・・・[途中省略] 一 竹嶋 松嶋 其外兩國江附属之嶋無御座候事 以上. 한편 「일본정부견해4」는 12월 26일에 제출했다고 썼으나, 『竹嶋之書附』에는 「亥十二月廿四日 竹嶋之御尋書之御返答書 同廿五日ニ平馬持參曾我六兵衛ニ渡ス」라고 쓰고 있으므로 26일은 25일일의 잘못된 것 같다.

39 『磯竹島覺書』(国立公文書館所蔵) 목차의 표제는 「同月[一六九六年一月]廿三日 松平伯耆留守留守居召寄 并相尋候趣伯耆守より書付を以申來事」.

40 『磯竹島覺書』의 원문은, 松嶋ハ何れ之國江附候嶋ニても無御座候由承候事. 예도 시대 나라는 국가를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자료에서는 일본의 지방 구역을 말한다. 이즈음 일본은 약 7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41 川上健三, 1966, 앞의 책, 85쪽.

42 池内敏, 2017, 『日本人の朝鮮観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87쪽.

다는 뜻을 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하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⁴³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는 돗토리 번주가 마쓰시마에 관해 자기 영지에 대해 ‘들었습니다’라고 전문 형식으로 대답할 리가 없으므로, 번주는 “일본 국내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⁴⁴라고 대답했다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맥상으로도 제1조에 이즈모국이나 오키국 등이 등장하므로 마쓰시마는 이런 나라를 포함해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일본정부는 번주의 「각」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고 「각」의 일부를 자의적으로 잘라내 자료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마쓰시마는 돗토리번의 이나바국·호키국은커녕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다고 돗토리 번주가 회답한 것이며, 이 자료는 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밝힌 것이다.

3. 돗토리번의 「다케시마도」와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

일본정부는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항할 때 반드시 마쓰시마(독도)를 중간 기항지로 이용하고, 이 섬에서도 어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드러내는 자료의 하나로 「일본정부견해2」는 돗토리 번주인 이케다[池田]가 문이 작성한 「다케시마도[竹島圖]」(1720년대)를 인용해, “「다케시마도」는 막부의 명령에 따라 조정(調整)해서 제출된 것의 복사이며 공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며, 그 내용도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에 관해 아주 정확한 지리적 지식이 있었

43 塚本孝, 1985, 「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圖(上)」, 『レファレンス』 411号, 87쪽. 다만 최근 쓰카모토는 다음 논문에서 ‘어느 나라[지방]’을 아나바·호키 어느 나라라고 해석했는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塚本孝, 2013, 「元禄竹島一件をめぐる一付、明治十年太政官指令」, 『島嶼研究ジャーナル』 2卷2号, 43쪽.

44 竹内猛, 2010,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前編, 私家版, 45쪽; 다케우치 다케시, 송휘영·김수희 역, 2013,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I, 선인, 96~97쪽.

음을 전하고 있다”⁴⁵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는 첨부하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말하는 1720년대 지도를 찾으면 「다케시마 지도[竹島之圖]」⁴⁶〈그림 1〉 및 『다케시마 문서[竹嶋之書附]』에 수록된 「다케시마도[竹嶋圖]」〈그림 2〉가 있다. 이들 지도에는 모두 “교호 9 진(享保九辰)[1724]년 4월 에도를 위해 그렸던 사본”이라고 기입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일본 어민들이 마쓰시마에서 어업을 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다케시마도」〈그림 2〉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한 덩어리로 그리고, 게다가 다케시마 아래쪽에 ‘조선국’이라고 썼으므로 이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그린 것처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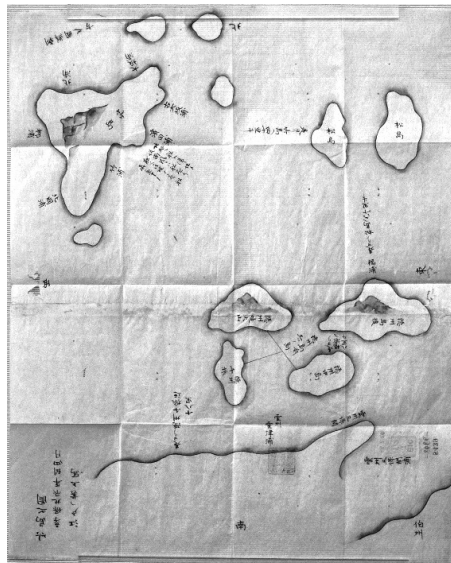


그림 1 「다케시마 지도(竹島之圖)」

45 外務省, 앞의 책, XV-86쪽.

46 돗토리현립박물관 소장 번호 #8439.

인다.⁴⁷ 과연 이런 지도를 일본정부가 영유권 주장에 인용했는지 의문이다. 외무성이 의도한 지도와는 다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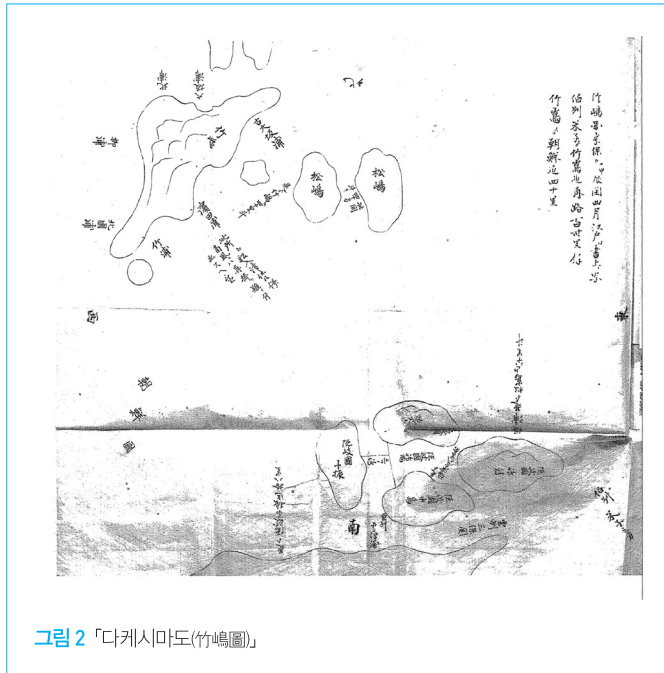


그림 2 「다케시마도(竹嶋圖)」

그 후 일본정부는 「다케시마도」에 대해 아무 말이 없는 채, 새로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松島·竹島の圖]’라고 칭하는 자료를 인용했다. 「일본정부건해 4」는, “호키의 이케다번[돗토리 번]이 교호 9년(1724년)에 막부의 명령에 따라 조진(調進)한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에는 마쓰시마(지금의 다케시마[독도])를 좁은 수도(水道)를 사이에 두고 동서로 마주선 2도와 이를 둘러싼 몇 개의 암초

47 박병섭, 2012a,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호, 138~141쪽.

를 그리고, 또한 동도의 수도쪽 해안가에 ‘배를 대는 곳(船寄場)’이라고 적고, 소옥도 그리고 있어서 일본인의 다케시마[독도] 경영과 그 인식의 정확성을 드러내고 있다”⁴⁸라고 주장했다. 이 설명은 위의 「다케시마도」에 대한 설명과 통하므로 일본정부는 위의 「다케시마도」의 이름을 바꾸어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라고 칭한 것 같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말하는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는 당연할 듯하다. 당시 외무성의 담당자인 모리타 요시오[森田芳雄]가 『외무성월보(外務省月報)』에 쓴 논문에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 외무성이 말하는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는 표제가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리타가 논문에서, “1724년에 막부의 명령으로 호키번(伯耆藩)이 조진한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⁴⁹라고 설명한 지도를 보면, 이는 틀림없이 「고타니 이해[小谷伊兵衛]가 제출한 다케시마 회도(繪圖)」⁵⁰(「고타니 회도」로 약칭)〈그림 3〉이다. 이 표제는 회도 안에는 없으며 회도를 보관한 봉투에 쓰여 있다. 이 회도에 관한 해제는 전 dots토리현립박물관장 미타 기요토[三田清人]의 글이 있다.⁵¹ 이 「고타니 회도」에는 소옥을 그린 그림이 보이며, 또한 마쓰시마에는 ‘船すへ場[배를 정박시키는 곳]’이라는 글도 보인다. 이 글을 모리타 및 「일본정부견해」는 ‘船寄場[배를 대는 곳]’이라고 의역했던 듯하다. 또한 모리타는 논문에 ‘호키번’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사전에 없으며 ‘돗토리번[鳥取藩]’이라고 쓰는 것이 옳다.

48 外務省, 앞의 책, XV-165쪽.

49 森田芳夫, 1961/5,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兩國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調査月報』第2卷5号, 7쪽. 이 논문 끝에 “필자는 아시아국 북동아시아과 근무”라고 쓰고 있다.

50 dots토리현립박물관 소장 번호 #8443.

51 三田清人, 2007, 「鳥取県立博物館所蔵 竹島(鬱陵島)・松島(竹島/独島)関係資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鳥根県, 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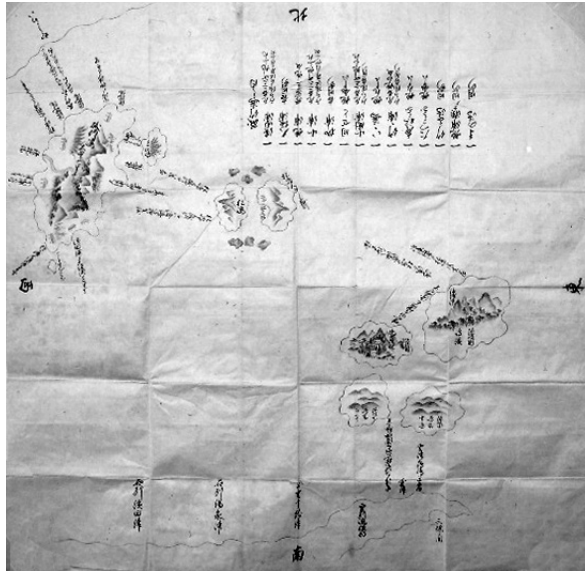


그림 3 「고타니 회도」(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繪圖, #8443)

또한 「일본정부견해4」는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 즉 「고타니 회도」의 작성 연대를 1724년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틀린 것으로 보인다. 이 지도의 작성 연도를 시마네현 교육위원회 등이 간행한 전단[leaflet] 『다케시마』는 1696년으로 보았다.⁵² 또한 미타 기요토도 「고타니 회도」는 1696년에 「고타니 이해가 제출한 다케시마 문서」(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 「고타니 문서」로 약칭)와 함께 막부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⁵³ 이 「고타니 문서」는 앞의 『다케시마 문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앞에 쓴 듯토리 번주의 「각」과 거의 같다. 다만 번주의 「각」 제1조의 다케시마 도해의 경위에 관한 설명만을 빼고, 나머지 제

52 島根県/島根県教育委員会/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2017, 『竹島～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学ぶ～』, 島根県, 1쪽.

53 三田清人, 2007, 앞의 글, 43쪽.

2-10조를 본문과 별지에 나누어 쓰고 있다. 제2조의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지방]에도 부속된 섬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라는 기술은 별지에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고타니는 마쓰시마가 일본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고타니 회도」를 작성했음이 분명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고타니 회도」를 가지고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라고 결코 주장할 수 없다.

4. 나가사키봉행에게 제출한 오야의 「구상서」

일본정부는 일본 어민들이 마쓰시마(독도)에서 어렵을 했음을 밝히는 자료의 하나로 오야가 나가사키봉행에게 제출한 「구상서」를 「일본정부견해2」에서 인용했다. 이 「구상서」에 관한 설명은 없지만, 관련 자료는 오야가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것도 분석한다.

이 「구상서」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후 1741(寛保1)년에 오야가 막부 직할지인 나가사키 지방을 다스리는 나가사키봉행에게 ‘관물할부연중(貫物割符連中)’에 참여할 것을 청원했을 때 제출되었다. ‘관물할부연중’이란 청국에 수출하는 건물(마른 전복, 해삼, 상어 지느러미 등 소위 다와라모노(俵物))의 집하 등을 독점적으로 허가받은 상인 조직을 가리킨다.⁵⁴ 이에 참여할 것을 청원한 오야의 「구상서」는 마쓰시마에 관해 “다이유인[大猷院, 德川家光]님 시절[1623~1650] 다케시마로 가는 해로에서 또한 마쓰시마라는 섬을 발견하고 신고했더니 다케시마와 마찬가지로 지배를 맡겨 주셨습니다. 이 두 섬에 도해해 왔으므로 대단히 감사하고 있습니다”⁵⁵라고 적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은 앞에 쓴 오야의 「청서」에도 있으나 거기에는 시기가 도쿠가와 이에쓰나[德川家綱] 시절[1651~1680]로 되어 있다. 실제로 오야가 마쓰시마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한 시기는 1661년이므

54 大西俊輝, 2011, 『第三部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136쪽.

55 「乍恐口上書ヲ以奉申上候」, 『竹島渡來由來記拔書控』.

로 「구상서」에 쓴 다이유인 시절이라는 것은 오류인 듯하다. 또한 오야가 마쓰시마의 지배를 맡았던 일도 물론 없었다.

이 「구상서」를 일본정부는 일본의 마쓰시마 영유를 드러내는 자료로 인용했는데, 실은 오야는 당시에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케우치 사토시가 발굴한 자료 『무라카와가 문서[村川家文書]』 사본에 따르면, 1741년 6월 10일 오야는 에도에 있는 나가사키봉행 하기와라 호키노카미[萩原伯耆守]에게 앞의 「구상서」를 제출했을 때에 말하기를, “겐로쿠 기에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兩島)의 도해금제의 명을 받은 이후”⁵⁶라고 말한 뒤, 그 후의 오야의 상황을 설명했다. 오야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케시마 및 마쓰시마 양도로의 도해금지로 인식했던 것이다. 또한 오야는 이 전년에 나가사키봉행으로 갈 것을 지시받은 지사봉행[寺社奉行]들과 이미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금제”⁵⁷를 확인하고 있었다.

에도 막부의 3대 봉행으로 손꼽히는 지사봉행은 사찰을 단속하는 일뿐만 아니라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評定所)를 주도하는 요직으로서 자주 막부의 정책 자문에도 관여했던 권력자다. 앞의 『무라카와가 문서』에 따르면, 오야는 이 지사봉행이나 나가사키봉행과의 면담 내용을 그때마다 돗토리번의 에도 번저(藩邸)에 보고했다. 따라서 돗토리번도 같은 인식을 가졌을 것이다. 이처럼 오야뿐만 아니라 나가사키봉행이나 지사봉행, 돗토리번도 겐로쿠 기에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에 대한 도해금제가 내려졌다고 이해한 것이다.

일찍이 1650년대 가메야마 서장에서 볼 수 있듯이 에도 막부 관계자도, 오야도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안에 있는 섬으로 인식했는데, 그 후도 마쓰시마가 다케시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1740년대 에도 반세기 전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은 마쓰시마 도해금지이기도 한 것으로

56 「大谷九右衛門、江戸表ニ於テ願一件」, 『村川家文書』(写), 54~55丁(米子市立圖書館所藏); 池内敏, 2015, 「国境」未滿, 『日本史研究』630号, 18쪽.

57 池内敏, 2015, 위의 글, 16~18쪽.

오야나 막부 관계자가 인식했던 것이다.

5. 『인슈시청합기』의 해석

17세기 중엽 오키국은 막부의 직할지가 되어 마쓰에[松江]번에 예탁되었다. 마쓰에번은 군대(郡代)를 두어 오키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사이토 도요노부[齋藤豊宣]⁵⁸는 1667년에 『인슈시청합기』를 편찬했다. 이 자료를 『일본 정부견해3』이 인용해, 『인슈시청합기』도 마쓰시마(독도) 및 다케시마(울릉도)를 일본 서북부의 한계로 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본정부는 이 책의 「국대기(國代記)」에 기술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雲州]에서 인슈[隱州]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의 서북은 차주(此州)를 한계로 삼는다”⁵⁹는 글 중 ‘차주’를 ‘이 섬’이라고 해석하고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일본의 한계로 보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견해3」은 “일본 측은 오독하여 전(前) 2도[竹島·松島]로서 ‘일본의 서북부의 한계’라고 한 것은 큰 잘못이다”⁶⁰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이에 반박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의 비판을 묵인했음을 의미한다. 그 후도 일본정부는 ‘일본 서북부의 한계’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일본정부견해3」은 다가와 고조[田川孝三]의 주장을 인용한 것인데,⁶¹ 이에 대해 가와카미 겐조나 다무라 세이자부로(아무 말이 없다. 그들은 다가와 고조의 견해에 의문을 가진 듯하다.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는 ‘차주’를 ‘인

58 저자를 齋藤豊宣의 아들 도요히사(豊仙)라고 하는 논문도 있지만, 아래 문헌에 따르면 저자는 도요노부(豊宣), 별명 勘介가 맞다. 大西俊輝, 2007, 『続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15쪽.

59 원문은 “見高麗如自雲州望隱州 然則日本之乾地以此州為限矣.”이다.

60 외무부, 1977, 앞의 책, 192쪽.

61 田川孝三, 1988(原稿는 1965年 以前), 「竹島領有に關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20』, 41쪽.

슈' 즉 오키국이라고 보았다.⁶² 이 '차주'를 철저히 검증한 연구자는 이케우치 사토시다. 그는 『인슈시청합기』에서의 '차주'의 용어법을 모두 분석하여 '차주'는 '차국(此國)' 즉 오키국이라고 결론지었다.⁶³ 이 연구의 영향을 받아 예전에 '차주'를 다케시마·마쓰시마라고 해석한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는 견해를 바꾸어 '차주'를 '인슈'로 해석하게 되었다.⁶⁴

한편, 시모조 마사오는 다가와 고조의 견해를 이어받아, 이케우치가 '차주'를 오키 국이라고 해석한 것은 “이케우치 씨의 초보적인 실수”⁶⁵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이케우치는 “문맥, 용어법, 『인슈시청합기』 권2에는 ‘인슈는 서북의 극지(極地)다’라고 명기되어 있는 사실, 같은 시대 사람들의 읽기는 모두 ‘차주’를 ‘오키국’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등에서 ‘차주’는 ‘오키국’으로 읽을 수밖에 없으며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⁶⁶라고 반론했다. “같은 시대 사람들의 읽기”라는 것은 오니시 노리야스[大西教保]의 『오키국고기[隱岐國古記]』 등을 가리킨다.⁶⁷ 이케우치에 대한 유력한 반론은 없으며, 따라서 일본의 서북 한계는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아니라 오키국이라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시모조는 이케우치의 『인슈시청합기』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케시마연구회가 조사,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장애가 되었다”⁶⁸라고 심정을 털어놓았다. 남의 연구를 장애라고 말하거나, 혹은 “나이토 세이추 씨의 다케시마[독도]

62 大西俊輝, 2007, 앞의 책, 34쪽.

63 池内敏, 2005, 『『隱州視聽合紀』の解釈をめぐって』, 『青丘学術論集』 25集, 145~184쪽.

64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22쪽.

65 下條正男, 2007, 「最終報告にあたっ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会, 5쪽.

66 池内敏, 2011, 「竹島／独島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 732号, 25쪽.

67 『隱岐國古記』는 “인슈의 소재는 역대 사료를 고려하면 일본의 서북 땅은 차국(此國)을 가지고 한계로 한다”(隱州の所在は歷代史を考ふるに日本の乾地 此國を以て限りとする也)라고 기술했다.

68 下條正男, 2007, 앞의 글, 4쪽.

연구는 다케시마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왜곡해 왔다. 곡학아세(曲學阿世), 나이토 씨의 다케시마 연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⁶⁹라고 나이토를 비난했다. 시모 조다운 방식이다.

6. 『다케시마도설』

일본정부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의 하나로 기타조노 쓰안의 『다케시마도설』을 「일본정부견해3」 및 「일본정부견해4」에서 인용했다. 후자는 “[이 문헌이] ‘오키국 마쓰시마’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한 ‘마쓰시마의 서도’라고 쓰고 있다는 점 등에서 마쓰시마(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가 동·서 양도로 구성되어 있음을 숙지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⁷⁰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외무성이 말하는 기타조노 쓰안의 『다케시마도설』은 일서(逸書)이며, 현재 전해지고 있는 서적은 이 일서를 가나모리 겐사쿠(金森建策)가 증보한 『다케시마도설』이다. 가나모리의 책 서문에 따르면, 가나모리와 같은 마쓰에번에 속한 기타조노 쓰안은 ‘이나바국의 아무개(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케시마도설』로서 호레키(寶曆, 1751~63)기에 저술했다가, 가나모리가 이와미국 하마다(石見國濱田)의 선원 초조[長藏]에게서 들은 말을 증보하여 같은 제목의 『다케시마도설』로 저술했다고 한다. 가나모리가 『다케시마도설』을 저술한 해는 불명이지만, 그는 1849년에 마쓰에번에 네덜란드 학문(蘭學) 담당으로 출사했으니, 그 후 이 책을 저술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나바국의 아무개’나 이와 미국의 초조 등은 다케시마 도해에 직접 관련된 자가 아니다. 따라서 『다케시마도설』은 전설이나 구비(口碑)를 중심으로 편찬되었으므로 역사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기술이 많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다.

69 下條正男, 2005/6, 「続 竹島問題研究の課題」, 『現代コリア』, 21쪽.

70 外務省, 발간연도 불명, 앞의 책, XV-165쪽.

이 섬[다케시마] 북쪽 3리쯤에 또 하나의 섬이 있으며 상등의 전복이 많다. 이 때
문에 조선에서 3, 5년마다 한 번 어민을 보내 채취시킨다고 한다. 그들은 일찍이
이 다케시마를 몰랐으나 겐로쿠 5년[1692] 봄에 이 섬으로 표류해 처음으로 다케
시마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이 설은 겐로쿠 6년 4월 하쿠슈[伯州] 어부들
의 소송 상황에서 분명하다.

이처럼 『다케시마도설』은 울릉도 북쪽 3리[12km]에 섬이 있다든지, 조선인
은 다케시마(울릉도)를 몰랐다든지 사실에 어긋난 기사를 쓰고 있다. 또한 안용
복 납치 사건에 관해서는 “[조선인] 장자(長者) 1명과 동료 2, 3명을 우리 배에
끌어들여”라고 기술했는데, 안용복의 이름도 모르며 납치한 동료가 1명임을 잘
모른다. 이런 기술에 대해 다무라 세이자부로(1864~1938)는 “부정확한 기술을 하고 있다”⁷¹
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다케시마도설』의 기술은 부정확하므로 자료로서 가치
가 낮다. 그런 개인의 저서에 ‘오키국 마쓰시마’라고 쓰여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영유권 문제에서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

7. 『장생다케시마기』

일본정부는 일본이 마쓰시마(독도)를 일본 영토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료로서 야
다 카마사(1839~1904)의 『장생다케시마기』(1801)를 「일본정부견해3」 및 「일본정부견해4」
에서 인용했다. 이 책은 마쓰시마의 크기나 섬까지의 노정 등을 쓴 후, “염천 때
[마쓰시마는] 용수(用水)가 여의치 않다고 한다. 다케시마 도해 때 다케시마마루
[竹島丸]가 왕복할 때는 반드시 이 섬에 정박했다고 한다.……[도중 생략] 본조
(本朝) 서해의 끝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이 마쓰시마를 일본 영역으
로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 책은 사찬서인데다 이 책의 신뢰성 자체에 문제가 있
다. 이를 밝히기 위해 일단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71 田村清三郎, 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 12쪽.

『장생다케시마기』는 겐로쿠 기에 무라카와에 고용되어 다케시마(울릉도)로 도해했던 오키국의 이타야 나니베[板谷何兵衛]가 그때부터 40년 후 및 55년 후에 쓰바키 기자에몬[椿義左衛門]에게 전한 이야기를 야다가 쓰바키에게서 듣고 쓴 것이다. 쓰바키는 오키에 사는 어부인데 그가 이타야에게서 다케시마 이야기를 들었던 시기는 쓰바키가 18세와 33세 때로 두 차례다. 그로부터 50년 후 쓰바키가 80세가 넘어서야 이타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야다에게 전한 것이다. 따라서 기억이 모호한 이야기가 더욱 모호하게 된 채 야다에게 전해진 것이다. 당연히 사실에 어긋나는 기술이 도처에 보인다.

그런 하나의 예를 든다. 이 책은 이타야 등이 1년에 한 번씩 다케시마로 도해해 어업을 한 다음 직접 히젠[肥前]국 나가사키로 가서 수확물을 비단(綾錦)이나 호피(虎皮), 약초 등 청국 상품(唐物)과 교환했다고 썼다. 그러나 다케시마 도해선이 돌아올 때 직접 규슈[九州] 나가사키로 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쓴 까닭은 야다가 지리적으로 히젠국은 다케시마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도 장소에 따라서는 마주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야다는 마쓰시마의 위치가 오키에서 신유(8시 반) 방향으로 170리[680km], 다케시마의 위치가 마쓰시마에서 같은 방향으로 90리[360km] 해상에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케시마가 히젠국과 마주하고 있다고 보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또한 야다는 다케시마의 크기를 10리 혹은 5리, 마쓰시마는 5~3리라고 들었다. 마쓰시마를 굉장히 큰 섬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마쓰시마를 소나무가 아름다운 섬으로 보았다. 이처럼 야다는 마쓰시마에 관해 큰 오해를 한 채 마쓰시마를 “본조 서해의 끝”이라고 썼던 것이다.

이처럼 사실 오인이 많은 『장생다케시마기』는 결코 역사서로 볼 수 없으며, 이는 역사소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역사소설을 일본정부는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원용한 것이다. 그 후 일본 외무성은 이 문헌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었는지 『장생다케시마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8. 「일본여지로정전도」와 「변요분계도고」

일본정부는 일본이 예로부터 독도를 잘 알고 있었던 자료로서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일본여지로정전도」라는 지도와 곤도 모리시게의 『변요분계도고』(1804)를 「일본정부견해3」 및 「일본정부견해4」 등에서 인용했다. 먼저 『변요분계도고』인데, 저자인 곤도 모리시게는 1799년에 설치된 ‘에조 지방 어용괘(蝦夷地御用掛)’에 속했던 시절에 몇 차례나 에조, 즉 홋카이도[北海道] 및 치시마[千島, 쿠릴] 열도 방면을 탐험한 적이 있었다. 그는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북방 경비 등을 논한 『변요분계도고』를 1804년에 저술했다. 이 책은 낙도를 중시한 많은 지도를 게재했는데 그중 북동 아시아를 그린 「금소고정분계지도(今所考定分界之圖)」에 ‘다케시마[タケシマ]’와 ‘마쓰시마[マツシマ]’를 그렸다. 이들은 울릉도와 독도라고 생각되지만 이 지도에서 두 섬에 대한 일본의 확실한 영유 의사를 보기는 어렵다. 이 지도는 단지 일본이 두 섬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다음 「일본여지로정전도」인데, 이 지도를 나가쿠보 세키스이의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改正日本輿地路程全圖)」의 선행 지도로 보는 견해가 있다.⁷² 그러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며, 더구나 이 지도에는 출판자 이름 등이 없으므로 해적판과 다름이 없다.⁷³ 출판물은 “어느 서적(書物)을 막론하고 금후 신판(新板)은 저자 및 출판자의 실명을 서적 끝(奥書)에 써야 한다”⁷⁴는 명령(觸)이 1722년에 내려졌으며, 이에 위배된 출판물은 해적판이다. 이런 해적판을 영유권 주장에 인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영유권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자료가 적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72 아래 전단(leaflet)에 따르면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는 나가쿠보의 「개제부상(일본) 분리도(改製扶桑(日本)分里圖)」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 長久保赤水 生誕3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2017, 『近代地理学の祖 長久保赤水』.

73 馬場章, 2001,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397쪽; 박병섭, 2016, 「池内敏의 『竹島—또 하나의 일·한 관계사』, 『독도연구』 20호, 307쪽(日本語), 262쪽(한국어).

74 명령의 원문은 “一 何書物ニよらず此以後新板之物 作者并板元之實名 奥書ニ為す致す可申候事”. 馬場章, 2001, 위의 책, 396쪽에서 재인용.

9. ‘덴포 다케시마일건’

이와미국 하마다[濱田]에서 조운(廻船)업을 경영하는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 八右衛門]⁷⁵의 다케시마(울릉도)로의 밀항이 발각된 ‘덴포 다케시마일건(天保竹島一件)’이 1836년(天保7)에 일어났다. 이 사건을 인용한 「일본정부견해3」은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이후 덴포 기에도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문제없었으며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의 하나로 삼았다. 「일본정부견해4」도 마찬가지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본다.⁷⁶

하치에몬은 에조[홋카이도]로의 항해 때마다 볼 수 있는 자연 자원이 풍부한 다케시마에 주목하고, 섬에서 벌목이나 어업을 하고 하마다번에 특허 세금(冥加銀)을 바치고 싶다고 에도 번저에 청원했다. 그러나 에도 번저가 막부에 문의해 보니,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도 결정짓기 어려우므로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회답이었다. 청원이 각하된 하치에몬은 포기할 수 없어서 하마다에 있는 가로(家老) 오카다 다노모(岡田頼母)댁의 문지기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에게 열심히 청원했다. 산베는 오카다 다노모와 상의하고 하치에몬의 다케시마 도해를 내락했다. 오카다 등은 궁핍해 있던 하마다번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치에몬은 하시모토 및 오사카(大坂)에 있는 번의 물류 거점(藏屋敷)의 도움을 얻어 오사카 상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도해선을 만들었다. 드디어 하치에몬 등은 1833년에 다케시마로 건너가 벌목 등을 했다. 그러나 3년 후 밀항이

75 「일본정부견해서」 등은 하치에몬의 옥호(屋號)를 아이즈야(會津屋)라고 했지만, 아래 문헌에 따르면, 하치에몬은 공술조서 『다케시마도해일건기』에서 스스로를 이마즈야(今津屋)라고 칭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하면, 이마즈야가 맞다. 森須和男, 2016, 「天保竹島一件顛末」, 『郷土石見』 102호, 33쪽.

76 최신의 지견을 가미한 사건의 자세한 경위는, 박병섭, 2018(발간 예정), 「덴포 다케시마일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2010 - 2018) 최종 보고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적발되어 하치에몬 등은 오사카마치봉행소(大坂町奉行所)에 체포되었다. 봉행소에서 조사해보니, 밀항에 하마다 번이 연루되어 있었으므로 이 일건을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로 넘겼다. 평정소는 일본 각지의 관계자를 조사한 끝에 12월 하치에몬 및 산베에게 사죄(死罪)를 언도하고, 기타 많은 관계자를 엄벌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밀항 당시의 하마다 번주에게는 영구 칩거(永蟄居)를 명했다. 사건의 처리를 끝낸 막부는 1837년에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 안에 마쓰시마의 이름은 없었다.

이 사건을 인용한 「일본정부건해⁴」는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에서 산베가 가까운 마쓰시마로의 도해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갈 방법이 있다고 시사했으므로 다케시마로의 도항은 금지되었어도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마쓰시마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다무라 세이자부로가 견해를⁷⁷ 바탕으로 한 것이며, 가와카미 겐조가 지지했다.⁷⁸ 한편 이케우치 사토시는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의 이름은 없지만, 금지령이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하치에몬 등은 마쓰시마 도해를 명목으로 내세웠으나 이 주장은 단지 발뺌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하치에몬이 처형된 사실은 하시모토의 교사가 통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⁷⁹

실제로 하치에몬을 처음에 문초한 오사카마치봉행소는 그런 발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마쓰시마도 조선 영토로 보았다. 이를 드러내는 자료는 오사카마치봉행소가 작성한⁸⁰ 하치에몬의 공술조서 『다케시마도해일건기』(竹島渡海一件

77 田村清三郎, 1955, 『竹島問題の研究』, 23쪽.

78 川上健三, 1966, 앞의 책, 191쪽.

79 池内敏, 2016, 앞의 책, 106~107쪽.

80 최근까지 『竹島渡海一件記』(東京大学総合図書館所蔵)는 작성자가 모호했지만, 이 자료 안에 “周防守様當表藏屋敷”라는 글이 있는데 ‘藏屋敷’가 있는 ‘當表’는 오사카이므로 이 자료는 오사카마치봉행이 작성한 것이 분명하다. 이 문헌의 번각문은 森須和男, 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浜田市教育委員会)에 있으나 번각하지 못한 문자 및 잘못 읽은 문자가 약 100자 있다. 이들을 수정한 번각문 및 번

記)에 부속된 지도 「다케시마방각도(竹嶋方角圖)」〈그림 4〉다. 이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그렸다. 이에 관해서는 일본인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채색하고 두 섬이 조선 영토임을 표시했다.⁸¹

하치에몬 등을 최종적으로 조사한 평정소는 신중히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 등을 조사했다. 막부는 쓰시마번에게 두 섬은 모두 울릉도인지, 혹은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마쓰시마는 조선 외 땅인지, 두 섬의 상황, 지리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다케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따로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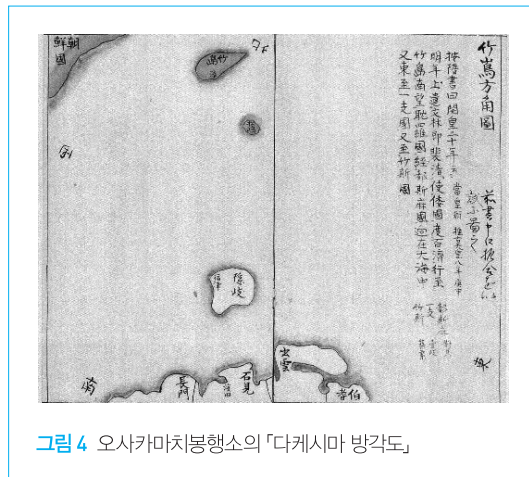


그림 4 오사카마치봉행소의 「다케시마 방각도」

이 섬은 다케시마처럼 일본인이 건너가 어렵을 하는 것이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

역문은, 박병섭, 2018, 앞의 글.

- 81 박병섭, 2012a, 앞의 글, 143쪽; 朴炳涉, 2012b, 앞의 글, 28쪽; 朴炳涉, 2015b, 「元禄・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0号. 일본인 연구자는 2014년에 들어 다음 논문에서 처음으로 지도의 채색을 밝혔다. 竹内猛, 2014, 「竹嶋編入当時の日本人の領土認識」, 『郷土石見』 95号, 53쪽.

되지만 단정할 수 없다는 것, 조선 지도에 울릉·우산 두 섬이 있다는 것 등을 회답하고 조선 지도도 제출했다.⁸² 이런 회답 등에서 막부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조선의 울릉도와 우산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실제로 평정소 관계자가 작성했다고 생각되는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朝鮮竹嶋渡航始末記)』⁸³의 부속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본토와 같은 붉은 색으로 채색하고 조선 영토로 그렸다. 이 지도의 채색에 관해서도 일본인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본 것이다.⁸⁴

한편, 일본정부의 자료의 인용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 일본정부처럼 판결문에서 ‘가까운 마쓰시마’라고 잘라내면 마쓰시마는 일본에 가까운 인상을 준다. 하지만 원문은 ‘위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이며 ‘위’는 다케시마를 가리킨다. 즉 판결문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에 제일 가까운 섬으로 보았다.⁸⁵ 상식적으로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면 이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독도)도 도해가 금지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앞에 쓴 것처럼 1740년대에 오야 가문은 그렇게 이해했다. 일본정부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막부가 조선 영토로 본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금지된 것이며, 일본정부의 주장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의의에 관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겐로쿠 다케

82 한국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 종가문서」 고문서 목록 #4013; 번각은, 池内敏,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334~335쪽, 원문 및 번역은, 경상북도 사료연구회, 2017,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196~205쪽.

83 하마다시립도서관 소장,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와 거의 같은 글이 막부의 외교 기록 『통항일람속집(通航一覽續輯)』에 기록됨.

84 주 81)과 같음.

85 『無宿狩込一件』에 기록된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 원문은, “再應執成之義 三兵衛江相頼 右最寄松嶋江渡海之名目を以竹嶋江渡り 稼方見極ル上 弥益筋二有之ならハ取計方も可有之由二而 秋齋并同家來松井圖書も心得居ル趣 三兵衛申聞ル.”이다. 밑줄은 필자가 그었다. 『無宿狩込一件』(일본 국회도서관 소장)의 원문, 번각, 번역문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7,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127~191쪽.

시마 도해금령,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령, 메이지 10년 태정관(太政官) 지령, 이 세 가지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우리나라[일본] 중앙 정부 역대가 그때마다 되풀이해서 확인해 왔다”⁸⁶라고 주장했다. ‘덴포 다케시마일건’은 일본이 독도의 영유를 포기한 3대 사건의 하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정부견해」가 제시한 12개 자료 중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 때문인지 일본 외무성 팸플릿 『10포인트』는 위의 자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일본정부견해」가 말하는 고유영토론은 파탄한 것이다.

IV. 맺음말

일본 외무성의 『10포인트』는 마쓰시마(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일찍이 일본 정부는 고유영토의 근거를 1953~1962년에 한국정부에 보낸 「일본정부견해」에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유영토의 근거가 된다는 자료 12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오로지 『인슈(온슈)시청합기』에 대해서만 반론했을 뿐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충분한 분석이 있는 자료는 『인슈시청합기』와 돗토리번의 「회답서」뿐이다. 이 두 자료는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나머지 10개 자료 중에서 「다케시마도」, 돗토리 번주의 「각」,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고타니 회도」)의 관련 사료, 나가사키봉행소에게 제출된 오야의 「구상서」의 관련 문헌들도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의 관련 자료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오야의 「청서」를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논리를 개발한 ‘마쓰시마 도해면허’ 설인데 외무성은 이를 고유영토론의 기둥으로 세웠으나, 이는 무리한 주장

86 池内敏, 2016, 앞의 책, 183쪽.

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와카미 겐조는 ‘오야가 문서’에서 ‘가메야마 서장’을 발굴했다. 이에 따르면, 오야가 1661년부터 다케시마(울릉도) 안의 마쓰시마로 도해할 일에 관해 ‘로주의 내의’를 얻었다고 한다. 이 ‘로주의 내의’는 이케우치 사토시 등이 반론했듯이 마쓰시마 도해면허와 무관하다. 한편 ‘가메야마 서장’은 다케시마 도해 관계자가 마쓰시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즉 도해 당사자인 오야·무라카와 양가나 아베 시로고로 등 막부 관계자들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 즉 다케시마의 부속 섬처럼 인식하고 있었으며, 로주도 그렇게 들었다고 한다. 그런 부속 섬 같은 마쓰시마에 도해하는 것은 따로 면허나 허가는 필요 없었던 것이다. 또한 다케시마로의 도해가 1696년에 금지되었는데 이는 바로 다케시마 안에 있는 마쓰시마로의 도해도 금지되었음을 의미한다.

현재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후에도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돗토리번이 막부에게 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 부속된 것도 아니고, 일본 어느 지방에도 부속되지 않는다고 듣고 있다고 보고했던 섬이다. 그런 섬으로의 도해가 허용될 리가 없다. 또한 에도 막부는 한 번도 마쓰시마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대체로 막부는 ‘겐로쿠 다케시마 일건’(울릉도 쟁계)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마쓰시마를 알았다. 그런 마쓰시마에 막부가 영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도해 당사자였던 오야·무라카와는 마쓰시마는 다케시마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1650년대에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후도 이 인식에는 변함이 없었으며,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케시마·마쓰시마 도해금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오야는 1741년에 나가사키봉행 및 막부의 중추 기관인 지샤봉행 등에게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금제라고 설명했으며, 각 봉행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한, 일본정부는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근거로 ‘텐포 다케시마일건’ 당시 평정소가 하치에몬에게 1836년에 내린 판결문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관련 자료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

다. 판결문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에 가장 가까운 섬으로 보았으므로 다케시마 도해가 금지되었다면 이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허용되었을 리가 없다. 실제로 하치에몬 등을 처음에 문초한 오사카마치봉행소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하고 이를 드러내는 지도 「다케시마방각도」를 그렸다. 막부 중앙도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을 신중히 조사한 결과 이들은 조선의 울릉·우산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한 평정소 관계자는 「다케시마방각도」처럼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그린 지도를 작성하고 사건 기록 『조선다케시마도항시말기』에 첨부했다.

이상과 같이 에도 막부가 마쓰시마(독도)에 대해 영유 의사를 가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따라서 마쓰시마가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 때문인지 외무성의 『10포인트』는 이들 12개 자료를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견해」의 고유영토론이 파탄했음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메이지시대에는 잘 알려져 있듯이 1877년 태정관이 다케시마·마쓰시마는 일본과 상관이 없다고 지령했던 기록을 비롯해 마쓰시마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보여주는 자료는 있으나,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임을 보여주는 공적인 자료는 1905년 이전에는 없다. 결국 일본정부는 1905년 이전 독도에 대해 한 번도 영유 의사를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 외무성의 주장은 결코 성립될 수 없다.

참고문헌

〈한국어〉

-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2017, 『독도 관계 일본고문서 4』.
- 곽진오, 2014, 「일본의 독도고유영토, 무주지선점, 그리고 국제법적주장의 허구와 한계」, 『일본문화학보』 62호.
- 권정, 2014, 「18세기말 오키도(隱岐島)의 죽도전승」, 『일본어문학』 65집.
- 김호동, 2011,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설’ 비판」, 『민족문화논총』 49호.
- 다케우치 다케시 저, 송휘영·김수희 역, 2013, 『獨島=竹島 문제 ‘고유영토론’의 역사적 검토』 I, 선인.
- 박병섭, 2012a, 「안용복사건 이후의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3호.
- _____, 2013, 「17세기 일본인의 독도 어업과 영유권 문제」, 『독도연구』 15호.
- _____, 2015a, 「대일강화조약과 독도·제주도·쿠릴·류큐제도」,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VII』, 선인.
- _____, 2016, 「池内敏의 『竹島—또 하나의 일·한 관계사』」, 『독도연구』 20호.
- _____, 2018(발간 예정), 「텐포 다케시마일건과 독도 영유권 문제」, 『독도사료연구회 활동(2010-2018)에 관한 최종 보고서』,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
- 서인원, 「1950년대 일본 고유영토설의 정치적 분쟁화 모순점에 대한 고찰」, 『영토해양연구』 15호.
- 송휘영, 2014, 「『죽도문제 100문 100답』의 「죽도도해금지령」과 「태정관지령」 비판: 일본의 ‘고유영토론’은 성립하는가?」, 『독도연구』 16호.
- 외무부, 1977, 『왕복외교문서(1952-1976)』.
- 일본 외무성, 2014,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

〈일본어〉

- 堀和生, 1987, 「一九〇五年 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4号.
- 内藤正中, 2004, 「竹島(独島)問題の問題点」, 『北東アジア文化研究』 20号.
- 内藤正中·金柄烈, 2007, 『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 大西俊輝, 2007, 『続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 _____, 2011, 『第三部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 島根県/島根県教育委員会/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2017, 『竹島～日本の領土であることを学ぶ～』, 島根県.
-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ク.
- 馬場章, 2001, 『地図と絵図の政治文化史』, 東京大学出版会.
- 木村幹, 2014, 「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 『東洋史研究』, 72권 4호.
- 朴炳涉, 2012b, 「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35号.
- _____, 2014,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39号.
- _____, 2015b, 「元禄・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40号.
- 三田清人, 2007, 「鳥取県立博物館所蔵 竹島(鬱陵島)・松島(竹島/独島)関係資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 最終報告書』, 島根県.
- 森田芳夫, 1961, 「竹島領有をめぐる日韓両国の歴史上の見解」, 『外務省調査月報』第2巻 5号.
- 森須和男, 2002, 『八右衛門とその時代』, 浜田市教育委員会.
- _____, 2016, 「天保竹島一件顛末」, 『郷土石見』102호.
- 山辺健太郎, 1965,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코리아評論』7卷2号.
- 山陰中央新報社, 2006, 『発信 竹島～下條正男・拓殖大学教授に聞く』, 山陰中央新報社.
- 外務省, 2014, 『尖閣諸島』.
- _____, 2015, 『われらの北方領土』.
- _____, 『日韓国交正常化交渉の記録』, XV竹島問題(公開文書番号 910, 발간 연도는 불명).
- 羽場久美子, 2013/2, 「尖閣・竹島をめぐる「固有の領土」論の危うさ」, 『世界』.
- 油井宏子, 2009, 『江戸時代&古文書虎の巻』, 柏書房.
- 伊東巳代治, 『帝國版圖』, 国会圖書館所蔵「伊東巳代治関係文書」42(발행 연도는 불명).

- 長久保赤水生誕3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会, 2017, 『近代地理学の祖 長久保赤水』.
- 田川孝三, 1988(原稿는 1965年以前), 「竹島領有に関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20』.
- 田村清三郎, 1955, 『竹島問題の研究』, 島根県.
- _____, 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
- 竹内猛, 2010,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前編, 私家版.
- _____, 2014, 「竹嶋編入当時の日本人の領土認識」, 『郷土石見』95号.
- 池内敏, 2005, 『「隠州視聴合紀」の解釈をめぐって』, 『青丘学術論集』25集.
- _____, 2011, 「竹島／独島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732号.
- _____, 2012,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 _____, 2015, 「「国境」未満」, 『日本史研究』630号.
- _____, 2016,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 _____, 2017, 『日本人の朝鮮観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 川上健三, 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 _____, 1953, 『竹島の領有』, 外務省.
- 塚本孝, 1985, 「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圖(上)」, 『レファレンス』411号.
- _____, 1994,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244号.
- _____, 2013, 「元禄竹島一件をめぐって—付、明治十年太政官指令」, 『島嶼研究ジャーナル』2巻2号.
- _____, 2014, 「竹島領土編入(1905年)の意義について」, 『島嶼研究ジャーナル』3巻2号.
- 下條正男, 2005/6, 「続 竹島問題研究の課題」, 『現代コリア』.
- _____, 2007, 「最終報告にあたっ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 _____, 2011, 「実事求是 第20回「東北アジア歴史財団」の愚挙について」,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2009年度,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 和田春樹, 2012, 『領土問題をどう解決するか』, 平凡社新書.

〈사료〉

『竹島渡海一件記』, 『竹嶋渡海由來記拔書控』, 『竹嶋之書附』, 『大谷氏舊記』三, 『朝

『鮮竹嶋渡航始末記』, 『礪竹島覺書』, 『隱州視聽合記』, 『隱岐國古記』, 宗家文書,
『村川家文書』(写), 『通航一覽續輯』

일본정부의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역사학적 검증

박병섭

일본정부는 1956년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이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하는 근거는 외무성의 팸플릿 『10포인트』에는 없으며, 1953-1965년에 있었던 한·일 정부간 독도 영유권 논쟁에서 제시되었다. 이때 「일본정부견해」는 역사적인 자료 12개를 제시하면서 일본은 17세기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들에 대해 충분한 선행 연구가 있는 자료는 『인슈시청합기』와 돗토리 번이 막부로 제출한 「회답서」 등 2개뿐이다. 이들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본고가 나머지 자료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번주의 「각」, 「다케시마도」, 「마쓰시마·다케시마의 지도」의 관련 사료, 나가사키 봉행에게 제출된 오야의 「구상서」 관련 자료는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정부가 인용한 「텐포(天保) 다케시마일 건」에서의 하치에몬(八右衛門)에 대한 판결문도 관련문서는 오히려 마쓰시마가 조선 영토임을 가리키고 있다. 이때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발령되었는데 이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

는 금지된 것이다.

이처럼 마쓰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드러내는 자료는 하나도 없다. 이 때문인지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 『10포인트』는 위의 자료들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정부가 예전에 고유영토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 12개는 거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견해」의 고유영토론은 성립될 수 없으며, 파탄한 것이다.

주제어: 한국정부견해, 일본정부견해, 독도, 다케시마, 마쓰시마, 울릉도

ABSTRACT

Inspection for the ‘Japanese inherent territory theory’ to Dokdo

Park Byoungsup

Since 1956,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gun to insist that the Dokdo is an inherent territory of Japan. The reason why Japan calls Dokdo as its own territory was not shown in the pamphlet, *10 points to understand the Takeshima Dispute*,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ut was shown in the debate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1953-1965. At this time,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 proposed 12 historical documents and claimed that Japan had established sovereignty over Dokdo in the 17th century.

There are only two documents with sufficient precedent research for those documents, namely “*Description of seeing and hearing about Inshu*” (『隱州視聽合記』) and “The answer book which Tottori feudal clan submitted to the Shogunate.” These show Matsushima(Dokdo) is not Japanese territory. Also, As a result of analyzing remains of documents, it was found that following documents revealed that

Matsushima(Dokdo) was not Japanese territory, namely “Tottori feudal lord’s memorandum”, “Map of Takeshima”, The related materials such as “Map of Matsushima and Takeshima” and “Note verbale” sent by the Oyas to the Nagasaki magistrate. Not only that, but the relevant documents of the judgment on Hachiemon at the Tenpo(天保) Takeshima Affair which cited by Japanese government show that Matsushima is Chosun territory.

For these reasons, the pamphlet by MOFA did not cite any of the above materials. This is a self-evident statement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had previously provided 12 documents on the basis of its inherent territory as little evidence. In the end, the inherent territory theory of the ‘Japanese government’s view’ can not be established.

KEYWORDS: Korean government’s view, Japanese government’s view, Dokdo, Takeshima, Matsushima, Ulleungdo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출토자료를 활용한 중국 고대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심재훈,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晉)의
봉건에서 문공(文公)의 패업까지』, 일조각, 2018—

박재복 |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학과 교수

- I. 머리말
- II. 책의 구성과 방법론적 시도
- III. 고대사 복원과 새로운 지평
- IV. 덧붙여서 침소봉대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2018년 10월 중국 하남성 안양시(安陽市)에서 “은허(殷墟) 과학 발굴 9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1928년 역사어언연구소(歷史語言研究所)가 성립되고 은허에서 중국 최초로 과학적인 고고발굴이 진행되어 9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1889년 왕의영(王懿英)에 의해 갑골문(甲骨文)의 존재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1908년 나진옥(羅振玉)에 의해 그 갑골문의 출처가 하남성 안양시 소둔(小屯)으로 밝혀졌다. 1917년 왕국유(王國維)는 갑골문과 『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에 보이는 상왕(商王)의 세계(世系)를 비교분석해 소둔이 반경(盤庚)이 천도한 상(商) 후기의 수도인 은허라는 것을 논증해 내었다.¹ 당시 의고학과(疑古學派)에 의해 전설의 역사로 인식되던 상왕조가 갑골문의 출현과 고증을 통해 실존의 역사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1949년 중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중국 전역에서 과학적인 고고발굴이 진행되었고 수많은 고고유적과 유물들이 새롭게 발견되어 중국 고대사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992년 한중(韓中) 수교 이후로 한국 연구자들에게도 중국사 연구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러한 시류에 동참해 서평자도 북경대학 고고문박학원(考古文博學院)에서 공부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십여 년간 체류하는 동안 중국 전역에 있는 고고발굴현장을 견학하였다. 산서성(山西省) 답사도 대역서번 다녀왔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6년 말에 지도교수이신 유서(劉緒) 선생님께서 당시 박사과정생인 북경대학 역사학과 한위(韓巍) 교수와 중국국가박물관

1 王國維, 2010,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考」, 「殷卜辭中所見先公先王續考」, 『觀堂集林』, 中華書局, 409~450쪽.

염지(閔志) 연구원 그리고 나를 데리고 일주일간 산서지역을 답사한 것이다. 새로 발견된 고고유물들을 정리하면서 유서선생님을 초청한 것인데 우리와 동행한 것이다. 천마(天馬)-곡촌(曲村), 북조(北趙)에 위치한 진후묘지(晉侯墓地) 및 거마갱(車馬坑), 후마공작잠(侯馬工作站), 횡수묘지(橫水墓地) 등에서 새로 발굴된 유적과 유물들을 직접 목도할 수 있었으며, 주변 고고유적과 박물관을 견학하고 현지 연구자들과도 교류하며 산서지역 고고유적과 유물에 대해 견식을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또한 북경대학 고고문박학원은 중국전역에서 새롭게 출토된 고고유적과 유물들을 종종 소개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상문화의 특징인 요갱(要坑)이 있는 300여기 횡수묘지의 중소형 무덤과 붉은 색의 관곽에 이중대(二層臺) 사면에 벽감(壁龕)이 설치된 이색적인 대하구묘지의 대형 무덤을 소개한 산서 남부지역의 특장은 여전히 나의 뇌리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산서지역의 주요 고고발굴을 북경대학 고고문박학원에서 주도하였기 때문에 이들 자료에 익숙했지만 공부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던 나와는 대조적으로 산서지역에 열정을 바치는 연구자가 있으니, 바로 이 책의 저자인 단국대학교 사학과 심재훈 교수이다.

이 책의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듯이 심재훈 교수는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교에서 중국 서주사(西周史)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3년 중국을 방문해 발굴이 진행 중인 진후묘지를 보고 온 그의 은사 에드워드 쇼네시(Edward L. Shaughnessy)를 통해 박사학위논문의 주제로 진국(晉國)을 선택했다. 그 이후, 미국에서 혹은 한국에서 중국을 오가며 몸소 고고발굴현장을 답사하고 연구한 주요 성과들을 모아 책으로 내는데 25년이 소요되었다.

인고의 시간과 열정으로 진국의 역사 복원에 매진하고 있는 그의 노력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공자(孔子)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꿈꾸던 주공(周公)과 같이 그가 열망하던 진국의 역사를 새롭게 재구성해 독자들에게 선보인 것이다.

본 서평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책의 편제와 연구방법론, 새로운

연구성과 요약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저자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책의 구성과 방법론적 시도

1. 책의 구성

이 책은 크게 서론, 본론, 총결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 목차는 다음과 같다.

서론: 진국사의 재조명

본론: 제1장 상말주초 산서성의 정치지리와 진의 봉건

제2장 서주시대 진의 세계와 문화적 특성

제3장 서주시대 진국 주변의 정치체들

제4장 군사사 측면에서 바라본 서주시대 진국의 발전

제5장 주 왕실의 동천과 진 문후

제6장 춘추 초 진국의 새로운 발전: 곡옥 소종과 상곽촌 청동기

제7장 현공의 혁신과 문공의 패업

총결: 초기 진국사의 재구성

본론의 제1장에서는 갑골문과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상말(商末) 주초(周初)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제2~4장에서는 서주시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제2장에서는 진국이 속해 있는 산서 남부지역의 고고학 성과를 소개하고, 제3장에서는 진국 주변의 봉(邶)과 패(覇)로 대표되는 이민족 정치체를 소개하고, 제4장에서는 청동기 명문에 남아 있는 진국과 주변 정치체들의 전쟁에서

진국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서주 말기에서 춘추 초기 평왕(平王)의 동천에 관한 고사를 정리하고 진 문후의 혁혁한 역할을 소개했다. 제6~7장은 춘추시대 진국이 패권국(霸權國)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고찰하였는데, 제6장에서는 진 문후 사후 67년간의 내전과 곡옥 소종에 대한 고고학적 성과에, 제7장에서는 문공의 부친인 헌공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각 장의 이러한 내용은 흩어져 있던 전래문헌과 출토문헌 자료, 고고유적과 유물들을 하나의 관점으로 엮어 진국 초기의 역사를 완벽하게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저자가 1999-2016년까지 발표한 진국과 관련된 소논문들을 시대 순서대로 배치하고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연구의 완결성을 높였다.

2. 새로운 방법론적 시도

(1) 단일 제후국에 초점

공간적으로는 산서성 남부지역에 위치한 진국(晉國), 시간적으로는 상 후기에 서 춘추시대에 초점을 맞췄다. 전래문헌 기록은 대부분 주왕조를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서주시대 여러 지역에 위치한 제후국에 관한 정보는 소략하거나 산발적이다. 다행히 중국 전역에서 고고발굴이 진행되어 산서성 후마(侯馬)의 진국, 북경 유리하(琉璃河)의 연국(燕國), 산둥성 곡부(曲阜)의 노국(魯國), 하남성 준현(浚縣)의 위국(衛國)·평정산(平頂山)의 응국(應國)·정주(鄭州)의 관국(管國)·녹읍현(鹿邑縣)의 송국(宋國), 하북성 형대(邢臺)의 형국(邢國) 등 서주시대 제후국에 관한 유적과 묘지들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그중에서 산서 남부지역에서 발견된 진국 관련 유적이 규모도 크고 내용도 풍부해 연구 주제로 선택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

(2) 출토자료의 활용

새롭게 발견된 출토자료들을 적극 활용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전래문헌에 의

존한 선행연구는 진국 초기의 자료가 소략하기 때문에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전래문헌과 출토문헌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굴하는 고고현장을 직접 답사하며 고고 유적과 유물자료들을 대거 활용해 다각도로 진국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전래문헌은 『사기』 「진세가(晉世家)」·「주본기(周本紀)」, 『국어(國語)』 「진어(晉語)」, 『상서(尙書)」 「문후지명(文侯之命)」, 금고문 『죽서기년(竹書紀年)」, 『좌전(左傳)」, 『일주서(逸周書)」 등을 주로 인용하였고, 출토문헌은 상후기 갑골문, 서주시대 청동기 명문(銘文), 전국시대 초간(楚簡)을 주로 활용하였다. 특히 최근 새로 발견된 청화간(淸華簡) 〈계년(繫年)〉과 〈진강정(晉姜鼎)〉, 〈진후소편종(晉侯蘇編鐘)〉, 〈용생편종(戎生編鐘)〉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했다. 또한 고고학 자료는 천마(天馬)－곡촌(曲村), 북조(北趙) 진후묘지(晉侯墓地), 강현(絳縣) 횡수묘지(橫水墓地), 익성현(翼城縣) 대하구묘지(大河口墓地) 등에서 새로 발굴된 청동기와 도기를 주로 활용하였다.

왕국유가 처음으로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의 내용을 상호 보완하는 ‘이중증거법(二重證據法)’으로 중국 고대사를 재구하여야 한다고 제창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고고학 자료까지도 대거 활용하여 다각적인 연구방법으로 진국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한 점이 매우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Ⅲ. 고대사의 복원과 새로운 지평

이 책에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진국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본문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모두 7개의 장으로 구분하였지만 매 장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편의 장편 역사서를 읽는 느낌이다. 그 주요 연구 성과를 다음과 같이 장별로 정리하면서 서평해 보고자 한다.

제1장 상말주초 산서성의 정치지리와 진의 봉건

이 장에서는 상후기 갑골문의 내용을 토대로, 산서 남부지역의 지(洹), 혹(或), 망(望), 보(甫), 삼(叅), 궁(巨), 부(缶), 양(易) 등과 같은 정치체가 상왕조와 산서 서북지역의 공방(古方) 사이에서 활동하면서 상황에 따라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보면, 산서 서남지역은 원곡상성(垣曲商城)²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상초기 이리강(二里崗)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받지만 상중후기 고고학 자료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산서 동남지역의 장치(長治) 소신유지(小神遺址)³에서 상중기의 특징이 확인되며, 최근에 문희현(聞喜縣) 주무두묘지(酒務頭墓地), 부산현(浮山縣) 교북묘지(橋北墓地)와 같은 상후기 고고유적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 차후 이들 유적의 발굴보고서가 발표되어 산서 서남부 지역의 여러 방국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한편, 서주 초기 당숙(唐叔) 우(虞)의 분봉지에 관해 갑골문에 보이는 ‘양(易)’자와 ‘당(唐)’자의 통가사례를 논증하고, 선행연구를 비교분석해 산서 홍동현(洪洞縣)의 인근으로 비정하고 있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2장 서주시대 진의 세계와 문화적 특성

발굴보고서와 선행연구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진후묘지의 연대를 서주 초기에서 서주 말기로 비정하고, 시기가 가장 빠른 M114의 묘주(墓主)를 진후 섭(燮)으로 가장 늦은 M93의 묘주를 상숙(殤叔)으로 추정하였다.

청동기 명문에 보이는 진후의 명칭과 『사기』 「진세가(晉世家)」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매 진후를 상호 대조해 진후의 ‘명(名)’과 ‘자(字)’의 차이라는 견해를 수

2 中國歷史博物館考古部·山西省考古研究所·垣曲縣博物館, 1996, 『垣曲商城: 1985-1986年度勘察報告』(1), 科學出版社, 204~205쪽.

3 山西省考古研究所晉東南工作站, 1996, 「長治小常鄉小神遺址」, 『考古學報』1996-1.

용하였다. 또한 진후묘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주왕조의 중심지인 주원(周原)과 하남의 궤국(魏國), 응국(應國) 등과의 비교를 통해 ‘진문화(晉文化)’라고 독립적으로 부르기 보다는 주문화권의 하부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평자도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 책에서는 진후묘지와 같이 대형묘지와 청동기 자료를 주로 활용해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는데,⁴ 차후 거주지와 중소형묘지가 발견되고 이곳의 도기 등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최고 통치자로 대표되는 주문화 요소뿐만 아니라 하층문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 특색이 혼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⁵

제3장 서주시대 진국 주변의 정치체들

산서 서남지역에서 발견된 강현(絳縣) 횡수묘지(橫水墓地)와 익성현(翼城縣) 대하구묘지(大河口墓地)를 중심으로 서주시대 봉(邘)과 패(覇)와 같은 진국 주변 정치체들의 고고학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의 묘지에 부장된 방대한 청동예악기의 파격에 대해 서주시대 귀족묘에 반영된 의례규범 속에서 그 맥락을 찾고자 하였다.

봉과 패의 연원에 대해, 북방의 용적이나 상과의 연관성에서 찾으려고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소개하며 『좌전』 「정공(定公)」 4년에 숙우(叔虞)에게 나눠 준 것으로 언급된 ‘회성구종(懷姓九宗)’으로 파악하고, 서향 위주의 두향과 요갱(腰坑) 등으로 대표되는 매장풍속에서 상문화와 연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상장의례상의 불균형과 파격을 통해 지역 정치체가 지닌 양면적 성격

4 북경 유리하의 연도유지(燕都遺址)를 예로 들면, 고성(古城), 묘지, 거주지가 모두 발견되었다. 그 결과 주문화의 전형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상문화와 현지의 지역적 특색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 책에서도 사요정(謝堯亭)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면서, 곡촌(曲村) 묘지의 두향을 청동기의 부장 및 요갱과 순구 유무 여부 등과 비교 검토하여 357기에 이르는 북향의 묘주들을 주인(周人)으로, 242기에 이르는 동향의 묘주들을 당인(唐人: 즉 懷姓九宗)으로, 34기에 이르는 서향의 묘주를 은유민(殷遺民)으로 구분하고 있다.

을 강조하여 선행연구의 성과를 뛰어넘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상왕조에 동화되었던 토착 정치체들이 상주 교체기를 거치며 서주에 편입되는 과정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논리가 매우 치밀하면서도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제4장 군사사 측면에서 바라본 서주시대 진국의 발전

이 장에서는 전래문헌과 청동기 명문의 내용을 주로 비교대상으로 삼아 서주시대 진국의 성장 과정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선행연구가 대부분 『주례(周禮)』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적 측면에 치중해 온 것을 비판하고 전쟁관련 청동기 명문들을 중심으로 실제 참전자와 세력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서주 군대의 구성은 왕실의 군대, 왕기(王畿) 내 공경들의 군대, 제후들의 군대로 구분되는데, ‘중층적 사속(私屬) 관계’를 근간으로 하는 서주 군대의 연합적 성격에 주목하고, 육사(六師 혹은 八師)로 불리는 상비군과 사씨(師氏), 호신(虎臣)과 같은 전문 군사조직이 전체 참전자 중에서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함에 주의하였다.

또한 서주시대 진의 군사적 역할에 주목한 점도 특기할만하다. 〈진후소편중〉 명문에서 진후가 자신의 군대뿐만 아니라 왕의 명을 받고 왕의 군대까지 통솔한 점을 통해 진국이 다른 제후국들과 달리 왕실의 측근 세력으로 발전해 가는 양상을 조명했다.

이와 같이 여기에서는 전래문헌의 한계를 극복하고 청동기 명문에 보이는 전쟁관련 자료를 매개로 진국의 발전양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했다고 평할 수 있다.

제5장 주 왕실의 동천과 진 문후

『사기』 「주본기(周本紀)」, 『국어』 「주어(周語)」·「진어(晉語)」, 금고문 『죽서기년(竹書紀年)」, 『좌전(左傳)』 등 전래문헌의 내용 분석을 통해 서주 멸망과 동천 과정을 재구하고 신(申)과 견융(犬戎)의 위치문제, 휴왕(携王)의 존재와 동천에서 진 문후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새로 발견된 청화간 〈계년(繫年)〉과 『상서』 「문후지명(文侯之命)」과 〈진

강정(管姜鼎), <융생편종(戎生編鐘)>의 명문 내용을 분석해 주왕실의 조력자로 성장하는 진국의 변화양상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중국 고대사 연구에서는 전승과정 중에 각색되거나 단편적인 내용이 담긴 후대의 전래문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어떤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보고 어떤 내용을 후대에 가미한 허구로 구분할 지는 매우 난해한 문제이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전래문헌과 출토문헌 내용의 절충을 통해 현재로서 가장 설득력 있게 평왕의 동천 과정을 재구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지금까지와 달리 진국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자료가 새롭게 발굴된다면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제6장 춘추 초 진국의 새로운 발전: 곡옥 소종과 상곽촌 청동기

이 장에서는 진 문후 사후 67년 동안 지속된 진의 내전 과정을 살펴보고, 문희(聞喜) 상곽촌묘지(上郭村墓地)에서 출토된 고고학 유물을 통해 이 시기를 주도한 곡옥(曲沃) 소종(小宗)의 물질문화를 검토하였다.

춘추 초기 산서 남부지역에 위치한 곡옥 소종의 문화적 양상에서 북방 초원 문화의 요소가 출현했다. 진국의 혼인관계에서도 곡옥 무공(武公)의 아들인 헌공(獻公)이 최초로 융(戎)과 혼인을 하여 북방지역과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 점을 알 수 있다.

전래문헌에 기초한 선행연구에서는 진국이 초기부터 융적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전래문헌, 출토문헌, 고고학 발굴자료 등을 치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곡옥 소종의 시대에 와서야 북방의 융적과 혼인관계를 맺어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해 내었다.

제7장 헌공의 혁신과 문공의 패업

헌공이 공족(公族)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고 융적과의 혼인 정책으로 관계를 개선해 산서성의 주요 희성(姬姓) 제후국들을 완전히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진국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문공이 패권국

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문공이 패자가 되는 과정을 최근 새롭게 발견된 〈자범편종(子犯編鐘)〉과 〈진공반(晉公盤)〉 명문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문공은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다 진국으로 귀국해 4년 만에 춘추시대의 최고 영웅으로 부각된다. 또한 성복(城濮)의 전투와 천토(踐土)의 회맹 등을 통해 정권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 대한 재구성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책은 놀라운 연구 성과 이외에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즉,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래문헌과 출토문헌 그리고 고고학 자료들을 다각도로 총괄하고 활용하여 비교분석함은 물론 선행 연구의 성과들을 치밀하면서도 비판적 입장으로 수용하여 최상의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 점이다.

IV. 덧붙여서 침소봉대

이 책은 전반적으로 논리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치밀하며 선행연구의 연구 성과들을 적절하게 수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현시점에서 거의 완벽하게 진국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있는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서평에서는 극히 일부 확인 되는 저자와의 다른 생각을 언급해 독자들의 상상력을 좀 더 폭 넓게 하고자 한다.

1. 출토문헌의 해석 문제

상주시대의 갑골문, 청동기 명문, 간독 등 고문자로 된 1차 자료들을 정자로 예정(隸定)하고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은 중국 고대사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기초 작업이다. 따라서 이들 관련 제반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갑골문

이 책에서는 갑골문의 전사(前辭) 내용을 “정유일에 금을 내고, 출이 점치기를(丁酉卜, 出貞)”이라는 형태로 일관되게 번역하고 있다. 상후기 온전한 갑골문⁶은 전사(前辭)－명사(命辭)－점사(占辭)－험사(驗辭)로 구성되어 있다.⁷ 전사(前辭)는 ‘서사(敘辭)’라고도 하며, 점복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서술 내용이며 갑골면의 찬(鑢) 안쪽에 불로 지저 금을 내는 구체적인 점복과정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앞의 복(卜)자는 점복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으로 “정유일 점복에 출이 묻기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금을 내다는 표현의 구체적인 점복과정은 명사(命辭)와 점사(占辭)의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점복을 칠 때, 먼저 갑골의 원료를 입수해 다듬고 찬착(鑢鑿)을 만들어 점복재료를 준비해 놓는다. 실제로 점복이 있는 날에 관련 사람들이 모여 축수(祝禱)와 명귀(命龜)를 하고 갑골면에 이미 만들어 놓은 찬 안쪽에 불로 지저서 ‘복(卜)’자 형태의 복조(卜兆)를 만든다. 점복활동의 주관자가 이러한 복조를 보고서 점복의 길흉을 판단하며, 갑골문은 점복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새기는 것이다. 오랫동안 외지에서 순행이나 사냥을 하면서 점친 내용들은 수도인 은(殷)으로 돌아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 새긴 것도 발견된다.⁸

6 상후기 갑골(甲骨文)은 재료에 따라 복골(卜骨)과 복갑(卜甲)으로 나눌 수 있다. 복골은 대부분 소의 좌우견갑골 2개를 한 세트로 사용하고, 복갑은 절대다수가 거북의 배 껍질 1개에 천리로(千里路)를 경계로 좌우를 한 세트로 사용하여 갑골문을 새겨 ‘좌우대정(左右對貞)’을 이루게 한다.

7 전사(前辭)는 일반적으로 ‘간지(干支)’와 ‘복(卜)’자로 구성되었으며, 일부는 다른 형태도 존재한다. 명사(命辭)는 ‘빈정(賓貞)’과 같이 ‘정인(貞人)’의 이름과 ‘정(貞)’자로 구성되었으며, 정인의 이름을 생략하기도 한다. 정(貞)자의 뒤에는 정반(正反)의 의문(問疑) 사유(事由)을 묻는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동안 의문문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저자가 소개한 것과 같이 일부 학자들은 평서문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점사(占辭)는 ‘왕점(王占)’과 같이 점복을 주관하는 사람이 복조(卜兆)를 보고서 그 결과를 길흉(吉凶)으로 판단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험사(驗辭)는 점복 결과에 대한 증험을 기록하고 있다.

8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도 갑골점으로 장사지내는 것을 점치는데, 장소, 참가인원, 점복재료(龜·楚煇·燠), 점복과정(陳龜·爲位·奠龜·示高·命

물론 위에서 언급한 한국어 번역의 사소한 문제는 지리 비정이나 방국들의 상호 관계를 논증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2) 청동기 명문

〈진후소편종(晉侯蘇編鐘)〉은 주왕의 동방원정에 대한 원정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명문 내용에 ‘동혹(東或)’과 ‘남혹(南或)’이 보이는데, 이 책에서는 전자는 ‘동쪽 지역’이란 의미의 ‘동역(東域)’으로, 후자는 ‘남쪽 지역’이란 의미의 ‘남역(南域)’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혹(或)’을 ‘역(域)’보다는 ‘국(國)’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응후시공궐(應侯視工簋)〉의 명문에서도 ‘국(國)’으로 쓰인 용례가 확인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여전히 오오니시 가쓰야(大西克也)의 학설을 따라 ‘역(域)’으로 번역하고 있다.⁹

그런데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봉(李峰)의 ‘읍제국가’를 수용하여 상주시대 아직 국경의 경계가 없이 읍(邑)을 중심으로 하는 방국이란 의미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역(域)’보다는 통일성을 갖춘다는 의미에서 후자인 ‘국(國)’으로 이해하여 ‘동쪽지역의 방국들’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동이(東夷)와 남이(南夷 혹은 淮夷, 南淮夷)는 상주왕조와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그 중간에 위치한 동국과 남국은 상주왕조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어떤 시기에는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를 유지하였던 방국들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주시대 청동기 명문에 보이는 동혹(東或)과 상후기 갑골문에 보이는 ‘동토(東土)’는 유사한 용법이지만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책의 〈그림 7-2〉 자범편종(子犯編鐘) 명문에서 (6)번 모본의 좌우 서사방식이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곧 〈자범편종〉의 모본은 모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서사하는데 반해 (6)번의 왼쪽 모본은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사했다. 이러한 현상이 청동기 주조 단계에서 반대로 서사된 것인지, 모본을 만드

龜·作龜·占卜·旅占·徹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9 심재훈, 2018, 『청동기와 중국 고대사』, 사회평론아카데미, 109쪽, 역주12.

는 단계에서 잘못 모사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부연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3) 고문자 예정

〈목정(卣鼎)〉은 마승원(馬承源)¹⁰의 논고를 인용하였는데, 그 명문을 “隹(唯)七月初吉丙申, 晉侯令(命)眉追于棚, 休又(有)禽. 侯釐昌皐冑·毋·戈·弓·矢束·貝十朋. 兹休用作寶簋, 其子子孫孫, 永用.”과 같이 예정(隸定)하고 구두 점을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일부 출토문헌은 역주로 원문만 제공하고 있는데, 隹(唯), 令(命), 又(有)와 같이 당시에 쓰였던 글자를 그대로 예정함으로써 그 시대성과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전래문헌의 해석 문제

이 책에서는 ‘상읍(商邑)’을 분하(汾河) 중하류의 상과 우호적인 정치체로 보고자 하였다.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에 보이는 ‘상읍’, ‘대읍상(大邑商)’은 일반적으로 왕도(王都)를 지칭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후기 수도인 ‘은(殷)’ 혹은 ‘조가(朝歌)’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금본죽서기년』에 보이는 ‘정자(鄭子)’를 정국의 왕자 혹은 정 출신의 고위 인물로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해에 유왕과 함께 시해된 정(鄭) 환공(桓公)의 아들 무공(武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리고 ‘정’자를 ‘증(曾: 鄺)’자 일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는데, 금문의 자형에서 두 글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이(以)’에 대해 여러 곳에서 ‘이에’라는 의미의 ‘내(乃)’로 번역했다. 전래문헌과 출토문헌에서 ‘이’의 용법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두 앞 뒤 문장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용법인 ‘하여’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10 馬承源, 1992, 「新獲西周青銅器研究二則」, 『上海博物館集刊』(6), 153~154쪽

3. 고고학 자료의 활용 문제

산서 남부지역에서 상(商) 무덤의 대표적인 특징인 요갱(要坑)과 이층대(二層臺), 북방문화의 특징인 쌍이관(雙耳罐)과 삼족옹(三足瓮), 산서지역에서 보이는 특수한 벽감(壁龕) 등이 산서 남부지역에서 발견되는 현상에 대해 좀 더 실증적인 논증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차후 이러한 이색적인 문화요소가 산서 남부지역에 유입되는 경로와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의 문화교류를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진국의 고고학적 현상이 기본적으로 주왕조의 하부 유형에 속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왕조의 중심지역인 주원(周原)과 완전히 동일한 문화를 형성했다고 할 수 없다.

이가애(李家崖) 유적은 상 후기에서 서주 초기에 해당되는데, 삼족옹(三足瓮)과 같이 북방적 요소가 강한 유물이 대거 발견되었으며, 복골(卜骨)과 같이 상초기 특징을 띠고 있는 것도 발견되어 동시기 중원의 고고문화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초기 문화의 요소가 있지만 상 후기에서 서주 초기 중원과 직접적인 교류가 많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북방민족의 특징이 농후한 청동기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서성 하가촌(賀家村)과 산둥성 임기(臨沂)에서 출토된 대류정(帶流鼎)과 일반 정(鼎)은 육류를 삶거나 끓이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사에 받치는 희생은 부(釜)와 같이 다른 솥에서 먼저 삶아 익혀서 정(鼎)에 옮겨 담고 육류 희생이 식지 않도록 데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책에 소개하는 상곽촌(上郭村)에서 출토된 여러 점의 소형 대류정은 명기(明器)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일부 학자들이 육장(肉醬)을 담는데 사용되었다 하고, 저자는 주기(酒器)나 수기(水器)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대류정은 이(匜)와는 형태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다른 기물에서도 종종 유(流)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과 같이 온기(溫器)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들 대류정이 상당히 정교한데, 이 지역의 청동기 제작

기술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을 듯하다.

이상에서 살핀 내용들은 세세한 것들이라 이 책이 이룩한 성과에 작은 얼룩과 같은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 또한 저자도 그에 대해 논증과정에서 고민을 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겨우 아주 세세한 사항들만을 지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책은 놀랍도록 완벽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V. 맺음말

이 책은 산서 서남지역에서 새로 발견된 최신 고고학 자료들을 활용해 서주 초기 분봉된 진국이 어떻게 지역 국가로 성장해 춘추시대 강력한 패권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치밀하게 논증한 연구서이다.

전래문헌, 출토문헌, 고고학 자료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이 일맥상통하고 명료하게 재구하기란 좀처럼 어려운 작업이 아니다. 여러 곳에서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이 느껴진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면 기존의 가설은 일순간에 무너진다. 이 책에서도 이러한 용례를 구체적인 논증을 통해 일부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진국의 역사를 재구성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현재 진국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자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발적으로 보이는 문자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통해 복원하거나, 혹은 청화간과 같이 다른 나라의 출토문헌을 방증 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에서 오는 한계를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¹¹

11 청화간은 초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그 앞부분에는 주왕실과 중원의 일부 제후국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청화간이 서사된 전국시대는 서주시대나 춘추시대와 시간적으로 상당한 거리가 있고, 지리적으로도 남방에 위치하고 있어 중원의 역사적 사실을 얼마나 있는 그대로 기록하였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1차 자료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 성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자료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진국의 역사를 복원한 역작임이 명백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진국이 서주 초기부터 북방의 융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이 책에서는 서주시대의 고고학 유물에서 북방식 융적문화의 물질문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에 착안해 춘추시대 곡옥 소종에 이르러서야 북방의 융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제기함으로써 진국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누구나 주어진 시대와 환경에 따라 한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새로운 자료의 발견은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러나 아무나 이러한 선구적인 연구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할 때, 저자의 노력은 선후배 동학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

한편, 저자는 『청동기와 중국 고대사』(사회평론아카데미, 2018)라는 책을 동시에 출판하였다. 이 책은 크게 고대 중국의 청동기, 사료로서 청동기 명문, 청동기 명문과 중국 고대사로 나누고, 〈진후소편종〉, 〈응후시공〉, 〈인궐〉, 〈용생편종〉, 〈진강정〉, 〈진공전〉, 〈진공반〉 등 청동기와 그 명문, 고고학 자료들을 활용해 중국 고대사, 특히 서주사를 새롭게 재구했다. 이 두 책을 함께 읽는다면 더욱 그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기에 일독을 권한다.

중국 고대사, 선진사(先秦史)로 불리는 학문분야가 중국에서는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학자도 많고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실정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외학문 분야로 보호받아야 할 정도의 처지에 놓여있다.

잠자는 아이가 감기로 인해 코가 막혀 숨을 헐떡인다. 평상시 소근대는 숨결보다 거칠게 몰아쉬는 호흡에서 생명의 역동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힘들수록 역동적으로 더욱 새로운 생명력을 갈구할지도 모른다. 진국의 역사도 이 책을 통해 새롭게 잉태되었다. 새로운 생명의 출현은 곧 한국에서도 중국 고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세계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토대가 이 책을 통해 마련되었다. 수많은 독자들이 함께 읽으며 학문적 즐거움을 공유하길 바라며 서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 발견된 고고학 자료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고고학 자료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좀 더 많은 자료들이 새로 발견되어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논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길 고대한다.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와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 유용태, 서울대출판부,
2017—

정혜중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I. 동아시아사, 교육과 연구의 사이에서
- II.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
- III. 동아시아사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동아시아사, 교육과 연구의 사이에서

1990년대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역사학계 연구방법론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영향으로 일상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 동아시아가 연구자의 시야에 부각되면서 촉발된 동아시아 담론과 동아시아 주제의 연구로 집중 등이 그것이다. 동아시아 담론은 21세기에 들어서 실현 가능성의 여부가 논의¹되는 등, 활발하던 논쟁은 온기가 식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2007년 한국정부가 ‘동아시아사’ 교과를 고등학교 과정에 개설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자, 한국 역사학계는 고등학교 교육용 동아시아사 서술에 관심을 모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2년부터 가르쳐야 할 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에도 많은 인력이 모여 논의 하며 여러 종류의 교과서가 검증작업을 거쳤고 수정작업도 있었으며 많은 분석 연구도 병행되었다. 2016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학습한 수강생들이 역사 교양과목에서 보다 깊이 있는 동아시아사 강의를 기대한다고 생각하니 대학 강단에 서야하는 교육자들도 준비에 고민이 깊어졌다. 물론 새로운 단행본의 연구서가 공동연구 성과로 속속 출간되었다.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한 『미래를 여는 역사』(한겨레신문사, 2005)가 출판²된 2005년 한국의 중국사, 일본사, 한국사 연구자인 유용태·

- 1 김기봉, 2005, 「동아시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역사학보』 186, 2005, 267~289쪽.
- 2 2005년의 공동연구작업을 토대로 이후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2(휴머니스트, 2010~2012 개정판 2016)가 출판되었다. 그 외 최근 동아시아사 연구성과로 신주백 외, 『처음읽는 동아시아사』(휴머니스트, 2016), 김형렬, 『쉽게읽는 동아시아사』(신아사, 2017), 전국역사교사모임, 『친절한 동아시아사』(북멘토, 2017) 등이 있다. 외국에서의 연구로는 미타니 히로시외, 강진아 역, 『다시 보는 동아시아 근현대사』(까치, 2011), 와다 하루키 외, 한철호 역, 『동아시아 근현대통사』(책과함께, 2017), 워렌 코헨저, 이명화 등역, 『세계의 중심 동아시아의 역사』(일조

박진우·박태균 교수가 집필모임을 시작해 2010~2011년에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2를 출간하였다.³ 이 연구는 2016년 개정판을 내면서 17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베트남, 필리핀, 몽골 등 약 400여 년의 시간과 5,280km² 공간의 동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역사를 서술하였다. 2011년 초판이 완성되었을 때 한·중·일 역사의 상호 연관과 비교를 통해 ‘통합적 지역사’로서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조망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 유럽적인 문명사관을 극복하고 새로운 원리에 입각한 역사서술을 찾기 위해서 동아시아사가 구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평가되어 ‘동아시아의 새 단계를 보여주는 획기적 성과’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가 한·중·일을 연구하는 한국 역사연구자들이 일국사 병렬을 넘어선 지역사 관점으로 공동작업을 통해 한 주제에 얽힌 국가와 민족의 지역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성이 담보되어 학습될 수 있는 통사하고 한다면, 이 책은 지역사적인 관점이 의미하는 바를 방법론적으로 설명한 이론서로서 연구자들에게 동아시아사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첨예하게 등장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갈등 문제와 역사교육에서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동아시아사 서술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과 같은 비유럽 지역의 역사교육에 공통되는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국사에서 세계사에 이르는 중간단위의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의 필요성에 대해 저자는 일찍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였다.⁴

각, 2009)가 있다.

3 미야지마 히로시, 2011, 「동아시아의 새 단계를 보여주는 획기적 성과」, 『창작과비평』 39(2), 402~405쪽; 이병인, 2012, 「서평 :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유용태·박진우·박태균 저, 창비, 2010~2011)」, 『역사교육』 121, 253~260쪽.

4 유용태, 2005,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김한중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333~376쪽.

한국에서 동아시아사의 서술과 연구라는 고민의 최선봉에서 있던 저자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을 부제로 달았던 『환호 속의 경종』(휴머니스트, 2006)의 연구 이후 10년간 교육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2010~2011 개정판 2016)라는 동아시아사를 서술하였다. 나아가 연구방법론으로서 『동아시아사를 보는 눈』을 출간하여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체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이렇게 이 책은 교육과 연구의 사이에서 동아시아사를 서술하면서 느끼는 저자의 고민을 함께 진행하였다는 점에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II.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

이 책에서는 ‘동아시아란 현재의 동아시아 지역(region)을 단위로 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라고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지역사의 연관과 비교라는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다. 서장과 종장 이외에도 지역사의 방법과 동아시아사의 가능성(1부), 자국사 인식의 제국성을 넘어(2부), 가능성의 유산을 찾아서(3부)의 3부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저서의 본문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지역사의 방법과 동아시아사의 가능성에서는 제1장. 동아시아 지역인식의 형성과 지역사의 유형, 제2장. 방법으로서의 지역사와 동아시아의 방법, 제3장. 동아시아 구성체계와 가능성: 한·중·일의 사례의 세 장에서 저서의 핵심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17세기 이후 서양선교사 등장 이후 타자화되면서 일본의 경우 19세기 말 대동아로 자기확대형이면서 위계질서형 지역개념을, 조선 지식인은 서양에 맞서 한중일 삼국이 연대하자는 자주평등의 지역개념을 가졌다. 반면, 중국은 동아시아라는 지역개념 자체가 부정되었고, 베트남은 연대대상으로 동아시아는 필리핀, 미얀마, 인도까지 포괄하는 광역적인 것으로 동아시아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각국은 새로운 지역사 구성방법과 인식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지역사 인식 차이를 극복하고 자국사 인식체계를 자기성찰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예로 한국 현대 역사학과 역사교육을 보면 동아시아 지역개념이 한자문화권 4국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유목세력,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왔다. 또 동아시아 지역사를 연관과 비교를 통해 볼 때, 16세기 이후 서양 국가와 관련하여 해양세력이 변화하면서 해양세력과 농경세력의 상호작용이 동아시아사 전개에 중요한 영향이 있었다.

여기서 지역사란 세계사의 구성단위로서 근대 이전 상대적 독자성을 가진 지역문명권을 거점으로 하는 일정한 공간 범위에서 성립하여 자국사를 상대화하는 역사인식의 단위로도 점차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는 역사학의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면 지역사가 근대역사학의 3분체계(국가사, 서양사, 동양사) 역사교육(자국사와 세계사)에 대한 성찰의 방법으로 논의에서 시작하였다. 그런데 자국사로서 국가사든 세계사를 주도한 국가사든 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을 자기완결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독자성·자주성·통일성·위대성을 드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에 일찍이 국가사와 대비되는 지역사를 세계사 구성의 기본단위로 하는 제안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사는 첫째,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둘째, 동아시아 각국 간의 역사적 인식차이를 좁히며, 셋째, 새로운 동아시아사학의 논리와 체계를 세워야 하는 과제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의 지역사’이며 이는 곧 자기를 변혁하는 주체형성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사를 이렇게 지역사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자는 연관(connectios)과 비교(comparisons)를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관과 비교의 방식은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서술에도 적용되었다고 하면서 연관사는 직간접의 상호영향과 논리적·구조적 연관성까지 포함하여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연관사는 관계사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더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사유영역으로 첫째, 직접적인 연관성, 둘째, 평행적인 연관성, 셋째, 간접적·장기적 인과 연관성의 세 층위가 있다고 한다. 또 연관사로 파악될 수 없는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상대국의 역사발전의 독자성을 이해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사 차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차이의 원인을 탐색하는 비교사의 방법이 필요하다. 비교방법은 병렬비교에서 대상에 따라 통시적, 공시적 비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교시에는 쌍방의 비교와 결과와 현상의 비교를 넘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원인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교의 방법이 지역사의 필수조건이라면 연관의 방법은 그 충분조건이기에 연관의 방법을 통해 역사주체간의 상호연관성이 드러나고, 비교의 방법으로 구성주체의 자주성과 독자성이 드러나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또한 인식대상인 역사주체들은 변하는 국제적 위치관계에 있기에 중심-소중심-주변의 세 층위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근대 이후 서구 열강이 개입하여 구도가 변하므로 역사주체들 간의 ‘헤게모니적 상호연관성’을 드러내되 행위자를 국가영역이 아닌 사회영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한다.

즉, 지역을 형성하는 근거는 연관성(connectedness)에 있으며, 구성주체들의 역사 또한 상호 긴밀한 연관 속에 전개되어 있기에 자국사 인식의 갈등이 이웃나라로 확대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만 자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지역사를 새로 도입하여 자국사 인식의 제국성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1부의 핵심내용이다.

제2부 ‘자국사 인식의 제국성을 넘어서’는 제4장. 자국사의 제국성을 묻는다: 한·중·일의 동아시아 근대사 인식, 제5장. 동아시아 역사분쟁의 논리와 그 연원: 중화주의의 유산, 제6장. 한국의 베트남 전쟁인식과 한국-베트남 역사 화해의 길로 구성되었다. 이 부분은 지역사의 체계화에 가장 어려운 자국사의 제국성을 한·중·일·베트남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자성사관과 자만사관의 대립과 경쟁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4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술이 과거의 제국성을 옹호하는 자만사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제국성을 성찰하는 자시 성찰의 가능성도 보이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개항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유구왕국 식민지화에 대한 언급, 청일전쟁에서 민간인에 대한 포악 행위 언급, 근대국민국가에서 자국중심의 탈아주의 내면화 등이 그것이다. 한

편, 최근 한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간행과 일본 아베 내각의 일본군위안 부합의 등은 양국 정치리더십이 자만하였음을 지적하며 ‘동아시아 지역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역사인식’이 역사연구와 교육이 민주주의로 진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장에서는 역사분쟁의 원인을 민족주의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민족과 근대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근대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에 대해 중화주의의 경우 과거의 관점이 근현대로 투영되고 있어 갈등이 유발된다고 보고 전통적 화이사상의 논리와 근현대 동아시아 3국의 역사인식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근대일본의 동양사학에서도 황국사관과 중화사관이 결합한 근대식민지사관의 계보와 역사 인식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서 다른 나라 필진이 집필한 교과서를 번역하여 교육현장 등에서 사용하고 그 경험에 의거해 자국사를 성찰하는 방법과 각종 역사대화도 제안한다. 이렇게 제국의 논리를 상대화하는 작업을 병행할 때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역사학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 6장에서는 한국의 제국성을 소재로 냉전시대 미국에 편승해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의 경우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 부침이 심한 점도 꼬집었다. 특히 국가권력에서의 제국성의 성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시민단체, 언론이 함께 사회여론을 조성하여 국가의 자성을 유발해야 한다는 방법론도 제시하였다.

제3부는 ‘가능성의 유산을 찾아서’라는 제목에 역시 3장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제7장. 근대 인식체계 속의 민주주의 : 한·중·일·베 4국 교과서 비교, 제8장. 20세기 동아시아의 신민주주의(1) : 직업대표제 민의기관, 제9장 20세기 동아시아의 신민주주의(2) : 연합정부와 혼합경제가 그 내용이다. 3부는 20세기 동아시아 각 국가가 추구하였으나 조건이 성숙하지 못해 불발에 그친 유산에 대해 그 지역사적 연관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방법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과 베트남의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민주주의, 20세기 동아시아가 추구한 신민주주의 유산(직업대표제 민의기관, 연합정부, 혼합경제)을 연관과 비교의 시각에서 서술하였다.

Ⅲ. 동아시아사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종장은 동아시아사와 유라시아, 동아시아와 세계사의 유럽중심주의, 새로운 세계사연구를 향하여라는 세 꼭지로 동아시아사 내의 각 지역사가 함께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아시아와 유라시아로, 다시 세계사로 이어지는 개방성을 갖고 있는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개별지역사는 세계사로 나갈 연관과 비교에 의한 연구가 매우 바람직한데, 여기서 나갈 방향인 세계사역시 새로운 세계사이다. 따라서 지역사는 일국사와 세계사라는 이원화된 역사인식 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인식의 단위이자 방법으로 각 지역이 폐쇄된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으로 열리고 유기적은 연결되어 세계사를 지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동아시아가 여러 지역사의 하나로 새로운 중심이며 다른 지역사와 세계사로 열렸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유목지역은 물론이거니와 해역지역도 동아시아 지역과도 긴밀한 연결점을 가지므로 동아시아사의 체계화에서 이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해역·유목 지역과 동아시아를 어떻게 연결 접속하고 파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는 지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관한 지역연관사(interregional history)를 거쳐 새로운 세계사로 나가는 방법이 제시된다.

그런데 저자는 세계사가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이 시작되었기에 세계사의 체계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지금까지 세계사상을 떠받쳐온 인식체계를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저자는 세계사상을 떠받쳐온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세계사연구를 위해서는 앞에서 자주평등형 지역개념에 의거해서 지역사에서부터 대국, 제국 중심주의를 상대화해야 하며 새로운 세계사 서술을 위해 중심사관, 성취사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20세기 (동)아시아는 식민제국이 아닌 상태에서 산업화, 민주화라는 중대한 성취를 이루었는데 이는 아시아의 특수상황이기에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도 세계사적 과제의 하나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가 함께 직면한 현재의 자본주의는 근대이전에 지역문명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하면서, 그 특수성이 자본주의시대인 지금 힘을 발휘하여 자본주의를 극복의 과제를 설정하여 다중근대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에서 저자는 동아시아 지역사가 여러 이념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제국중심으로 발전사관에 기대어 탈아론적 지식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일신하는데 필요한 ‘사고의 실험실’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종장의 내용에서는 앞의 1부에서 언급하였던 각국사와 세계사의 중간 거점으로 지역사를 세계사로 모아갈 것을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사의 방법론을 강조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저자는 역사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교육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담론은 물론 동아시아사 역사서술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저자의 고민은 이미 10년을 훌쩍 넘기며 다양한 연구로 쌓였고 동아시아사와 관련한 많은 연구가 모아졌다. 단순한 병렬적 구성과 편집이 아닌 내용의 유기성이 돋보인다. 2011년에 완간된 『함께 읽는 동아시아 현대사』를 2016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실제 동아시아사의 방법론의 진전을 보고 그 사례들이 또 연구와 단행본으로 엮이면서 연관과 비교가 가능하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저자의 방법론에 믿음이 더 해진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사 방법론으로 제시된 연관(connections)과 비교(comparisons)의 개념과 설명이 매우 신선하다. 동아시아 담론이 공격을 받았던 것은 내용의 부재였다. 이왕의 많은 역사학의 이론구조도 내용의 부재가 그 존립기반을 위태롭게 하였다. 동아시아사의 경우 우리의 현실이고 새로운 역사학의 대안으로 글로벌히스토리나 해역사가 대두되고 있지만 지역 존립의 근거인 동아시아는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글로벌히스토리와 해역사도 동아시아를 포함한 지역기반의 연구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경우 이름은 바뀔 수 있으나 연구하는 실제 내용은 저서에서 말하는 현재의 동아시아 지역(region)을 단위로 하여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역사로 귀결될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기존의 역

사연구의 흐름을 통섭하고 그 기반위에서 연관과 비교를 언급하였기에 공감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신선하게 다가왔다. 연관사례 등을 제시하는 방법도 동아시아사 연구와 서술의 노하우가 느껴졌다. 비교사와 연관사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국민국가 패러다임 자체를 강화하는 측면을 가진다는 지적⁵에는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각국 비교사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사회의 여론과 인식에 기반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기에 일국사의 관점 지양이 기본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셋째, 제시한 방법론의 실천을 위한 방안이 매우 구체적이지만 추진가능성과 속도, 각국 정부의 시각변화에 매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저자는 동아시아 지역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역사인식이란 각국이 실증주의연구에 의거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차이를 좁혀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국제적 성찰 경쟁을 유발하고, 그 결과가 다시 일국안의 성찰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 역할을 시민단체, 역사소통 강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자만사관도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를 통한 자성의 촉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작업에 직접 관여하면서 변해가는 이웃국가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실제 한국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사 관련 움직임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른바 중심으로 보이는 중국과 일본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느리기에 주변에서의 자극이 언제쯤 중심을 크게 자극할 수 있을지, 요원한 역사작업이겠다는 생각도 스친다. 역사 연구자 숫자는 줄고 연구방법론과 연구테마는 더 다원화 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역사연구자들이 공감하여 연관과 비교를 키워드로 하는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 연구를 하는 계기가 촉발되어야 할 것 같다. 개인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뜻을 함께 하는 연구자가 공동연구를 통해 방법론을 공유하면서 함께 모여 흥미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자리가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5 윤해동, 2018, 『동아시아사로 가는 길』, 책과함께, 63쪽.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개정 2015. 12. 23. 규칙 제105호
타규개정 2017. 12. 27. 규칙 제180호
[시행 2018. 9. 3] [규정 제92호, 2018. 9. 3., 타규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실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개정 2015. 12. 23, 2017. 12. 27, 2018. 9. 3〉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담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180호, 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83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92호, 2018. 9. 3> (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등)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직제규정과 관련된 재단의 다른 내규는 별도의 개정 절차 없이 이 규정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정책실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

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가입을 한 이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내의 논문투고 절차에 따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가입 후 투고논문원고(그림 또는 별도의 표가 있을 경우 첨부파일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심사통과 후의 최종원고 제출시에는 nonchong@nahf.or.kr로 제출하고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증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증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景印本). “東北有高土, 東北公賢裔鵠雍,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기획실장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교육홍보실장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양인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팀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2호(2018.12)

초판 1쇄 인쇄 2018년 12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12월 31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